

연세대학교 대학요람

2025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 2025학년도 학사일정표 ◆ ◆

2025년		
2월	3(월)	휴학 접수 시작
	12(수)~18(화)	2025-1학기 수강신청
	21(금)~27(목)	2025-1학기 등록
	23(일)	졸업예배
	24(월)	복학 접수 마감, 학위수여식
3월	1(토)	삼일절
	3(월)	대체휴일
	4(화)	개강
	6(목)	교무위원회
	6(목)~10(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2(수)~14(금)	2025-1학기 추가등록
	17(월)	미등록자 일반휴학 접수 마감
	17(월)~21(금)	조기졸업 신청
4월	3(목)	교무위원회
	9(수)	학기 1/3선
	14(월)~19(토)	고난주간
	15(화)~17(목)	수강철회
	20(일)	부활절
	22(화)~28(월)	중간시험
	28(월)~5.2(금)	2025-2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29(화)~5.1(목)	S/U평가 신청
5월	1(목)	근로자의날, 교무위원회
	5(월)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6(화)	대체휴일
	7(수)	은퇴교수의 날
	10(토)	창립기념일
	16(금)	학기 2/3선, 일반휴학 접수 마감
	19(월)	질병휴학 접수시작
6월	3(화)	질병휴학 접수마감
	5(목)	교무위원회
	6(금)	현충일

2025년		
6월	8(일)	성령강림절
	10(화)~16(월)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기간
	17(화)~23(월)	학기말시험
	24(화)	여름방학 시작
	24(화)~30(월)	2025-2학기 캠퍼스내 복수전공 · 연계전공 · 융합심화전공 신청
	30(월)	2025-1학기 성적제출 마감, 여름계절제 수업시작
7월	14(월)	복학 접수 시작
	21(월)	여름계절제 수업종료
8월	1(금)	휴학 접수 시작
	11(월)~18(월)	2025-2학기 수강신청
	15(금)	광복절
	22(금)~28(목)	2025-2학기 등록
	25(월)	복학 접수 마감
	29(금)	학위수여식
9월	1(월)	개강
	3(수)~5(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4(목)	교무위원회
	9(화)~11(목)	2025-2학기 추가등록
	15(월)	미등록자 일반휴학 접수 마감
	15(월)~19(금)	조기졸업 신청
10월	2(목)	교무위원회
	3(금)	개천절
	5(일)~7(화)	추석연휴
	8(수)	학기 1/3선, 대체휴일
	9(목)	한글날
	13(월)~15(수)	수강철회
	20(월)~25(토)	중간시험
	27(월)~29(수)	S/U평가 신청
	27(월)~31(금)	2026-1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2025년		
11월	6(목)	교무위원회
	13(목)	학기 2/3선, 일반휴학 접수 마감
	14(금)	질병휴학 접수시작
	16(일)	추수감사절
	24(월)~28(금)	캠퍼스간 소속변경
12월	1(월)	질병휴학 접수마감
	4(목)	교무위원회, 성탄절예배
	8(월)~13(토)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기간
	15(월)~20(토)	학기말 시험
	22(월)~29(월)	2026-1학기 캠퍼스내 복수전공 · 연계전공 · 융합심화전공 신청
	22(월)	겨울방학시작
	25(목)	성탄절
	28(일)	성적제출 마감
	29(월)	겨울계절제 수업 시작
2026년		
1월	1(목)	신정
	12(월)	복학 접수 시작
	20(화)	겨울계절제 수업 종료
	2(월)	휴학 접수 시작
	9(월)~13(금)	2026-1학기 수강신청
2월	16(월)~18(수)	설연휴
	22(일)	졸업예배
	23(월)	복학 접수 마감, 학위수여식

차 례

연혁 · 캠퍼스

연 혁	8
세브란스 의과대학	8
연희대학교	9
연세대학교	11
연세대학교 연표	12
교지의 지리적·역사적 배경	36
캠퍼스 소개	37
건물의 소개	40

정관 및 이사회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71
이사회	108
법 인	109

학사안내

연세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핵심 역량	114
수업연한, 재학연한, 조기졸업	114
학년도와 학기, 수업과 휴업	116
재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117
휴학, 복학, 퇴학, 제적	122
교과와 이수	125
전공, 복수전공(이중·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131
수 강	139
성적평가	145
진급 및 졸업	151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수강	153
학점인정	156
기 타	163

행사와 활동

교내 주요 행사	166
학생생활 안내	169
국제처	173
취업진로, 국가고시, 현장실습	180
윤리인권위원회	184
학술문화처 도서관	228
정보통신서비스 안내	242
대학직장예비군연대	246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248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250
체육활동	253
신앙활동	257
보건기관	263
봉사활동	266
학생건강공제회	268
총동문회	272

학생활동 및 장학복지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279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281
학생회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규	282
장학금지급규정	284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289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296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297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299

부 록

연세대학교 학칙	304
학사에 관한 내규	35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366
2024학년도 재적생 현황	437

연 혁 · 캠퍼스

연 혁 / 8

세브란스 의과대학 / 8

연희대학교 / 9

연세대학교 / 11

연세대학교 연표 / 12

교지의 지리적 · 역사적 배경 / 36

캠퍼스 소개 / 37

건물의 소개 / 40

연 혁

연세대학교는 1885년 창립 이래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여 1957년 1월 5일 발족한 종합대학교이다. 두 기관의 통합은 이미 1928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49년부터는 당시 두 기관의 이사가 서로 교환된 것을 비롯하여 해방 후에는 양교의 교수대표 사이에 통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같은 해부터 의예과를 연희대학교에서 수학하게 하여 그 수료생을 세브란스 의과대학 본과에 진학하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1953년에는 연희대학교 대학원에 의학과 석사과정도 설치되었다. 그 후 두 기관의 이사회는 1955년에 재단법인 연세대학교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으며, 1956년에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정관이 완성됨으로써 1957년 1월 5일 연세대학교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창 설 1885년
설 립 자 魚 丕 信 (O. R. Avison)
초대교장 魚 丕 信 (1893년~1934년)
2대 교장 吳 競 善 (1934년~1941년)
3대 교장 李 榮 俊 (1941년~1945년 8월)

세브란스 의과대학

4 대학장 崔 陳 (1945년 8월~1948년 12월)
5 대학장 李 容 嵩 (1948년 12월~1952년 10월)
6 대학장 金 鳴 善 (1952년 10월~1957년 1월)

1884년 궁정어의(宮廷御醫)로 봉사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H. N. Allen 박사에게 1885년 4월 10일 고종황제가 서울 재동(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제중원(濟衆院 : 초기 이름은 廣惠院)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한 것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효시이며, 1886년 3월 29일 학생 16명(16명의 학생 중 12명만이 본과로 진급하였으며 졸업 후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이나 군함의 의사로 활약하였다)을 선발하여 개학하니 이것이 곧 연세대학교 역사의 시작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제중원은 캐나다 Toronto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에비슨(O. R. Avison, 魚丕信) 박사가 인계받아 1899년 미국 클리블랜드시의 세브란스(L. H. Severance)로부터 기증받았던 기금

으로 1904년 병원을 신축하고 의학 교육기관을 확정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이다. 1908년 배출된 제1회 졸업생 7명에게는 한국 정부로부터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의사면허증이 발급되었다.

1909년 교명을 사립 세브란스의학교로, 1913년에는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교라고 칭하였으며, 1917년에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발전하였으나 1942년 일제의 강요로 교명을 아사히의 학전문학교(旭醫學專門學校)로 변경하여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였다.

1947년 문교부로부터 6년제의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인가를 얻었으며, 6·25 동란 중에는 피난지(거제도과 원주 등지)에서 피난민을 위한 구호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1906년 9월 실즈(Miss Esther L. Shields)가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우수한 간호원 양성 전문기관으로 간호학교를 설치하여 1910년 한국 최초의 간호원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68년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하였다.

2. 연희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설립년월	1915년 3월
설립자	元 杜 尤 (H. G. Underwood)
초대교장	元 杜 尤 (1915년 3월~1916년 12월)
2대교장	魚 丕 信 (1916년 12월~1934년 6월)
3대교장	元 漢 慶 (1934년 9월~1941년 2월)
4대교장	尹 致 昊 (1941년 2월~1944년 10월)
5대교장	俞 億 兼 (1944년 10월~1945년 12월)
6대교장	白 樂 濬 (1945년 12월~1946년 8월)

연희대학교

초대학장	白 樂 濬 (1946년 8월~1957년 3월)
총장대리	金 允 經 (1947년 9월~1948년 9월)
	(1950년 5월~1953년 3월)

연희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3월 미국 뉴욕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한 남·북감리교 선교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협력을 얻어 서울 Y.M.C.A.에서 Chosen Christian College(문과, 수물과, 상과, 농과, 신과)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개교하였다. 2년 후인 1917년에는 한국 유일의 전문학교인 사립 연희전문학교(문과, 신과, 상과, 수물과, 응용화학과, 농과)로 발족하였고 1923년 3월에 신교육령에 의해 교명이 연희전문학교로 바뀌었다.

연희전문학교는 일제의 가혹한 사상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1938년 4월부터는 일본어, 일본사교육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1944년 4월에는 본 대학교를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몰수

하고 총독부의 관리 하에서 한국인 간부와 교수진을 추방하였으며,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라고 고쳐서 1945년 8·15해방까지 이르렀다.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자 접수위원(백낙준, 유억겸, 이춘호, 김윤경, 이묘목, 조의설, 김성권)은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의 재산과 운영권을 미 군정청으로부터 인수받아,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회복하였으며 유억겸씨가 교장으로 있다가 1945년 12월 18일 백낙준 박사가 후임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의 교지는 1917년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의 기부금으로 구입하였고 찰스 스티imson(Charles S. M. Stimson)의 기부금으로 스티imson홀을 건립하여 1920년에 이전한 것이다.

연희전문학교는 창립초기부터 민족정신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던 해인 1919년부터 시종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의 총본산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라왔다.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백낙준 박사가 종합대학교로의 승격을 목표로 대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한 결과, 1946년 8월 15일 연희대학교로 승격되어 다음과 같이 4학원 11학과와 종합대학교로 인가되었다.

- 문학원 -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정치외교과
- 상학원 - 상학과, 경제학과
- 이학원 -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 신학원 - 신학과

한편 1949년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예과를 연희대학교에 두었으며, 1950년 연희대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50년에는 다음과 같이 4대학 17학과로 증설하고 대학원을 신설하였다.

- 문과대학 -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정치외교과, 법학과
- 상경대학 - 상학과, 경제학과
- 이공대학 -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전기공학과, 공업화학과, 의예과
- 신과대학 - 신학과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연희대학교는 3개월간 임시 휴교를 단행하였으며 9·28 수도 탈환이후 11월 3일 재등락을 받아 개강하였다. 1·4후퇴로 인하여 연희대학교도 부산으로 피난하게 되어, 1951년 10월 3일 부산 영도에 천막을 치고 개강하는 한편, 1952년 목조 가교사를 낙성하여 계속 강의하다가 서울수복 후 1953년 8월 서울 본교로 환도하여 개강하였으며, 당시의 부산 영도가교사는 부산 분교, 부산 연세실업초급대학을 거쳐 여학생만을 수용하는 가정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연희대학교는 날로 발전하여 1954년 정법대학을 신설하여 정치외교학과와 법학과를 두었으며, 1955년에는 종교음악의 지도자 배출을 위하여 신과대학에 종교음악과를 신설하였다.

특히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이후 연희대학교는 대학의 운영에서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3. 연세대학교

창립년월일

1957년 5월 제2토요일

초 대 총 장	白 樂 濬	(1957년 3월 ~ 1960년 7월)
총 장 서 리	崔 鉉 培	(1960년 7월 ~ 1960년 8월)
총 장 서 리	元 一 漢	(1960년 8월 ~ 1960년 12월)
2 대 총 장	高 秉 幹	(1960년 12월 ~ 1961년 9월)
총 장 직 무 대 리	張 起 元	(1961년 9월 ~ 1961년 11월)
3 대 총 장	尹 仁 駒	(1961년 11월 ~ 1964년 8월)
총 장 직 무 대 리	趙 義 高	(1964년 8월 ~ 1964년 9월)
4 대 총 장	朴 大 善	(1964년 9월 ~ 1968년 9월)
5 대 총 장	朴 大 善	(1968년 9월 ~ 1972년 9월)
6 대 총 장	朴 大 善	(1972년 9월 ~ 1975년 4월)
총 장 서 리	李 宇 柱	(1975년 4월 ~ 1975년 6월)
7 대 총 장	李 宇 柱	(1975년 6월 ~ 1979년 6월)
8 대 총 장	李 宇 柱	(1979년 6월 ~ 1980년 7월)
9 대 총 장	安 世 熙	(1980년 7월 ~ 1984년 7월)
10 대 총 장	安 世 熙	(1984년 7월 ~ 1988년 7월)
11 대 총 장	朴 煥 植	(1988년 8월 ~ 1992년 7월)
12 대 총 장	宋 梓	(1992년 8월 ~ 1996년 7월)
13 대 총 장	金 炳 洙	(1996년 8월 ~ 2000년 7월)
14 대 총 장	金 雨 植	(2000년 8월 ~ 2004년 2월)
총 장 직 무 대 행	金 重 基	(2004년 3월 ~ 2004년 4월)
15 대 총 장	鄭 暢 泳	(2004년 4월 ~ 2007년 10월)
총 장 직 무 대 행	尹 大 熙	(2007년 11월 ~ 2007년 11월)
총 장 직 무 대 행	池 勳 商	(2007년 11월 ~ 2008년 2월)
16 대 총 장	金 漢 中	(2008년 2월 ~ 2012년 1월)
17 대 총 장	鄭 甲 泳	(2012년 2월 ~ 2016년 1월)
18 대 총 장	金 用 學	(2016년 2월 ~ 2020년 1월)
19 대 총 장	徐 昇 煥	(2020년 2월 ~ 2024년 1월)
20 대 총 장	尹 東 燮	(2024년 2월 ~ 현 재)

연세대학교 연표

- 1885. 4. 10 한국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이 왕립병원으로 개원
 - 4. 23 광혜원, 제중원으로 개칭
- 1886. 3. 29 제중원에 의학부를 신설하여 경쟁시험으로 학생 16명 선발
- 1893. 7. 16 에비슨, 제중원의 책임을 맡음
- 1894. 제중원 운영권이 미 북장로교파선교회로 이관됨
- 1899. 4 한국 최초의 정규 의학교, 제중원 의학교 설립, 초대 교장에 에비슨 취임
- 1904. 9. 3 최근대식 신축병원 준공, 세브란스병원으로 명명, 세브란스씨로부터 기부금 유치
- 1908. 6 제1회 졸업생 7명 배출 - 의사면허장 수여
- 1909. 7 교명을 '사립 세브란스 의학교'로 개칭
- 1910. 6. 10 제1회 간호학교 졸업생 1명 배출
- 1913. 북장로회, 북감리회, 캐나다 장로회 등 6교파와 협력 달성, 교명을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교'로 개칭
- 1915. 3. 5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를 설립하고 Y.M.C.A에서 개교, 초대교장 원두우, 부교장 에비슨
- 1916. 12 에비슨 조선기독교대학 제2대 교장으로 선임
- 1917. 4. 7 '사립 연희전문학교(문과, 신과, 상과, 수물과, 응용화학과, 농과)'인가
 - 5. 14 '재단법인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인가
 - 9 언더우드의 기부금으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의 대지 19만평을 교지로 구입
- 1919. 3 연희전문학교 1회 졸업생 배출(문과 8명, 상과10명, 수물과 4명)
- 1920. 3 스탬슨관 준공
- 1922. 4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를 폐지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개칭
- 1923. 3. 26 교명을 '연희전문학교'로 고치고 설립인가를 다시 받음 - 학칙 일부를 개정
- 1924. 4 연희학칙 개정 - 수물과 증설, 상과 수업연한을 3년으로
 - 언더우드관 및 아펜젤라관 준공
- 1927. 3 연희교정에 돌층계 만들어짐
 - 세브란스 교가 제정
- 1928. 3 핀슨관 준공
- 1929. 12 연보전 시작됨
- 1931. 연전 응원가 제정
- 1932. 3 오궁선, 연전 초대 한국인 부교장에 취임
- 1933. 5 연전 노천극장 준공
- 1934. 4 세전 2대교장 오궁선 취임
- 1934. 9 원한경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으로 선임
- 1935. 9. 1. 「연전타임스(연세춘추의 전신)」가 월간으로 창간 (한국 최초 대학신문)
- 1940. 3. 19 연전 수물과를 이과로 개칭
 - 한경관 준공

1941. 2. 25 윤치호, 연희전문학교 제4대 교장으로 선임
1942. 6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명을 '아사히 의학전문학교'로 강제변경
8. 17 연희전문학교를 직산으로 삼아 일제가 강점. 연전 최초 일본인 교장 부임
1943. 11 연전, 마지막 졸업생 68명 배출
1944. 4 연전, 교명을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바꿈
1945. 8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로 교명 복구
- 9 '연희전문학교 접수위원회' 조직
- 10 유억겸, 연희전문학교 제5대 교장으로 선임됨. 세브란스, 예과 3년, 학부 3년을 두기로 하고 우선 전문학교로 다시 출발하기로 함
11. 6 연전 해방 후 첫 개교
- 12 백낙준, 연희전문학교 제6대 교장으로 선임
1946. 7. 27 연희대학교 최초의 예과 입학생 모집. 연희대학교 전문부 입학생 모집
- 8 연희대학교 학칙 제정 인가. 초대 총장 백낙준 취임
- 4학원, 11개학과 종합대학으로 발족
(문학원 - 국문과, 영문과, 사학과, 철학과, 정치외교과,
상학원 - 상학과, 경제과,
이학원 - 수학과, 물리기상학과, 화학과,
신학원 - 신학과)
- 9 연희대학교, 국내 최초로 남녀공학 시작
1947. 8 연희대학교 전문부 제1회 졸업생 배출
-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승격인가를 받음
1948. 7 세브란스 의예과 제1회 수료와 제1회 의학부 발족
1949. 3 연희대학교 전문부 마지막 졸업, 폐쇄
5. 12 세브란스의대 예과를 연희대학교 이공대학에 설치
12. 1 하버드대학의 연경학사 후원으로 동방학연구소 설치
1950. 5 백낙준 총장, 문교부장관에 취임. 김윤경이 총장대리로 임명
- 교육과, 법학과, 생물학과, 공업화학과, 전기공학과, 의예과 증설 - 4대학 17과가 됨.
- 6 대학원 설립
- 6 6·25사변으로 휴교
1951. 1. 25 거제도에 피난민 구호 병원 개설
1951. 10. 3 연희대, 피난지인 부산 영도에서 개교
1953. 8 연희대, 휴전으로 서울 환도와 학교 복귀 완료
- 부산에 분교 설치
10. 17 연희극예술연구회 발족
1954. 2. 20 제1회 석사학위 수여식 거행
4. 13 정법대학 신설
- 8 동방학연구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 연구소의 학술지 「동방학지」 발간
- 과학관, 도서관, 대강당, 체육관 봉헌
- 10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건립 시작
1955. 2 신과대학에 종교음악과 신설

- 3. 23 연희, 세브란스의대, 양교합동을 최종 결정
- 5. 25 신촌동 현 위치에 세브란스 병원 건물을 착공
- 7 대학원에 의과 설치를 결정
- 1956. 3 공업화학과를 화학공학과로 명칭 변경
- 5. 10 교무회의, 창립기념일을 '모교일'로 결정
- 5. 25 교육관 준공
- 7. 21 교직원 퇴직 적립금제도 실시
- 9 각 대학에 과장제 실시
- 10. 9 동문회, 연희, 세브란스 합동후 교명을 '연세'로 건의
- 10. 16 연희관(과학관) 준공
- 10. 27 연고 친선 체육대회 개최
- 12 도서관학과 신설 결정
- 1957. 1. 5 연희대학교, 세브란스의과대학 통합 → 연세대학교로 출발
- 2 간호학과 4년제 대학 정규과로 승격(구 세브란스 간호학교)
- 3. 25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에 백낙준, 부총장에 최현배, 김명선 취임
- 4. 1 새 배지 패용
- 10. 9 연세춘추 110호부터 1면을 한글로
- 11. 23 도서관 준공
- 1958. 2. 4 워싱턴대학교 경영학 원조조약 체결
- 3. 3 연세대학교 제1회 학위수여식
- 4 도서관대출증제 실시
- 5. 9 도서관은 용재관, 교육관은 광복관으로 명명
- 6. 28 의과대학 신관병실 낙성
- 10. 22 음영교육연구소(A.V. Center) 설치
- 백양로 완성
- 12 경영학과, 건설공학과, 행정학과 신설 인가
- 1959. 2. 19 부산분교, 실업초급대학으로 발족
- 4. 1 한국어학당 설립
- 4. 30 총장 백낙준, 부총장 최현배 유임 결정
- 10. 1 소아마비 병원 개원식
- 11. 24 대강당 낙성
- 1960. 3. 24 연세교육방송 개시
- 3. 26 한국어학당 제1회 졸업
- 4. 2 새 교기 제정
- 4. 4 대강당에서 채플 시작
- 6 성암관 준공
- 7 총장 서리에 최현배 임명
- 8. 24 총장 서리에 원일한 임명
- 10 체육관 완공
- 1961. 2. 11 제2대 총장, 고병간 취임

- 5 명예총장에 백낙준 추대
6. 30 명예총장 백낙준 개인장서 기증, 동문배지 제정
8. 30 고대 교무위원회, 연고전 중지를 결정
9. 1 첫 「연세대학교 요람」 발간
10. 6 총장 직무대리에 장기원 임명
11. 6 제3대 총장, 윤인구 취임
1962. 2. 8 이공대학 이학부, 공학부 분리
3. 24 교목실 신설
6. 5 의대교사, 간호학교 기숙사 및 세브란스병원 신축 봉헌, 서울역전에서 신촌캠퍼스로 이전(미국 China Medical Board 기부금과 주한 미8군 도움으로 1955년 착공)
8. 1 의대 및 병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의료원 출범
10. 1 연세찬가 제정
- 12 이공대학 이학부에 체육학과 신설
1963. 1 건설공학과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로 분리
신과대학 종교음악과가 음악대학으로 승격
교회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신설
3. 23 재단이사장에 강신명 목사 선임
6. 7 ‘연세실업초급대학’ 학칙 변경(‘연세대학교 부산초급대학’으로 변경)
- 8 교육관(유억겸 기념관) 준공
10. 7 도서관, 공휴일 개관 발표
- 10 연고전 재개를 발표
12. 3 연세대학교 부산초급대학이 가정대학으로 개편
1964. 1. 11 교학부총장에 조의설 임명
- 3 교양학부 신설, 이학부에 지질학과 신설
3. 23 연합신학대학원 설립
9. 11 논지당 뒷숲 ‘청송대’라 명명
9. 22 제4대 총장, 박대선 취임
10. 19 총무처 신설
1965. 1 지질학과 신설
3. 15 박물관 개관
경영대학원 설립
1966. 2 가정대학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
3. 26 학생처, 교복착용, 흡연금지의 강정책 발표
- 5 학칙일부 개정(음대 정원 재조정, 교육학과 부전공 인정)
- 9 인터내셔널 디비전(International Division) 한국 최초 설치
근로장학금 신설
12. 8 학칙수정으로 교내전과 허용, 상경대학에 응용통계학과, 이공대학에 금속공학과 신설
1967. 3. 10 교육대학원 설립
4. 10 농업개발원 설립

11. 25 치과대 신설, 천문기상학과 신설
12. 7 간호학과, 남학생 입학 허용
천문기상학과, 치의예과 신설
1968. 5 연세학술상 제정 수여
7. 10 제5대 총장에 박대선 재선
- 30 학생회관 완공
12. 16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상경대학의 상학과가 경영학과로 합치고,
이공대학 이학부에 생화학과, 공학부에 요업공학과, 전자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설
1969. 3. 31 '독수리상 건립 위원회' 발족
4. 1 외국어학당 설립
- 5 경영학교실단 준공
5. 2 푸른샘 개관
9. 29 컴퓨터 센터 설치
11. 10 암센터 개원
12. 17 체육학과 신설
1970. 3 행정대학원 설립
- 5 독수리상 제막
5. 22 덕소수양관 준공
1971. 3. 24 편입학제 폐지
8. 12 '명예교수 규정' 확정 발표
8. 12 문과대학에 불문, 독문, 사회학과 및 정법대학에 신문방송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인가
1972. 2 본교, 서강대, 이대 대학원 4개학과 학점 교환제도 신설
4. 1 「연세월보」 창간
4. 25 「연세대학교 연보」 창간
6. 23 제6대 총장에 박대선 선임(3선), 산업대학원 신설
9. 21 재단이사장에 이천환 박사 선임
- 23 영어학당, 외국어학당으로 개칭
12. 11 대학교육개혁안 발표(140학점제, 부전공제, 계열별 모집)
- 26 가정대학에 아동학과 신설
1973. 3 대학 정문 완성
3. 28 의과대학 신관 준공
8. 30 한국 최초의 '특임 교수직 제도' 시행
9. 13 정문봉헌, 도로포장 개통
- 12 문과대학에 중어중문학과 신설
1974. 3. 16 치과대학 부속병원인가
8. 8 '75학년도 신입생 입학시험에 예시성적 10% 반영기로 결정
- 9 유니버시티 채플이 루스채플로 명명되어 봉헌
1975. 3. 20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개원
- 3 강화지역사회보건의원 설치
4. 10 총장서리에 이우주 임명

- 6. 11 제7대 총장에 이우주 취임
- 9. 12 연고전 중단 의결
- 11. 28 백낙준 명예총장 장서 1만여권 기증
- 1976. 1. 21 졸업논문제 시행세칙 결정
- 3. 17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교실 개설
- 8. 30 삼애학교부지 연세대학교에 기증(면적 57,223평)
-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제14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정
- 8. 31 음악관 준공
- 9. 3 '77학년도 입시요강 일부 변경. 실업계 정원 10% 무시험 선발 결정
- 10. 28 교양학부 해체, 이공대학을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
- 1977. 1 보건대학원 설립
- 2. 14 재단법인 '연세암센터' 발족
- 3 학생지도연구소를 통합 학생상담소 신설. 교양학부 해체, 이공대학 이학부와 공학부가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 승격
- 6. 25 학생회관 증축 완공
- 11. 30 국내 최대 천체 망원경 도입
- 12. 28 의과대학 원주분교 신설
- 1978. 3. 15 학생회관 무악극장 개관
- 7. 19 '79학년도 입시에서 문과대학, 이과대학 계열별 모집기로 결정
- 9. 7 '79학년도 입시요강 대폭개정(본고사, 국, 영, 수 예시 반영률 40%에서 53.1%로 개정)
- 10. 6 우유가공 실습장 준공
- 27 제8대 총장에 이우주 연임
- 10 원주분교, 보건학과 신설
- 1979. 3. 30 신축 중앙도서관 준공
- 9. 3 실내수영장 개장
- 12. 17 천문대 일산관측소 설치
- 1980. 8. 25 제9대 총장 안세희 취임
- 9. 2 학도호국단, 학생활동기구로 복귀
- 18 연고대 실무자 회의, 연고전 개최 없기로 합의
- '81학년도 대학 개편, 심리학과, 신과대학에 사회사업학과 신설, 사범대 독립(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정법대는 사회과학대학으로, 법학과가 법과대학으로 승격.
- 11 공학관 증축 완공
- 12. 17 삼애수양관 개관
- 12 연세대학교 천문대 완성
- 배민수기념관 개관
- 1981. 1. 8 원주분교, 원주대학으로 승격. 10개학과(의예과, 의학과, 보건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 15 배지 도안 바꿈
- 30 수업시간 변경안 결정(10교시 배정)
- 3. 2 교련학점 변경(전방 경계훈련 추가)

- 17 도서관 음악도서관 개관
6. 5 스티븐관, 언더우드관, 아펠젤라관, 사적으로 지정됨
12. 12 동문회, 제1회 연세의 밤 개최
 - 3 학칙 개정 발표(학사경고 3번째에 제적)
1982. 1 신입생 계열별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변경
 2. 13 연세명일빌딩 봉헌
 - 24 교내 언론기관 편집인 일원화
 3. 1 「교내소식」 창간
본관(언더우드관)을 대학본부로 사용하고 문과대학을 인문관(현재 외솔관)으로 신축이전
 - 4 연세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6. 22 연세매지방송국(YMBS) 개국
 10. 5 이과대학에 전산과학과 신설.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는 전자전산기공학과로, 음악대학 종교음악과는 교회음악과로, 사범대학은 교육과학대학으로 변경
원주대학이 원주대학과 원주의과대학으로 분리
원주대학에 국어국문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신설
 - 11 '83학년도부터 수강 예비등록제 실시기로 결정
 11. 1 학생회관 1층에 한일은행(우리은행 전신) 간이예금취급소 개설
 11. 12 국제학부 강좌를 일반학생들에게도 수강하기로 결정
1983. 2 가정대학 남학생 입학 허용
 3. 4 인천산업병원 개원
 4. 4 영동세브란스병원 개원
 4. 15 세브란스병원 용인 및 광주분원 개원
 7. 11 하와이대학과 자매결연
 - 5 남가주대와 자매결연
 9. 7 연고대 총장, '83학년도 연고전 취소결정' 공동 발표
 - 9 인터내셔널 디비전을 국제교육부(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로 확대개편
1984. 2 과학관 준공
 3. 4 원주대 기숙사 완공
 - 6 여름 계절제수업 실시
 6. 14 연세창립 100주년 기념사업후원회 발족
 6. 15 제10대 총장에 안세희 연임
 7. 24 연세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회 사무국 신설
 8. 16 원주대학 인문관, 자연관, 기숙사, 영빈관 준공
 - 10 원주대학이 문리대학(국문, 영문,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과 정경대학(경제, 경영, 행정, 법학과)으로 분리, 공과대학 전자전산기공학과가 전자공학과로 변경
 11. 1 11년 만에 학생의 날 부활
 12. 1 외국 85개 대학과 학생 교환협정을 맺고 '85년 3월부터 학생교환
1985. 5. 8 창립 10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5. 11 창립 100주년

5. 30 창립 100주년기념 국내순회음악회 실시
7. 31 과학관 옥상에 천문대 돛설치
9. 23 천문대, 헬리캠성의 국내 최초 사진검출 성공
11. 1 국제교육부 부속교육기관으로 편입
11. 6 창립 100주년기념 연세콘서트콰이어 미주지역 순회음악회 실시
12. 20 「연세대학교 백년사」 발간
1986. 1. 13 '8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논술고사 실시
 1. 20 '86학년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채플을 교양필수과목으로 결정
 5. 2 TELEX설치(YONSEI K29127)
 5. 3 제1회 동문의 날
 9. 13 산업대학원 부설 산업고위자과정 개설
10. 6 '새 한국어사전 편찬 추진 위원회' 구성
10. 10 용재문고 현판식 거행
10. 30 창립 100주년 기념 연세콘서트콰이어 동남아순회음악회 실시
11. 6 원주의과대학의 보건학과가 보건과학대학(보건행정학과, 환경과학과, 임상병리학과, 재활학과, 의용공학과) 승격
11. 13 음영교육연구소에 비디오도서관 신설
11. 22 매지캠퍼스 노천극장 준공
11. 29 국제학대학원 설립
1987. 3. 1 기획실에 섭외홍보과 신설, 100주년 사무국 업무 인계
 3. 25 원주부총장 직제 신설
 4. 10 광혜원 복원 및 알렌관 신축 봉헌
 4. 30 「연세대학교 규정집」 발간
 5. 2 용재 백낙준 박사 동상 제막
 5. 8 재활원 신축, 제증관 증축 봉헌
 8. 27 원주기독병원 모자보건종합센터 봉헌
 12. 19 국제학사 준공
1988. 3. 3 백주년기념관 준공
 7. 21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준공
 8. 10 제11대 총장, 박영식 취임
 9. 14 이한열 추모비 건립
 12. 14 중국 북경대학교와 교수학생 교류 등 합의
1989. 2 문리대학에 통계학과, 전산학과 및 보건과학대학에 산업보건학과 신설
 - 6 한국외국어학당이 언어연구교육원으로 변경
 - 한국어사전편찬실 및 아식(ASIC) 설계공동연구소 설치
 - 연세대학교의 학문적 숨결이 담긴 「진리·자유」 제간지 창간
 8. 18 원주의과대학 학생기숙사 준공
 - 8 외국 150개 대학과 학생교환 협정 체결
 9. 11 소련 동방연구소(소련 과학원 산하)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0. 23 소련 모스크바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10 문과대학에 노어노문학과 신설.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식생활학과가 식품

영양학과로, 천문기상학과가 천문대기학과로 명칭 변경. 문리대학에 사학과, 낙농학과 신설. 관리과학대학원 신설

- 11. 2 무악학사 준공
- 1990. 4 영동세브란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봉헌
- 6. 14 학교 심벌마크, 씬, 로고, 레터헤드 표준 제정
- 8. 13 소련 모스크바대학 및 레닌그라드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9. 1 '교수연구년제' 실시
- 10. 16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 변경
- 11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척추센터 봉헌
- 11. 30 매지캠퍼스 보건관 봉헌
- 12. 21 언어연구교육원 봉헌. 매지2학사 봉헌
- 1991. 2. 3 직원해외 연수 실시(제1회)
- 2. 28 농업개발원 폐원
- 3. 1 연구처 신설
- 4. 30 음악대학신관 봉헌
- 5. 10 심장혈관센터 봉헌
- 6. 22 암센터신관증축 봉헌
- 10. 22 공과대학에 전파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교육과학대학에 사회체육과, 문리대학에 철학과, 정경대학에 국제관계학과 신설, 요업공학과가 세라믹공학과로, 의용공학과가 의용전자공학과로 명칭 변경
- 11. 26 언론홍보대학원 신설
- 1992. 3 언어연구교육원이 연세어학원으로, 전자계산소가 연세전산원으로 변경
- 3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 설립
- 5. 9 연세한글탑 건립
- 7. 31 공과대학에 도시공학과, 정경대학에 경영정보학과 신설
- 8. 3 제12대 총장, 송 자 취임
- 9. 18 용인세브란스병원 증축 봉헌
- 12 연세발전위원회 출범
- 1993. 1. 31 광주세브란스분원 폐쇄
- 3. 1 의료원 책임경영체제 실시(영동세브란스 분원인 용인세브란스분원을 병원으로 승격·분리 독립운영)
- 3. 1 광주정신병원을 매입하여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으로 운영
- 3. 8 의료원 환자의 권리장전 제정 선포
- 5. 3 원주의과대학 종합관 봉헌
- 5. 8 동문회관 봉헌
- 6. 30 (주)연세유업 아산공장 봉헌
- 7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설립
- 7. 20 섭외부총장제 신설
- 8. 18 무악2학사 봉헌
- 9. 3 공과대학에 산업시스템공학과, 원주의과대학에 간호학과 신설
- 9. 3 식품공학과가 식품생물공학과로, 낙농학과가 생물자원공학과로 명칭 변경

9. 4 특허법무대학원 신설
10. 19 제1회 배민수 기념강좌 개최
12. 29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봉헌
1994. 3. 7 제2공학관 봉헌
 - 3 신호처리연구센터설립
 6. 8 세브란스 건강증진센터개원('96. 2. 1일자로 세브란스건강진단의원으로 개칭)
 7. 1 몽골 연세 친선 병원 개원
 8. 19 매지3학사 봉헌
 8. 31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관 및 주차장 봉헌
 9. 16 연세 교정 환경 회복 선언
 10. 31 정인보, 최현배, 김윤경, 홍이섭 선생 얼굴상 봉헌
 12. 13 전산과학과가 컴퓨터과학과로, 사회사업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의생활학과가 의류환경학과로, 주생활학과가 주거환경학과로, 원주 생물학과가 생명과학과로, 산업보건학과가 산업환경학과로 명칭 변경
1995. 9. 1 신과대학 사회복지학과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로 소속대학 변경
 10. 1 '세브란스' 명칭 서비스표 등록
 12. 18 새 치과대학치과병원 신축 봉헌
1996. 3. 1 야간 간호학과 3학년 편입생과정 신설

이과대학 컴퓨터과학과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로 소속대학 변경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과가 환경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문과대학 11개학과가 인문학부로, 상경대학 3개학과가 상경계열로, 이과대학 7개학과가 자연과학부로, 공과대학 7개학과가 기계·전자공학부로 2개학과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로, 생활과학대학 4개학과가 생활과학부로 원주 문리·경법·보건과학대학 11개학과가 인문사회계열로, 문리·보건과학대학 12개학과가 자연과학계열로 개편

 4. 30 임상의학연구센터 및 연세장례식장 봉헌
 5. 30 '연세 21세기 계획' 최종보고서 발간
 6. 1 상경관 봉헌
 7. 20 '96 교육개혁 박람회' 참가(교육부 주최)
 8. 1 13대 총장, 김병수 취임
 9. 24 간호대학 신축 봉헌
 10. 4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대학' 최종 선정
 10. 17 안-이비인후과병원 봉헌
 10. 21 '96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 '학생선발분야' 최우수선정
 11. 14 '국제 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 최우수선정
 12. 1 발전협력처를 대외협력처로 명칭변경, 기획실 홍보과를 대외협력처로 직제 개편.
1997. 2. 8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방우영 취임
 2. 27 「진리·자유」복간
 3. 1 문과대학 인문학부(11학과)가 인문학부(8개전공)와 유럽어문학부(3개전공)로, 공과대학 2개학과가 재료공학부로, 교육과학대학 2개학과가 체육계열로, 원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이 문리대학 인문과학부(4개전공)와 자연과학부(7개전공)로, 정경대학이 경법학부(6개전공)로, 보건과학대학이 보건과학부(7개전공)로 개편, 이

과대학 지질학전공이 지구시스템과학전공으로, 천문학전공이 천문우주학 전공으로,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가 생명공학과로 명칭 변경, 원주 환경학전공이 환경과학전공과 환경공학전공으로 세분
(생활환경대학원 설립)

- 6 정보저장기기 연구센터설립
7. 1 연세의료원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신설
7. 28 공과대학 제3공학관 봉헌
8. 12 의료원 광혜원 연소 사용결의
9. 1 연구처와 진리자유편집실을 독립기구로 직제 개편
10. 13 원주의과대학 제2원의학사 의치간호대학생기숙사 봉헌
10. 14 '정보통신분야 특성화추진사업단' 설립
12. 8 언어연구교육원의 L.A. 분원인 연세어학당 개원
1998. 3. 1 공과대학 기계·전자공학부 7개전공이 3개전공(전기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정보산업공학전공)으로, 사회과대학 4개학과가 사회과학계열로, 통합 원주 보건과대학 보건과학과 야간 3학년 편입생과정 신설
(경영대학원에서 경제대학원이 분리 독립)
5. 9 무악 3·4학사(의치간호대학생 기숙사 및 고시동·교원숙소) 봉헌
6. 19 미디어아트연구소·연세영상제작센터 개원
8. 24 제2인문관(현재 위당관) 봉헌
9. 18 연세의료원 21세기 발전전략계획(비전 21) 수립을 위한 비전 21위원회와 기획단 및 실무팀 구성
- 10 준결정 재료단 설립
10. 31 강화지역사회보건원폐쇄
11. 10 「연세한국어사전」 출판
12. 17 상남경영관 봉헌
1999. 2. 1 생활과학대학(삼성관) 봉헌
3. 1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와 건축공학과를 사회환경건축공학부로, 화학공학과와 생명공학과가 화공생명공학부로 통합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의 임상병리학전공이 임상병리학과로, 재활의학전공이 물리치료학과와 작업치료학과로 독립
특허법무대학원이 법무대학원으로 변경
- 3 연세공학원 준공
7. 27 사회복지센터·청년문화센터 설치
8. 27 과학영재교육센터 설치
9. 1 학부대학 설립
11. 24 연세의료원 21세기를 향한 비전 선포
2000. 1. 30 연세종합서비스센터 설치
3. 1 서울캠퍼스: 6개 모집단위(인문, 사회, 이학, 공학, 의치의학, 예체능계열)로 통합 / 국제대학원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2개 전문대학원(정보대학원, 영상대학원) 신설
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의 보건과학부 명칭이 보건환경의공학부 3개전공(보건행정학, 의공학, 환경공학)으로 변경

4. 3 통합 행정 정보시스템 가동
4. 10 연세의료원산하 전문진료기관 명칭 앞에 '세브란스' 사용키로 함
5. 13 타임캡슐 백주년기념관 앞에 매설(창립 200주년 기념일인 2085년에 개봉 예정) '윤동주 기념실' 개원(핀서관 2층). 연세과학원 봉헌
8. 1 제14대 총장 김우식 취임
9. 27 교육부 교육개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10. 23 삼애캠퍼스에 국제규격의 야구장과 축구장 건립
2001. 3. 1 서울캠퍼스: 대학의 모집단위를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신학, 생활과학, 예체능, 의치간계열로 조정
사회복지대학원 신설
원주캠퍼스: 보건·환경·의공학부가 환경·의공학부와 보건행정학과로 조정
4. 12 특성화계획 확정 :국학진흥연구단, 국제학연구단, IT연구단, CT연구단, NT연구단, 의료 및 의용기술연구단
4. 25 통합형 디지털 도서관 가동
5. 11 제1회 윤동주시문학상 시상식 및 기념강좌 개최
5. 12 UI(University Identity 대학이미지 통합) 확정 발표
5. 25 기여우대제실시계획 발표
10. 22 제1회 언더우드선교상 시상식 및 기념강좌 개최
- 11 간호대학, 국내 첫 간호대학원 설립
2002. 3. 1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4개 학부 10개 전공을 7개 학부 10개전 공으로 개편하고 학부·전공명칭 변경(기계전자공학부→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산업공학부, 사회환경건축공학부→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도시공학부, 재료공학부→신소재공학부, 정보산업공학전공→컴퓨터산업공학전공, 금속공학전공→금속시스템공학전공)
원주캠퍼스: 문리대학 디자인학부와 정보기술학부 신설
경법대학 경법학부를 사회과학부, 경영·정보학부, 법학부로 분리
보건과학대학 환경·의공학부를 환경공학부와 의공학부로 분리하고 방사선학과 신설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신설
보건환경대학원 신설
5. 31 세브란스병원 2002 FIFA월드컵 지정병원으로 선정
영동세브란스병원 협력 병원으로 지정
10. 23 의료원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가동
11. 25 글로벌 라운지 개소
경영학과를 상경대학에서 분리하여 경영대학 신설
2003. 1. 13 여성인력개발연구원 설립(대학교부설연구원)
2. 28 김대중도서관 설립(부속기관)
3. 1 국가고시정보센터 설치
3. 5 대학출판문화원 설립(출판부와 진리자유편집실을 산하기관으로 둠)
3. 25 제4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쟁력 향상 대회 학교법인 부문 '디지털 경영대상' 수상
4. 28 자외선 우주관측위성 '갤럭시(GALEX)' 발사(NASA 공동개발)
5. 6 산학협동연구관 봉헌

- 6. 5 하멜 표류 350주년 기념 ‘연세대-Leiden대 국제학술대회’ 개최
- 6. 13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한국문화학술행사’ 개최(L.A.)
- 6. 18 원주캠퍼스 ‘첨단 의료기기테크노타워’ 준공
- 6. 19 국가관리연구원 설립
- 7. 14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 개통
- 8. 15 원주캠퍼스 운동주백일장 개최
- 9. 5 원주캠퍼스 연세스포츠클럽 봉헌
- 9. 17 제1회 명예교수의 날 개최
- 10. 28 언더우드가기념관 개관
- 11. 3 김대중도서관 개관
- 12. 4 ~5 리더십센터 제1회 전국대학생 토론회 개최
- 2004. 2. 28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 3. 1 사회학과, 문과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소속변경
원주캠퍼스 경법대학을 정경대학으로 명칭 변경
 - 4. 9 제15대 총장 정창영 취임
 - 5. 8 운동선수 기숙사 봉헌
 - 5 보건대학원 국내 최초로 국제사이버 보건대학(International Cyber University for Health, ICUH) 설립
 - 9. 1 원주 ERP 시스템 시행
 - 10. 26 언더우드가 선교사역 찬하식 개최
 - 11. 30 원주캠퍼스 학생회관 증축 봉헌식
- 2005. 2. 1 언더우드국제학부 설립
 - 3 전임교원의 복수학과 소속제 도입
 - 3. 18 나노메디컬 국가핵심연구센터 개소
 - 3. 28 신촌·원주 홈페이지 통합 개편
 - 5. 4 세브란스 새병원 봉헌식
 - 5. 9 신학관 봉헌식
 - 5. 11 첨단과학기술연구관 봉헌식
 - 5. 14 창립 120주년 기념식
연세비전 2020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선포식
 - 5. 18 연세대학교 교수윤리강령 선포
 - 5. 26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신촌 밸리 선포식 개최
 - 9 특별채용교원 상시지원제도 도입
성적평가 및 재수강 제도 개편, 학사경고자 관리 강화
 - 9. 7 영동세브란스병원 별관 봉헌식
 - 10. 7 연세자원봉사단 발대식
 - 10. 25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명칭 변경
연구처 산하에 시약센터 설립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신설
관재처 신설 (총무처 설비안전부와 시설부를 분리 독립)

12. 2 창립 120주년 기념 연세-USC 공동 심포지엄 개최
12. 19 미우관 리모델링 완공식
2006. 1. 26 인천시와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중앙도서관 내 고서과를 국학자료실로 확대 개편
 - 1 의·치·간 세 분야 국가고시 수석 석권
2. 17 삼성관 증축 완공
4. 26 시설처를 관재처로 명칭 변경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보통신처 정보화추진부 신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설추진단 신설
- 5 인천시와 국제캠퍼스 토지공급계약 체결
5. 13 언더우드가 기념관 재개관
8. 2 (주)YSPC 설립
9. 17 삼애교회 창립예배
배민수기념전시실 재개관
10. 24 기획실 디자인센터를 대외협력처로 이관, 대학출판문화원의 「진리·자유」 발행업무를 대외협력처로 이관
감사실 신설
언더우드국제학부를 언더우드국제대학으로 확대 개편
국제교육교류원을 국제처로 승격
교무처 교육개발센터와 사이버교육지원센터를 통합, 교육개발지원센터로 명칭변경
취업정보실, 상담센터, 여성인력개발연구원, 리더십센터, 국가고시정보센터를 폐지하고 리더십개발원을 신설
대학언론사 신설, 신문방송사 아래에 연세춘추사, 교육방송국, The Yonsei Annals를 두고 각 주간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함
2007. 1. 15 실험동물연구센터 신설
입학관리처에서 입학처로 명칭변경
3. 1 그룹웨어시스템 출범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와 영상대학원을 통합하여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설립
4. 4 Global 5-5-10 사업단 선정(한국학, 화학, 천문우주, 물리, 의생명, 신소재, 전기전자, 기계, 대사질환, 나노메디컬, 노화과학, 의공학)
4. 26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 7 세브란스병원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9. 1 종합서비스 센터 내 One Call 서비스팀 신설
여학생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폐소 및 리더십개발원 내 여성커리어개발팀 신설
9. 7 원주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 전공 신설
9. 10 제2회 연세노벨포럼 개최
9. 13 수소스테이션 준공
10. 30 성폭력상담실을 성희롱·성폭력상담실로 변경
11. 21 전자행정업무편람(e-SOP)도입

12. 17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 발표 '2006년도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논문 게재 수, SCI급 논문 게재 수, 연구비 규모, 산학협력단 자금 규모,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등 주요 부분에서 전국 사립대학 1위
2008. 1. 18 중앙도서관을 학술정보원으로 명칭변경
 1. 30 세브란스병원 로봇 트레이닝 센터 개소
 2. 1 제16대 총장 김한중 취임
 3. 26 의료원 종합관 및 장례식장 봉헌식
 4. 15 교육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를 스포츠레저학과로 명칭 변경
 5. 10 연세-삼성학술정보관 개관
 5. 29 연세 재활학교 신축 봉헌식
 6. 30 노동조합 창립 제2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7. 9 ~11 QS APPLE 컨퍼런스 개최
 9. 1 법학과(계열)를 폐지하고 자유전공 신설
언더우드국제대학-일본 게이오대학-중국 홍콩대학 3-캠퍼스 프로그램 출범
 9. 10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2007년도 SCI논문 분석 결과 우리대학교 SCI논문수 세계 96위로 도약
 10. 9 영국 '더타임스'지의 2008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리대학교 203위 기록(국내 사립종합대학 1위)
 11. 14 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개장식
 11. 26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기공식
 11. 29 원주캠퍼스 창립 30주년 기념식
 12. 2 사회복지대학원 산하 자원봉사센터 개소
 12. 17 2008 과학기술창의상 수상
 12. 18 경영대학, AACSB-International 경영교육 국제인증 획득
2009. 1. 6 광복관별관 준공
 1. 7 동서문제연구원 내 EU센터 개소
 2. 20 등록금 카드납부 실시
 3. 1 영동세브란스병원 명칭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변경
사회교육원 명칭 평생교육원으로 변경
 - 3 동서문제연구원 발행 저널 Global Economic Review, 국내 최초 SSCI에 등재
 4. 1 원주캠퍼스 대학본부, 미래관, 청연학사 봉헌식
 5. 22 한국어학당 창립50주년 기념식
 6. 1 행정 효율화를 위한 팀제 시행(본교)
 8. 13 원주캠퍼스 박경리 선생 문학비 건립
 8. 15 LA 연세어학당 South Baylor대학 건물로 이전 개원
 9. 1 학교 중국어 대표 홈페이지 오픈
 9. 24 국방 피탐지 감소기술 특화연구센터 개소
 10. 8 영국 '더타임스'지 2009년 세계 대학 평가 151위
 10. 15 학교 정문 담장 개방 및 녹화 사업 준공
 11. 2 GS칼텍스 산학협력관 봉헌식
 12. 1 쇼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2010. 1. 1 학교 전국 대표 전화번호(1599-1885) 서비스 시행
3. 3 국제캠퍼스 봉헌식
3. 8 유진하이마트 어린이집 준공
3. 9 의과대학 교수동 봉헌
3. 19 SK국제학사 준공
4. 9 광혜원·제증원 개원 125주년 및 에비슨 탄생 150주년 기념식 개최
4. 28 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 명예문학박사 수여
5. 6 외솔 최현배 선생 부조상 제막식
5. 7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개소식
5. 8 연세 창립 125주년 기념식
5. 12 연세-UC 버클리 로스쿨 복수학위제 도입
5. 14 원주캠퍼스 비전 2020+ 선포식 개최
6. 17 영빈관 봉헌식
8. 25 IT명품인재양성사업 선정
- 9 영국 QS 세계 대학 평가 142위
10. 7 간호사 배출 100주년 기념행사
- 10 경영전문대학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세계 100대 EMBA 71위 기록
11. 5 원주기독병원 50년사 출간
12. 1 학교 새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로 변경
12. 2 학술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대학도서관 평가 1위(최우수 도서관 선정)
2011. 3. 1 국제캠퍼스 교육원 직제 신설
3. 2 국제캠퍼스 정규학위과정(약학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시작
3. 9 원주캠퍼스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 개소
3. 18 2011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종합대상 수상
3. 23 국제캠퍼스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개소
4. 20 창업센터, 창업지원단으로 조직 개편 및 개소
5. 31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
8. 19 HPAIR 2011 Asia Conference 개최
8. 27 용재관 사용 기관 이전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는 종합관(현 교육과학관)으로, 체육교육학과는 체육교육관으로, 교육연구소는 아펜젤러관으로, 대학출판문화원은 무악학사로 이전)
9. 2 교원양성기관 평가 전국 1위 기록
9. 4 QS 세계대학평가 129위 기록
9. 28 연희전문학교 교기 61년만에 반환
9. 30 국제캠퍼스 2단계 공사 착공
10. 4 중앙도서관, 체육관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
10. 9 출판문화원, 외솔 영인본 전집 발간
11. 9 제10차 한-일 밀레니엄 포럼 국제캠퍼스 개최
2012. 1. 18 자연과학연구원, 생명시스템연구원 개소
2. 7 제17대 정갑영 총장 취임식
- 3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아시아학부 및 테크노아트학부 신설

3. 21 한국어학당 200회 졸업식 및 기념전시회
3. 23 동서문제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 4 원주캠퍼스 무감독 시험 시행
4. 5 스포츠센터 봉헌식 및 체육관과 독수리상 새단장 기념식
5. 12 창립 127주년 기념식, 연세 '제3의 창학' 비전 선포
5. 17 윤리경영담당관직 신설
5. 24 연세-게이오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 및 연세도쿄센터 개소
6. 8 국제캠퍼스에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개소
8. 13 윤동주 시인 육필원고 및 유품 연세대에 기증
8. 31 스포츠센터를 스포츠과학관으로 명칭 변경
9. 1 비서실(비서팀)을 총장실(미래전략팀)로 명칭 변경
평생교육원을 미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성희롱·성폭력상담실과 여학생센터를 성평등센터로 통합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신설
학부대학에 RC교육원 신설 (국제캠퍼스 교육원 폐지)
9. 10 2012 QS 세계대학평가 112위 기록
9. 12 백양로건설사업본부 신설
10. 8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체 3위, 종합대학 1위 기록
10. 12 용재관 해체 및 철거
12. 13 항공전략연구원 개소
2013. 1. 4 미래융합연구원 개소
1. 16 故 손보기 교수 소장 국보급 삼국유사 고판본 수증
1. 24 원주캠퍼스 노천극장,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 선정
2. 1 원주기독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명칭 변경
2. 27 윤동주 시인 육필유고 및 유품 수증
윤동주기념관 현판식 (핀슨홀)
2. 28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LA분원 폐지
- 3 2012 네이처 출판 지수(NPI) 국내 1위
3. 2 국제캠퍼스 RC(Residential College) 교육 시작
4. 3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리모델링 완료, '백양콘서트홀'로 개관
4. 4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학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
앤드류 해밀튼 영국 옥스퍼드대 총장에게 명예이학박사학위 수여
4. 10 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봉헌
4. 11 명예특임교수제도 신설
4. 22 국제캠퍼스 1-2A단계 봉헌식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진리관 A-B-C·D, 지혜관B, 크리스트찬탈)
4. 26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김석수 이사장 취임
5. 7 3-캠퍼스(연세대, 일본 게이오대, 중국 홍콩대) 동아시아학 컨소시엄 협약 체결
5. 11 창립 128주년 기념식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기공식
5. 22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개소

5. 23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5. 24 원주캠퍼스 창립 35주년 기념식
- 6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16위
7. 1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7. 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개시
7. 10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와 전략적 동반자 협약 체결
- 9 2013 QS 세계대학평가 114위
9. 1 관재처를 시설처로 명칭 변경
리더십센터를 동서문제연구원 산하로 편입
9. 13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 전면재인증 획득
9. 18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환태평양대학협회) 가입
9. 23 음악대학 A동 리모델링 재개관
- 10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2013 대학평가 세계 190위
10. 15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 '연세제네바센터(Yonsei Geneva Center)' 개소
10. 25 국제캠퍼스 크리스티나채 봉헌식
11. 8 도산 안창호 선생 명예졸업증서 수여
11. 15 공자아카데미(延世大學孔子學院) 개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병원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
종합교실단(종학관)을 교육과학관으로 명칭 변경
11. 19 국제캠퍼스 '포스코 그린빌딩' 개관식
12. 26 국내 최초 국제동계대학(WAY : Winter Abroad at Yonsei) 프로그램 개설
2014. 1. 11 글로벌인재학부설립준비위원회 설치
1. 15 고 원일한 박사 10주기 추모 예식
- 3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과학공학부 및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신설
3. 3 새 U.I.(University Identity) 시행
3. 18 제네바대학 연세 센터 개소
4. 3 국제캠퍼스 1-2B단계 봉헌식 (제2기숙사, 지혜관C, 테크주차장)
4. 14 연세암병원 개원
4. 29 대학평의원회 설치
5. 10 창립 129주년 기념식
제중학사·법현학사 재건축 기공식
5. 29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 20주년 기념식
6. 2 영국 FutureLearn과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 협약 체결
6. 10 미국 국립발명가협회(NAI) 발표, 미국특허 보유 세계 100대 대학 선정
6. 14 경영대학 부속 경영교육혁신센터 신설
6. 16 과학관 증축 및 입면개선 공사 기공식
6. 17 원주캠퍼스 라돈프리하우스 봉헌식
6. 19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2014 아시아 대학평가 종합 17위
9. 1 Open & Smart Education 위원회 설치
9. 4 금호아트홀 착공식

9. 16 QS 2014 세계대학평가 세계 106위
Coursera와 콘텐츠제공 협약 체결
11. 11 우정원 기숙사 준공식
11. 20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가입
2015. 1. 1 중국연구원, 바른ICT연구소 신설
국제캠퍼스 글로벌인재학부, GIT 신설
3. 3 GIT 제1회 입학식
4. 8 백양로 재창조 사업 조경 식수 기념 행사
4. 10 제중원-세브란스 130주년 기념행사
4. 22 국제캠퍼스 디자인 팩토리 코리아(Design Factory Korea) 개관
4. 27 국내 최초 글로벌 MOOC 플랫폼 Future-Learn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4. 29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RC체험행사 개최
4. 30 IBS 기초과학연구단 운영지원 협약식
5. 9 연세창립 130주년 기념식
5. 21 최첨단 안전캠퍼스 보안 시스템 Y-Safe 개통
5. 22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및 기념식
5. 30 상경·경영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식
6. 4 제중학사·법현학사 재건축 착공식
7. 29 제1공학관 남북원 봉헌식
- 8 백양로 재창조 사업 후원자 2만명 돌파
- 8 새로운 수강신청 제도 Y-CES 성공적 도입
8. 3 심장혈관병원, 100번째 심장 이식 성공
8. 31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식
9. 1 S-Campus 서비스 오픈
- 9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대 합격자 배출
9. 17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센터 봉헌식
9. 21 경영관 신축 봉헌식
9. 21 공과대학 타워동 착공식
- 9 로이터(Reuters) 선정 세계혁신대학 36위
10. 7 백양로 재창조 봉헌식
- 10 연세 MBA 프로그램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평가 45위 선정
11. 6 연세치의학 100주년 기념식
11. 11 미국 예모리대학과 전략적 파트너 협정 체결
11. 16 이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식
- 11 제57회 사법시험 최다 합격자 배출
2016. 2. 1 제18대 김용학 총장 취임
- 3 차세대 기가 와이파이 캠퍼스 구축 완료
3. 22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 건립 합자계약 체결
- 4 국제캠퍼스에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소(GRL-FYK) 개소
5. 13 연세 창의공간 선포식

- 5. 14 연세창업대상 제정
- 5. 14 교훈석(진리자유석) 백양로 이전
- 5. 17 연세유유 4,000억원 중국 수출 계약 체결
- 7. 26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개소식
- 8 세계 100대 미국 특허 보유대학 50위 랭크
- 8 글로벌 무선 로밍 서비스 '에듀롬' 오픈
- 8 백양누리, 녹색건축물 인증심사 최우수등급 획득
- 8. 31 로이터 선정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9위 랭크
- 9. 9 Y-IBS관 착공식
- 10. 12 언터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 10. 25 삼애교회 창립 10주년 행사 개최
- 10. 31 원주캠퍼스,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선정
- 2017. 1. 5 연희대학교, 세브란스의과대학 통합 60주년
 - 1. 18 제증-법현학사 봉헌식
 - 2 창립 132년만의 학위가운 디자인 개선
 - 2. 18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허동수 이사장 취임
 - 4. 8 창립 132주년·통합 60주년 기념식
 - 4. 29 교육대학원 창립 50주년 기념식
 - 5. 13 제4공학관 봉헌식 개최
창의공간 Y-Valley 개소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및 부조 동판 설치(2016 윤동주, 2017 이태준)
 - 5. 30 원주의과대학 새기숙사 증축공사 기공식
 - 6 대학교부설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설립
 - 6. 5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식 및 연세의료복합단지 MOU 체결식
 - 6. 30 Adobe와 '디지털 교육혁신 기반의 다자간 산학협력협약' 체결
 - 9 연세-고려 양교 공동강의 최초 개설
 - 9. 23 정기연고전 사상 첫 5전 전승
 - 9. 25 글로벌사회공헌원 개원식 및 반기문 명예원장 취임식
 - 10. 18 세브란스 병원,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 11. 22 대학원 권리장전 및 명예선언문 선포
 - 12. 5 연세유유, 유업계 최초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12. 13 2017 대한민국 사립종합대학교 사회책임지수 1위 랭크
 - 12. 21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 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 2018. 1. 1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정병원 운영
 - 2. 1 직제 개편으로 미래전략실 및 고등교육혁신원 신설
 - 2. 7 글로벌 지속가능포럼 개최
 - 2. 27 국제캠퍼스 YSLI(Yonsei SL BIGEN Institue) 착공식
 - 3. 29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식
 - 4. 12 원주의과대학 개교 40주년 기념식
 - 5. 11 언터우드가기념관 재개관식 및 IBS관 봉헌식

5. 12 연세 정신을 빛낸 인물 선정 및 부조 동판 설치(2018 현봉학)
5. 18 원주캠퍼스 창립 40주년 기념식
7. 2 중국 칭다오 세브란스병원 착공식
9. 1 글로벌인재대학 단과대학 승격
9. 12 구글 북스 파트너십 계약체결식
10. 15 웹메일 시스템, 클라우드 메일 전환
10. 17 KT와 '세계 최초 5G 상용망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2. 13 UNFPA(유엔인구기금) 한국 사무소 개소
2. 21 마하트마 간디 홍상 제막식
2. 27 원주의과대학 Murray학사 봉헌식
4. 5 THE 2019 대학 영향력 평가 '산업·혁신 및 인프라' 부문 세계 1위
5. 23 문과대학 부속 인문융합교육원 신설
8. 27 국내 대학 최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9. 1 원주캠퍼스 및 원주부총장 명칭 변경: 미래캠퍼스, 미래캠퍼스부총장
10. 7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다 선정
10. 24 원주의료원 명칭 변경: 원주연세의료원
11. 8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2020. 2. 1 제19대 서승환 총장 취임
2. 원주연세의료원 종합관 준공
3. 1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축 개원
3. 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세브란스체크업센터 개소
3. 1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수술체크업센터 개소
4. 원주의과대학 노벨프로젝트를 통한 학부생 SCI급 논문 게재
5. 9 창립 135주년 기념식 및 새 비전 선포
5.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20년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 적정 의료기관 선정
6. 10 QS 세계대학평가 85위 선정
- 7 Y-EdNet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카카오, 네이버)
7. 7 원주연세의료원 새병원 신축계획 정책이사회 승인
8. 원주의과대학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선정
9. 원주연세의료원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10. 15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선정
10. 30 4단계 BK21 사업 선정(신촌캠퍼스 29개, 미래캠퍼스 10개)
11. 19 원주의과대학 WISE교육혁신센터 개소 기념 국제 심포지엄
11. 1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
11. 30 학술정보관 Media Commons 개관
12. 1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Wee센터 개소
12. 18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 협약 체결
12. 24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2019년도 실습교육 지원사업 우수사례 기관 선정
2021. 1. 1 원주세브란스체크업센터 명칭 변경: 원주세브란스헬스체크업
1. 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제4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2021~2023)

1. 27 원주의과대학 및 5개 업체간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활성화 MOU 체결
2. 원주의과대학 첨단의과학연구센터 개소
2. 23 국제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i7 개소
3. 1 원주의과대학 융합의과학부 신설
3. 1 원주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위탁교육 이전 종료
4. 5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21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 영향력평가 30위(국내 1위)
4. 2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희귀질환 강원권 거점센터 개소
5. 원주연세의료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5. 8 창립 136주년 기념식
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유닛사업 선정
6. 9 QS 세계대학평가 79위
6. 14 인공지능대학원 개원식 개최
6. 17 연세대-KAIST 개방·공유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6. 18 청송대 봉헌식
6. 18 미우관 봉헌식
6. 23 원주의과대학 디지털바이오마커 연구센터 개소
6. 24 각당헌 리모델링 준공식 및 대우관 리모델링 백서 출판 기념식
8. 원주연세의료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9. 2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2022 세계대학평가 세계 151위
9. 6 LearnUs 일반인 대상 그랜드 오픈
9. 15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10. 14 연세대-포스텍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협약 체결
10. 25 연세대-IBM 양자컴퓨팅 기반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1. 3 원주연세의료원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산업화 업무협약 체결
11. 10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 2위(국내 종합사립대학 1위)
2022. 1. 18 원주총무처 산하 안전관리부 신설
2. 1 2022 의학도서관상 수상기관 선정
2. 10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2) 개최
2. 28 미래캠퍼스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유지 및 우수인증대학 선정
3. 1 글로벌엘리트학부 독립학부로 학제개편
보건환경대학원 명칭 변경: 보건과학대학원
원주학생복지처 산하 인권센터 신설
3. 10 사회교육개발원 명칭 변경: 미래평생교육원
미래평생교육원 산하 연세예술원, 연세교육센터, 연세스포츠센터 신설
3. 23 2021회계연도 원주연세의료원 연구비 500억 달성 기념식
4. 20 연세대-인천시 양자컴퓨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5. 1 미래캠퍼스부총장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 신설
5. 2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주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의 디지털헬스케어분야 중심대학 선정

5. 1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신축 강원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승인
5. 14 창립 137주년 기념식
5. 30 서미감관 봉헌식
6. 9 QS 세계대학평가 73위 선정(아시아 종합 사립대 1위)
6. 2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기공식
6. 24 원주세브란스항공의료팀(WASP) 2,000회 출동 기념 국제 심포지엄
6. 2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로봇수술센터 증부권 최초 로봇수술 2,000례 달성 기념식
7. 15 연세대-IBM 퀀텀 컴퓨팅 센터 구축 계약 체결
8. 20 컨버전스홀 준공완료
9. 1 연세대학교 원주간호대학 승격
10. 12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2023 세계대학평가 세계 78위
(아시아사립대 1위, 국내 2위)
10. 16 연세대 EMBA 영국 Financial Times 2022 EMBA 세계 29위(국내 1위)
10. 26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 최다분야 국내 1위
10. 28 2022 정기연고전 개최
10. 29 원주연세의료원 공적 전자처방전 시범 운영 기관 선정
11. 1 연세대-고려대-게이오대-와세다대 온라인 공동강의 협력 MOU 체결
11. 8 QS 아시아 어워즈 2개 부문(연구 수월성, 평판도 영향력) 수상
11. 14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 2위(국내 종합사립대학 1위)
11. 14 원주연세의료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
11. 26 연세대 소장 국보 '파른본 삼국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2. 15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착공식
2023. 2. 2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3) 개최
2. 3 미래의료산학협력단 개소
2. 28 부산 영도캠퍼스 옛터 기념비 제막식
3. 1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 신설
(산하 융합교육연구센터, 산학연협력센터, 데이터센터)
3. 15 디지털의료기기 플래그십파크 개관식
5. 13 창립 138주년 기념식
6. 1 영국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 영향력평가 14위(국내 1위)
6. 9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및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착공식
6. 27 QS 세계대학평가 76위 선정(아시아 종합 사립대 1위)
8. 24 연세대-게이오대-국립대만대 양자컴퓨팅 국제 공동 심포지엄 개최
9. 8 2023 정기연고전 개최
9. 13 컨버전스홀 신축 봉헌식
2024. 2. 1 제20대 윤동섭 총장 취임
3. 1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 산하 인텔FPGA교육연구센터 신설
3. 14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4) 개최
4. 10 2024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 Top100 아시아 사립대 중 최다분야 석권
(총 26개 학문 분야)

- 5. 11 창립 139주년 기념식
- 6. 5 2025 QS 세계대학평가 56위(3년 연속 아시아 종합 사립대 1위)
- 6. 12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평가 11위(국내 1위)
- 6. 13 국제캠퍼스 광장형 교문 현판 제막식 개최
- 6. 21 연세대-IBM 'Yonsei-IBM BIO-Quantum Initiative' 협약 체결
- 9. 27 2024 정기연고전 개최
- 10. 10 한강 동문(국어국문학 89)노벨문학상 수상
- 10. 21 양자컴퓨팅 분야 대형 국책과제 선정
- 11. 5 2025 QS 아시아대학평가 9위(국내 1위)
- 11. 20 양자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원' 국내 최초 공개
- 12.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10건 선정

캠 퍼 스

1. 교지(校地)의 지리적·역사적 배경

가. 지리적 배경

연세대학교는 서울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6km 지점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소재하고 있다. 신촌로터리에서 북쪽 무악산을 바라보며 5분쯤 걸어 들어가면 연세의 관문인 백양로에 닿게 된다. 여기서 잠깐 무악의 줄기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영조(英祖)의 후궁 영빈 이씨(映嬪李氏)의 원묘(園墓)인 수경원(綏慶園)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무악의 동맥이요, 그 서쪽으로 길게 뻗은 서맥이 있는데, 그 사이에 푸른 언덕이 관악을 바라보며 길게 뻗쳐서 있으니, 이곳이 곧 무악의 명당이며, 정종 때 세운 연희궁(衍禧宮)의 궁터로서 만여 평에 달하는 유서 깊은 대야평(大野坪)으로 겨레의 배움터인 연세대학교의 교지이다. ‘연세의 노래’ 첫 머리에도 나와 있듯이 “관악산 바라보며 무악에 둘러, 유유히 굽이치는 한강을 안고, 푸르고 맑은 정기 하늘까지 뻗치는, 연세 숲에 우뚝 솟은 학문의 전당” 이것이 연세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배경의 묘사이다.

나. 역사적 배경

무악(母岳) : 무악주산론(母岳主山論)의 제청이 태조 2년 하륜(河崙)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되자, 태조는 그의 3년에 무악을 친히 간심(看審)하였다. 또한 태조 2년에 다시 무악으로 행행(行幸)까지 하였으나, 여러 중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악천도론(母岳遷都論)이 좌절되고 말았다. 도성 밖 15리의 무악산 자락에는 정종이 왕위를 태종에게 선양한 후 머물던 별궁이 위치한다. 세종 2년 부왕인 태종을 위해 이곳 무악 남록(南麓)의 명당을 잊지 못하고 서이궁(西離宮)을 증건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연희궁으로 개칭하였다.

특히, 무악의 영봉(靈峰)들은 인조(仁祖)때의 이괄(李适)의 난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켜 반란을 평정한 곳이기도 하다. 6·25동란 때 자유 수호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여 승리를 가져온 ‘연희 고지’도 무악에 속한다.

연희궁(衍禧宮) : 연세대학교 현 교지의 일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연희궁 터는 무악 명당의 핵심 지로서, 연희궁은 세종 2년(1420년)에 태종 상왕(上王)의 하명에 따라 지어진 시어궁(時御宮)으로 태종이 태상왕(太上王)으로 존숭(尊崇)되어 피방(避方)하던 이궁(離宮) 곧 서이궁(西離宮)역할을 했다. 서이궁이 연희궁으로 궁호를 받게 된 것은 태종이 돌아가신 후 세종 7년 때의 일이며, 세종은 그 다음 해인 1426년에 연희궁을 수리하고 왕비와 함께 이어(移御)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연희궁은 세종 10년 이후에는 과수원으로 꾸며져 이용과물의 증산장으로 이용된 일도 있으며, 세조 원년(1455년)까지도 건재했다. 연희궁은 성종 시대에 와서는 상전서잠실(桑田西齋室)로 변하였다

(岱版:幢 備齋叢話). 그러나 연산군 시대에 와서는 다시 수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수경원(綏慶園) : 무악 남쪽 동맥의 기슭, 연세대학교 입구의 바른쪽에 자리잡은 원묘의 일대가 수경원이다. 이곳은 즉위에 앞서 무고(誣告)로 뒤주에 갇혀 굶어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思悼世子 : 장조왕[莊祖王]莊獻世子)의 어머니이신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의 원묘이다.

대야평(大野坪) : 현재의 교지 일대를 대야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수경원에 세워진 영빈 이씨의 원묘 앞의 묘비에서 유래되었다. 그 묘비의 일절에 이 묘를 양주 연희궁 대야동(楊州 衍禧宮 大野洞)에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일대가 대야평이라고 불리웠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현재 본 대학교의 교지를 대야평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역사에 나타나는 고사는 무수히 많다. 대야평을 가로 질러 흘러내리는 작은 내(川)를 창내(倉川)라 부르는데 이는 광흥창(廣興倉)이란 조세 받던 미곡창(米穀倉)이 서강에 있던 터요, 그곳에 공민왕 사당도 있었다 한다. 또한 당인리 앞산을 와우산(臥牛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산형(山形)이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이며, 그 일대에도 양화진에 얽힌 사실(事實)이 남아있다.

2. 캠퍼스 소개

가. 서울캠퍼스

아름다운 송림으로 둘러싸인 30만여 평의 방대한 대지인 현 교지를 가로지른 길이 곧 백양로로 연세를 모교로 삼는 모든 사람들이 사색하던 길이요, 신화의 길이며 역사를 남겨놓은 자국이 아로 새겨진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노라면 오른편으로는 현대식 건물로 5만여 평에 달하는 연세의료원, 백주년기념관, 수경원, 루스채플을 지나 음악대학, 학생회관, 대강당, 노천극장, 청송대가 있으며, 왼편엔 공학원, 공과대학, 중앙도서관,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체육관, 체육교육관, 스포츠과학관, 과학원, 과학관, 백양관, 광복관이 서로 대치를 이루고 서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윽고 “뉴욕에 있는 우리 거레로부터 부처춤” 계단 앞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계단을 오르면 우아한 모습의 건물 세 개가 있다. 앞의 것이 언더우드관(사적276호)이요, 왼편이 스텐슨관(사적275호), 오른편이 아펜젤러관(사적277호)이다. 그 가운데 아름답게 단장된 교정의 한 가운데에는 이 학원의 창설자이며 대 연세의 초석을 이룬 언더우드 박사의 동상이 서 있다. 스텐슨관 뒤편 언덕 위 왼편에는 한경관과 핀슨관이 나란히 서 있고, 그 뒤로 신학관이 동향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계속하여 언더우드관을 향해 가면 그 뒤에 다시 같은 모양의 석조 건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연희관이고, 그 오른쪽이 성암관, 왼편쪽이 유억겸기념관이며, 그 뒤로 대우관이 있다. 유억겸기념관 뒤편 오른쪽에는 빌링슬리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뒷산 중턱에는 교육과학관과 외솔관, 위당관이 서 있다. 성암관 뒷길을 따라 동문 방향으로 가면 우측에 새천년관, 국제학사, SK국제학사, 언어연구교육원, 이윤재관, 제중학사, 법현학사가 있고, 대우관 뒤편 고개를 넘어 북문 방향으로 가면 무악학사(학생기숙사) 5개동이 쾌적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캠퍼스 안의 주요한 곳을 소개하면,

언더우드 동상 : 이 동상은 1928년 4월 24일 연희학원의 우애회(友愛會, 한국인 직원모임)와

일반 사회인사의 협동으로 세웠으나, 왜정 말기 그네들의 손에 빼앗기고 해방 후 동문과 사회인사의 손으로 1948년 10월 16일 두 번째의 동상을 세웠으며, 6·25동란으로 공산군에 의해 파괴된 것을 1955년 4월 22일 연희가 창립된 지 40주년 되는 날 다시 세 번째로 세웠다.

독수리상 : 연세의 표상인 독수리를 캠퍼스 안에 세우려는 학생들의 염원이 실행에 옮겨져 학생들 스스로 7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건립한 독수리상은 창립 85주년 기념일인 1970년 5월 9일에 제막식을 가졌다. 독수리상의 규모를 보면 총 높이 12.3m로 8.5m의 사각탑신위에 청동으로 만든 2.5톤의 독수리가 세워졌는데, 독수리의 높이는 2.6m, 폭은 5.2m이며, 후면에 총학생회의 건립취지문이 새겨져 있고 네 귀퉁이에는 진리와 자유 수호에 이바지할 연세인의 상이 조각되어 있다. 2012년에 노후된 탑신과 기단 및 연세인의 상을 화강석으로 교체하였고, 기존의 연세인의 상은 미래캠퍼스, 국제캠퍼스, 원주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나누어 보관하였다.

노천극장 : 연세만이 사랑하는 자연의 성역으로 1932년 Dr. Miller 교수에 의하여 설계되어 1933년 5월 준공되었으며, 이 공사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전원이 각각 하루씩 작업을 도왔다. 대강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곳은 연희의 정신을 길러주고 마음을 가꾸어 주던 곳으로 그 유서가 깊다. 이후 1957년 여름에 보수공사를 거쳐 보수되었으며, 현재의 노천극장은 동문들의 성금을 모아 1999년 5월 준공된 초현대식 건물로 성금을 낸 동문들의 이름이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백양로(白楊路) : 지금도 백양로라고 불리지만, 원래 백양로는 1930년경 만들어진 연희의 관문으로 백양목(白楊木)이 도로 좌우로 울창하였으나, 1960년 4월에 나무의 수명이 다 되어서 베어버리고, 노폭 22미터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도로 양쪽에는 은행나무를 심었으며,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녹색지대를 설치하였다. 2015년 차없는 백양로 조성을 위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은 보행자 전용으로 전환하였고 기존의 은행나무에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추가하고 잔디밭을 조성하여 통행과 교류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확장했으며, 지하를 개발하여 차량은 지하로만 통행하도록 하였다.

연세 한글탑 : 한글은 우리 겨레얼의 상징이요 우리문화 창조의 힘이다. 일찍이 연세는 진리와 자유의 이념 아래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말과 글을 갈고 지키고 펴으로써 나라사랑과 학문의 정신을 드높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이러한 연세의 정신적 전통을 기리고 이를 이어받아 더욱 다져서 온누리에 위대한 한글의 슬기와 연세의 이상이 넘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는 뜻으로 1992년 5월 9일 이 탑을 세웠다.

윤동주 시비 : 윤동주는 민족의 수난기였던 1917년 독립운동의 거점 복간도 명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1938년 봄 연희동산을 찾아 1941년에 문과를 마쳤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며 항일독립운동을 펼치던 중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모진 형벌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가 이 동산을 거닐며 지은 시들은 암흑기 민족문학의 마지막 등불로서 겨레의 가슴을 울렸으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1968년 11월 3일 그를 따르고 아끼는 학생, 친지, 동문, 동학들이 정성을 모아 편승관 앞 작은 언덕에 그의 시 한수를 새겨 시비를 세웠다.

국학자 4인 얼굴상(위당, 외솔, 한결, 홍이섭 선생) : 일제의 압제 속에서 스러져 가는 민족정신을 소생시키기 위해 몸 바쳐 국학 연구의 토대를 닦아 그 부흥에 앞장섰던 위당 정인보, 외솔 최현배, 한결 김윤경, 홍이섭 선생은 겨레의 스승이요, 연세인에게 바른 학문의 길을 밝히는 빛이다. 이 네 분 선생의 학문적 열의와 겨레 사랑의 정신을 받들고자 1994년 10월 31일 얼굴상을 봉헌하였다. 위당의 얼굴상은 위당관 좌측 입구, 외솔은 외솔관 앞 화단, 한결은 노천극장 입구에

세워졌으며, 홍이섭 선생의 얼굴상은 외솔관 정문 앞 화단에 위치해 있다.

나. 미래캠퍼스

원주에서 남쪽(충주방향)으로 10km 지점에 멀리 치악의 연봉을 바라보면서 백운산의 산자락이 펼쳐진 곳에 이르면, 붉게 양각된 캠퍼스 건물이 침엽상록림과 어우러져 수려한 풍치를 매지호수에 드리운 채 나타난다.

교문을 지나 교내로 들어서면 왼편으로는 산학관, 환경친화기술센터, 매지학사, 세연학사, 청연학사, 연세플라자, 이글플라자가, 앞으로는 언덕 위에 현운재와 라돈프리하우스가 보이고 옆으로는 무궁화동산, 스포츠센터와 매지호의 수면 위에 물새들이 노닐고 있다.

가을이면 선명한 황금색으로 물드는 은행나무 가로수의 긴 진입로가 끝나는 곳에 웅기종기 모인 건물들이 있으니, 대학교회와 대학본부 건물을 시작으로 바로 앞에 학생회관과 도서관이 마주 보고 있으며, 도서관 뒤로는 미래관, 그 위쪽 좌측에 청송관과 정의관, 우측에 창조관, 그 뒤편에 학이 양날개를 편 형상을 한 백운관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반긴다.

캠퍼스 한 가운데 너른 잔디밭을 등에 지고 내려다보이는 백운산의 바람꽃이 내리비친 매지호 풍경과 어우러진 둘레길, 그리고 노천극장 테크와 잔디 계단 건너편에서는 거북섬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고 그 위를 선회하는 백로들의 유유했던 비상과 청아한 울음소리는 마음 자락에 그윽한 기재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다. 국제캠퍼스

연세대학교 창립 125주년이 되는 2010년 3월 최초 개교한 국제캠퍼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학술연구, 첨단기술의 중심지인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20분 거리의 인천국제공항, 10분 거리의 인천신항만과 최첨단 컨벤션 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는 국제화와 첨단연구, 프리미엄 교육이라는 국제캠퍼스의 세 가지 비전을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8만 6천 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 위에 2006년부터 캠퍼스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연면적 10만 4천 평 규모로 25개동의 최신식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총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송도학사가 캠퍼스 외곽에 자리잡고 있고, 한 가운데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을 중심으로, 자유관 A,B, 진리관 A,B,C,D가 위치하고 있다. 국제캠퍼스의 생활, 문화, 행정 중심 공간인 종합관과 지혜관 A,B,C, 크리스틴채플이 캠퍼스 중심축에 자리잡고 있고, 국제캠퍼스기념관과 파워플랜트, 저에너지친환경실업주택, 포스코그린빌딩이 각기 이색적이고 세련된 미를 자랑하며 서 있다. 2025년 2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양자연구동 3개동이 신축 준공되어 국제캠퍼스 교육·연구 인프라가 보다 확충되었다.

캠퍼스 전체를 아우르는 첨단 인테리어는 그 품격과 위용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하며, 쌍방향 멀티미디어 강의 시스템, 전 구역 일괄통제가 가능한 캠퍼스 관리 시스템 등 최첨단 IT 인프라시설과 어디서나 무선 랜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강의실을 구축하여 공간적, 기능적으로도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건물 내부의 중앙정원, 옥상정원 등 캠퍼스 곳곳에 조성된 녹색 휴게공간과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동선 배치는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줄 것이다.

라. 삼애캠퍼스

배민수 목사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부흥을 위한 대표적 교육자로서, 삼애정신(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바탕으로 1967년 일산에 삼애농업기술학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을 역임하였다. 배민수 목사 타계(1968년) 후 부인 최순옥 여사가 학교운영에 직접 헌신하다가, 1976년 8월 30일 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과 법인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연세대학교는 고 배민수 목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에 배민수기념관(지하1층, 지상2층)과 천문대(지상2층)를 건립하였고, 2000년 12월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축구장과 야구장)하였다. 또한, 배민수 목사 부부, 모친, 장모 등 가족묘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배민수 목사 추도예배 및 기념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 9월에는 초교파 교회인 삼애교회를 창립하고, 배민수기념전시실과 배민수기념자료실을 개관하였다.

3. 건물의 소개

가. 서울캠퍼스

본 교

경 영 관

경영관은 옛 용재관 부지에 지하3층, 지상 6층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면적 835평에 연면적 6,090평으로 2013년 11월 27일 기공하여 2015년 9월 21일 준공하였다. 경영관은 주변의 녹지와 조화를 이룬 친환경 그린 건축물을 지향하였고,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태양열과 지열 등의 친환경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옛 용재관의 외관을 살려 용재관 타워를 외관 디자인에 반영했고, 건물 주변의 진달래동산을 복원하였다. 용재홀을 포함하여 경영대학 강의실과 교수실, 세미나실,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 학 관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6,560평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인 과학관은 학교법인의 지원과 독일복음전도회를 통한 독일정부의 원조금으로 1982년 3월 25일 착공하여 1984년 2월 20일에 완공되었다. 이후 건물 노후와 연구공간 확보 필요로 인하여 2014년 10월 14일 외벽 환경개선 공사와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9월 14일 봉헌하였는데, 증축동은 기존 과학관 후면에 연건평 1,259평, 지상 6층 규모로 증축되어 과학관 전체 연면적은 7,740평으로 확장되었다.

과학관에는 이과대학의 학과와 자연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이학분야 주요 연구시설이 입주하여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 학 원

지하3층, 지상4층 연건평 4,208평으로 2000년 7월에 완공된 과학원에는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 생화학과의 이과대학 일부 학과가 교육 및 연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생명시스템연구원 등 생명과학분야 주요 연구시설과 이학 분야의 연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광 복 관(光復館)

(구)광복관은 미 제5공군에서 기증한 대부분의 건축 자재와 우리 대학교의 공동 노력으로 1956년 5월에 완성된 벽돌조 3층 현대식 건물이었으며, 1958년 연세대학교 제2회 창립기념식전에서 광복관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일제하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연회를 지켰은 분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이미 고인이셨던 유억겸, 이춘호, 이묘목, 홍승국, 최현배 교수와 납치인사인 정인보, 이순탁 교수 그리고 명예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를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하여 동문의 모금과 우리 대학교의 공동 노력으로 2000년 5월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2년 1월 15일 봉헌식을 올렸다.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587평으로 재건축된 광복관은 현재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무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월 연면적 612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광복관 별관을 준공하였으며, 이 건물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모의법정,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강의실로 이용되고 있다.

광 혜 원(廣惠院)

1885년 4월 10일 광혜원(서울, 재동 소재)의 개설과 함께 연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광혜원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N. H. Allen, 安蓮)이 조선왕조의 고종의 위촉으로 개원한 왕립병원이었다. 이곳에서는 진료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을 선발해서 서양 의학의 학습도 이루어졌다. 광혜원은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었을 뿐 아니라 최초로 서양 의학을 교습한 교육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광혜원은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광혜원은 1987년 4월 연세역사의 뜰(수경원)에 옛 모습대로 복원하여 연세대학교 역사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연세사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 학 관(제1공학관, 제2공학관, 제3공학관, 제4공학관)

축구장으로 사용하던 자리에 위치한 제1공학관은 독일복음전도회 중앙회를 통하여 독일정부의 원조금과 재단보조금으로 당초 설계계획상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설계, 1970년 8월 착공 1973년 3월 31일 연건평 1,854평의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완공하였고, 1979년 2월 28일 증축공사를 착공 1980년 11월에 준공되어 연건평 5,734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었으며, 1987년 9월 다시 증축공사를 착공, 연면적 6,400평이 되었다. 2014년 6월에는 연건평 1,452평, 지상 6층 규모로 남북원 증축을 착공하여 2015년 7월 준공하였으며, 이로써 제1공학관의 연면적은 8,691평으로 확장되었다.

공과대학의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학관은 1992년 4월 착공하여 1994년 3월 연건평 4,424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완공되었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가 설계하고 (주)대우에서 시공하여 공과대학 일부 학과가 사용하고 있다. 제2공학관의 건축에는

(주)금호, 아남산업(주), 동양그룹, 기아자동차(주), 연강학술재단, 현대그룹, 한화그룹, 무역협회 등 주요기업체 및 단체들의 기부금과 공과대학 동문, 산업대학원 동우회, 학부형들의 성금이 큰 공헌을 하였다.

제3공학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건평 3,596평의 규모로 1997년 8월 준공되었으며 늘어나는 공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개층 876평을 증축하여 제3공학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 총 4,472평 규모가 되었다. 제3공학관 신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학관은 3개동에 총 15,296평의 매머드 교육·연구 공간이 갖추어져 그동안의 교육공간 부족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강의실 및 연구소의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2017년 2월 제4공학관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4,800여평 규모의 강의실, 연구실 등이 조성되었다.

공 학 원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 산학협동 연구단지인 공학원은 본교의 산학협동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국내 우수 기업들(풀무원,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LG그룹, 현대전자, 한국통신, 세풍)과 본교 간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8월 18일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1999년 4월 8일 건물을 준공, 1999년 5월 6일에 개원한 공학원은 지상 4층, 지하5층, 연면적 20,216평의 건물로서 본교의 관문에 위치하여 그 미려한 모습을 자랑하며, 또한 공과대학과 포스코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산학협동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한다.

교육과학관

철근콘크리트 6층 건물의 방대한 교육과학관은 1970년 8월 10일에 착공 1972년 1월 15일에 완공되어 종합교실단으로 사용되었다. 1994년 400평이 증축되어 연건평 2,113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T'자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늘어났으며, 외부 기둥은 화강석 테라조 붙이기, 외부벽은 테라조판을 붙였다. 1996년 8월 한총련 학생들의 점거 및 방화로 약 2년간 사용을 못하다가 동문 및 연세구성원들의 성금으로 전면 개보수 하였으며 현재 학부대학, 교육과학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3년 6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여 연면적은 2,154평이 되었고, 2013년 11월에 교육과학관으로 건물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제학사

국제학사는 국제대학원과 국제교육센터, 한국어학당 등에서 학위과정 또는 학문교류를 목적으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및 교포학생들에게 숙식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외국에 파견될 본교 교환학생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로서 국제적 상호이해 도모 및 실제적 문화교류 증진을 꾀하고자, (주)대우가 1987년 4월 16일 시공하여 1987년 12월 9일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58.30평의 규모를 갖춘 현대식 건물이며, 내부시설로는 학생용 침실 120실(수용인원 240명)과 각층마다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 2개씩 있다. 지하층에는 체육실과 세탁실 등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논 지 당(論志堂)

1956년에 건축한 28평(벽돌조)의 건물에 기예실습실 및 휴게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1963년 9월 43.7평을 같은 구조로 증축하여 71.7평이 되었다. 2004년 5월 건물전체의 개보수와 정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세미나실, 여학생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구) 농업개발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생활개선과 농촌문화 개발을 위한 낙농업 경영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진흥시킬 역군양성을 목적으로 1967년 4월에 본 농업개발원을 설립하였다. 연희동 산 10번지의 임야 34,000평에 자리 잡은 농업개발원은 1968년 9월에 원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침실 7개실, 부속실 5개실을 갖춘 건평 86.4평의 벽돌조 1동을, 1976년 8월에 2층 86.8평을 증축하였으며 1969년 11월에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동(조적조 50평)을 추가로 지어 사용하였다. 원주매지캠퍼스 문리대학에 낙농과가 설립됨으로 인하여 1991년 2월에 농업개발원이 해체되어 현재는 공학 관련 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동문회관

1993년 5월에 건물을 준공(6,906㎡)한 뒤, 2005년 8월에 지하층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7,421㎡), 2011년 4월 동문슈퍼 철거 후 화단 조성 및 2층 주차장 진입도로를 확장하였고, 8월에는 전층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결혼예식, 일반행사 및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대 강 당

대강당은 1958년 12월에 건평 768.96평, 연건평 1,587.82평인 철근콘크리트 4층 규모로 2,300여석의 좌석을 갖춘 건물로 준공되었다. 강당은 주로 채플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부 공간은 학생동아리와 관제처 설비안전부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5년에 전반적인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내부구조, 무대장치, 음향기기, 조명 등이 현대화되었다. 현재 좌석수는 총 1,685석(1층 1,174석, 2층 204석, 3층 307석)이다.

대우관(김우중기념관)

연희관 뒤에 위치한 대우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본관은 지하3층, 지상6층으로, 별관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과 3대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각 연구실과 강의실에 LAN 시설이 완비된 최신 건물로 총 연건평(지하주차장 4,000평 포함) 10,104평 규모로 지어졌다.

본관 지하와 1층은 강의실로 2층 이상은 연구실, 행정실, 대학원 강의실로 쓰이며 별관은 2017년 12월 연더우드국제대학 이전에 따라 강의실 및 연구실 등으로 주로 사용하고 CPA고시반이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1996년 6월 1일 완공된 대우관, 김우중기념관은 당시 상경대학 동문회장이었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및 상경대학 동문들의 기부금을 모아 건립한 건물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우관, 김우중기념관으로 명명되었고 상경대학,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경제대학원에서 사용하다가 2015년 경영관을 신축하면서 상경대학, 경제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루스채플(Luce Chapel)

이 건물은 미국에 있는 루스 재단 기부금과 학교 보조금으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지붕은 철골 특수 캔트레버트러스로 건평 329.9평, 연건평 463.16평을 1973년 8월에 착공 1974년 9월에 준공되었다. 내부는 예배실, 교목실장실, 교목실, 대학교회 사무실 등 기타 18실이며 건물의 명칭은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루스채플이라 명명하였다.

루스채플은 2006년 4월 1일부터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11월 14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489m²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증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내부는 강의실, 연구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증축공간은 원일한 박사를 기념하여 원일한 홀이라 명명하였다.

무악학사

무악학사는 학생기숙사로서 교내 북문 쪽(연희동 산 10-1번지) 산자락에 대규모 기숙사촌을 형성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숙사 주변이 산림과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항상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무악 1, 2, 3, 4학사(생활관)는 학부생 및 본 대학원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이며, 4개 학사를 일컬어 '생활관'이라 한다. 무악5학사는 5개부 운동선수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이고, 무악6학사는 대학원생 중심 기숙사인 우정원(宇庭園) 기숙사이다. 무악1학사는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6,937.5m²(2,098.59평)의 건물로서 1989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5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무악2학사는 1학사와 같은 규모와 형태의 건물로 1993년 8월에 완공되었고, 수용인원은 500여명이다. 무악3학사는 연건평 2,851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의료원동으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등문들의 기부금으로 1998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약·치간 3개 대학 학생(간호사 포함) 5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무악4학사는 연건평 2,712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1998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A동은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276명을 수용할 수 있고, B동은 다양한 아파트형 숙소 70실로 외국인 교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서 건물 외벽이 붉은 벽돌로 주변의 넓은 녹지와 미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부시설은 독서실, 세미나실, 특강실, 컴퓨터실, 예배실, 기도실, 복사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샤워실, 식당, 매점 등이 있어 기숙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악5학사는 연건평 1,951평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2004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5개 운동부 선수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공동목욕실, 식당 등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하층은 연구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 10월 완공된 무악6학사는 (주)부영주택에서 100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를 통해 연면적 2,000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건물을 기부한 (주)부영주택 대표 이종근 회장의 호를 빌어 우정원(宇庭園)이라 명명하고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다.

백 양 관(白楊館)

백양관은 우리 대학교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영학의 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안으로는 참신하고 능동적인 학풍을 진작하며 밖으로는 국가 경제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다.

백양관은 1967년 4월 19일에 기공하여 1차 공사로 1,894평의 건물은 1969년 5월 10일에 준

공하였으며, 1970년 8월에 본 건물 남쪽에 732평을 증축하여 이를 1971년 5월 8일에 완공하였다. 3차 공사는 1982년 4월에 본 건물 북쪽에 447.07평을 증축하여 1982년 12월 21일에 완공하였다.

그 후 입학관리처의 입시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부 2층에 1개층 163평을 증축하여 2005년 8월 말에 완공하였다.

백양관은 건평 1,034.54평, 연건평 3,236평으로서 경영학교실단이라는 이름으로 상경대학과 경영대학원이 사용하였으나, 상경관의 완공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학부대학 및 교양교육공간, 총무처, 시설처, 국제처, 연구처, 산학협력단 등의 행정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백 양 누 리

백양누리는 백양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소통과 융합, 문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따라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되었다. 백양로를 따라 길이 400여 미터에 걸쳐 지하 두 개 층, 연건평 17,770평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완성된 백양누리는 지하 1층에 각종 편의시설과 라운지, 회의 공간, 강의 공간, 금호아트홀, 주차장을 갖추고, 지하 2층은 전체가 주차장으로 조성되었다. 지하 공간이지만, 밝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곳곳에 선큰 공간을 배치했고, 지상과 지하가 연결될 수 있도록 11개소의 계단실과 5개소의 엘리베이터, 학생회관 앞에 1개소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다. 지하 공간은 중앙도서관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학원 및 암병원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백양누리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연세인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금호아트홀은 총넓이 1,700평, 390석 규모의 클래식 연주 홀로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부로 건립되었다.

백주년기념관

본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영원한 연세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 기념관은 동문, 교직원, 사회유지, 학부모, 재학생 등 많은 분들의 뜻과 정성으로 세워진 것이다.

1986년 8월에 착공하여 1988년 2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연건평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우아하고 현대적인 건물로서 박물관과 콘서트홀 및 입학처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입학처는 2011년 10월 옥상에 215평의 공간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에는 별도로 입학상담실이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은 10개소의 전시실과 11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 1개소가 있고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8개소가 있다. 약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은 2013년 국내 최고의 음향 수준을 갖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객석과 휴식을 고려한 넓은 로비가 있고 각 층마다 휴게실을 두었다.

법인본부

과거 핀승관(현 윤동주기념관)을 사용하던 법인본부가 2018년 12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건립한 건물로, 고 원일한 이사(언더우드 3세)가 생전에 거주하던 사택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법인본부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본관, 직원 사무동, 그리고 고 원일한 이사 사택을 보전하여 건축한 법인 기념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송대 등 인근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건물이다.

법연학사

법과대학 동창회에서 후배들의 고시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건립운동을 시작하여 동창회 모금과 기성회 보조금으로 1975년 11월 1일에 완공하였고 1979년 5월 1일 지하 1층, 지상 3층의 증축공사를 착공 동년 11월 1일 완공된 연건평 348평의 건물로서 학생용 침실 39실(수용인원 78명)과 식당 휴게실 각방에 에어컨 설치 등을 갖추고, 엄격한 선발고사를 통한 입사, 철저한 내무생활, 저렴한 사비를 원칙으로 운영해왔고, 2003년 2학기부터는 여학생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2016년 12월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총 189실에 376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로 재단장 하였다.

본관(本館, Underwood Hall)

이 건물은 1924년에 본 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창설자이며 초대 교장이었던 원두우(元杜尤) 박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형제인 존 언더우드 씨의 기부금으로 지은 것이다.

건평 209.74평, 연건평 876.38평인 이 4층의 석조 건물은 문과대학에서 사용하여 오다가 1982년 3월부터 대학 본부 건물로 기획실, 교무처, 대외협력처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재 사적 276호로 지정되어 있다.

빌링슬리관(Billingsley Hall)

유억겸기념관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빌링슬리관은 1968년 4월 15일에 착공하여 동년 10월 30일에 완성한 건물로서 건평 182.11평에 연건평 654.91평의 석조 3층 건물로서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와 학교 재단의 재정원조로 건립된 것으로 생활과학대학이 사용해오다가 1999년 생활과학관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 지금은 언론홍보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산학협동관

산학협동관은 산학협동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건축비를 지원하여 2003년 4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2,703평으로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154KV 연대변전소이며, 지상3층 이상은 연구공간으로 다차원소재연구단, 다상소재 혁신 생산공정 연구센터, 무인기용 메타구조 IR스텔스 연구센터, 소열오피스연구센터, 스핀-그린수소 연구센터, 에어로젤소재연구센터, 인간지향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센터, 차세대융복합에너지물질특화연구센터, 초정밀광기계기술연구센터, 플러그앤플레이 칩렛 인터그레이션 연구센터 등의 연구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상남경영관

상남경영관은 기업체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자문 사업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남경영원이 있는 건물이다.

1998년 12월에 준공한 이 건물은 1층에는 식당(수용인원 130명) 및 소규모 연회실, 오크룸(평면식 강의실/수용인원 43명), 파인룸(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63명)이 있으며, 2층에는 로즈우드룸(화상회의 가능, 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68명), 사이프러스룸(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75명), 메이플룸(계단식 강의실/수용인원 63명), 월넛룸(평면강의실/수용인원 41명)과 분임 토의가 가능한 6개의 토의실(수용인원 6명)이 있다. 그리고 3층에는 정보검색이 가능한 전자도서관과 원탁회

의실 및 행정실이 위치해 있으며 4층~5층에는 총 39개의 객실과 소규모의 식사 또는 연회가 가능한 브라운라운지가 있다. 또한 6층에는 소규모 연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스카이라운지 A(15명 수용), B(50명 수용)등이 위치한 총 7개 층의 최첨단의 IBS 교육설비를 갖춘 Executive Program 전용강의실과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새천년관(New Millennium Hall)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약 148억 원의 공사비(국고 70억, 내부대응자금 70억)를 들여 건설한 새천년관은 1997년 5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5월 13일 준공되었다. 새천년관은 1,700여 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4,300평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물로 강의실 14실, 세미나실 15실, 멀티미디어 실, 컴퓨터실, 국제회의실, 가상도서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동서문제연구원, 국제학연구소, 현대한국학연구소 등 국제학 관련 기관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 상호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세계화 전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활과학관(삼성관)

생활과학관은 1999년 2월 1일에 완공된 건물로 연건평 3,042평으로 지하1층, 지상6층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 중앙 집중식 냉난방시설과 LAN시설이 완비된 현대식 건물이다. 이 건물은 삼성그룹, 교수, 동문 등이 기금을 모아 건립한 건물로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대학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미나, 전시회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이순홀이 있다. 계속되는 공간 수요의 충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 2월 지상 7층에 1개층 386평을 증축하여 생활과학관은 총 3,428평의 교육연구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성암관(聖岩館)

1960년 6월에 건평 150.32평 연면적 450.94평의 2층 석조건물로서 사업가 하원준 씨가 함안농장 기금의 일부를 회사한 기부금에 의하여 건립된 것으로서, 하원준 씨의 “성암재단”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암관이라고 부르며, 1987년에 개수공사를 하여 국제학대학원, 국제교육부가 사용되어 오다가 새천년기념관이 완공됨에 따라 이전하고 전반적인 내부공사를 한 후 2001년 3월부터 커뮤니케이션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스팀슨관(Stimson Hall)

이 건물은 1920년 완성되었으며, 건평 131.75평, 연건평 414.56평의 석조 2층 건물로서 연세캠퍼스에 최초로 세워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스팀슨 씨(Charles M. Stimson)의 기부금으로 지은 것으로, 1981년 9월 25일 문화재 사적 275호로 지정되었다.

스포츠과학관

스포츠과학관은 연세 구성원을 위한 복지시설과 체육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심신단련을 통한 종합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2010년 12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2월 완공되었다. 기존 검도관이 있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956.97평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점용 승강기를 설치했다. 주요시설로 구기장, 휘트니스센터,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에어로빅실, 체조(펜싱)장, 강의실, 실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원두우 신학관

1964년 12월에 준공된 연합신학대학원(국제선교협의회에서 기증한 사업기금으로 세워진 2층 석조콘크리트건물)이 노후되어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동문, 교수 등이 모은 기부금과 학교 지원으로 2003년 1월에 재건축을 시작하여 2005년 4월에 완공되었다. 지하4층과 지상4층에 연면적 3,001평으로 재건축된 신학관은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2016년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건물 명칭은 신학관에서 원두우 신학관으로 변경되었다.

아펜젤러관(Appenzeller Hall)

미국 매사추세츠 피츠월드의 제일감리교회에 의한 기부금으로 1924년에 준공된 아펜젤러관은 현재 사회복지대학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건평 131.34평, 연건평 471.59평의 석조 3층 건물로 문화재 사적 277호로 지정되어 있다.

알렌관(Allen Hall)

연세창립 100주년의 일환으로 1986년 5월 기존의 영빈관 건물을 철거 후 현대식 건물로, 건평 318.2평, 연면적 500.94평으로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1987년 4월에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시설로는 무악홀 등 8개의 중소규모의 회의실과 7개의 침실 등이 있으며, 명칭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로기관이었던 광혜원을 설립한 알렌 박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알렌관이라 명명하였다.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CDRI,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은 연세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 본관과 별관의 2개 건물과 사과나무놀이터, 밤나무놀이터, 해당화놀이터, 소나무놀이터의 4곳 실외놀이공간으로 되어 있다. CDRI는 1973년 대학 내에 아동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연구와 실습을 위한 장으로 1974년에 연건평 122평의 2층 건물인 아동관을 준공하였고, 1975년도부터 영유아 교육, 부모교육, 교사교육, 연구, 상담, 출판 등에 주력하고 있다. CDRI 본관 건물은 10여 년간 이루어진 학부모, 동문 등의 모금과 학교의 협조로 초기의 생활관을 철거하고 2002년 10월, 연건평 488.73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준공되었다. 본관 건물에는 아동공간, 관찰실, 사무실, 소강당, 자료실,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설립 초기의 아동관은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하여 연구동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철거한 후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2020년 2월에 연건평 458.92평의 3층 건물로 준공하여 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CDRI 별관에는 영유아공간, 관찰실, 소강당, 교사·부모교육센터, 강의실, 아동가족상담센터, 놀이치료실 등이 있다.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언더우드가(家) 기념관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인 H. G. Underwood(원두우) 선교사와 우리나라의 근대교육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그 가족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이 거거하였던 연회동 사택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기념관 내부는 설립자의 정신과 그 일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후세에 알리고자 1930년대 당시의 사택 내부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되었으며, 언더우드가의 사진

및 서적 등을 중심으로 전시하여 2003년 10월 28일 개관하였다.

2006년 5월 13일에는 원일한 박사 소장의 언더우드가 유품, 미공개 사진, 관련서적과 영상자료 등을 보완하고 ‘언더우드의 삶’, ‘한국과 언더우드’, ‘문헌자료실’로 확대 재구성하여 1층 전시실을 언더우드기념관으로 재개관하였다.

2018년 5월 11일에는 2016년 11월 지하 보일러실 과열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복원함과 동시에 전시실을 개편하여 보다 새롭게 단장된 기념관으로 재개관하였다.

언어연구교육원

언어연구교육원은 부속교육기관으로 외국인과 재외교포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연구하려는 학생, 선교사, 외교관 등에게 한국의 언어와 역사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1959년 4월 1일 설립된 ‘한국어학당’이 모체이다.

언어연구교육원 건물은 1991년 12월에 완공되어 한국어학당의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건평 2,540평,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강의실, 수업행동분석실, 대강당, 다목적문화체험실, 요리실습실, 영상음향제작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22년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시설 및 냉난방 시스템 교체, 화상 회의 시스템 도입 등 쾌적하고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은 2005년 5월 14일 착공하여 2008년 5월 10일 완공하였으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33,428.25㎡(10,112평)의 규모이다. 주차대수는 옥내가 155대, 옥외가 7대이며.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은 21세기 디지털 정보 환경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중앙도서관과의 미적 조화와 연계성 및 이용자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편리한 공간 구성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최첨단 IT 인프라 시설을 완비하고 도서관 전 지역에 무선 랜을 설치하여 건물내 어디에서나 전자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건축하였다. 또한 고품격 인테리어와 자연 채광의 실내 조경 등 쾌적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연구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서관 내 어느 공간에서나 서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견고한 하중으로 설계하고 보존 서고에는 밀집서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서수장 능력을 높임으로써 미래의 공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연희관(延禧館, Yonhi Hall)

연희관은 1956년 10월에 미 제5공군과 본 대학교에 의해서 지어진 건평 423.80평, 연건평 2,014.65평의 방대한 건물로 현재 사회과학대학과 행정대학원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연희관은 이 건물을 세우는데 도와준 미국의 원조, 협력 정신을 체득하여 세계평화와 자유 정의의 실현을 위하고 과학 교육으로 문화 창조, 진리의 거화(巨火)를 밝힌 선배들의 유풍선양(遺風宣揚)을 기념하고 진리 자유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연희관이라 부르게 된 것은 1957년 “연희”와 “세브란스”가 통합될 때 “연희”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외솔관

외솔관은 인문과학에 대한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당으로서 주로 교수의 연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다.

이 건물은 교육과학관과 앞뒤로 나란히 하여 수업과 연구의 기능적인 효과를 안배하여 하나의 교실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2,414.5평의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석조건물로서, 1981년 5월 9일에 착공하여 1982년 3월에 완공하고, 현재 문과대학, 인문학 연구원이 사용하고 있다. 그 후 학생자치공간 및 학습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1991년 3월 인문관과 종합교실단 사이의 연결복도 옥상에 136평을 증축하였다. 평생을 한글운동에 헌신한 외솔 최현배 선생을 기리어 2001년 건물의 명칭을 인문관에서 외솔관으로 변경하였다.

위 당 관(爲堂館)

위당관은 시위사태로 파괴된 종합관의 교육시설과 연구자원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1996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 1년간 동문, 학부모, 교직원, 대학(원)생, 기업체, 일반인(사회단체) 및 정부로부터 피해복구 성금을 모아 지은 건물이다.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2,532평의 건물로서 1997년 5월 29일에 착공하여 1998년 8월 24일에 준공되었다. 문과대학의 일부 학과와 국학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문과대학 학술잡지실 및 무악서당 등이 있다. 민족사관 정립과 국학 진흥에 헌신한 위당 정인보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1년 건물의 명칭을 제2인문관에서 위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에는 6층 일부(100.26평)를 증축하여 교육 및 연구공간을 확장하였다.

유억겸기념관(俞億兼紀念館)

성암관 맞은편에 위치한 유억겸 기념관은 건평 169.4평, 연건평 628.90평의 석조 콘크리트의 4층 건물로서 1963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우리 대학교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던 고 유억겸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유억겸기념관으로 명명하였다.

이 건물은 교양학부가 1971년 8월 종합교실단으로 이전하기까지 사용하였고 지금은 심리학과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유진어린이집

유진어린이집은 2008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8일에 완공한 연건평 558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직장 보육시설로서 유진그룹으로부터 기증 받았다. 아동의 연령별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보육실 공간을 구성하였고, 영유아의 건강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최첨단 설비를 갖추었다. 1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교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음악관

음악대학 구관은 1976년 8월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06평의 규모로서 건축되었으며, 제2차 공사는 1982년 4월에 지상 4층 건물로 256.01평을 증축하여 이를 1982년 1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이로서 동 건물은 건평 300.01평, 연건평 1,062평으로서 강의실, 관현악실, 오페라실, 교수실, 레슨실, 연습실, 행정지원실, 휴게실이 있다.

이 건물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운 조형미를 살린 외관과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대학의 전용건물인 만큼, 음향효과와 관제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 피아노실은 음향조정을 위하여 5각형의 방음벽으로 처리되었고, 특별교실인 관현악실

과 오페라 연습실은 방대한 음향처리를 위해 2, 3층을 터서 음향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조절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 전면에는 루바를 설치하여 음향을 차단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음악대학 신관은 충분한 학습공간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409.9평의 건물로 기존 건물 옆에 1989년 12월에 착공하여 1991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관객 3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을 가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여 연면적 220평이 증축되었고, 2013년 8월 음악대학 구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였으며, 2013년 11월 건물 명칭을 음악관 A, B로 변경하였다.

미 우 관

미우학사는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회에서 기증한 5만 불로 1972년 6월에 세워진 건물로 이를 기념하고 아름다운 벚을 사귀는 집이라는 뜻으로 미우학사로 명명 사용되어 오다가 1979년 10월 31일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건평 270.13평, 연건평 627평의 규모로 증축 완공되어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1993년 무악2학사 준공 후 축구부, 빙구부 등의 운동선수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며, 2004년 무악5학사(운동선수기숙사)가 준공되어 운동선수들이 무악5학사로 이전한 뒤, 2005년 12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후 미래교육원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미우관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새로운 미우관은 이를 철거한 부지에 2019년 4월부터 2년간의 공사 끝에 연면적 16,252.66㎡(4,916평),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신축되었고 2021년 6월 18일에 봉헌식을 진행하였다. 신축 미우관은 태양광과 지열 시스템을 이용해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을 받았다. 미우관은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민간부문 본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인 '미래교육원'이 건물 관리 기관이며, 대외협력처, 글로벌인재대학, 창업지원단 등 여러 기관이 공동 사용하게 되었다.

2023년 1월, 이윤재(정치외교학과 1967 입학, 지누스의장) 동문의 학교발전을 위한 큰 후원에 감사하고 애교심을 기리는 뜻으로 미우관을 '이윤재관'으로 개칭하였다.

중앙도서관

‘연세 백년을 향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 1977년 5월에 착공 1979년 3월 30일에 준공을 본 중앙도서관은 오늘의 연세교육에 부과된 사명과 책임을 수행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며 연세학문의 발전과 문화창조의 원천이다.

본 도서관은 4,747평의 대지 위에 열람인원 4,600석, 장서소장능력 100만권을 목표로 세워진 연면적 5,210평의 건물로 1992년 증축되어 연면적은 5,856평으로 늘어났다. 지상 5층, 지하 1층,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민간건축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화강석 석조건물이다. 특별히 미국 AID자금 1백만 불을 무상원조 받아 도서관내 컴퓨터시설비, 냉난방 기계설치비 일부 및 도서관내의 모든 비품을 마련하였다. 2010년도에는 6개월에 걸쳐 노후된 시설과 냉난방 및 환기 공조시스템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 동선 확대, IT 환경 조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공간 제공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중앙도서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체육관

건평 500평 연건평 799.51평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드라·힌지(Three Hinge)식 아치식 건물로

1960년 11월에 완공되었다. 농구, 배구, 레스링 및 권투 등의 경기장과 1,21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부 공간은 체육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했었다. 제반 시설이 노후되어 2010년 12월부터 리모델링을 하여 2011년 10월 4일 사용을 다시 개시했다. 전면부의 진입계단이 사라졌으며 유리 벽면이 설치되어 쾌적한 외관을 갖췄고, 커튼 월, 지붕의 흡음 데크 판넬, 벽체의 폴리메탈 판넬 등이 시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4.48㎡(902.8평) 규모의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했다.

체육교육관

체육계열학과와 전 연세인의 체육복지시설로 활용되는 이 건물은 1978년 11월 24일 착공 1979년 8월 20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이다. 실용면적 715.47평 입체면적 1,024.72평에 기존 체육시설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동선을 최대한으로 원활히 살려 배치되어 있으며, 수영장, 체력측정실, 강의실, 체조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천 문 대

천체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1980년 설립된 우리 대학교 천문대는 교내관측소(과학관7층: Cave 40cm 반사망원경), 일산관측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Goto 61cm 반사망원경), 해외관측소(남아프리카공화국 서덜랜드: 50cm 광시야탐사망원경, 대만옥산천문대: 50cm 광시야탐사망원경) 등 3곳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연구관

대운동장 북측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연구관은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연구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연건평 3,470평, 지하3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 2월에 완공되었고, 2010년 2월 3개 층을 증축하여 연건평 1,200평의 규모를 갖추었다. 고압광물물리화학연구단,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극한물성소재-초고가부품KIURI연구단,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공동기기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디지털사회과학센터, 미래정부연구센터, 마이크로바이옴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센터, 변형제어 고성능전자소재연구단, 복지국가연구센터, 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센터, 비아이티 마이크로 펌 연구소, 밴드구조제어연구단, 세포사멸연구단, 세포소기관 분자사회 관계망 연구단, 실험동물연구센터,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인공공감각소재디스커버리연구단,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 프론티어연구원,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핀 슨 관(Pinson Hall)

1922년에 건립된 건평 84.09평, 연건평 224.15평의 3층 석조건물로서 이 건물의 건립을 위하여 자금 모금에 공헌이 큰 핀슨 박사를 기념하여 핀슨 홀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남학생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신과대학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한때 종교 음악관 전용으로 사용되고, 법인사무처에서도 사용하였으나, 2018년 12월 14일 법인사무처가 법인본부 건물을 신축 및 이전한 후, 운동주기념실로 임시 사용하다가 2020년 1월 20일부터 운동주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 군 단

전 학생에 대한 정부의 군사교육 실시령에 따라 교육부 기금 및 연세대학교 건물 기금으로 1971년 6월에 세워진 건물이다. 대운동장에서 재할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2층으로 건평 135.63평, 연건평 261.31평의 건물을 준공하였다. 2차 공사는 1982년 4월에 별도 지하 1층 건물로 142.83평을 증축하여 이를 1983년 1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이로써 동 건물은 건평 135.67평 연건평 404.14평의 규모에 단장실, 교관실, 행정실, 자치회실, 피복 창고, 교재 창고 등 모두 32개 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외벽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벽을 설치한 기독교 건축양식인 고딕양식을 현대화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68년 7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198평을 건축하였고, 1976년 10월에 지하층 확장 및 3, 4층, 연건평 1,131평의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1977년 7월에 준공하였고, 1968년 8월에 지하층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1987년 3월에 준공 개관하므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422.9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복지처 등 학생 지원 행정부서와 총학생회 등 학생 자치시설, 무악극장, 합창연습실 등이 있으며 학생식당, 우체국, 서점, 문구점 등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대단위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다.

1989년 8월에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연면적 588㎡(177평)의 700석 규모의 식당을 1989년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연이어 1990년 9월에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연면적 912㎡(276평)의 주방시설을 갖춘 700석 규모의 식당을 1991년 3월에 준공하여 학생복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경 관(漢慶館)

1940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이었던 원한경 박사의 이름을 붙여 한경관이라 부른다. 건평 130평, 연건평 307평인 석조 2층의 이 건물은 교직원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GS칼텍스 산학협력관

GS칼텍스 산학협력관은 GS칼텍스(주)의 지원으로 대운동장 서쪽에 연면적 1,405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2008년 2월 15일에 착공하여 2009년 11월 2일에 준공된 본 건물은 신에너지, 나노공학 분야 연구동으로 건축되어 교수 연구실, 실험실 및 세미나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자동제어 기계설비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설비인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IBS관

IBS관은 나노의학연구단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외부연구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융합 기초과학연구소 설립을 위해 마련된 최첨단 연구건물이다.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4,311㎡ 규모로 건축되었다. 2016년 12월 14일에 착공하여 2018년 2월 27일에 준공된 본 건물은 연구자 중심, 협업 유도, 창의 증진을 핵심 철학으로 설계되었으며, 장벽 없는 연구소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분리형 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불투명한 벽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하는 등 공간적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SK 국제학사

SK국제학사는 연건평 7,039평,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외국인 전용 기숙사로 2008년 4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19일에 완공하였다. 기숙사의 규모는 1인실 187실, 2인실 197실, 장애인실 4실, 3인 가족실 20실로 총 408실, 645명을 수용할 수 있고, 외국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장, 첨단 자동제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SK주식회사에서 일부 공사비를 기증하여 SK 국제학사로 명명하였다.

(교외건물)

김대중도서관

국내 최초의 Presidential Library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구 아태평화재단으로부터 마포구 동교동 소재 토지와 건물, 관련 자료를 수증 받아 2003년 2월 25일자로 설립되었다. 공식적인 개관식은 같은 해 11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사장과 총장, 외교사절 40여명을 포함한 국내외 귀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대중도서관은 400여 평의 대지에 지상5층, 지하 3층의 총 1,500여 평 규모로 건축되었고 1~2층에 도서관, 3~5층에 통일연구원, 현대한국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연구실이 있으며, 지하1층에는 컨벤션홀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에는 1만 6천여 권의 장서와 자료실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료를 열람, 전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 분야 등 관련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하고 국제적 협력의 기능을 수행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덕소수양관

덕소수양관은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쓰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육대학원의 출자로 덕소교육용지(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도곡리 산 164번지)에 1969년 9월 24일 착공하여 1970년 5월 16일에 준공되었다.

우 남 관(雲南館)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대지 및 임야 2,100평과 건평 97평의 건물을 1996년 8월 최송옥, 최병설 남매가 이승만 박사 및 한국현대사 연구를 위해 기증하였다. 자하문 밖 바위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건물에는 현대식 석조건물인 본채와 고풍의 전통 가옥인 대원군 다실이라는 정자와 2단의 넓은 정원이 있다. 이 건물은 기증자 최송옥씨를 기념하기 위하여 송암관이라 불렀으나, 2002년 10월 우남 이승만 박사를 기리기 위해 우남관이라 새로이 명명하였다. 현재 국제학대학원 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의료원은 대지 1,009,143.50㎡, 연면적 831,996.36㎡ 규모로서, 대지 858,628.40㎡ 규모의 신촌지역에는 의과대학(연면적 35,191.42㎡-본관/신관/강의동, 임상의학연구센터), 러들로 교수동(연면적 3,831㎡),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40,229.02㎡), 제중학사(30,084.71㎡), 의학도서관(연면

적 4,292㎡), 치과대학(연면적 17,181.08㎡), 간호대학(연면적 7,078.23㎡), 등의 교육 및 연구 시설, 세브란스병원[연면적 201,930.12㎡(본관 172,610.99㎡, 제증관 17,322.22㎡, 광혜관 11,996.91㎡)], 연세암병원(연면적 106,008.51㎡), 중입자치료센터(연면적 32,695.89㎡), 재활병원(연면적 14,361.04㎡), 심장혈관병원(연면적 19,096.69㎡), 안과병원(연면적 6,066.96㎡), 어린이 병원(연면적 12,526.06㎡), 치과대학병원(연면적 17,305.98㎡) 등의 진료시설, 종합관(연면적 35,912.80㎡), 행정동(연면적 3,918.63㎡) 등이 있다.

신촌 외 지역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대지 69,271.10㎡, 연면적 109,127.17㎡-강남의생명연구 센터, 미래의학연구센터, 미래의학연구센터 별관, 비자검진센터, 스마트행정센터, 복지센터 등 외 부건물 포함), 용인세브란스병원(대지 72,690.00㎡, 연면적 112,474.00㎡) 등이 있다.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지상 5층, 연면적 9,491㎡ 규모의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652㎡ 규모의 신관, 그리고 연면적 2,277㎡ 규모의 강의동 및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1962년 6월 5일에 완공하고 2003년 11월 28일에 신관 및 강의동을 증축하였다. 건물에는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학습공동체(L/C), 이러닝센터, 강당 및 휴게실 등이 있다.

임상의학연구센터

임상의학연구센터는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13,770㎡ 규모의 건물로서 1993년 9월 25일에 착공하여 1996년 3월 24일 완공하였다. 건물에는 연구 활동을 위한 실험실, 세포배양실, Imaging Center 및 공용장비실 등이 있으며, 수기시험실과 시뮬레이션실 등을 갖춘 임상기기교육센터와 미세현미경실습실 등을 갖춘 수술해부교육센터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러들로 교수동

러들로 교수동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831㎡ 규모의 건물로서 2010년 1월 31일 완공하였다. 건물에는 교수, 부교수실(1인실 45개실), 조교수실(2인실 57개실), 강사실(181석 1개실), 세미나실 및 휴게실이 있으며 출입통제시스템과 CCTV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는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40,229㎡ 규모의 건물로서 2010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2월 완공하였다. 지상층에는 203석 규모의 유일한 홀, 실험실, 공용장비실과 유전체센터, 이미징센터, 전자현미경실, FACS실, 조직병리실, 생물정보분석실, 방사선실험실 등의 각종 Core facility가 있으며, 지하 3, 4층에는 소형·중대형 동물실, 동물이미징센터 및 생물안전3등급 실험시설(BL-3) 등이 있다.

제중학사

제중학사는 1974년에 개사하여 2018년 철거 될 때까지 약 40여년 동안 의과대학 학생들의 보금자리이자 인재의 산실로 사용되었다.

옛 제중학사의 건물이 노후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기숙사 건물의 필요성에 따라 인근 법현학과와 함께 본교와 의료원이 힘을 합쳐 재건축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에 새 제중학사가 준공되었다.

지하3층, 지상 7층, 연면적 30,084㎡ (9,116평) 규모의 건물로서 총 302실에 최대 604명을 수용하게 되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의과대학 학생들의 개사가 시작되었다.

새 제중학사에는 2인 1실 사생실 외에, 스터디룸,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라운지, 커뮤니티룸을 비롯해서 편의점 및 카페베이커리 등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 중이다.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은 지상 5층, 연면적 4,292㎡ 규모의 건물로서 1973년 2월 6일에 완공하고 1993년 1월에 신관을 증축하였다. 건물에는 499석의 열람석(376석의 24시간 자율학습실 포함)과 컴퓨터실 등이 있다.

치과대학

치과대학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7,181㎡ 규모의 건물로서 1996년 5월에 완공하고 2004년 4월에 증축하였다. 건물에는 임상시뮬레이션 및 양방향 교육시스템 등을 갖춘 기초 및 임상전단계 실습실, 첨단 AV시스템을 갖춘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동영상 강의 제작 시스템을 갖춘 연송스튜디오 이외에 학생 전용 학습공간인 연아이러터, 휴게실, e-library 등이 있다.

간호대학

간호대학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7,078㎡ 규모의 건물로서 1996년 8월 31일에 완공하였다. 건물에는 김보임간호학연구소, JBI 협력센터, WHO 협력센터, 연세 메를칸호역사관, 연세간호 융합교육원, 쉴즈 시뮬레이션센터, 다중매체실, 강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동아리실 및 학생휴게실 등이 있다.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본관은 연면적 172,610.99㎡,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건물로서 2000년 7월에 착공하여 2005년 4월에 완공하였다. 건물 1층~3층에는 응급진료센터, 중앙명균실, 편의시설, 국제진료센터, 우리라운지, 케어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4층~6층에는 외래진료실, 영상의학과 촬영실, 채혈실, 세브란스라운지,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수술실 및 은명대강당, 김지희라운지 등이 있고 7층~20층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VIP병동, VIP 건강증진센터 등이 있다. 병원 부속인 제중관은 연면적 17,322㎡ 규모로 지하 2층~지상 5층에는 임상시험센터, 행정시설, 의사실 등이 있으며, 광혜관은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1,996㎡ 규모로 융복합의료기술센터, 교수실, 입원실, 의사실, 토모치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암병원

연세암병원은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106,008㎡ 규모의 건물로서 1969년 국내 최초 암센터로 시작하여 2014년 4월 연세암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하였다. 건물 지하 1~3층에는 각종 편의시설, 식당, 진단검사의학과, 서암강당 등이 있으며 1층은 방사선종양학과, 2층은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채혈실 등이 있다. 3층~5층에는 13대 암센터 외래진료실 및 검사실, 6층에는 수술실이 있으며 7층은 금호문화가든, 예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층~15층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당일입원실, RI병실 등이 있다.

중입자치료센터

중입자치료센터는 연면적 32,695.89㎡, 지하5층~지상7층 규모의 건물로서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완공하였다. 건물 지하5층~지하2층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된 중입자치료센터가 있고, 로비층은 송도세브란스병원진료추진본부, 새빛라운지, 예비공간, 1층~2층은 IT 관련 조직이 집중된 디지털헬스실이 있다. 3층은 음악대학 체임버홀이 있으며, 4층~7층은 교수실로 구성되어 있다.

재활병원

재활병원은 1987년 5월 8일 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8,248㎡ 건물로 연세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축되었고, 2011년 3월 4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여 현재 지하1층, 지상 10층 연면적 14,361㎡ 규모로 대학병원 내 최초이자 최고의 재활병원이다. 1~2층에는 외래환자를 위한 진료실, 수치료, 성인외래 물리/통증/작업/언어/심리치료실이, 3층에는 소아를 위한 물리/작업치료실이, 4층에는 소아병동, 6층에는 로봇재활치료센터, 성인입원작업치료실, 전기진단검사, 뇌자극치료실, 체외충격파치료실이 있으며, 7~8층에는 성인병동, 9층에는 성인입원 물리/통증치료실, 디지털재활치료실, 10병동 환자를 위한 통합치료실이 있으며, 10층에는 VIP 입원실이 있어, 최첨단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심장혈관병원

국내 첫 심장혈관질환 전문 센터로 1991년 5월 10일 개원한 심장혈관병원은 지상10층, 지하2층, 연면적 19,096㎡의 독립 진료 건물로 5개 임상진료과와 심장혈관질환별로 세분화된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 1~2층 외래·검사 구역에는 진료실, 심장검사실(심전도·운동부하·홀터·혈관기능·심박동기클리닉) 및 영상검사실(영상의학촬영실·핵의학영상실), 통합원무창구, 복약·영양상담실과 교육실, 진료협력센터, 심장웰니스센터, 선천성심장병센터, 역사전시관이 있다. 3층에는 심장혈관중재시술센터, 회의실, 강당, 사회사업실 등이 있으며 4~6층은 중환자실(심혈관내과계·외과계)과 수술실(일반 및 제1·2하이브리드), 중앙멸균실, 기도실 등이 있으며 7~10층은 소아심장중환자실, 당일입원실을 포함한 입원병동으로 운영 중이다.

안과병원

안과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067㎡ 규모의 건물로서 1996년 10월 17일 구 치과대학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안·이비인후과병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19년 9월 1일 안과전문병원으로 조직을 분리 독립하여 안과병원으로 개원하였다. 건물 지하 1층에는 청파호성춘선생 기념홀이 있으며 1층~5층에는 안과 수술실, 안정실, 진료실 및 검사실 등이 있다.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2,526㎡ 규모의 건물로서 2006년 6월 15일에 세브란스병원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개원하였으며, 이후 2016년 6월 추가적으로 외래 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환아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지하 1층에는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이 있으며, 1~2층과 계증관 1~3층 일부에는 외래 진료실과 검사실, 하남정밀의료센터 등이 있고, 3~10층은 입원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신생아실, 분만실 등이 있다.

치과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7,306㎡ 규모의 건물로서 1995년 12월 18일에 완공하였으며, 2019년 3월 17일 리모델링하였다. 건물 1층에는 통합치의학과 및 원내생진료실 등이 있으며 2~7층에는 진료실, 일일입원실, 특수클리닉, 교수실 및 강당 등이 있다.

종합관

종합관은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35,912㎡ 규모의 건물로서 2006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3월에 완공하였다. 건물 2층~6층에는 우리라운지, 직원복지시설, 보건대학원, 회의실, 강의실 및 행정시설 등이 있으며 1층~지하 2층의 장례식장에는 17개의 빈소, 비즈니스룸, VIP 접객실, 가족실, 응접실 등이 있다.

행정동

행정동은 지상 4층, 연면적 3,918.63㎡ 규모의 건물로서 2019년 4월에 완공하였다. 건물 2~4층에는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과학연구처, 제증원보건개발원, 감염관리실, 보험심사팀, 회의실 및 행정시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9,475.08㎡ 규모의 본관(2동/3동)과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37,284.98㎡ 규모의 별관(1동)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1989년 11월에 현 본관 3동을, 2005년 9월에 별관을 증축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본관을 리모델링하였다. 본관 건물 지하1층~2층에는 외래 진료실, 응급진료센터, 영상의학과 촬영실, 검사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이 있으며, 3층~8층에는 신생아중환자실, 강당 및 회의실, 입원실 등이 있다. 별관 건물 지하1층~3층에는 척추병원, 치과병원, 암병원의 3개 병원이 있으며 4층~9층에는 건강검진센터, 입원실, 회의실, 재활치료실, 항암주사실, 국제진료센터 등이 있다.

강남의생명연구센터(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7)

강남의생명연구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794.44㎡ 규모의 건물로서 2010년 11월에 개소하였다. 건물 지상 1층~7층에는 실험실과 세포배양실, 공용장비실, 전임상실험실 및 실험동물 사육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 별관(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길 29)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 별관은 지상 5층, 연면적 605.76㎡ 규모의 건물로서 2016년 개소한 행정복지동을 리모델링 후 용도와 명칭을 변경하였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2~5층에는 교수실, 서빙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는 지하2층, 지상 7층, 연면적 3,271.44㎡ 규모의 건물로서 2016년 5월에 개소하였다. 건물 지상 1층~7층에는 비자검진센터, 임상연구관리실, 인체유래물은행, LAB,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길 20)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는 지하 5층, 지상 5층, 연면적 11,982.18㎡ 규모의 건물로서 2017년 1월에 준공하였다. 건물 지상 1층~5층에는 교수연구실, 회의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스마트행정센터(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27)

강남세브란스병원 스마트행정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718.56㎡ 규모의 건물로서 2022년 1월에 개소하였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임대매장이 있으며, 2~4층에는 사무실, 5~6층에는 기숙사, 세탁실, 휴게실 등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복지센터(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3길 5)

강남세브란스병원 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94.73㎡ 규모의 건물로서 2022년 3월에 개소하였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사무실이 있으며, 2~5층에는 기숙사, 세탁실, 식당 등이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하4층, 지상13층, 연면적 112,474㎡ 규모의 건물로서 2020년 3월 개원하였다. 건물 지하 1~2층에는 각종 편의시설/식당,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영상의학과 등이 있으며 지하1층~지상2층에는 외래 진료실, 응급진료센터, 심장혈관센터 등이 있고 지상 3층에는 수술실, 중환자실, 당일입원병동이 있다. 지상 5~7층에는 IRS실(임상통합관제시스템) 및 교수연구실이 있으며, 7~13층에는 입원실, VIP병실이 있다.

나.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컨버전스홀은 연면적 10,273㎡(3,108평)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연결된 교육공간,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공간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혁신적 융합 교육·연구 공간,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혁신 공간, 교과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학생활동, 창업활동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다.

대학교회/대학본부

대학교회/대학본부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002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대예배실, 소예배실, 교목실, 기도실, 대학교회 사무실, 교목연구실, 미래캠퍼스총장실, 기획부, 대외협력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재무부, 교무부, 입학관리부, 회의실이 있다.

도서관

도서관은 1994년에 준공된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연건평 2,527평의 건물로서 미래캠퍼스 학생 및 교원, 직원과 동문회원, 지역주민회원에게 도서 등 자료 열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보존서고, 일반열람실 및 세미나실이 있고 1층에는 일반열람실 및 세미나실, 원주학술정보원의 정보통신팀과 문헌정보팀 행정실이 있으며, 2층에는 머레이멀티미디어실과

Mirae Medici Space 및 세미나실이 있다. 3~4층에는 분야별 도서관이 소장되어 있는 자료열람실 및 대출/반납 DESK가 있고, 5층에는 귀중본 자료실 및 세미나실, 산학협력정보교육실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 학술지, VOD/DVD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https://wlib.yonsei.ac.kr>

창 조 관

창조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4,184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물리및공학물리학, 화학및의화학, 테이터사이언스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보건행정학부가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기초과학연구소 및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실이 있다.

청 송 관

청송관은 지상 5층, 연건평 3,137평의 건물로서 1984년에 준공되었다. 이 건물에는 글로벌창의융합대학 인문콘텐츠학부(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역사문화학, 철학), 디자인예술학부(산업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디지털아트학)가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근대한국학연구소 및 글로벌창의융합대학 행정실이 있다.

백 운 관

백운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959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환경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 친환경에너지공학), 의공학부(의공학, 바이오공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및 방사선학이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의공학연구소, 보건과학연구소,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행정실이 있다.

정 의 관

정의관은 지상 5층, 연건평 3,489평의 건물로서 1996년에 준공되었다. 이 건물에는 사회과학부(경제학, 글로벌행정학, 국제관계학) 및 경영학부(경영학)가 상주하며, 교육연구시설, 지역발전연구소, 글로벌창의융합대학 행정실 및 대강당이 있다. 특히 1,516석의 대강당은 교육, 채플, 공연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미 래 관

미래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3,368평의 건물로써, 이 건물에는 원주연구처/원주 산학협력단 사무국, 세미나실 및 생명과학기술학부(생명과학기술학), 임상병리학과가 상주하며 연구 및 강의동이 있다.

학 생 회 관

학생회관은 지상 4층, 연건평 2,522평의 건물로서 이 건물에는 학생복지처,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 대학일자리센터, LINC+사업단 L2M교육실, C-Lounge, 연세머레이봉사단,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휴게공간, 건강공제회, 건강관리센터가 있으며, 학생자치 활동을 위하여 총학생회, 연세매지방송국, 연세춘추, 동아리연합회, 각종 동아리방, 전시실, 에코소극장 등이 있다. 또한 복지시설로는 학생식당, 푸드코트, I-Lounge, 편의점, 커피 및 음료전문점, 통학버스 사무실, Y-Square, 음악감상실, 남학생 휴게실, 여학생 휴게실 등이 있다.

매지 1학사

매지 1학사는 남학생 기숙사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828평의 건물로서, 200개의 룸, 세미나실, 컴퓨터실, 독서실, 기도실, 휴게실, 세탁실, 간이조리실, 에어컨 및 층별 공동 세면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지 2학사

매지 2학사는 여학생 기숙사로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1,629평의 건물로서, 187개의 룸과, 세미나실 2개, 독서실, 휴게실, 컴퓨터실, 기도실, 세탁실, 간이조리실, 에어컨 및 층별 공동 세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매지 3학사

매지 3학사는 층간 구분된 남·여학생 기숙사로 지상4층, 연건평 890평의 건물이다. 100개의 룸과, 휴게실, 세탁실 2개, 세미나실 3개, 컴퓨터실, 독서실, 간이조리실, 에어컨 및 층별 공동 세면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연 1학사

남학생 기숙사로 지상 5층, 연건평 1,024평의 건물로서, 130개의 룸, 개별 욕실, 화장실, 냉난방 및 세미나실 2개, 독서실 2개, 인터넷카페, 층별 휴게실, 간이조리실 3개, 세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연 2학사

남학생 기숙사로 지상 5층, 연건평 1,448평의 건물로서, 157개의 룸, 개별 욕실, 화장실, 냉난방 및 장애인실 4개, 기도실, 독서실 2개, 층별 휴게실, 간이조리실 3개, 세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연 3학사

여학생 기숙사로 지상 6층, 연건평 2,357평의 건물로서, 261개의 룸, 개별 욕실, 화장실, 냉난방 및 장애인실 5개, 다목적실, 기도실, 독서실 8개, 층별 휴게실, 전산실, 간이조리실 10개, 세탁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연학사

청연학사는 지하1층, 지상7층의 연건평 4,677평의 건물로서, 원주생활관 행정팀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304개의 룸, 세미나실 6개, 세탁실, 휴게실, 독서실, 기도실 등이 있다.

연세플라자

연세플라자(8,611.86㎡)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1년 4월에 종합적인 학생복지센터로 건립되었다. 연세플라자 3층에는 국제교류원 행정팀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3,4층에 걸쳐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1층에는 제과점, 카페, 토스트점, 편의점, 서점, 은행, 안경점, 복사점, 빨래방, 생과일점, 우편실 및 문구/팬시잡화점이 있고, 2층에는 푸드코트, 북카페, 치킨/피자점과 세미나실

등의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어 학생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건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글플라자

이글플라자는 연세플라자와 매지3학사 사이에 위치한 지상2층의 건물로서, 1층에는 평생교육실 습실과 3개의 강의실, 체형교정실이 있으며, 2층에는 상담코칭센터가 2017년 7월에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코칭센터는 개인상담실 4실과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2,600평으로 2003년 9월 준공되어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스포츠센터로서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소체육관, 수영장, 샤워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및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 2010년 92평을 증축하여 학교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운재

현운재는 백운산과 매지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 준공과 2011년 지상 4층, 연건평 962평으로 증축하여 객실 45개, 라운지 및 식당이 등이 있다.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의 학 관

1978년 6월 현 교사를 기공하여 다음해인 1979년 6월 연면적 7,004㎡의 4층(지상 3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완공되어 의학과와 보건학과 학생들을 수용해 오다가 학생수의 증원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지상 10층, 지하1층) 중 제 2단계 사업으로서 1981년 2월 4, 5층(연면적 3,904㎡)을 증축하여 현재의 연면적 10,910㎡의 6층(지상 5층, 지하 1층)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83년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과 1986년 보건학과와 보건과학대학 승격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1991년 보건과학대학이 매지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원주의과대학의 교수연구실, 각종 연구시설, 학부 및 대학원 강의실, 학생회실, 학생동아리방, 학생휴게 라운지 및 행정사무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5층에 위치한 WISE교육혁신센터는 시뮬레이션룸, 다목적 술기 실습실, CPX룸, 팀학습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표준화 환자 활용 교육, 팀 기반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임상술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술기능력 배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진리관

진리관은 연면적 3,66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993년 5월에 완공되었으며,

이후 2004년 1월 증축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230㎡ 규모의 건물로 변모하였다.

진리관에는 강의실, 어학실습실, 실습준비실, Multi Conference Room, 간호학 실습실, 간호대학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 여성간호센터, 의학도서관 등이 있다. 의학도서관은 1층 문헌정보실, 2층 정보검색실 및 세미나실로 되어 있고, 3층에는 총 186석 규모의 자유열람실이 있다. 5층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는 2021년 개소하여 4차 산업(AI, 로봇틱스,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등) 연구 및 국책사업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및 대여하고 있다. 현재 연세 loMT 모니터링센터, 생의학빅데이터과학센터, 재생의학연구소, 국민건강빅데이터임상연구소, 고압의학연구소, 유전체코호트 연구소, 미토콘드리아연구소, 자동차의과학연구소, 창업회사인 커넥티드인과 SMD솔루션이 위치하고 있고, 가상현실시뮬레이션랩이 2024년 2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루 가 홀

1993년 5월 연면적 625㎡ 400여석 규모의 강당으로 준공되었다. 첨단음향설비 시스템, 대형 액정비전, 무대조명이 설치되어있으며 채플, 학술강연, 동아리공연 및 각종 교내외 행사 및 발표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Anderson학사(원의1학사)

Anderson학사는 1989년 8월에 완공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387㎡ 규모로 총 24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층별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하 층에 편의점, 기숙사 열람실, 컨퍼런스 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Judy학사(원의2학사)

Judy학사는 1997년 10월에 완공된 건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651㎡ 규모로 총 16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층별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1층에 체력단련실, 학생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Murray학사(원의3학사)

Murray학사는 2019년 2월에 완공된 건물로 지상 8층 연면적 5,840㎡ 규모로 총 2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각 호실에는 개별 샤워실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층별로 세탁실, 조리실, 휴게공간, RC-Room 등의 시설이 있으며, 장애학생과 방문 가족을 위해 장애인실과 가족실을 갖추고 있다. 교직원, 동문, 학부모 등 많은 분의 기부를 통해 건립된 기숙사로 모든 기부자의 메시지를 각 호실과 주요시설에 부착하여 기부자를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일산사료전시관

일산사료전시관은 원주지역의 기독교 복음·의료 선교를 위하여 미국 북감리회가 1918년에 건립하였다. 지상 2층(옥탑), 지하 1층의 건축 면적은 113㎡, 높이 6.44m이다. 구조는 벽돌을 화란식으로 쌓은 조적조이며, 층간 바닥 및 지붕은 목조이다. 1927년까지 선교사 사택이었고, 1928년부터 1940년까지 성경 공부방, 신도 숙소, 유치원, 의무교육자 수양회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 외부 강사 휴게실, 학장·병원장 사택 등으로 활용되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원주의과대학 관련 사료를 보관·전시하는 일산사료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원주 기독교 선교의 발상지이자 서구식 의료, 교육, 생활, 건축 등 근대문명의 유입 통로였던 원주시 일산동 일대에 세워졌던 많은 서구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근대화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2017년 1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쥬디기념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설립자인 쥬디 목사의 이름을 딴 쥬디기념관(신관, 연면적 29,768.㎡)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1994년 2월 모자보건센터 상층부 6개 층을 증축함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쥬디관 지하 1층에는 방사선종양학과, 중앙공급실, 영양팀이 위치해있으며, 1층에는 원주세브란스헬스체크업, CT 촬영실, MRI 촬영실 등이 위치해있다. 2층에는 산부인과, 분만실, 초음파실, 22병동, 27병동이 위치해 있고, 3층에는 수술실과 외과중환자실,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이 위치해있으며, 5층부터 11층까지는 병동, 인공신장실, 신경외과중환자실, 내과중환자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연면적 8,993㎡)은 2002년 착공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응급센터로 국내 응급의학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해왔으며, 임상특성화센터 개소 등 증축을 거듭하여 2007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지하 1층에는 진단검사의학과, 1층과 2층에는 응급실과 응급중환자실이 위치해있고, 3층에는 소화기내과 외래, 내시경실, 통원수술센터, 권역센터 회의실, 5층에는 56병동, 6층에는 혈관조영실 및 심장초음파실, 7층에는 응급병동이 위치해있으며 옥상에는 헬리패드가 설치되어 있다.

권역외상센터

‘2012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장기손상,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 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4년 9월 완공한 권역외상센터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받았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616㎡) 규모이며, 다학제외상진료실, 고압산소치료센터, 외상응급실, 외상병동(40병상), 외상중환자실(20병상),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외래센터

‘원주의료원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착공된 외래센터는 기존 노후화된 외래진료공간을 개선하고 원스톱 통합진료서비스를 통해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2015년 7월 오픈하였다. 외래센터는 연면적 14,541㎡(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써, 1층에는 중앙로비와 진료협력센터, 원무팀, 외래약국 등이 위치해 있고, 2층~6층까지 외래 진료실과 부족검사실 및 항암 낮 병동이 위치해있으며, 7층에는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정보팀, 각 회의실이 위치해있다.

문창모기념관

초대 병원장인 문창모 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된 문창모기념관은 연면적 6,16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지상 1층은 핵의학과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은 치과 및 교수연구실, 3층은 재활병동과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5층은 처치전담팀, 직원휴게실 등이 위치해있다.

후 생 관

내원객들의 편의시설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1990년 착공하여 1991년 완공된 후생관은 원주의료원 재창조사업'을 통해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2015년 7월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후생관은 연면적 9,251㎡에 직원식당과 푸드코트, 신협, 편의점 및 각종 임대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옥상에는 선별진료소, 내원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종 합 관

종합관은 비진료부서 공간의 원의 이전을 통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7년 착공되어 2020년 완공되었다. 연면적 9,468㎡에 11층 규모로, 지하 1~4층은 기계실, 주차장, 창고, 1층은 임대매장, 2~3층은 행정부서 및 회의실, 4~7층은 교수연구실 및 회의실이 위치해 있다.

서미감관

강원 남부권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서미감병원'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재탄생된 서미감관은 연면적 1,93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 1층은 검체 보관실, 1층은 노동조합, 약제팀, 사회사업팀, 2층은 감염관리실, 가정가호과 등이 위치해있고, 3층은 인체유래물은행, 강원남부 해바라기센터, 4층은 진료예약센터, 임상연구간호사실이 위치해있다.

다. 국제캠퍼스

자유관 A,B

자유관 A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78평의 건물로서 학부대학과 글로벌인재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 강의실과 컴퓨터실, 교수연구실이 배치되어 종합강의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식을 고려한 로비 공간과 전시실 및 156명 규모의 대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유엔 직속 기구인 UNOSD(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들어서 있다.

자유관 B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51평 규모로서 240명 규모의 대강의실과 강연, 연회,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에 활용 가능한 이벤트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물리·화학·생물 과목을 위한 학부실험실, 기기실, 교수연구실, 세미나실로 이루어져 첨단 교육·연구의 터전 역할을 하고 있다.

종 합 관

종합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182평의 건물로서 각종 문화체육행사 장소 및 행정본부로 활용되고 있다. 1층에는 237평 규모의 피트니스센터, 건강센터가 자리잡고 있고 2층에는 음악실 외에도 다목적운동실, 요가실, 스쿼시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남·녀 샤워실과 탈의실을 완비하여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3층에는 체플 및 각종 행사, 스포츠 활동

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융합과학기술원, YSP추진본부, K-바이오랩허브사업단 등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4층에 총장실, 국제캠퍼스부총장실,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등이 자리잡고 국제캠퍼스 본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961평의 건물로 2013년 4월에 오픈했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국제캠퍼스의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는 국제캠퍼스 학문의 요람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출입구 및 커뮤니티 PC, 사물함 등이 위치한 로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 Media Commons와 3층 그룹스터디룸, 4층은 창의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다. 5, 6층 자료 열람실 및 서가 등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7층에는 컨퍼런스룸, 세미나실, 카페 등이 들어서 다양한 행사 및 국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지하1층 Y-플라자에는 식당, 커피숍, 편의점, 문구점, 미용실, 안경점, 우편취급국, 국제캠퍼스 학생위원회, 동아리방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다.

지혜관 A,B,C

지혜관 A는 지상 2층, 연면적 222평 규모의 전면 유리 건물로서 2024년 11월 양자컴퓨팅센터로 재탄생하였다. 지혜관 B는 지상 1층, 연면적 76평 규모로 국제캠퍼스 연구를 지원하는 공동기기가 자리잡고 있다. 지혜관 C는 지상 1층, 연면적 102평 규모로 디자인팩토리코리아(Design Factory Korea) 프로토타이핑샵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리관 A,B,C,D

진리관 A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20평으로 393석의 대규모 계단식 강의실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즈의 강의실과 각종 세미나실, 다수의 교수연구실이 배치되어 종합강의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리관 B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98평으로 언더우드국제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학생 활동과 수업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대학과 핀란드 알토대학이 손을 잡고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핀란드식 창의교육 플랫폼인 디자인팩토리코리아(Design Factory Korea)가 구축되어 있다.

진리관 C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12평으로 인공지능대학 IT융합공학과가 위치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각종 실험실습실·보조실이 있으며, 또한 각층에 교수연구실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연구를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진리관 D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95평의 약학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습약국, 각종 실험실 등이 있다. 또한, 진리관 D에는 종합약학연구소가 들어서 있으며, 2018학년도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바이오헬스 분야 지역거점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도학사 A, B, C, D, E, F, G

국제캠퍼스에서는 생활과 학업이 하나가 되는 Residential College system을 도입,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스포츠, 외국어,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계획에 걸맞게 지어진 국제캠퍼스 기숙사는 지

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A,B,C 3개동과 최고 13층 규모의 건물 D,E,F,G 4개동, 총 7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A,B,C동은 2,678명, D,E,F,G동은 3,446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 객실에는 개별 냉난방과 화장실, 샤워실이 완비되어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과 고급 가구를 구비하여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크리스틴 채플(C.S Kang Chapel)

지상 1층, 연면적 217평으로 연세대학교 건학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다. 간호학과 67학번 강정숙(Christine Kang) 동문의 기부금으로 건립되어 크리스틴 채플로 명명하였다.

저에너지 친환경실험주택(Green Home Plus)

저에너지 친환경실험주택은 지상 4층, 연면적 563평으로, 1층에는 사무공간, 2~4층에는 실험용 공동주택 5세대가 교원숙소로 사용 중에 있다.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하여 산·학·연 합동으로 추진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의 연구 성과물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공동주택에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기술을 적용하여 건축한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포스코 그린빌딩(POSCO Green Building)

포스코 그린빌딩은 포스코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85평 규모로 건축된 친환경 빌딩이다. 지상 1층에는 전시실, 공동주택 기준모델, 세미나실, 1층 중층 및 2층에는 에너지 절감 공동주택, 모듈러 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태양광, 지열 등 110여종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건축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각종 연구 및 사업의 성과를 내는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다.

국제캠퍼스 기념관(International Campus Memorial Hall)

국제캠퍼스 기념관은 지상 4층, 연면적 389평으로 건축된 국제캠퍼스의 건립과 발전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지상 1층에는 국제캠퍼스 홍보전시실이, 2층·3층·4층에는 산학협력단지 사업에서 유치한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파워플랜트(Maintenance Center)

파워플랜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749평 규모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전기실, 방재실, 네트웍, UPS실, 소화가스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제캠퍼스의 보안, 전기, 수도 냉난방 등 캠퍼스 관리 기능과 각종 유·무선 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다.

에스엘바이전산학협력관

에스엘바이전산학협력관은 연세대학교와 에스엘바이젠(SL Bigen)이 세계적 수준의 의생명학 융합연구소 설립을 위해 2015년 4월 협약서를 체결하고 동년 12월 신기술창업집적단지 승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16년 10월 건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 2월 착공식을 거행하면서 지어졌다. 2019년 교육부의 교지이용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협약을 변경하여 YSLI 건립 및 연구 약정서를 2019년 7월에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

처 2020년 4월 에스엘바이젠산학협력관이 완공되었으며, 약학대학과의 연구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대 옆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10,127.22㎡(약 3,063평)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약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 c-GMP시설을, 3·4층에는 약학대학과의 공동연구실, 산학협력 연구실 및 교육·연구지원시설을 배치해 최첨단 연구시설과 스마트한 사무공간을 구축하였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2020년 10월 공모 선정되어 국제캠퍼스에 유지하였으며, 인천시 재원의 건축물로 2023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되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산업 환경 변화 대응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연구소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바이오공정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연간 약 2천여명의 전문인력 배출을 목표로 한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6,598.16㎡(약 1,99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연결통로, 지상 1층에는 강의실, 휴게라운지, 지상 2층에는 강사실, 교육실, 사무실, 지상 3-4층에는 동물세포배양실, 미생물발효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는 K-NIBRT 사업 협력 및 바이오 관련 국내외 우수 기업, 기관 유치를 통해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캠퍼스 조성사업비로 건립되었다.

2023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2월 준공되었으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18,101.70㎡(약 5,475평),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에는 강당, 로비, 회의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 강의실, 교수연구실, 지상 3-5층에는 GMP시설, 배양실, 분석실, 외부기업 유치 공간, 지상 6층에는 휴게라운지 등이 있다.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을 통한 Yonsei Science Park 협력 기반이 구축되었다.

양자컴퓨팅센터(Quantum Computing Center)

2024년 10월,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양자컴퓨터인 “IBM 퀀텀시스템원”(127 Qubit)의 설치를 위해 지혜관A 건물이 리모델링되어 2025년 1월 양자컴퓨팅센터가 구축되었다. 양자컴퓨팅센터는 총 면적 735.47㎡(약 222평)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초전도 방식 양자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초저온 냉각시설과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자컴퓨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Viewing Zone도 마련되어 있다. 지상 2층은 양자컴퓨터의 유지 관리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공간으로, 양자컴퓨팅사업 관련 조직들이 위치하고 있다.

양자연구동(Quantum Research Complex)

양자연구동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2,205.21㎡(약 667평) 규모의 혁신적인 공간으로, 양자컴퓨팅 연구 협력을 위한 산학연병 글로벌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에 완공된 이 연구동은 양자사업단의 핵심 사업 추진 조직이 자리하고 있으며, 양자컴퓨팅 분야의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기관의 기업 입주 공간과 각종 행사

및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공간, 회의실, 대형 강의실과 소형 강의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라. 삼애캠퍼스

배민수기념관(현 삼애교회)

우리나라 농촌운동의 선구자이며,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고 배민수 목사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이 기념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건평 120.17평, 연건평 236.24평으로 1980년 12월 준공되었다. 2006년에는 본 기념관을 예배실, 친교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삼애교회로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2층 1실을 배민수기념전시실로 새롭게 조성하여 2006년 9월 17일 삼애교회 창립 및 배민수기념전시실로 재개관하였다.

청소년 체육시설

삼애캠퍼스 내 청소년 체육시설은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의 공사를 통해 총면적 39,264평에 축구·럭비 겸용구장(105m×75m)과 야구장(외야 좌우측 거리 95m, 센터거리 110m)이 국제규격의 경기장으로 조성되어있다.

천문대

삼애캠퍼스 주변은 서울근교에서 자연을 관측하고 연구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1979년 12월 천문학과를 주축으로 지상 2층, 연면적 98.41평의 연세대학교 천문대 일산관측소(Goto 61cm 반사망원경)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실습장 및 인근지역 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관 및 이사회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 71

이사회 / 108

법 인 / 10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1957. 1. 5. 제정

2024.11. 28. 제 12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둔다. <개정 2013.10.3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다만, 제1조, 제25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및 본 조의 단서는 변경할 수 없다. <본문개정 2008.11.20., 2012.10.23.>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재단법인 세브란스 의과대학 및 원주기독병원이 소유하였던 재산은 별도 회계로써 이를 경리한다. 공동 사용되는 운영비의 비율 및 특히 지정함이 없이 추가되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추가된 재산의 소속과 용도는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③ 이 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조

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증 또는 기부자로부터 용도의 지정이 있을 때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기본재산은 수익용이라 할지라도 매도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다른 재산으로 대체 충당하여 원본소비를 하지 않는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10.23.>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의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총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10.23., 2014.2.7.>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08.11.20.>

제13조 ~ 제17조 삭제 <2008.11.20.>

제18조 ~ 제21조 삭제 <1986.12.9.>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개정 2008.11.20.>

- ②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08.11.20.>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2024.4.25.>
- ② 삭제 <개정 2021.7.1.>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4.23., 개정 2012.10.23., 2021.7.1.>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기독교계 2인
 2.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3. 총장(예겸이사) 1인
 4. 사회유지 4인
 5. 개방이사 3인
- [전문 개정 2011.11.1.]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06.2.24.>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24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24조의4(개방감사의 선임)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인사(이하 "개방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다만, 개방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개정 2023.12.7.>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및 감사와 이 법인에 소속되는 전임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하며,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2.25., 2008.11.20.>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0.2.25.>
- ④ 이 법인에서 봉급을 받는 자는 이사 또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1.>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2.25.>
-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2000.2.25., 2013.10.31.>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08.11.20., 개정 2021.11.25.>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2.24.>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6조의2 삭제 <2005.9.15.>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 법인과 관계가 있는 자가 이 법인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국외로 여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이사가 될 수 있다. 다만, 명예이사는 이사 수에 산입하지 않고 표결권도 없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을 한다.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
-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총장 및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대학교의 교원 임용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26.〉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이 법인에 합병 또는 기증에 따른 지정된 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의 회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2.25.〉

③ 이사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0.23.〉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의 회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1.20.>

제35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개정 2020.10.22.>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업
2. 창고금융업
3. 축산업 및 임산업
4. 의료용품 도매업, 물품매도 약약서(OFFER) 발행업
5. 공원묘지 및 영원봉안사업
6.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개정 2011.11.1.>
7. 장례식장 영업 <신설 1995.10.13.>
8. 학원운영업 <신설 2003.11.20.>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개정 2003.11.20.>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개정 2007.4.9., 2012.10.23., 2014.4.29.>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개정 2014.2.7., 2014.4.29.>
2. 연세대학교 봉래빌딩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개정 2014.2.7., 2014.4.29.>
3. 연세대학교 명일빌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8 <개정 2014.2.7., 2014.4.29.>
4. 연세대학교 익스텐션학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570 <개정 2011.3.15., 2014.4.29., 2023.12.7.>
5.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29 <개정 2000.11.13., 2014.2.7., 2014.4.29., 2021.11.25.>
6.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29 <개정 2011.11.1., 2014.2.7., 2014.4.29.>
7. 연세대학교 텍소공원묘지 : 경기도 양주군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849번길 126 <개정 2014.2.7., 2014.4.29.>
8. 주식회사 연세유업 :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음봉로 829 <개정 2014.4.29.>
9.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설 1995.10.13., 개정 2014.2.7., 2014.4.29.>

10.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신설 1998.3.24., 개정 2011.3.15., 2014.2.7., 2014.4.29.>
11. 연세대학교 연세샘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설 1995.10.13., 개정 2014.2.7., 2014.4.29.>
12. 주식회사 와이에스피씨(YSPC)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개정 2002.2.7., 2014.4.29.>
13.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 <신설 2000.11.13., 개정 2006.2.24., 2014.2.7., 2014.4.29., 2017.7.11., 2023.12.7.>
14.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7 <신설 2000.11.13., 개정 2014.2.7., 2014.4.29., 2019.10.24.>
15.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용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65 <신설 2002.2.7., 개정 2014.2.7., 2014.4.29.>
16. 연세대학교 ELP학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570 <개정 2004.3.30., 2014.2.7., 2014.4.29., 2023.12.7.>
17. 연세대학교 대신빌딩 :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65 <신설 2011.3.15., 개정 2014.2.7., 2014.4.29.>
18. 연세대학교 강서빌딩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0길 8 <신설 2017.2.3., 개정 2017.10.26.>
19. 삭제 <2024.11.28.>
20. 주식회사 에비슨케어 :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65 <신설 2020. 12. 15., 개정 2023.4.27.>
21.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83-135 <신설 2020. 12. 15.>
22.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설 2022. 10. 6.>

제38조 삭제 <2014.4.29.>

제39조 삭제 <2014.4.29.>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0.>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 기독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개정 2008.11.20.>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11.20.>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개정 2018.4.26.>

제43조(임용) ①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한다. <신설 2000.2.25., 개정 2011.11.1>

③ 총장을 제외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하는 보직자와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아직 취임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제59조의 징계처분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1., 2018.4.26., 2023.12.27.>

1. 근무 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10.23.>

2. 급여 :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근무 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3과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부총장, 의료원장(원주연세의료원장 포함), 학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하되, 부총장, 의료원장(원주연세의료원장 포함)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학장 및 대학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부총장, 의료원장(원주연세의료원장 포함)은 보직임기 개시 2년 후 필요시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체인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총장 결위시 선임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체인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8.1.18., 2019.10.24., 2020.10.22.>

⑤ 총장을 제외한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8.4.26.>

⑥ 삭제 <2019.7.11.>

[제목개정 2018.4.26.]

제43조의2(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객원교수,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학연교수, 겸임교수, 임상교수, 강사, 연구강사, 임상강사, 외국어 어학 객원교수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2012.10.23., 2013.10.31.,

2015.10.29., 2019.7.11., 2020.12.15., 2023.1.26.)

- ② 제1항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2.11.16., 2013.10.31., 2019.7.11.>

[제목 개정 2002.11.16., 2013.10.31.]

제43조의3(교원인사규정) ①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6.>

- ②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대학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본조 신설 2002.11.16.]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18.4.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7.21.>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국내외의 타 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를 목적으로 출장하게 된 때 <개정 2012.10.23.>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3.10.31.>
- 6의2.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에 근무하게 된 때 <신설 2020. 12. 15.>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11.20., 2012.10.23., 2017.2.3.>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6.7.19.>
8. 관찰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8.11.20.>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13.10.3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13.10.31.>
11. 이 정관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때 <신설 2006.2.24., 개정 2013.10.31.>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2.3.>
13.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신설 2012.10.23., 개정 2013.10.31., 2017.2.3., 2018.4.26.>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따로 정한다.
5. 제44조 제6호와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2에 의한 휴직기간은 최대 3년이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6의2. 제44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7.19.>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31.>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0.31.>
9. 제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0.31.>
10. 제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06.2.24., 개정 2013.10.31.>
11. 제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2.3.>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1.>

-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24.>
- ③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는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1.16.>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6.7.19.>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7.19.>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7.19.>
- ⑤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목 개정 2002.11.16.]

제48조의2 삭제 <2020.1.30.>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2013.10.31.>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2012.10.23.>

제50조의2(명예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 지급제도 실시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되,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제50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개정 2002.11.16.>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대학교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1.16.>

[제목 개정 2002.11.16.]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11.16.>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3., 2018.4.26.>
2. 총장이 부총장, 의료원장(원주연세의료원장 포함), 대학원장,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15., 2018.1.18., 2019.10.24., 2020.10.22.>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목 개정 2002.11.16]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그 외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0., 2015.2.10., 2016.7.19., 2018.1.18., 2019.7.11., 2020.4.23., 2020.10.22., 2020.12.15.>

-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2.11.16.>

[제목 개정 2002.11.16.]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02.11.16.>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2. 11.16.>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2. 11.16.>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 개정 2002.11.16.]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2.11.16.>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1.16.>

[제목 개정 2002.11.16.]

제56조 ~ 제58조 삭제 <2002.11.16.>

제2절 징계 <개정 2002.11.16.>

제5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보하는 보직자와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아직 취임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의 경우,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1.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1.30.>
-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본조 신설 2002.11.16.]

[종전 제59조는 제59조의2로 이동 <2002.11.16.>]

제59조의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19.>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2022.3.10.>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7인 <신설 2016.7.19., 개정 2022.3.10.>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신설 2016.7.19., 개정 2022.3.10.>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4.28.>

- ③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7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9조에서 이동 <2002.11.16.>]

[제목 개정 2016.7.19.]

제59조의3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

는 지체 없이 제59조의2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59조의2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제59조의2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0.1.30.]

제60조 삭제 <1991.6.10.>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

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19.>

제65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시행 2019.10.17.>

- ②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2019.7.11.>

- ④ 임용권자가 제3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5., 2018.4.26., 2019.7.11.>

- 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1.>

제66조 삭제 <2019.7.11. 시행 2019.10.17.>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도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20., 2012.10.23., 2015.7.21., 2018.7.12., 2020.10.22. 2021.11.25.>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 간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6.7.19.]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삭제 1991. 11. 25.>

제69조 ~ 제82조 삭제 <1991.11.25.>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별정직, 일반직, 시설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9.15., 2017.4.2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7.2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7.21.>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사무직원이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15., 2017.4.25.>
- ③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면 퇴직한다. <개정 2005.9.15.>

제84조(임용) ①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행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9.15., 2020.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사무직원(부속병원의 직원을 포함한다)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9.15., 2013.10.31., 2018.4.26.>

제85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5.>

제86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대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는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15., 2013.10.31.>

제8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5.>

제88조(징계) ① 삭제 <개정 2005.9.15., 2013.10.31., 2020.10.22.>

② 사무직원의 징계처분은 이사장이 시행하고,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이사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단, 대학교 사무직원의 징계처분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5.9.15., 2013.10.31., 2020.10.22.>

③ 삭제 <신설 2013.10.31., 개정 2019.7.11., 2019.10.24., 2020.10.22.>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법인본부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본부장을 두며, 법인본부장 산하에 법인사무처, 수익사업처를 둔다. 법인의 감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두고,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성장전략실을 둔다. 법인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보하고 실장 및 처장은 국장으로 보한다. 단, 이사장의 승인이 있을시 실장 및 처장을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3., 2018.7.12., 2019.1.22., 2023.12.7., 2023.12.27.>

② 이 정관 제37조 각 호의 수익사업체는 수익사업처장의 관장 하에 두고, 각 수익사업체의 장은

차장 이상으로 보한다. 단, 같은 조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제21호의 수익사업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6.23., 2017.10.26., 2019.1.22., 2020.12.15., 2021.4.29.>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와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10.28.]

제2절 대학교

제90조(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개정 2000.11.13., 2016.2.26., 2019.7.11., 2021.4.29.>
- ④ 제3항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된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15.>
1. 교학부총장 : 교무, 학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9.>
 2. 의무부총장 : 의료원에 관한 사항
 3. 미래캠퍼스부총장 :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15., 2019.7.11., 2019.10.24.>
 4. 행정·대외부총장 : 일반행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00.11.13.>
 5. 국제캠퍼스부총장 : 국제캠퍼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26., 2020.4.23.>
 6. 연구부총장 : 대학원, 연구, 산학협력, 창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2.>
- ⑤ 총장 유고시에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1.13.>

제90조의2(총장실) 총장과 부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총장실을 두고, 실장은 교수, 부교수, 국장으로 보한다.

[전문 개정 2012.10.23., 2018.1.18., 2020.4.23.]

[제목 개정 2020.4.23.]

제90조의3(본부장) [본조 삭제 2008.10.28.] [본조 신설 2016.7.19.] [본조 삭제 2020.10.22.]

제90조의4 (총장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서 고등과학원, 윤리인권위원회, 글로벌사회공헌원, 고등교육혁신원, 융합과학기술원을 둔다. <개정 2018.1.18., 2018.10.25., 2020.4.23.>

- ② 제1항의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0.29.]

[전문 개정 2017.4.25.]

제90조의5(교육조직) ① 대학교에 대학, 대학원, 부속 교육기관을 둔다.

- ② 대학, 대학원, 부속 교육기관의 설립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7.15.]

제91조(학장, 대학원장) ① 각 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본부행정조직) ① 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실, 교무처, 입학처, 학생복지처, 연구처, 총무처, 시설처, 학술문화처, 정보통신처, 대외협력처, 국제처(이하 이 조에서 "본부행정조직"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31., 2018.1.18., 2020.4.23. 2022.1.18.>

② 각 본부행정조직에 실장, 처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③ 각 본부행정조직에 실장,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두며, 각 부기관장은 교수, 부교수,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④ 각 본부행정조직에 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교수, 부교수,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7.15.]

제92조의2(국제캠퍼스 행정조직) ① 국제캠퍼스 사업추진, 행정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대학교에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를 둔다. <개정 2012.10.23., 2016.2.26.>

② 삭제 <2012.10.23.>

③ 국제캠퍼스 행정조직의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2.15.>

[전문 개정 2010.7.15.]

[제목 개정 2011.2.15.]

제93조(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조직) ① 일반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및 각 대학에 행정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원주의과대학교와 원주간호대학은 제9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02.5.18., 2004.12.24., 2010.7.15., 2022.7.7.>

② 각 대학원의 부원장 및 각 대학의 부학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행정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5.18., 2004.12.24., 2010.7.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0.7.15.]

제94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5.>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 및 보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5.>

제95조 삭제 <2008.10.28.>

제96조(의료원) ① 연세대학교 산하 보건, 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행정을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고, 의무부총장이 겸직한다.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에 원목실, 감사실, 기획조정실, 사무처, 의과학연구처, 대외협력처, 제중원보건개발원, 인재경영실, 디지털헬스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원 본부행정조직"이라 한다)을 두며, 부속기관으로 의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3.10.31., 2015.2.10., 2016.10.27., 2017.4.25., 2020.1.30., 2020.12.15., 2021.4.29., 2021.11.25.>

- ④ 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또는 원장을 두고, 의학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한다. 단,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은 교원 또는 원목으로 보한다. <개정 2015.2.10., 2016.10.27.>
- ⑤ 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 부원장, 소장, 국장 또는 단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31., 2015.2.10., 2016.10.27.>
- ⑥ 의료원 본부행정조직 및 부속기관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6.>
- ⑦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병원을 두고, 각 병원에 전문진료기관 및 의원을 두되, 신촌지역의 의과대학 부속 대표병원인 세브란스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14.2.7.>
 1.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개정 2020.4.23.>
 - 가. 전문진료기관 : 재활병원, 심장혈관병원, 안과병원, 어린이병원 <개정 2014.2.7., 2019.7.11.>
 - 나. 의원(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 헬스체크업의원, 헬스체크업치과 의원 <개정 2015.12.17., 2018.4.26., 2020.4.23., 2020.7.7.>
 2.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언주로63길 20, 언주로63길 29, 도곡로 227, 도곡로 235, 도곡로 237, 도곡로33길 5 <개정 2020.4.23., 2021.11.25.>
 - 가. 전문진료기관 : 척추병원, 치과병원, 암병원, 심뇌혈관병원 <개정 2016.2.26.>
 3. 치과대학 치과대학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개정 2020.4.23.>
 4.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개정 2020.4.23.>
 5. 삭제 <2015.4.28.>
 6. 의과대학 연세암병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설 2014.2.7., 2020.4.23.>
- ⑧ 병원, 전문진료기관, 의원에는 병원장, 원장, 소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⑨ 병원, 전문진료기관, 의원의 장을 보좌하는 부원장, 진료부장, 부소장, 부실장,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한다.
- ⑩ 병원, 전문진료기관, 의원에 진료부서, 진료지원부서, 행정부서를 두며, 진료부서의 장은 교원으로 보고, 진료지원부서 및 행정부서의 장은 교원 또는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단, 병원 원목실장은 원목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6.>
- ⑪ 진료부서, 진료지원부서의 장을 보좌하는 부실장, 차장,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 또는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6.>
- ⑫ 제4항 내지 제11항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의료원 규정으로 따로 정하되,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2.3.>

[전문 개정 2010.7.15.]

- 제96조의2(미래캠퍼스)** ① 대학교 산하 원주지역의 대학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기 위하여 미래캠퍼스 조직을 둔다. <개정 2019.7.11.>
- ② 미래캠퍼스부총장은 총장의 명을 받고 미래캠퍼스의 행정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11.>
 - ③ 미래캠퍼스 행정조직으로 원주교목실, 원주기획처, 원주교무처, 입학홍보처, 원주학생복지처, 원주연구처, 원주총무처를 두고, 각 행정조직에 실장, 처장을 둔다. <개정 2012.2.7.,

2019.7.11.〉

- ④ 각 행정조직의 실장, 처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하되, 원주총무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 ⑤ 각 행정조직에 실장,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 ⑥ 각 행정조직에 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한다.
- ⑦ 미래캠퍼스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9.7.11.〉
- ⑧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7.15.]

[제목 개정 2019.7.11.]

제96조의3(원주연세의료원) ① 미래캠퍼스 산하 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행정을 조정 통합하기 위하여 원주연세의료원을 둔다. 〈개정 2019.7.11., 2019.10.24.〉

- ② 원주연세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연세의료원장을 두고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부터 위임된 원주연세의료원의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7.11., 2019.10.24.〉
- ③ 원주연세의료원에 감사실, 기획조정실, 의료정보실, 대외협력실, 원목실, 의과학연구처, 교육혁신처, 행정국(이하 이 조에서 "원주연세의료원 본부행정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11.1., 2016.2.26., 2017.2.3., 2019.1.22., 2019.10.24., 2020.10.22., 2021.11.25.〉
- ④ 원주연세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국장을 두고,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단, 원목실장은 교원 또는 원목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19.10.24.〉
- ⑤ 원주연세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는 실장, 처장,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실장,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19.10.24.〉
- ⑥ 원주연세의료원 본부행정조직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19.10.24.〉
- ⑦ 대학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2.7.7.〉
- ⑧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의학도서관, 중앙연구실, 의사학자료실과 각 센터를 두며, 관장, 실장 및 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1.11.1., 2013.10.31., 2022.7.7.〉
- ⑨ 원주연세의료원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둔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20) 〈개정 2013.2.5., 2019.10.24., 2020.4.23., 2023.12.7.〉
- ⑩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는 병원장을 두고 병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 및 진료부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3.2.5., 2024.2.6.〉
- ⑪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는 적정진료관리실, 임상연구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각 행정부서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차장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1.1., 2013.2.5., 2019.1.22., 2023.1.26.〉
- ⑫ 진료각과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료지원부서로 교육수련부, 간호국 및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진료부서의 각 부장 및 과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하고 행정부서 및 진료지원부서의 부장, 국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부설기관으로 각 센터를 두며, 센터에 소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1.1.〉
-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하되,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의

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2.4.28.>

[전문 개정 2010.7.15.]

[제목 개정 2019.10.24.]

제96조의4(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7.>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5.>

③ 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04.2.14.]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신설 2008.11.20.>

제96조의5(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6(평의위원회의 구성)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조교 및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9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 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0., 2021.11.25., 2022.1.18.>

1. 교원 6인

2. 직원 3인

3. 학생 2인 <개정 2021.11.25., 2022.1.18.>

4. 조교 1인 <개정 2022.1.18.>

5. 동문 3인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18.>]

6. 학부모 2인 <신설 2015.2.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18.>]

7.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개정 2015.2.10.>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8.>]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7(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8(평의위원회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6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 평의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2022.1.18.>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9(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8.11.20.]

제96조의10(평의위원회 운영규정) 평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1.20.]

제4절 정원 <개정 2008.11.20>

제97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의 사무직원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5., 2017.2.3.>

제8장 보칙

제9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제9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청렴의무 등) 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8., 2022.7.7.>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28., 2022.7.7.>

③ 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2.7.7.>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7.7.>

[본조 신설 2022.3.10.]

[중전 제100조는 제101조로 이동 <2022.3.10.>]

제101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1957년 1월 5일)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 백낙준(白樂濬)	이사 유형기(柳澄基)
동 이원철(李源喆)	동 에드워드 디 베이커(Edward D. Baker)
동 김용우(金用雨)	동 전필순(全弼淳)
동 에드워드 아담스(Edward Adams)	동 김광우(金光祐)
동 찰스 에이 싸우어(Charles A. Sauer)	동 권연호(權連鎬)
동 이용설(李容畵)	동 사무엘 에취 모펠(Samuel Hugh Moffett)
동 원일한(元一漢)	동 켄네스 스칼(Kenneth Scott)
동 김명선(金鳴善)	동 조중환(曹重煥)
동 윌리엄 이 쇼(William E. Shaw)	동 파울 에스 크레인(Paul S. Crane)
동 김상권(金尙權)	동 최재유(崔在裕)
동 에프 제이 머리(F. J. Murray)	동 박용래(朴容來)
동 정기섭(鄭起燮)	동 전희철(田熙哲)
동 안광국(安光國)	동 헬렌 피 매켄지(Helen P. Mackenzie)
동 발바라 모쓰(Barbara Moss)	
감사 김영찬(金永燦)	감사 안동원(安東源)

[제100조에서 이동 <2022.3.10.>]

부칙

- ① (당초시행일) 이 정관은 195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정관은 196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③ (예외규정) 본 정관 시행당시(1957년 1월 5일) 재직 중인 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있다.
- ④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및 변경금지 조항) 본 정관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⑤ (세칙의 규정)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1965. 11. 4. 시행)

부칙

- ① 이 정관은 197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 및 제5조 및 제44조 중 개정된 사항에 대한 시행은 인가일로부터 한다.

부칙(1975. 10. 29. 시행)

부칙(1976. 3. 19.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직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정관 제4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면 퇴직한다.
- ③ (직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직원의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0. 2. 13. 시행)

부칙(1980. 3. 28.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 재직중인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 11. 22. 시행)

부칙(1984. 6. 12. 시행)

부칙(1984. 12. 8. 시행)

부칙(1985. 5. 22.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7. 3. 25.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특수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재단법인 연세대학교가 설치 경영하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국민학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 (특수학교에 대한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특수학교에 대한 명칭 변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소아재활원 국민학교를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로 한다.

부칙(1988. 4. 7. 시행)

부칙(1989. 4. 4. 시행)

부칙(1989. 11. 24. 시행)

부칙(1990. 5. 28.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

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⑤ (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1991. 11. 25. 시행)

부칙(1992. 3. 13. 시행)

부칙(1992. 5. 23. 시행)

부칙(1992. 11. 23. 시행)

부칙(1993. 6. 17. 시행)

부칙(1993. 9. 6. 시행)

부칙(1993. 12. 7. 시행)

부칙(1994. 2. 25. 시행)

부칙(1994. 8. 31. 시행)

부칙(1994. 11. 8. 시행)

부칙(1995. 2. 22. 시행)

부칙(1995. 10. 13. 시행)

부칙(1996. 3. 1. 시행)

부칙(1997. 7. 23. 시행)

부칙(1997. 11. 11. 시행)

부칙(1998. 3. 24. 시행)

부칙(1998. 11. 13. 시행)

부칙(1999. 5. 21. 시행)

부칙(1999. 11. 26. 시행)

부칙(2000. 2. 25. 시행)

부칙(2000. 5. 30. 시행)

부칙(2000. 11. 13.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연세대학교 재할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2001. 5. 16. 시행)

부칙(2001. 8. 18. 시행)

부칙(2002. 2. 7. 시행)

부칙(2002. 5. 18. 시행)

부칙(2002. 8. 8.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43조 제3항은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4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1. 교수 : 정년
 - 2. 부교수 : 7년
 - 3. 조교수, 전임강사 : 2년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계약임용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부교수의 근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으로 한다.
-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신청에 따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종료일 2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다만,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03. 5. 15. 시행)

부칙(2003. 8. 11. 시행)

부칙(2003. 11. 20. 시행)

부칙(2004. 2. 14. 시행)

부칙(2004. 3. 30.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제23조 제3항 신설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5. 29. 시행)

부칙(2004.12. 24. 시행)

부칙(2005. 3. 15. 시행)

부칙(2005. 5. 20. 시행)

부칙(2005. 8. 16.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2005. 11. 23. 시행)

부칙(2006. 2. 24. 시행)

부칙(2006. 6. 14. 시행)

부칙(2006. 8. 28. 시행)

부칙(2007. 4. 9. 시행)

부칙(2007. 7. 24. 시행)

부칙(2007. 10. 30. 시행)

부칙(2008. 1. 18. 시행)

부칙(2008. 10. 28. 시행)

부칙(2008. 11. 20. 시행)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 및 제5항, 제52조 제1항 제2호는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지원과-4794).
- ② (특수학교 운영규정 및 인사규칙) 재활학교 운영과 사무기구의 설치 및 교직원의 임면(신규 임용·근속승진·대우직원선발·휴직·복직·명예퇴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운영규정 및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수학교 기간제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명의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부칙(2010. 10. 28. 시행)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호, 제10호, 제17호, 제 38조 제4호, 제10호, 제17호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사립대학제도과-461).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은 제17대 총장부터 적용한다.

- ② (임원 선임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재활학교장 임면등) 재활학교 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④ (재임중인 재활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재활학교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정관(제96조의2 제3항 및 제96조의4 제1항)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6항, 제43조의2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제90조의2 개정사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3 제9항부터 제11항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조, 제25조 제6항, 제38조 각 호, 제43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6호,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45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9조, 제84조 제3항, 제86조, 제8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1호 나목, 제96조의3 제8항)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1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8.>
- ②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 조치) 2012년 10월 23일 개정된 제43조 제6항의 시행일은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일(2014년 1월 1일)과 같이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조 제3항, 제37조, 제38조)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 제7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강사에 관한 경과 조치) 2012년 10월 23일 개정된 제43조 제6항의 시행일은 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일(2016년 1월 1일)과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38조, 제39조)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 ① 이 개정 정관(제53조제1항, 제96조의6, 별표5)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정관(제96조제7항제5호)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 정관(제96조 제3항부터 제5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4.28.)

부칙

(시행일)이 개정 정관(별표4)은 201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4조 제1호, 제47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66조의 2)는 2015년 3월 27일부터 소급한 것으로 본다.
- ③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제6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개정 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제43조의 2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은 2015년 3월 1일부터, 학연교수 신설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0조의 4)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0조 제3항, 제4항 제5호, 제92조의 2 제1항, 제96조 제7항 제2호, 제96조의 3 제3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별표5)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89조 제1항, 제2항)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제6호의2)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8조 제2항 제2호·제3호, 제48조 제4항·제7항, 제48조의 2)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③ (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제6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④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⑤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2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⑥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53조 제1항, 제90조 제4항 제1호, 제90조의3)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⑦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59조의2, 제64조 제2항, 제67조의2)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⑧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⑦항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9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6조 제3항·제4항·제5항)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37조, 제44조, 제45조 제11호, 제96조 제12항은 2017년 2월 3일부터, 제96조의3 제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소급적용) 이 개정 정관 중 제97조, 별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4. 25.)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의4는 2017년 4월 25일부터, 제96조 제3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13호·제19호)은 201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18호·제19호, 제89조 제2항, 제96조 제6항·제10항·제11항)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18.)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별표 제5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제43조 제4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90조의2, 제90조의3 제2항, 제92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제90조의4 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6.)

이 개정 정관 중 제31조 제2항 제5호, 제6장 제1절 제1관의 제목, 제43조의 제목 및 동조 제3항·제5항, 제43조의3 제1항, 제44조의 본문 및 동조 제13호, 제48조의2 제2항, 제50조의2, 제52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2항·제3항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제96조 제7항 제1호 제나목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2.)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66조의2, 제89조 제1항)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징계사유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 개정 규정은 2018. 4. 17.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18. 10. 25.)

이 개정 정관(제90조의4 제1항)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22.)

이 개정 정관(제89조 제1항·제2항, 제96조의3 제3항 내지 제7항·제11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25.)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제62조, 별표)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개정내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징계의결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3월 19일 이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2조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 7. 11.)

-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3항, 제90조 제3항·제4항, 제96조의2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7항, 제96조의3 제1항·제2항, 별표는 2019년 7월 11일부터, 제43조 제6항 및 제43조의2 각 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제96조 제7항 제1호 가.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65조 각 항 및 제66조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각 시행한다.
- ② (비전임교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6항 및 제43조의2 각 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등 비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 ③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10. 24.)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43조 제4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제37조 제14호, 제43조 제4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3항, 제90조 제4항 제3호, 제96조의3 제6호·제1항 내지 제6항·제9항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별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 삭제 <2020.1.30.>

부칙(2020. 1. 30.)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48조의2, 제59조 제3항, 제59조의3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제96조 제3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별표는 2020년 1월 30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 (원주연세의료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이후에 첫 임명되는 원주연세의료원장의 임기는 의료원장의 임기와 맞추기 위하여 2024. 7. 31. 종료되며, 보직임기 개시 2년 후 필요시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체인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기 또한 2024. 7. 31. 종료된다.

부칙(2020. 4. 23.)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53조 제1항, 제90조 제4항 제5호, 제90조의2, 제90조의4 제1항, 제92조 제1항, 제96조 제7항, 제96조의3 제9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7.)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6조 제7항)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22.)

① 이 개정 정관(제35조의 2, 제43조 제4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66조의 2,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6호·제1항 내지 제3항, 제90조 제4항 제6호)은 2020. 10. 22.부터 시행한다. 단, 제96조의 3(원주연세의료원) 제3항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부총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이후에 임명되는 연구부총장은 보직 개시 후 필요시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체인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기는 2024년 1월 31일에 종료된다.

부칙(2020.12.15.)

①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 12. 15.부터 시행한다. 단, 제96조의 제3항은 2020. 11. 1.부터 시행한다.

②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 정관 제45조 제6호는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2021.2.4.)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 2. 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29.)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 4.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3항은 2020. 10. 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7.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 중 제37조 제5호, 제66조의2, 제96조 제7항 제2호, 제96조의6, 제96조의8 제1항은 2021. 11. 25.부터, 제25조 제7항은 2021. 12. 25.부터, 제96조 제3항은 2022. 1. 1.부터, 제96조의3 제3항은 2022. 3. 1.부터, 부칙 제3조, 제4조는 2022. 2. 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 개정 규정은 2020.12.22.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제59조 제2항에 대한 예외)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4조(재활학교 교원의 휴복직)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부칙(2022.1.18.)

이 개정 정관(제96조의6, 제96조의 8 제1항, 별표)은 2022. 1. 18.부터 시행한다. 단, 제92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2022.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3.10.)

이 개정 정관(제59조의2, 제100조, 제101조)은 2022. 3. 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4.28.)

이 개정 정관(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96조의3 제13항, 제100조)은 2022. 4.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7.)

이 개정 정관 중 제100조는 2022. 7. 7.부터, 제93조 제1항, 제96조의3 제7항 내지 제8항, 별표는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6.)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22호)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6.)

이 개정 정관(제63조의3)은 2023. 1. 26.부터 시행한다. 단, 제43조의2 제1항, 제96조의3 제11항, 별표는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4.27.)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20호)은 2023. 4. 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7.)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24조의4, 제37조 제4호, 제13호 및 제16호, 제89조 제1항, 제96조의3 제9항)은 2023. 12. 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3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89조 제1항)은 2023. 12. 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6.)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96조의3 제10항, 별표)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14.)

(시행일) 이 개정 정관(별표)은 2024. 3. 1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25.)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23조 제1항 제2호)은 2024. 4. 25.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당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4.11.28.)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37조 제19호, 별표)은 2024. 11.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0.10.28., 2017.2.3., 2018.1.18., 2019.4.25., 2019.7.11., 2019.10.24., 2020.1.30., 2021.2.4., 2021.7.1., 2022.1.18., 2022.7.7., 2023.1.26., 2024.2.6., 2024.3.14., 2024.11.28.>

사무직원 정원

기관 구분	인원
1. 법인본부	42
2. 연세대학교	681
3. 의료원	11,885
4. 미래캠퍼스	172
5. 원주연세의료원	2,340

[별표 2] ~ [별표 5] <삭제 2017.2.3.>

이 사 회

이사회 임원

(2024. 3. 1. 현재)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이 사 장	허 동 수	2024. 4. 4. ~ 2028. 4. 3.	후임 선임 예정
이 사	이 성 희	2021. 6.23. ~ 2025. 6.22.	
"	서 중 석	2022.11. 4. ~ 2026.11. 3.	
"	이 경 루	2024. 2.29. ~ 2028. 2.28.	
"			
"	윤 동 섭	2024. 2. 1. ~ 2028. 1.31.	
"	박 은 관	2021. 6.23. ~ 2025. 6.22.	
"	원 한 석	2021. 6.23. ~ 2025. 6.22.	
"	설 준 희	2022.11. 4. ~ 2026.11. 3.	
"	서 경 배	2022.11. 4. ~ 2026.11. 3.	
"	이 건 춘	2022.11. 4. ~ 2026.11. 3.	개방이사
"	양 일 선	2022.11.18. ~ 2026.11.17.	개방이사
감 사	김 기 황	2023. 8.28. ~ 2025. 8.27.	개방감사, 공인회계사
"	이 인 실	2024. 5.29. ~ 2027. 5.28.	
"	윤 경 식	2024. 8.29. ~ 2027. 8.28.	

법 인

- 법인은 이사회 운영 업무와 각종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관리를 비롯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설치학교인 연세대학교의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수익사업을 개발·운영하는 등 수익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법인에 법인사무처(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재정운영팀), 수익사업처(재산관리팀 및 11개의 수익사업체)와 연세유업(연세우유/연세생활건강), 주식회사 네추럴웨이를, 그리고 이 사장 직속으로 감사실(감사팀)과 미래성장전략실(사업개발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법인본부장 김응식

□ 법인사무처

- 기획조정팀 이사회 관련 업무, 발전기획, 정관 및 규정 관리, 법무, 교원징계위원회
- 행정지원팀 법인 직원 인사관리, 문서 및 인장 관련 업무, 총무
- 재정운영팀 예산, 결산 및 자금관리, 세무(법인세 외)

□ 수익사업처

- 사업개발팀 신규 수익사업 개발, 법인 건축 관련 업무
- 재산관리팀 기본재산 관리, 부동산 등기 및 재산세 업무, 수익사업체 관리 및 지원, 상표권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 수익사업체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통일로 10)에 위치한 (구)세브란스병원 부지에 1993년 12월 29일 준공하여 사무실 및 상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음(대지면적 : 10,443㎡ · 건축면적 : 4,008㎡ · 연면적 : 108,863㎡)

2. 연세대학교 봉래빌딩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은 1984년 6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칠패로 36)에 연면적 20,957㎡(대지면적 : 2,822㎡) 규모로 사무실 및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3. 연세대학교 명일빌딩

연세대학교 명일빌딩은 1982년 3월 준공하여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양재대로 1618)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 등 총 3개동(연면적 : 5,579㎡)에 사무실 및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4. 연세대학교 대신빌딩

연세대학교 대신빌딩은 2011년 10월 준공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성산로565)에 연면적 2,499㎡(대지면적 : 664㎡)의 규모로 사무실 및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5. 연세대학교 강서빌딩

연세대학교 강서빌딩은 2017년 6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방화대로50길 8)에 연면적 7,463.28㎡(대지면적 : 2,459.4㎡)의 임대빌딩으로 준공되어 물류창고 용도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6.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996년 5월 법인 직영 장례식장으로 개소하였으며, 현재 의료원 종합관 내에 연면적 10,909㎡, 빈소 18실, 안치실 40실 규모로 운영 중임.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빈소(828㎡)와 최고의 편의 시설(객실, 무인조의금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음

7.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1998년 3월 강남세브란스병원 내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빈소 5실, 안치실 10실을 운영하고 있음(연면적 1,328㎡)

8.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2020년 3월 용인세브란스병원 내 연면적 5,814㎡, 빈소 9실 규모로 개소하여 운영 중임

9.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2006년 4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지상 4층 건물(연면적 : 4,175㎡)로 개소하였으며, 현재 빈소 6실, 안치실 18실과 더불어 원주 최고의 편의시설(샤워실, 객실, 빈소안내시스템 등)을 갖추어 운영 중임

10.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1993년 5월에 건물을 준공(6,906㎡)한 뒤, 2005년 8월에 지하층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7,421㎡), 2011년 8월에는 전층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결혼예식, 일반행사 및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11. 주식회사 에비슨케어

주식회사 에비슨케어는 2021년 12월 9일 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기존 법인 수익사업체로 운영되던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용품의 사업 일체를 이관받아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연세우유/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1962년 6월 미국의 헤퍼 프로젝트로부터 젖소 10두를 기증받아 시작된 연세유업은 1972년 2월부터 우유를 시판하기 시작한 후 1978년 3월 법인 수익사업체로 전환되었으며, 1993년 6월에 아산공장을 준공(대지면적 : 64,789㎡ · 공장건축면적 : 22,136㎡) 하여 자동 생산시스템과 일 320톤의 우유생산라인을 구축하였음. 2023년에는 최첨단 자동화 창고를 준공하였으며, 2024년에는 최신 멸균음료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규 호상발효유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음. 또한 전용목장에서 생산되는 A2단백원유를 활용한 제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현재 전제품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획득하여, 전국 350여개의 우유대리점과 130여개의 두유대리점, 8개의 온라인 대리점 영업판매망을 갖추고 있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CU, GS25 등 주요 유통업체와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등 15개국에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2024년 연세유업/생활건강 통합 매출로 약 3,500억원을 달성하였음

연세생활건강은 2011년 12월 1일 출범한 수익사업체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생활건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 2024년 약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 제품(연세유업)

- 우유류 : 연세우유, 세브란스 A2단백우유, 세브란스 고칼슘, 소화가 잘되는 우유 등
- 가공유류 :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콜드브루 커피우유, 연세 바나나우유 등
- 발효유류 : 세브란스 워락, 세브란스 오메가3, 연세 드링킹 요거트, 세브란스 A2요거트(호상) 등
- 두유류 : 고소한 두유, 검은참깨 두유, 고단백 두유, 뼈를 생각한 고칼슘 두유, 국산콩 두유 등
- 음료류 : A2프로틴, 연세넛유(7넛츠), 스위플(사과-레드오렌지·샤인머스켓), 과채테이(레드, 엘로우,퍼플) 등
- 제과류 : 연세우유 생크림빵, 연세우유 롤케익, 연세우유 생크림떡 등

• 제품(연세생활건강)

- 건강기능식품 : 연세 명품 닥터 에스오디 나토키나제, 연세 케어콜 플러스 등
- 유산균 : 연세헬스케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미엄, 멀티바이오틱스 면역플러스 등
- 단백질 : 연세헬스케어 활력단백질, 연세 산양유 단백질 플러스 등
- 어린이 : 키즈텐 042, 키즈텐 칼슘업, 키즈텐 어린이 종합비타민미네랄 등
- 건강즙 : 연세백세 ABC 주스, 연세백세 CCA 주스 등
- 홍삼류 : 마시는 닥터 침향, 제증원 홍삼단 등
- 특수의료용도식품 : 연세헬스케어 활력단백질 당클리어, 헬씨드 캔워드
- 생활용품 : 연세헬스케어 덴탈마스터 가글, 시린이 칫솔 등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법인은 2021년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의 지분에 투자하여 법인 수익사업체를 신설하였음. 이는 기존 연세유업의 원유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술력 확보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신규사업 확대를 모색하기 위함임.

주식회사 네추럴웨이는 1999년에 창립하여 경기도 포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OEM/ODM 전문 기업이며, 위생적인 생산시설(GMP)과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개발 및 생산에 매진하고 있음.

주요 생산제품으로 삼양사의 '상쾌환', 종근당건강의 '아임비타멀티비타민이썬셋' 등이 있으며, 분리형 이중캡이라는 패키지의 선두주자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이름을 알림

■ 감사실

감사실은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의무를 준수하면서, 법인의 산하 기관 등(법인본부 및 미래성장전략실, 대학, 부속병원, 수익사업체, 산학협력단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정기·일반·특별)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래성장전략실

미래성장전략실은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수익사업 개발, 법인, 학교 및 병원의 투자사업 검토, 출자회사 IPO, M&A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행정을 처리하고 있음

- 사업개발팀 신규 수익사업 개발, 법인 건축 관련 업무

학 사 안 내

연세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핵심역량 / 114
수업연한, 재학연한, 조기졸업 / 114
학년도와 학기, 수업과 휴업 / 116
재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 117
휴학, 복학, 퇴학, 제적 / 122
교과와 이수 / 125
전공, 복수전공(이중 · 다중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 131
수 강 / 139
성적평가 / 145
진급 및 졸업 / 151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수강 / 153
학점인정 / 156
기 타 / 163

연세대학교 학사안내

(학칙, 내규, 시행세칙 원문은 부록 참고)

I. 연세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적

기독교적 정신에 의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직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 도야 (학칙 제1조)

교육목표

자유로운 학습과 도전적 경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배움터
인류와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지식과 가치 창출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협업생태계 구축
글로벌 역량 향상을 통해 전 지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 양성
기독교 정신 계승과 연세다움 구현을 통한 실천적 헌신
구성원에 대한 믿음으로 자긍심 넘치는 연세공동체 실현

인재상

세상의 틀을 깨는 도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인재

믿음과 신뢰
(Trust)

도전과 개척
(Pathfinding)

섬김과 헌신
(Dedication)

II. 수업연한, 재학연한, 조기졸업

2.1. 수업연한

1) 의미

- 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표준 재학기간
- ② 수업연한 이내에는 수강학점수와 관계없이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할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수업연한 이내라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
- ③ 수업연한 충족 이전에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업연한동안 등록하여 수학하여야 함

2) 모집단위별 수업연한

- ① 일반적인 학사과정 수업연한: 학부대학 재학기간을 포함 4년(8학기)
※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별도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학생

- 의예과, 치의예과: 2년(4학기)
 - 약학과(6년제): 6년(12학기)
 - 건축학(5년제): 5년(10학기)
 - 편입학생: 학과(전공)별 수학년 - 편입학년 + 1년
 - 야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생: 2년(4학기)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3학기
- 3)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31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학칙 4조,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2.2. 재학연한

- 1) 의미
- ① 학사과정 이수를 위하여 재학할 수 있는 최대 수학기간(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② 재학연한 내에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함
- 2) 모집단위별 재학연한
- ① 일반적인 재학연한: 아래 별도 적용 대상 학생 이외의 모든 신입생은 6년(12학기)
 - ② 별도의 재학연한을 적용받는 학생
 - 의예과, 치의예과: 3년(6학기)
 - 약학과(6년제): 9년(18학기)
 - 건축학(5년제): 7.5년(15학기)
 - 일반/학사편입생: 학과(전공)별 수학년의 1.5배
(2학년 편입: 9학기, 3학년 편입: 6학기 단, 약학과 3학년 편입생은 6년(12학기))
 - 야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생: 3년(6학기)
- 3) 재학연한 예외 적용
-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재학연한을 적용하지 않음
 - ②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재학기간을 최대 15학기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음
 - ③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의 재학연한
 - 2020~2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학생(2018학번)까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이수 기간을 통산하여 16학기(3학년 편입학생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2021~1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학생(2019학번)부터: 최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④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재입학생은 제적 전 재학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 학생은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4) 관련 규정: 학칙 제5조

2.3. 조기졸업

- 1) 조기졸업 신청 자격

- ① 조기졸업자의 성적 제한
 -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학기간 성적이 누적 평량평균 3.75/4.3이상인 경우 수업 연한을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음
 - IT융합공학과(글로벌융합공학부) 학생: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학기간 성적이 누적 평량평균 3.3/4.3이상인 경우 수업연한을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음
- ② 조기졸업자에 대한 평량평균 환산 기준
 - 수강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 단, 아래 교과목을 제외함
 - 평량평균 환산 제외 교과목: 대학원 인정학점으로 신청한 대학원 교과목, P/NP 평가과목, 재수강으로 삭제된 과목, S/U평가 교과목
- 2) 조기졸업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① 건측학(5년제), 의예과, 치의예과, 야간간호학과(RN-BSN) 및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생
 - ② 일반편입생 및 학사편입생, 단 약학과 편입생은 조기졸업 가능
 -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3) 조기졸업 신청
 - ① 신청기간: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 지정된 기간
 - ② 신청방법: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조기졸업 신청
- 4)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26조, 학칙 제4조 제2항~제3항, 학칙 52조, 학사에관한내규 제 40조~제41조

III. 학년도와 학기, 수업과 휴업

3.1. 학년도와 학기

- 1)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2) 학기
 - ① 정규학기
 -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단, 2학기는 2주 이내 범위에서 학기 개시 일 전에 개강할 수 있음
 - ② 계절제 수업
 - 방학 중 계절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절제 수업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계절제 수업 단위의 휴·복학도 불가함
- 3)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학칙 제6조~제7조

3.2. 수업 및 휴업

- 1) 수업일수

- ① 법정 수업시수: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 1학점당 15시간 이상
 - ② 수업일정: 우리대학은 한 학기 16주의 수업을 운영하며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업: 1~7주, 9~14주
 - 평가: 중간시험: 8주, 기말시험: 16주
 - ③ 교과목별 수업일정은 대학의 수업일정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2) 휴업일
- ① 정기휴업: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요일, 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국경공휴일
 - ② 임시휴업: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 가능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④ 휴업일을 포함하여 휴강 시는 보강을 실시함
- 3) 수업시간
- ① 1교시는 오전 9시에 시작하며 매 교시마다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진행됨
 - ② 수업시간표에 “수3,금3,4”로 표시된 수업은 수요일 11:00~11:50까지와 금요일 11:00~12:50까지 수업을 뜻함
- 4)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 학칙 제8조~제9조, 학칙 제41조

IV. 재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4.1. 재입학

1) 공통 사항

- ① 의미
 - 제적생이 제적 전 재학한 동일 학년으로 입학함
 - 재입학 후에는 제적 전까지 우리대학에서 수학한 재학기간, 이수학점, 성적 및 경고사항 등 모두 유효함
- ② 지원자격
 -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제적 전 소속되었던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재입학은 1회만 허가함
 - 재입학 허가 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또는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음
 - 재입학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 학력부실(성적불량)로 제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학기초과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도 성적불량 제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일하게 제한함)
 - 징계에 의해 제적된 학생
 - 재입학 학생 중 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학생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기간 중 중도에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
- ③ 제출서류: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재입학신청서, 학업계획서, 서약서 작성

- ④ 재입학 후 교과목 이수요건
- 입학당시 학과(모집단위)별 이수요건 적용
 - 필수과목의 폐강 등 입학 당시 교과이수요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과에서 지정한 요건을 따름
- 2) 재입학 전형
- ① 심사방법
- 1단계: 지원자격 심사(교무처)
 - 2단계: 소속 대학 및 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 3단계: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교무처)
- ② 재입학 선발 우선 순위
- 우선 순위: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
 - 후순위
 - 편입학(일반, 학사, 군위탁) 학생으로 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학생
 - 소속변경자로 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학생
 - 성적불량제적생(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학생에 한함)
 - 자원퇴학생
 - 학기초과제적생
- 3) 재입학자의 재학연한
- ① 제적 전 재학 기간과 재입학 후 수학기간의 합이 모집단위별, 입학구분별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다만, 학기초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입학 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4) 학력부실(성적불량) 제적자에 대한 학사경고 적용
- ① 학력부실(성적불량)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후 1회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함
- ② 재학연한 초과를 이유로 제적된 학생이라도 학력부실(성적불량) 제적 요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제한을 같이 적용함
- 5) 재입학생의 소속변경 제한: 재입학생은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음
- 6)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학칙 제21조, 재입학시행세칙

4.2. 일반편입학

1) 지원자격, 정원 및 선발방법

- ① 지원자격: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학생 또는 법령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정원: 1,2학년 정원 결원 범위 내
- ③ 편입학전형
- 필답고사,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를 원칙으로 함
 - 예체능계열 학과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2) 교과 이수요건

- ① 같은 학번 신입생과 동일한 이수요건 적용
- ② 다만, 채플의 경우 3학년 편입학생은 2P, 2학년 편입학생은 3P로 이수의무를 경감
- ③ RC교육 이수의무가 없음

3)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 범위

- 3학년 편입학생은 63~70학점(대학별·학과별 졸업이수학점의 1/2) 이내
- 전공별로 전공학점 인정 상한을 둘 수 있음
-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최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② 학점 및 과목인정 기준

- 우리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만 인정함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우리대학 과목과 교과내용이 유사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 수가 우리대학 과목의 학점 수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인정함
- 우리대학 과목의 학점 수가 높은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연계된 두 과목 학점 수의 합계가 우리대학 과목의 학점 수와 같거나 높은 경우 인정함
- 학생의 학번을 기준으로 입학년도 이후에 개설된 과목에 한해서만 과목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성적이 명시되지 않거나 Pass / Satisfactory로 평가받은 과목은 해당 과목에 학점이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
- 전적대학에서 채플을 이수한 경우 1학기 이수(1P)를 인정받을 수 있음. 2015학번 이후에는 학점화 되어있는 채플에 한하여 인정함
- 학점 및 과목인정을 받은 과목을 우리대학에서 다시 수강할 수 없음

③ 학점인정 절차

-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학점인정원 작성 및 증빙서류(성적표, 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학사포탈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인정받을 교과목에 대한 승인 취득
 - 교양과목: 교과목 담당교수 → 학부대학장
 - 전공과목: 교과목 담당교수 → 소속 학과(부)장
- 학사지원팀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

4) 전공제 선택

- ① 일반편입학생도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있음
- ② 편입학생은 소속변경은 지원할 수 없음

5)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조기졸업의 제한

- ① 수업연한: 3학년 편입학생은 최소 4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함
- ② 재학연한: 3학년 편입학생은 최대 6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음
- ③ 조기졸업: 편입학생은 조기졸업할 수 없음, 단, 2+4년제 약학과 3학년 편입생은 예외로 함

6)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학칙 제17조,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4.3. 학사편입학

1) 지원자격 및 선발 최대인원

- ①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② 선발 최대 인원: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

2) 선발방법: 필답고사,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를 원칙으로 함

3) 교과이수 요건

- ① 해당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학점 이상을 필수로 최소 58학점 이상 이수
 - 학과별 최소전공이수학점이 58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58학점을 초과하여 지정된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② 교양
 - 채플: 2학기 이상 “P”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 채플 이외의 타 교양과목 이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학과에 따라 대학교양 등 전공이수에 필요한 교양과목에 대한 이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RC교육 이수 의무가 없음

4)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조기졸업의 제한

- ① 수업연한: 최소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② 재학연한: 6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음
- ③ 조기졸업: 편입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음

5) 학사편입학 학생의 복수전공 제한

- ① 학사편입 학생은 단일전공만 선택할 수 있으며, 캠퍼스내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을 지원할 수 없음
- ② 단, 부전공은 제한하지 않음

6)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학칙 제19조, 학사편입 시행세칙

4.4. 소속변경

1) 지원자격

- ① 3학기 이상 수료자부터 3학년까지(6학기 이수 완료 전까지) 허용. 동아시아국제학부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 휴학생도 지원할 수 있으나, 6학기 이수를 완료한 후에는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음
 - ※ 당초입학생이 아닌 재입학생, 편입생(일반, 학사, 군위탁),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등은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음
- ②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소속변경을 허용함
다만, 2022학번 이후 글로벌기초교육학부 학생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글로벌인재학부 내 각 전공으로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있음
- ③ 계약학과 소속 학생 및 예·체능계열 입학자는 소속변경을 할 수 없음
- ④ 일반학과(전공)·계열 학과 학생은 예·체능계열, 의과·치과·간호대학, 약학대학, 언더우드국제제대

학 모든 학과,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및 계약학과로 소속변경을 할 수 없음

- ⑤ 타대학에서 글로벌인재대학으로의 소속변경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에 한하여 선발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 ⑥ 보건행정,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학, 치위생학과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

2) 정원

① 캠퍼스내 소속변경

- 당초입학생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10% 이내에서 선발
- 단, 교육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0% 이내에서 선발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

- 1,2학년 제적인원의 20%이내에서, 전공배정 후 입학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허용
- 아래 학과들로의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신촌캠퍼스 개설 학과(전공)

대학	학과(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사학, 철학
상경대학	경제학, 응용통계학
경영대학	경영학
이과대학	물리학, 화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 인공지능학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생명공학, 생화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생활과학대학	통합디자인학

미래캠퍼스 개설 학과(전공)

대학	학과(전공)
글로벌 창의융합 대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역사문화학, 철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관계학, 글로벌행정학
과학기술 융합대학	물리및공학물리학, 화학및의화학, 생명과학기술학
소프트웨어디 지털헬스케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학

3) 소속변경 지원 전 소속 전공과목 이수 요건

- ① 소속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② 단, 글로벌기초교육학부에서 글로벌인재학부 내 전공으로 소속변경할 경우는 제한 없음

4) 지원시기

- ① 캠퍼스내 소속변경: 중간고사 이후 지정된 기간
-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 12월(연 1회 실시)

5) 심사

① 지원서류

- 캠퍼스내 소속변경: 소속변경 지원사유 및 학업계획서를 학사포탈서비스에서 작성
- 캠퍼스간 소속변경: 소속변경 지원사유, 소속변경 지원동기 및 진로희망, 소속변경 후 학업계획서를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입력·등록

② 심사 단계

- 1차 자격 심사: 학생의 소속 학과 전공 9학점 이상 이수여부 확인
- 2차 지원학과 심사: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 가능) 실시(필요에 따라 실기 및 필기시험

부과)

6) 소속변경 후 유의사항

① 소속변경 후 학번은 변동되지 않음

② 소속변경 후 전입학 학과(학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 및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7)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학칙 제23조~제28조, 소속변경시행세칙

V. 휴학, 복학, 퇴학, 제적

5.1. 휴학 및 복학

1) 휴학 구분 및 사유

① 일반휴학: 입대휴학의 사유 이외의 모든 휴학

- 학생은 질병, 가사, 임신·출산·육아, 창업·창업준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휴학을 명할 수 있음

② 입대휴학: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입대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2) 휴학 신청 기간

■ 미등록자의 휴학 ■

개강 후 14일이 경과하면,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만 휴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을 계획하는 학생은 지정된 휴학신청기간을 지켜 불필요한 등록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휴학

- 학기 시작 1개월 전부터 휴학 신청 가능
- 등록자의 학기 중 휴학
 - 일반휴학은 학기 2/3선까지만 신청 가능
 - 단, 질병, 임신·출산·육아,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 또는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말시험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②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부터 입영일까지 휴학 신청 가능
- 학기 2/3선 이후 입대휴학: 입영 1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휴학 신청 가능

3) 휴학신청의 제한

① 신입생, 편입생, 학사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등은 입대, 질병, 임신·출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함

②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

4) 휴학기간

-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생은 편입 후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② 제적 중 국가고시 합격자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휴학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하여야 할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③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 중 질병치료를 위해 청원한 경우 대학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이 있으면 일반휴학 기간을 1학기간 연장할 수 있음(최대 2회 이내)
- ④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⑤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한 학생의 일반휴학 연한 계산
 - 학기 2/3선까지 입대휴학 시 입대휴학기간으로 처리(휴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음)
 - 학기 2/3선 다음날부터 입대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를 일반휴학기간으로 산입함
- ⑥ 입대휴학 시 휴학접수일과 입영일 중 앞선 날짜를 휴학일로 함. 단, 학기 2/3선 이후 입대자는 입영일을 휴학일로 함
- ⑦ 창업 또는 창업준비 사유로 인한 휴학은 창업지원단 사전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음. 이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⑧ 휴학연한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함

5) 휴학절차

- ①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 단, 창업·창업준비 휴학은 창업지원단 공문으로 신청
- ② 휴학신청 시 제출서류
 - 입대휴학: 입영통지서를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
 - 질병휴학: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진단서,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창업 및 창업준비: 휴학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 창업지원단에서 지정한 서류를 갖추어 창업지원단에 신청 → 심의·승인 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6)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

- ①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수업료 전액 반환(미등록 휴학 가능)
- ②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5/6반환
- ③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2/3반환
- ④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1/2반환
- ⑤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 반환 없음

7) 휴학자의 성적 처리

- ① 일반휴학자 및 학기 2/3선 내 입대휴학자: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보며 성적처리를 하지 않음
- ② 학기 2/3선 다음날부터 입대휴학한 자: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성적평가는 담당교수의 역할이므로 반드시 담당교수에게 입대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수업 및 평가 대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8) 복학

① 복학신청 시기

- 학기 시작 1월 중순/7월 중순부터 학기 시작 전까지 정해진 기간
- 입대휴학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여야 함. 1년 이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대일이 속한 학기를 포함한 2개 학기까지는 입대휴학기간으로 산입하나, 그 이후 기간은 일반휴학(휴학연한이 남은 경우) 학기로 간주함

② 복학신청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복학 신청
- 입대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사본 앞·뒷면,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하여 전역사실을 증빙
- 학기 개시 1/3선 이전 전역예정자 중 공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한 학생이 복학을 청원할 경우 교무처는 심의를 거쳐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전역예정증명서와 잔여휴가확인서 제출

9) 휴학의 취소

① 입대휴학의 취소

-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취소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하여야 함
- 귀향조치를 받은 학생이 입대휴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으로 산입함

② 일반휴학의 취소

- 일반휴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하여 수강변경기간 시작 이전일 17시까지만 취소 가능함
- 휴학 신청 시 기존의 수강신청 자료가 자동 삭제되므로 휴학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과목의 수강권은 보장하지 않음

10) 관련규정: 학칙 제29조~제33조, 학사예관한내규 제35조~제37조, 제39조

5.2. 자원퇴학 및 제적

1) 자원퇴학

① 절차

-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자원퇴학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담당 학사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대여 도서 반납 확인. 재학 중인 경우 재무회계팀 및 학생지원팀(장학파트)에서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내용 확인을 거쳐 최종 승인

② 자원퇴학 시 등록금 반환 기준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5/6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2/3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1/2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자원퇴학 학생은 등록금 반환 없음

③ 자원퇴학 학생에 대한 성적처리

- 자원퇴학 학생은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봄
단, 기말시험 종료일 이후 자원퇴학 할 경우 해당 학기 이수학점과 성적을 모두 인정함

2) 제적

① 제적 사유

-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은 경우(9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재학연한 내에 졸업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중 일반휴학할 수 없는 학생(신입학·편입학 첫학기 학생, 휴학연한 만료자 등)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중 위탁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중도 해지한 자
- 본인 사망 시

② 등록금 반환 제한: 사망제적 및 미수강제적 이외의 제적 사유로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3) 관련 규정: 학칙 34조~35조, 학사예관한내규 38조~39조

VI. 교과와 이수

6.1. 교과목 구분

1) 교양이수요건

① 교양 영역별 이수요건

가) 2024학번 입학생 기준

- 교양기초: 채플(0.5학점×4회=2학점), 글쓰기(3학점), 기독교의이해(3학점)
- 대학교양(24학점)
 - 정보와기술 영역은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문학과예술, 인간과역사, 언어와표현, 가치와윤리, 국가와사회, 지역과세계, 논리와수리, 자연과우주, 생명과환경의 9개 영역 중 7개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대학·학과별로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영역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이수 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각 대학별 교과과정 참조)
- Residential Education 이수 의무
 - 국제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은 1년 동안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대학·학과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체육계열 학생 중 신촌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체육특기자) 및 음악대학 학생은 RC 이수 대상 제외임
 - 기숙형 교육 이수 의무

구분		RC 이수요건				합계
		졸업요건			RC 자기주도활동	
		사회참여	RC 101	소계		
RC 이수대상 전체		1학점	1학점	2학점	1학점	3학점
예외	체육계열	1학점	1학점	2학점	0.5학점	2.5학점
	글로벌인재대학	X	1학점	1학점	1학점	2학점

나) 2024학번 글로벌기초교육학부 및 글로벌인재대학 입학생 기준

- 교양기초: 채플(0.5학점×4회=2학점), 영어(3학점×2과목=6학점), 기독교의이해(3학점)
- GLC 대학교양(9학점. 단, 이과, 공과, 생명시스템대학은 6학점 이수)
 - 대학·학과별로 대학교양영역에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이수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각 대학별 교과과정 참조)
- Residential Education 이수의무
 - 국제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은 1년 동안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거주 하며 대학·학과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기숙형 교육 이수 의무(2학점): RC 101(1학점), RC자기주도활동(1학점)
 - ※ 체육계열 입학생은 RC 자기주도활동 0.5학점 이수

② 전공기초-대학교양 교차인정

- 각 대학이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2과목(6학점) 이내에서 대학교양 교차인정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전에 지정된 과목에 한함)
- 전공기초-대학교양 교차인정과목 수강 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졸업 이수학점에는 한 번만 인정함
 - 예) 경영학과 학생이 회계원리(1)(3학점) 과목을 이수할 경우 전공기초와 대학교양(논리와 수리) 영역으로 모두 인정되나, 졸업이수학점에는 3학점으로만 인정함

2) 전공: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① 단일전공자

-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학점(최소 48학점) 이상을 이수함
- 최소 60학점 이상의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과에서 정한 심화전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화전공을 부여할 수 있음

② 복수전공자, 다중전공자

- 각 전공별로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외부기관 교육인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다중전공자의 전공이수학점을 별도로 정 할 수 있음

③ 전공간 교차인정

- 학과간 전공분야 과목 중 2과목(6학점) 이내에서 전공간 교차인정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전에 지정된 과목에 한함)
-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이 제1전공의 교차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대 6학점까지 학점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졸업이수학점에는 한 번만 인정함

④ 전공학점 인정 제한: 편입학, 교환학생 등으로 타 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단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각 최소전공이수학점

의 1/2 이내로 함

3) 교직, 일반선택(평생교육사과정, 타과 전공) 등

4) 관련규정: 학칙 제36조~제37조, 제39조, 학사예관한내규 제9조~제16조의2, 제32조

6.2. 교과목 이수요건

1) 2024학번 졸업이수학점

대 학		졸업이수학점	대 학		졸업이수학점
문과대학		135학점	음악대학		140학점
상경대학		126학점	생활과학대학		126학점
경영대학		126학점	교육과학대학		126학점
이과대학		135학점	언터우드 국제대학	UD(LSBT제외)·AS D· TAD·HASS	126학점
공과대학	건축학(5년제) 이외	130학점		LSBT전공·ISED	135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의과대학	의예과	82학점
생명시스템 대학	시스템생물학·생화학	135학점		의학과	160학점
	생명공학	140학점	치과대학	치의예과	76학점
인공지능 융합대학	컴퓨터과학, 인공지능학	130학점		치의학과	160학점
	IT융합공학	126학점	간호대학		126학점
신과대학		135학점	글로벌인재대학		126학점
사회과학대학		126학점	약학대학	2+4년제	156학점
				6년제	225학점

2) 대학·학과별로 지정된 교양 및 전공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심화과목 이수요건: 3000·4000단위 과목 중 최소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모집단위 및 입학구분별로 차이를 둘 수 있음

대 학	이수 요건	비고
문과대학	45학점 이상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 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상경대학	45학점 이상	3학년 일반편입/학사편입/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0학점 이상
경영대학	45학점 이상	3학년 일반편입/학사편입/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0학점 이상

대 학	이수 요건		비고
이과대학	45학점 이상	대기과학 외 모든 학과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대기과학	- 18학번까지: 대기과학 전공 24학점 이상 - 19학번 이후: 대기과학 전공 18학점 이상 (대기과학심화연구와 실용기상기후학(2015학번 이후)은 4000단위 미포함)
공과대학	45학점 이상		-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 03학번 이후 학사편입/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은 3000·4000단위 이수의무 면제
생명시스템대학	45학점 이상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인공지능융합대학	45학점 이상		-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 학사편입/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은 3000·4000단위 이수의무 면제
신과대학	45학점 이상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학사편입/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27학점 이상 이수
사회과학대학	45학점 이상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 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음악대학	적용 면제		
생활과학대학	단일 전공	36학점 이상	타 전공을 제외한 자기전공의 3000·4000단위를 36학점 이상 이수(일반편입, 학사편입, 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 포함)
	복수 전공	45학점 이상	- 18학번까지: 타 전공을 제외한 1+2전공의 3000, 4000단위 45학점 이상 이수 - 19학번 이후: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 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교육과학대학	45학점 이상		체육교육학, 스포츠응용산업학은 적용 면제
언더우드국제대학	적용 면제		
글로벌인재대학	45학점 이상		- 2018학번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단, 문화미디어, 바이오생활공학, 응용정보학은 학년에 상관없이 3000, 4000단위를 45학점 이상 이수 전공 및 영역 관계없이 3000, 4000단위 이수학점의 합계
약학대학	적용 면제		

4) 관련 규정: 학칙 38조, 학사에관한내규 31~32조

6.3. 학점

1) 학점당 수업시수: 1학점당 학기당 15시간 이상. 실험·실습·체육 등은 학기당 30시간 이상

2) 외부 학점 인정

- ① 외부 기관 취득학점 인정 상한: 재학 중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음
- ② 외부 기관 취득학점 인정 대상: 아래 경우에 한하여, 모집단위별·사례별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할 수 있음
 - 국내외 교환대학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이수한 학점
 - 방문학생 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입학 전 AP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 시험성적만으로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교에서의 교과목 수강여부가 증빙되어야 함
 - 모집단위별로 인정여부가 다름

3) 관련 규정: 학칙 제8조, 학칙 제37조의2

6.4. 학점인정 특별 프로그램

1) 사회봉사

① 학점인정 취지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함
- 대학이 사전 승인한 봉사활동에 참여 시 학점을 부여함

②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

-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비정차성 단체에 제공 하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봉사활동으로 한정함
-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중 '사회봉사'(UCI2001, 자율선택 영역에 개설, 1학점) 과목을 수강신청함
- 사전 기본교육 2시간과 8~15주(총 30시간, 계절제수업은 5~8주)의 봉사활동 총 30시간 이상을 이행할 때 학점이 부여됨
-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타 교과목(교육봉사활동, 상담실습 등)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음

③ 사회봉사(UCI2001) 및 사회참여(UCR1015)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 학기당 수강신청 허용 학점(최대학점) 외로 수강할 수 있음. 단, 계절제수업에는 계절학기 최대이수학점인 7학점 제한 내에서 선택할 수 있음
- 학기별 1강좌만 수강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를 동시에 수강신청할 수 없음
-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를 포함하여 재학기간 중 총 4회(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 사회봉사 시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사회참여 교과목은 “NP”의 성적을 받은 이후 재수강을 통한 이전 학기 취득성적 소거가 불가함
- 사회봉사·사회참여 교과는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를 수강할 수 없음(사회참여는 수강 가능)

④ 성적평가

- 사회봉사 교과목은 “P/NP”로 평가

-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NP”로 평가함
 - 사전 기본교육(사회봉사 프로그램 시작 첫 주 교육)에 불참한 경우
 - 사전 허락 없이 실습에 2회(4시간) 이상 불참한 경우
 - 실습 기관단체 지도자가 자원봉사 결과를 A,B,C,F 중 “F”로 평가한 경우
 - 실습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담당교수가 주재하는 기말 평가교육에 불참한 경우

⑤ 관련 규정: 사회봉사학점인정시행세칙

2) 현장실습

① 개념

-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이자 교과목

② 신청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단,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과목은 휴학생도 수강할 수 있음

③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

- 인정학점: 정규학기 기준으로 학기당 최대 15학점(일반선택). 졸업 시까지 총 21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학점 인정은 전공별로 차이 있음
- 성적평가: P/NP로 평가함

④ 수강 유의사항

- 졸업예정자는 계절제 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없음
- 초과학기생은 모든 학기의 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없음
- 타 과목과 동시 수강 불가(동영상 강의 포함)

⑤ 참여 학생의 의무

- 학생의 의무
 - 현장실습에 성실히 참여하며, 실습기관의 규정 준수
 -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비밀준수
 - 현장실습 도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
 - 실습 종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실습결과보고서, 근무기록, 업무수행일지 등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이상 행동에 대한 처분: 다음의 행동을 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및 징계할 수 있음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이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취소한 경우
 -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관련 규정: 현장실습학점인정시행세칙

Ⅶ. 전공, 복수전공(이중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7.1. 신촌캠퍼스 전공승인(진입)

1) 2020학번 이후 입학학생 전공승인 기준

① 전공결정 입학자

- 1학년 과정(두 학기)을 이수하면 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됨
- 단, 2023학년도 이후 글로벌기초교육학부(예체능계열 전공자 제외)로 입학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전공 진입 전까지 토픽 3급에 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결과(우리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지정한 등급 이상의 한국어 이수 또는 한국어시험 결과를 포함함) 제출

② 전공 미결정 입학자

- 건축공학과 입학생의 전공신청 전 과목 이수 요건: 교양기초 6학점(기독교의 이해, 글쓰기)
- 건축공학과 전공신청 방법: 지정된 전공신청 기간 내에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전공을 신청
- 2019학번 이후 글로벌인재학부, 건축공학(외국인전형에 한함) 입학생은 기독교의이해, GLC영어(영어 능력에 따라 면제 가능) 과목을 이수하면 전공 신청 가능

2) 2019년 이전 입학자: 입학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공승인을 받아야 함

3) 관련 규정: 전공배정에 관한 내규

7.2. 미래캠퍼스 전공승인

1) 2021학번 이후 입학생

※ 2021학년도부터 입학하는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은 졸업을 위해 두 개의 전공을 취득할 수 있는 '2개 전공 의무화'를 시행함. 단, 2개 전공 의무화제도 시행이 어려운 면허관련 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등 일부 학과는 제외.

① 기본전공(1전공)

- 전공분야의 핵심 전공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1전공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함

② 2전공 의무화(2전공): 복수전공, 심화전공, 융합전공(연계전공) 중 택 1

- 복수전공
 - 기본전공(1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타 기본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 필수 이수료 복수의 학위 취득
- 심화전공
 - 기본전공(1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1전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공 심화 교육과정
 - 기본전공(1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동일한 전공의 심화전공을 36학점 이상 이수
- 융합전공(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합하여 제공하는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

- 기본전공(1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융합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③ 2개 전공 선택 및 이수 안내

• 선택시기

- RC융합대학에 소속되어 1전공 배정 전까지 전공 선택에 필요한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 함양

- 1학년 2학기 말(11월)에 학생 자율적으로 1전공을 선택하고, 전공 승인 및 배정 이후 2전공 선택 가능

• 선택 범위

- 자율융합계열 입학생들은 자율융합계열 내에서 1전공을 이수하고, 2전공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단, 심화전공은 선택한 기본전공(1전공)의 심화전공만 선택 가능

- 자율융합계열 이외 입학생들은 입학한 학부(과)에서 1전공을 이수하고, 2전공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보건분야 면허학과(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및 원주의과대학 전공의 경우 타 학부(과) 학생의 2전공 선택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 캠퍼스간 재학생복수전공(구.이중 및 다중전공) 또는 연계전공과 융합전공 이수 시 2전공으로 인정 가능

④ 기타

• 학생 소속

- 미래캠퍼스 입학생들은 1전공이 결정되기 전까지 RC융합대학에 소속됨

-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기본 소속은 1전공으로 간주함

• 전공과정 이수: 각 전공(1전공, 2전공)마다 3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학위수여

- 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2전공 졸업요건(전공학점 36학점 이상 이수 등의 2전공 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 수여

- 1개의 학위증(졸업장)에 2개 전공과정 모두 표기

2) 2020학번 이전 입학자

① 전공신청 시기

대학	학부	제1전공	2중/다중(연계)전공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디자인예술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자연과학부, 응용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생명과학기술학부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선택안함	2학년 2학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학부	EAST ASIA International College(EIC)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언터우드국제대학)

- 3) 전공승인 기준: 학업계획서, 적성검사결과서, 특정과목 성적, 면접, 전공에서 정한 자료와 자격요건 등

7.3. 재학생의 복수전공

1) 일반 요건

① 복수전공의 개념

- 재학 중 1전공과 함께 2전공을 추가로 이수하여 졸업 시 두 가지 전공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한 장의 학위증에 두 가지 전공 및 학위를 표기
- 캠퍼스내 및 캠퍼스간 복수전공으로 구분함

② 복수전공 제한 학과(전공)

- 다음의 각 학과(전공)는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음
 - 건축학(5년제),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음악대학 모든 학과, 의학치의학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 교육학과 및 체육교육학과는 사전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승인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타대학 학생은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의 모든 학과를 지원할 수 없음
- 학사편입자는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없음

③ 입학년도별 복수전공 허용범위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1전공 승인 후 지원 가능. 타 계열로도 지원할 수 있음
- 캠퍼스간 복수전공
 - 소속대학 소재지 캠퍼스에 없는 전공에 한하여 타 캠퍼스에서 복수전공 신청 가능
 - 신촌-국제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캠퍼스내 복수전공으로 봄

④ 복수전공 신청 시기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과별 입학자의 경우 3학기 이수 후부터, 학부(계열) 입학자의 경우 전공을 승인받은 이후부터 졸업 직전학기까지 지원 가능

⑤ 선발방법

- 2전공 신청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과 서류 및 면접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
- 예체능계 학과(전공)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비율은 학과별로 정함
- 3전공 이수는 사전 승인절차를 두지 않으며,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공을 승인함

⑥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

- 최소 36학점 이상 복수전공학과에서 지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시 두 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한 전공에서만 인정하며, 다른 전공에서 중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이 1전공의 교차인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대 6학점까지 두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중복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졸업이수학점에는 1회만 인정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

- 전공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대학교양” 과목을 추가로 필수이수 지정할 수 있음

⑦ 복수전공의 취소

- 복수전공을 승인받아 이수 도중 포기하는 경우에는 졸업직전학기까지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신촌: 학사지원팀, 미래: 교무부)
- 취소한 복수전공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⑧ 복수전공자의 학위

- 복수전공승인자는 졸업하기 위해서 각 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전공과 2전공 중 어느 한 전공이라도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음

2) 캠퍼스내 복수전공

① 자격 및 정원

- 신청 자격: 1전공 승인자(휴학생 포함) 중 졸업 직전학기까지 신청 가능
- 선발 인원: 선발인원은 지원인원의 50%와 지원학과 정원의 30% 가운데 적은 수 이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②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6·12월 중 지정된 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해 신청

3) 캠퍼스간 복수전공

① 자격 및 정원

- 자격: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이 자신이 소속된 캠퍼스에 설치되지 않은 동일계열(인문/자연)의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제2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선발가능인원: 약간명

미래↔서울캠퍼스간 2중(다중)전공이 가능한 학과 및 전공

미래캠퍼스	신촌캠퍼스		미래캠퍼스	신촌캠퍼스	
대학	대학	학과(전공)	대학	대학	학과(전공)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제외),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문과대학	중어중문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제외),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공과대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산업공학 건설환경공학 도시공학 건축공학 신소재공학 화공생명공학
	상경대학	응용통계학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신과대학	신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언론홍보영상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미래캠퍼스	신촌캠퍼스		미래캠퍼스	신촌캠퍼스	
대학	대학	학과(전공)	대학	대학	학과(전공)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 대학((동아시아 국제학부 제외),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 헬스케어융합대학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 의류환경 식품영양 실내건축 통합디자인	동아시아국제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비교문화과문화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 생명과학공학 아시아학 문화디자인경영 정보인터랙션디자인 창의기술경영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스포츠응용산업학			
	이과대학	수학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 대기과학			

미래↔서울캠퍼스 간 2중(다중)전공이 가능한 학과 및 전공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이 가능한 전공

서울캠퍼스	한국및동아시아학(한국학), 한국및동아시아학(일본학), 한국및동아시아학(동아시아학), 유럽지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벤처학, 리더십, 비교문학, 문화비평학, 공공리더십
미래캠퍼스	국제통상학, 융합디자인학, 의료기기인허가, 의료산업, 금융, 공공기관인재, 공공헬스케어IT, 핀테크, 보건의료SW, 바이오인포매틱스, 스마트팩키징물류, 디지털인문학리터러시, 헬스케어융합전공, 정밀의료융합전공, 스마트수소에너지융합전공, 지역혁신인재

②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6·12월 중 지정된 기간

③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

- 캠퍼스 간 복수전공을 승인받은 학생은 소속캠퍼스 이외의 캠퍼스에서는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만 이수 가능. 단, 계절제수업에는 제한 없음
- 캠퍼스 간 복수전공자가 자신의 소속 캠퍼스 이외의 캠퍼스에서 이수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단, 복수전공 학과에서 필수이수로 지정한 대학 교양과목의 수강은 허용함

3)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19조, 학칙 40조,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7.4.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1) 개념

제1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3학기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복수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2) 자격 및 정원

- ① 지원 자격: 우리대학교 졸업예정자
- ② 정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 ③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의 제한
 - 학사편입학생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없음
 - 음악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전 학과, 건축학(5년제), 계약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양성기관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간호대학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3) 지원시기, 신청방법, 전형방법

- ① 지원시기: 6·12월 중 지정된 기간
- ② 신청방법: 학사포탈시스템으로 지원서 제출
 - 복수전공 지원서(소정양식) 1부
 -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③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시험(필요 시 필기시험 진행)

4) 복수전공자의 교과이수

- ① 복수전공학과에서 지정한 전공이수학점을 필수로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이 51학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51학점을 초과한 지정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② 학과에서는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음

5) 수업연한: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6) 재학연한

- ① 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승인자(2018학번)까지
 - 제1전공 및 복수전공 기간을 합산하여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3학년 일반편입생의 경우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②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승인자(2019학번)부터
 -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7) 휴학연한: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8) 학위 수여

- ① 복수전공 이수 완료 시 1전공과 2전공의 학위를 동시 수여
- ② 학위기는 2개가 수여되나 학위등록번호는 동일함

9)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중도포기자 및 제적생의 학적

-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이수하다 중도에 자퇴하거나 미등록·미복학·성적불량·학기초과로 제적되는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이전 학번에 대하여 졸업 처리
- ② 졸업생 신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함(졸업 처리되는 이전 학번으로의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반영도 불가함)

10) 관련 규정: 학칙 제40조, 복수전공시행세칙

7.5.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1) 개설취지

- ① 학과단위의 고립된 학문체계를 넘은 학문과 학문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고를 장려함으로써 다변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
- ② 다양한 학문적 선택권에 대한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학과 단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융합 학문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2) 지원자격 및 정원

① 지원자격

-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1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직전 학기까지 신청 가능
-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정원 제한

- 캠퍼스내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없음
- 캠퍼스간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전공별 5명 미만

3) 신청 시기 및 방법: 지정된 기간(6·12월 중 지정된 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해 신청

4)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교과이수

- ① 교과이수 지도: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 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과목을 선택
- ② 최소이수학점: 전공기초과목을 포함 36학점 이상 취득
-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연계전공간, 전공-융합전공간, 전공-교양간 중복인정하지 않음
- ④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은 매 2년마다 평가를 통해 계속 개설여부를 결정하므로, 학생이 이수 도중이라도 폐지될 수 있음에 유의

5)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취소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을 이수하다 중지할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연계전공 취소를 접수

6) 학위수여

- ①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점이수일람표와 성적 증명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②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이 표기된 연계학사(Bachelor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혹은 융합학사(Bachelor of Convergent Studies)의 학위를 수여함

7) 관련 규정: 학칙 제40조, 연계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7.6. 부전공

1) 개념

타 학문 및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주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에서 21학점

이상(전공별 지정된 필수과목 포함) 이수할 경우 부전공의 자격을 부여함

2) 자격 및 정원

- ① 모든 학과를 부전공 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로의 부전공은 허용하지 않음
 -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 음악대학 및 체육계열 각 학과. 단, 음악대학 학생의 소속 대학 내 부전공은 가능함
 -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단,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부전공은 가능함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 학칙 제88조의4에 의한 계약학과
- ② 부전공은 정원 제한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3) 신청 시기 및 선발방법

- ①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졸업/수료 신청 시 부전공 자격을 신청함(사전 승인 절차 없음)
- ②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부전공 자격 부여를 위하여 실기시험을 부과하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4) 교과 및 학점이수

- ① 부전공 학점: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하는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21학점 이상을 이수
- ②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관련 규정: 학칙 제40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34조, 부전공시행세칙

7.7. 마이크로전공

1) 개념

타 계열 및 학과의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문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융합적인 관찰력과 사고력을 배양하고자 마이크로전공 12학점(전공별 지정된 필수과목을 포함)을 이수할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 내역을 성적증명서에 표기함

2) 신청 시기 및 방법

지정된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졸업/수료 신청 시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함(사전 승인 절차 없음)

3) 교과 및 학점이수

마이크로전공 주관 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

4) 유의사항

- ① 마이크로전공이 소속된 학과로의 복수/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 부전공으로 승인받은 경우 복수/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 또는 부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② 마이크로전공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마이크로전공 간 과목 중복 인정을 불허하므로 중복되는 학점 수만큼 해당 마이크로전공 교과목 중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 ③ 1,2전공(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 포함)에서 전공으로 인정되는 전공간 교차인정 교과목인 경우 마이크로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 ④ 졸업/수료 신청 시 마이크로전공을 부전공처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이수 충족 여부 검증 후 마이크로전공 인증 내역을 졸업/수료 시점(학위수여일 기준)에 성적증명서에 표기

VIII. 수강

8.1. 캠퍼스간 교차 수강 제한

1) 교차수강 제한 원칙

- ① 학생은 소속대학 소재지 캠퍼스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단, 신촌-국제캠퍼스 간에는 교차수강을 제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1학년 기간 중 국제캠퍼스에서 RC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신촌캠퍼스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② 정규학기 중에는 신촌-미래캠퍼스 간, 국제-미래캠퍼스 간 교차 수강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2) 교차수강 제한의 예외

- ①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전공과목에 한하여 타 캠퍼스에서 교차수강할 수 있음
- ② 계절제 수업에서는 소속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음

3) 관련 규정: 학사예관한내규 제16조 제2항

8.2. 수강신청 절차

1) 수강신청기간

- ① 1차 수강신청: 2·8월 중 지정된 기간
- ②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개강 후 3일간 지정된 기간

2) 수강지도

- ① 학생은 소속학과 학과장(학부대학생은 담당 학사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음
- ② 수강지도를 받더라도 수강신청은 학생 자신의 책임임

3)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 전 상담 의무

학사경고자는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님께 학사지도를 받은 내역을 학사포탈시스템에 등재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4) 수강신청 방법

- ①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함
- ② 지정된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5) 수강신청 미 이행 학생에 대한 제재

- ① 수강신청변경 종료일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학기 일반휴학자로 처리함
- ② 신입학·편입학 첫 학기생, 일반휴학연한 만료학생 등 일반휴학을 할 수 없는 미수강 학생은 제적함

6) 관련 규정: 학칙 제42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3조

8.3. 학기당 수강학점

- 1) 정규학기 수강학점: 일반적으로 졸업이수학점이 135학점 미만인 대학은 학기당 18학점, 135학점 이상인 대학은 학기당 19학점까지 수강 가능

대 학	수강학점
상경대학(상경제열), 경영대학(경영계열), 공과대학(건축학전공(5년제)를 제외한 전공의 2022년도 이후 학번 3~4학년), 인공지능융합대학(IT융합공학과를 제외한 2022년도 이후 학번 3~4학년)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대학(생활과학계열), 교육과학대학(교육,체육계열), 간호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및 융합인문사회과학부 2~4학년), 글로벌인재대학	1~18
문과대학(인문계열), 이과대학(이학계열), 공과대학(공학계열, 건축학전공(5년제), 2021년도 이전 학번, 2022년도 이후 학번 1~2학년), 생명시스템대학(생명시스템계열), 인공지능융합대학(컴퓨팅계열, 2021년 이전 학번, 2022년도 이후 학번 1~2학년), 신과대학(신학계열), 음악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1학년 및 언더우드학부 생명과학공학전공, 융합과학공학부)	1~19
의예·치의예과·약학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글로벌융합공학부), 지능형반도체전공	1~24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1~24

- ① 단, 채플, 사회봉사, 사회참여(SE), RA리더십, RC자기주도활동, 진로개발/계획세미나, UT세미나, 2학점 이내의 ROTC 군사학 과목 등의 수강 학점은 예외로 함
 - ②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라도 재학생은 정규학기에 최소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단, 채플 이수요건만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채플만 수강할 수 있음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은 졸업신청 시 반드시 수료 또는 졸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졸업언기를 신청하면 이후 정규학기에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③ 재수강과목도 위 학기당 수강학점 제한 내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 2) 학점초과신청
- ① 능력별 학점취득
 - 직전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3.75이상이면 3학점 초과수강 가능
 - 예외: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능력별 학점초과신청을 할 수 없음
 - 직전학기에 교과목을 철회한 학생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
 -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1학년
 - IT융합공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학생
 - ②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점 1학점 미달자는 수강신청 전 학사지원팀에 학점초과신청원을 제출할 경우 1학점을 초과신청할 수 있음
- 3) 수강학점에 따른 장학금·우등생 선발 자격 제한
- ① 장학금 신청 제한: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만 교내 장학금 신청 가능함
 - ②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산정시 원성적(Letter Grade)으로 반영
 - ③ 우등생 대상 제한

- 직전학기 최소 15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최)우등상 및 우수상 시상 대상에 포함됨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 학점은 15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은 최소 18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최)우등상 및 우수상 시상 대상에 포함

4) 정규학기 이외 학점 취득

- ① 계절제수업 수강학점: 7학점 이내
- ② 입대후학 중 온라인강의(군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 중에 수강하여도 계절학기 학점으로 등재함

5) 대학원 교과목 수강

- ① 수강자격: 3·4학년 학생. 단 건축학(5년제) 교육과정 이수자는 4·5학년 학생
- ② 대학원 과목 수강학점 제한: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 내에서 한 학기 6학점(2과목) 이내, 총 12학점(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음
- ③ 대학원 과목 학점 인정: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부 또는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중복인정은 안됨.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함
- ④ 대학원과목의 성적 처리
 -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학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기별 (최)우등상·우수상 및 (최)우등졸업 선발시에는 포함하여 계산함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동일함
 - 학부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대학원 교과목의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함

6) 관련 규정: 학칙 제43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4조, 제7조, 제8조

8.4.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수강철회

1)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 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중에 수강신청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② 수업담당교수가 출석부에 기록했다고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과 수강변경은 반드시 학생 자신이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여야 함
 - LearnUs 청강은 수강신청이 아님
- ③ 연세포탈서비스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점과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2) 수강철회

- ① 수강철회 기간: 중간고사기간 전후 지정된 기간
- ② 수강철회 시 유의사항
 -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수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신청 이후 반드시 철회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수강철회 후에도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을 하여야 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음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음. 단, 2008학년도

이전 철회과목은 성적증명서의 성적란에 “W”(Withdrawn)로 표기되며, 동일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도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음

- 사회봉사, RC자기주도활동, 사회참여, 군강좌 등은 수강철회가 불가함

③ 수강철회에 따른 제한

- 학기별 (최)우등상·우수상 및 (최)우등졸업 대상에서 제외
- 능력별 학점초과신청(직전학기 성적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경우 3학점 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

3) 관련 규정: 학사에 관한 내규 제17조~제18조

8.5. 재수강

1) 개념

- ① 동일과목(교과내용, 학점번호, 교과목명 및 학점이 동일한 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과 성적만 인정하는 제도
- ② 재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동일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학점에 포함
 - 평량평균을 환산할 때는 재수강으로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먼저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계산에서 제외됨

■ 대체와 재수강 ■

- ▶ 대체: 폐강 등 부득이한 이유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타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체과목을 수강하여도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되지 않음
- ▶ 재수강: 이미 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였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과 성적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수강 결과로 이전 취득 평량평균이 재계산됨

2) 동일과목의 정의

- ① 교과내용, 학점번호, 교과목명 및 학점이 동일한 과목
- ②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학점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 개설학과 학과장(또는 학부장)이 지정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음
- ③ 교과과정 변경으로 완전 폐강된 과목은 개설학과 학과장이 대학장을 경유하여 지정한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음
- ④ 교과목명은 동일하지만 교과내용·학점번호·과목종별이 다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3) 재수강 제한

- ① 2013학번 이후 입학자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총 6회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음
 - 재수강 시 취득가능한 성적은 최고 A0로 제한함
 - F(또는 NP)의 성적을 취득한 필수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성적표에서 이전 F/NP 취득 교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며, 평량평균 환산 시에는 이전 F의 성적을 포함함
 - F성적의 교과목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재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한 후 이를 다시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F성적을 소거한 경우 2,3차로 이수한 교과목이 성적표에 모두 표

기되더라도 학점은 최종 1회만 인정됨

② 2005~2012학번

- 이전 수강해서 취득한 성적이 C+이하(C+~F학점)인 과목만 재수강 가능
- 재수강 시 취득가능한 성적은 최고 A0로 제한함
- 재수강 대상과목 및 취득성적 제한에 대한 예외: 2005년~2007년 사이에 입학한 학생은 아래 제한된 횟수 이내에서 B-이상(B-~A+)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제한된 기회를 활용한 경우 취득 성적을 제한하지 않음(A+까지 취득할 수 있음)
- 2005학번 4회, 2006학번 3회, 2007학번 2회
- 성적등제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학기 수강과목은 계절재수업에서 재수강할 수 없음

③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재수강할 수 있는 성적이나 횟수, 취득성적을 제한하지 않음

4) 재수강으로 인한 평량평균 변경 시 학사경고의 효력

재수강으로 평량평균이 상향되더라도 해당 학기에 대한 학사경고는 삭제되지 않음(유효함)

5) 관련 규정: 학사에 관한 내규 3조 4항, 24조의2, 재수강시행세칙

8.6. 계절제 수업

1) 수강 자격

- ① 서울 및 미래캠퍼스 소속 모든 재적학생(휴학생 포함). 단, 수료생은 수강할 수 없음
- ② 국내교환협정대학 소속 학생으로 소속대학과 우리대학에서 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2) 수강 범위

① 단일 캠퍼스에서 수강 원칙

- 소속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신촌/국제), 미래캠퍼스 어느 곳에서나 수강할 수 있으나, 두 캠퍼스 중 한 캠퍼스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며, 동일 기간 내에서 복수의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는 없음
- 다만, 수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강좌에 대한 교차수강은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이수학점: 학기당 최대 7학점 이내. 단, 채플은 최대 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음

③ 졸업하기에는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사회봉사, 현장실습과목 등은 수강할 수 없음

④ 계절제수업 직전 정규학기에 수강한 교과목은 연속된 계절제수업에서 수강신청할 수 없음

3) 수강신청 및 변경: 여름 계절제 수업은 5월 중, 겨울 계절제 수업은 11월 중

4) 등록 및 수강 취소

① 수강료 납부

- 등록기간: 여름 계절제 수업은 6월 중, 겨울 계절제 수업은 12월 중
- 계절제수업 수강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
- 국제동계대학 및 국제동계대학 개설과목 수강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책정함
-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절제 수업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② 수강 취소

- 계절제 수업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수강변경이나 수강철회를 할 수 없음
- 계절제 수업 등록 후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2선 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사회봉사, 사회참여, 현장실습 등 일부 과목은 수강취소를 허용하지 않음
- 수강 취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취소 신청. 동일 학기 내 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취소 요청서를 학사지원팀 메일(yshaksa@yonsei.ac.kr)로 제출하여 취소 신청
- 수강 취소자에 대한 수강료 반환 기준
 -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 수강료 전액
 - 개강 후 1/3선 경과 전 취소: 수강료의 2/3
 - 개강 후 1/2선 경과 전 취소: 수강료의 1/2
 - 개강 후 1/2선부터 취소할 수 없음

5) 학점인정

① 성적평가

- 2004학년도 이후 입학 학생: 계절제 수업에 이수한 과목도 정규학기 이수과목과 동일하게 졸업학점 및 평량평균 계산에 포함됨
- 2003학년도 이전 입학 학생: 계절제 수업에 수강한 과목은 취득학점만 인정되며 평량평균에는 산입되지 않음
- 입학시기에 관계없이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기별 (최)우등·우수상 시상, 능력별 학점초과신청 및 학사경고 학생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졸업예정자의 계절제 수업 수강

- 졸업예정자도 졸업직전 계절제 수업에 수강하여 당해년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단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및 '사회봉사' 교과목은 졸업예정자는 수강할 수 없음
- 휴학 중 계절제 수업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재학생 신분으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휴학 중에는 졸업할 수 없음)

- 6) 관련 규정: 학칙 제7조 제2항, 제43조 제3항, 학사에 관한 내규 제16조 제2항, 제28조, 계절제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8.7.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1) 개념

우수한 학부생을 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부과정 수학 시 학기당 이수학점에 여유를 부여하여 대학원(석사·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조기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지원자격

- 4학기(2학년 2학기)까지 이수를 수료한 학생
- 지원학기까지 누적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학생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지원 제한

- 전공승인을 받지 않은 학부대학 소속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일반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과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3) 신청 시기 및 선발 방법

- ① 신청 시기: 4학기 수료 후 7학기 진입 전 지정된 기간(1월 또는 7월) 지원 가능
 - ② 선발 방법: 학부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서류심사만으로 평가)
- 4)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전
- ① 학기당 수강학점 확대: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는 학부과정 재학 중(8학기까지) 학기당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 ② 대학원 입학전형 면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는 추후 별도의 대학원 입학시험 없이 학부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음
 - ③ 수업연한 단축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부과정은 1년, 석사 과정은 각 1학기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④ 대학원 장학금 지원
 - 대학원 입학 후에 성적과 학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매학기 일정수의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
 - 장학금 지원기간: 석사과정은 최대 3학기, 통합과정은 최대 5학기동안 장학금 지급
- 5)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 자격 유지 조건
- ① 매학기 평량평균 3.3/4.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②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 중 중도 포기할 경우 대학원 교과목 학점을 학부 취득학점으로 변경할 수 없음
- 6) 관련 규정: 학칙 제4조 제2항 제2호, 학칙 제40조의2, 학칙 제43조 제1항,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IX. 성적평가

9.1. 출석의무

1) 출석의무

한 학기 실제수업시간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F'의 성적을 부여)

2) 출석인정

- ① 예비군동원훈련 참여, 징병검사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결석
 - 예비군훈련필증 또는 징병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② 경조사에 대한 출석인정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장례일까지: 1일
 - 본인 결혼: 5일
 - 본인 출산: 20일

- 배우자의 출산: 5일
- ③ 여학생의 생리결석: 아래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 재량으로 출석 인정여부를 결정
 - 학기당 최대 5일, 1회 2일 이내에서만 허용
 - 생리결석을 사용한 학생은 2주(14일)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 생리결석제는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생리결석제는 채플이나 시험 및 각종 평가에는 인정되지 않음
- 3) 조기취업자
 - ① 졸업하기 중 신규로 취업한 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담당교수에게 제출
 - 재직증명서(취업예정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 ② 담당교수는 별도 학습 또는 과제 부과 후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 4) 체육특기자
 - ①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체육특기자는 체육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출석인정 신청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담당교수는 과제, 레포트 또는 시험을 부과하고, 이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 ③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는 한도는 총 수업일수의 1/2 이하로 함
- 5) 관련 규정: 학칙 제44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9.2. 성적평가 원칙

- 1)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 ① 평가시기: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② 평가방법
 -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 논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평가는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함
 -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2) 성적 및 평점
 - ① 성적별 평점: 학점이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이 13등급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등급	평점	평어	등급	평점	평어
A+	4.3	수	C+	2.3	양
A0	4.0		C0	2.0	
A-	3.7		C-	1.7	
B+	3.3	우	D+	1.3	가
B0	3.0		D0	1.0	
B-	2.7		D-	0.7	
			F	0	낙

② S/U평가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평량평균 환산 시 제외함
- S/U평가를 신청한 과목에서 C0이상(C0~A+)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S”로 등재하고 취득 학점을 인정하되, C-이하 성적을 받은 경우 “U”로 등재하고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③ 학점이 없는 과목은 “P/NP”로 평가함. 단,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P/NP”로 평가할 수 있음

3) 평량평균의 계산

① 평량평균 환산 대상: 아래 과목을 제외한 수강한 모든 교과목

- P/NP로 평가되는 교과목 및 학생이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
- 철회한 교과목 및 재수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교과목
- 대학원 교과목. 단,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요청한 대학원 교과목

② 평량평균 환산 방법: 아래와 같이 평량평균을 산출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2009 학년도까지의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함)

$$\frac{(\text{평량평균환산대상 교과목 학점} \times \text{성적평점})}{\text{합계}}$$

평량평균환산대상 교과목 학점 계

4) 성적평가 방식

① 우리대학의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P/NP평가로 구분하고 있음

②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수강인원	성적	비율	수강인원	성적	비율
21명 이상	A+, A0, A-	35% 이내	20명 이하	A+, A0, A-	40% 이내
	B+, B0, B-	35% 이내		B+, B0, B-	50% 이내

③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은 등급별 성적 부여 비율 제한이 없음

④ 상대평가인 교과목이더라도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는 절대평가 적용가능

⑤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하는 경우 여러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평가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5) 관련 규정: 학칙 제45조, 학사에 관한 내규 제19조~제20조, 제27조, 제29조, 성적평가시행세칙

9.3. 휴학자, 퇴학자, 징계받은자, 시험불응자의 성적

1) 휴학자

- ① 일반휴학자와 학기 2/3선 전 입대휴학자는 모든 수강 내역을 취소함(성적평가 대상이 아님)
- ② 학기 2/3선 다음날 이후 입대휴학자: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담당교수별로 중간·기말고사 성적반영 비중 차등화 등 평가원칙이 다양하므로 세부 사항은 담당교수님께 문의

2) 자원퇴학생

- ①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 자원퇴학생: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 ②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원퇴학한 학생: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

3) 징계 받은 자의 성적

-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수강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봄
- ② 시험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함

4) 시험불응자의 성적

-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기말) 중 그 한차례를 정당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중간/기말 시험의 80% 이내에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② 시험불응원 제출 시한 및 증빙서류
 - 시험불응원 제출 시한: 해당 시험 개시 일주일 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 시험불응 시 증빙서류
 - 질병으로 인한 경우: 우리대학교 건강센터에서 발행한 진단서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진단서
 - 기타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5) 관련 규정: 학사에 관한 내규 제21조, 제25조~제26조

9.4. 부정행위

1)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 ① 대면·비대면 시험 및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학문 윤리 위배행위
- ② 세부 내용은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지침의 [별표 1]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참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부정행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학생이 소속한 학과장에게 신고하고, 학과장은 대학장에게 보고
- ② 대학장은 통보받은 학문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③ 대학장은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발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청

- ④ 대학장은 부정행위 제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안내
- 3) 징계의 종류
-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교과목은 “F” 처리하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음
- ② 복수의 학생이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또는 2건 이상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
- ③ 미수에 그친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음
- 4) 관련 규정: 학칙 46조, 학칙 54조, 학사에 관한 내규 26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

9.5. 성적확인 및 정정

1) 성적확인 제출 및 확인

- ① 성적제출
- 성적제출 기간: 기말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 성적제출 시 결석수가 강의실시수의 1/3 이상이면 “F”의 성적을 부여
- ② 성적확인
- 성적확인 기간: 기말시험 종료 1주일 후부터 1주일간
 - 성적확인 방법: 연세포탈서비스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 성적확인 전 “강의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 응답 의무
 -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수강한 과목 모두에 대한 “강의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에 응답하여야만, 성적확인 기간 중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 한 과목이라도 “강의정보 공유를 위한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음

2) 성적 정정

- ① 정정 사유
- 기재착오, 합산착오, 누락 등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에 착오를 범한 경우에 한함
 - 재시험, 보충과제 제출 등의 사유로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음
- ② 성적 정정 가능 기간
- 학기말고사 종료 후 4주 이내(졸업예정자는 3주 이내)
 - 단, 계절제 수업의 경우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졸업예정자는 정정할 수 없음)

3) 관련 규정: 학사에 관한 내규 22조의 2, 23조~24조

9.6. 학업 성취도에 따른 상벌

1) 학사경고 및 제적

- ① 학사경고(학칙 48조)
- 학기별 평량평균이 1.75(4.30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가 주어짐
 - 수강학점이 적거나 학기초과자도 학사경고는 동일하게 적용됨

- 의과대학·치과대학·원주의과대학 학생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② 성적불량 제적

-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함
- 졸업예정자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적을 우선 적용함

■ 졸업예정자의 학사경고 ■

- ▶ 초과학기 수학학생이 1학점만 수강하여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하여도 학사경고가 주어짐
- ▶ 위 학사경고를 받은 초과학기 수학 학생이 이전에 2회의 학사경고를 받았다면,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다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으며, 학력부실(성적불량)으로 제적함

③ 학사경고 또는 성적불량제적 예외 적용자

-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 의무연수기간 중에 받은 학사경고는 성적불량제적 적용 학기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한국어 의무연수기간은 4급 미만(3급 수료)에 한정함
 - 학사경고 면제 적용학기는 입학학기부터 최초 3학기 이내에 한정함
- 성적불량 제적 예외: 학칙 제2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성적불량제적 적용에서 예외

④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

- 3회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가능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후 재입학 한 학생이 다시 1회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하여, 이후 재입학을 불허함

2) 학업성취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 (최)우등상, 우수상, (최)우등졸업

① 시상기준 (우등생 표창에 관한 내규)

- 최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 이내
- 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3% 이내
- 우수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0% 이내
- 최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1% 이내
- 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3% 이내
- 동점자는 모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② 시상 제외 대상자

-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시상 제한
 - 해당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 미만('99년 이전 입학자 및 인문예술대학·정경대학·과학기술대학·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18학점 미만)인 학생 (S/U 평가를 선택한 과목은 15학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학기초과학생
 - 징계를 받은 학생
 - 해당 학기에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 해당 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 및 S/U평가에서

- U의 성적을 받은 학생
 - 최우등졸업, 우등졸업 제한
 - 당초입학생이 아닌 일반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군위탁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소속변경학생 (단, 2+4년제 약학대학 편입생은 제외)
 - 학기초과학생,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수강철회 학생, 징계를 받은 학생
 - 학사학위수료자
- 3) 시상 및 징계에 대한 기록
 - (최)우등생, 우수생, (최)우등졸업생 및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함
- 4) 관련 규정: 학칙 20조, 48조, 학사에 관한 내규 8조, 20조②항, 30조, 우등생표창에 관한 내규

X. 진급 및 졸업

10.1. 진급기준

- 1) 수료증명에서의 학년별 수료 기준
 -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수료학기/전공·학과수업연한) × 학과졸업이수학점) 이상 취득
- 2) 이수 학기별 학년 진급
 - ① 학년별 수료 기준과 별도로 수강신청·등록 등 일반적인 학사운영은 학생의 재학 학기 수에 따라 학년진급을 적용함
 - ② 예) 2개 학기를 재학한 학생은 취득학점과 무관하게 2학년으로 간주되며, 2학년 수강신청일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3) 관련 규정: 학칙 제47조

10.2. 졸업의 요건

- 1) 재학 및 졸업신청 의무
 - ① 아래 2),3)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졸업학기 수강신청 전) 내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함
 - ② 졸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교에 재학 또는 학사학위수료자 신분이여야 함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라도 휴학 중에는 졸업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복학 후 재학생 신분으로 1학기 이상을 재학하여야 함(졸업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마지막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은 학사학위수료를 신청하여야 함
- 2) 수업연한 이상 재학생
 - ①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한 학생. 단, 건축학(5년제) 교과과정 이수자는 5년(10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한 학생
 - ② 6학기 또는 7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조기졸업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
 - ③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는 7학기 이상 이수자

- ④ 편입학, 학사편입학, 위탁학생의 경우 지정된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 ⑤ 전공배정자(무전공으로 졸업할 수 없음)
- 3) 각 대학별 졸업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세부 내역은 대학·학과별 교과과정 부분 참조)
- ① 총 졸업학점
- 대학에서 정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4년제 학위과정 기준 최소 126~140학점 - 건축학(5년제)
 - 약학과(6년제)는 225학점, 약학과(2+4년제)는 156학점, 건축학(5년제)는 16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② 교양: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교양이수학점 이수
- 채플: 4개 학기 이상 "P"를 받은 학생
 - 3학년 편입생 및 군위탁생은 2학기 이상, 2학년 편입생은 3학기 이상 채플을 이수함
 - 약학과 2+4년제 편입생은 4학기 동안 채플을 이수함
 - 교양기초: 8학점(채플 2학점, 기독교의 이해 3학점, 글쓰기 3학점)
 - 대학교양: 정보와기술 영역을 필수 포함하여 8개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체육과건강 영역은 이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국제캠퍼스 RC교육 이수자는 해당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RC 교과목 및 학점 이수
- ③ 전공: 각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학생
- 단일전공자: 최소 48학점 이상 학과에서 지정한 학점 이상 이수
 - 심화전공자: 최소 60학점 이상 학과에서 지정한 학점 및 과목
 - 복수전공/다중/연계전공자: 최소 36학점 이상의 전공별로 지정한 학점
 - 복수전공 승인자는 두 전공의 전공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 4) 학사학위수료 요건: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하고 소속대학·학과별로 지정된 교양 및 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 ① 수료신청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재학하여야 함(휴학자는 수료할 수 없음)
- ② 수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수료신청을 하여야 함
- ③ 졸업심사를 통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수료신청자에 한해 해당 학기 학위수여일(2월 말/8월 말) 기준으로 '학사학위수료' 학적을 부여함(재학상태로 환원 불가)
- ④ 수료의 기간은 재학 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의 범위 이내로 한정하며, 재학연한이 종료되는 마지막 학기에는 자동으로 졸업 처리됨
- ⑤ 수료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졸업신청을 하면 정해진 학위수여일에 졸업할 수 있음
- ⑥ 수료자는 최우등·우등 졸업 시상 대상에서 제외됨
- ⑦ 수료자는 추가로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5) 졸업의 시기: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함
- 6) 관련 규정: 학칙 51조~54조의 2, 학사에 관한 내규 31조~33조

10.3.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 1) 졸업인증 요건의 구분: 외국어인증, 정보인증의 2개 분야로 구분
- 2) 적용 대상: 아래 학생을 제외한 미래캠퍼스 재학생 전체

- ① 보건과학과(야간)
- ② 졸업인증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 적용을 면제한 자
- 3) 대학(학과)별 졸업인증 요건: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별표 1]의 미래캠퍼스 졸업인증 요건 참조
 - ① 인증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부록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홈페이지 또는 인증담당 부서의 공지사항을 참조
 - ② 외국어인증: 국제교류원 / 정보인증: 사회교육개발원
- 4) 인증절차
 - ① 신청시기: 전공확정 이후
 -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외국어인증-국제교류원, 정보인증-사회교육개발원
- 5) 졸업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미인증수로 처리되며,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
 - ② 미인증수료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단, 국제교류원 및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음
- 6) 졸업인증위원회
 - ①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두고 졸업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② 위원회 구성: 원주교무처장(위원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인문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장,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국제교류원장, 사회교육개발원장(이상 당연직 위원), 그 외 원주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약간명의 교수
- 7) 관련 규정: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XI.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수강

11.1. 국내대학 교환학생

- 1) 개념

재학생이 사전 승인을 받아 국내 교환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 성적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대학의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국내교환대학 수학 지원 자격
 - ① 5학기~7학기 재학생. 단, 서강대·이화여대 지원자는 서울캠퍼스 3학기~7학기 재학생. 계절제 수업에는 휴학생도 지원 가능
 - ②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 ③ 8학기 재학생(조기졸업예정자는 6~7학기 재학생)부터는 교환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음
- 3) 교류 정원: 정규학기에는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
- 4) 교환학생 지원 및 수강신청
 - ① 교환학생 지원

- 지원자는 지정된 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 상에서 국내대학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학교마다 지원서 마감일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

② 수강신청

- 대학별 수학 안내 참조(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이수학점: 우리대학의 수강학점과 통산하며, 우리대학 이수학점 제한을 동일 적용함. 단, 교환대학에서만 수학할 경우 능력별 학점초과신청은 적용되지 않음. 계절제 수업은 최대 7 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③ 수학취소

-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변경기간 이전에 “국내대학 교환학생 취소신청서”를 제출
- 국내교환대학에서의 수학을 취소한 학생은 본교 수강변경기간 종료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함

5) 수학기간

- ① 한 학기 단위로 파견. 정규 1·2학기 및 계절제 수업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② 총 학점 인정 범위(졸업학점의 1/4)내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음

6) 교과목 이수, 학점·성적 인정

- ① 정규학기에는 우리대학과 국내교환대학의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으나, 계절제 수업에는 우리대학 또는 교환대학의 한 캠퍼스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 ②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교환대학에서 다시 이수해서는 안됨
- ③ 국내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환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의 재수강은 교환대학에서만 가능
- ④ 교양기초, 대학교양 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 함(교환대학 이수과목으로 대체인정할 수 없음)
- ⑤ 국내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함
 - 수학 종료 후 다음 정규학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연세포탈의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대체교과목신청을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전공 또는 교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연세포탈의 학사행정>성적>대체교과목관리(국내교환, 소속변경)에서 신청
 - 단, 교직과목은 이론영역에 한하여 인정되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대해 인정
- ⑥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우리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한 원칙으로 성적에 반영(평량평균 환산에 포함)

7) 등록

- ① 정규학기: 등록금을 본교(소속대학)에 납부
- ② 계절제 수업: 국내교환대학(수학대학)의 수강료를 납부(해당대학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8)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칙 제37조의2, 국내대학교환학생에 대한 시행세칙

11.2. 외국대학에서의 수학

1) 구분: 우리대학에서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수학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함

- ① 교환학생(ESP, Exchange Student Program): 학교(또는 기관) 간 교환협정에 의해 파견되는 학생으로,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함(단, 기숙사비, 생활비, 보험비 등은 파견대학 기준으로 학생이 파견대학에 직접 납부)
- ② 방문학생(VSP, Visiting Student Program): 교환학생 이외 자격으로 방문협정에 의해 파견되는 학생, 우리대학과 파견대학의 등록금을 각 대학에 모두 납부하고 이수학과 학점을 모두 인정받음
- ③ 유학생(SAP, Study Abroad Program): 교환학생 이외 자격으로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우리대학을 휴학하고 파견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며, 이수학점만 인정받음
- ④ 연수생: 교무처장이 승인한 외국대학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으로 SAP와 같이 취득학점만 인정하고 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2) 지원 자격

- ① 본교에서 2학기 이상(연수생은 1학기 이상)을 재학한 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최종학기는 본교에 재학하여야 함)
- ② 직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80/4.30 이상인 학생
- ③ TOEFL에서 아래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교환학생 및 1학기 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 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계열 : PBT 520, CBT 190, iBT 68점 이상
 - 인문사회계열: PBT 550, CBT 213, iBT 79점 이상
- ④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⑤ 의예과 및 치의예과 4학기 학생은 진급심사 종료 전까지 학점인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후 1학기 일반휴학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함

3) 지원 절차 및 시기

	구분	교환학생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시기	정규학기	국제처에서 정한 기간 이내	정규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계절제 수업	해당없음	계절제수업 개시 2개월 전까지
지원서류		국제처에서 지정한 소정의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입학허가서(연수허가서) 3. 수학계획서 4. 지도교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지원서류 제출처		국제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4) 수학기간

- ① 해외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음
※ Quarter제 대학에서는 1년 단위 수학을 원칙으로 함
- ② 교환학생 및 VSP학생은 해외 교류대학에서 수학 중 휴학할 수 없음

5) 취득학점 및 학기 인정

구분		교환학생 방문학생	유학생	연수생
학기 인정		인정함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
인정 학점	2개 학기*	졸업학점의 1/4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5 이내)		3학점 이내
	1개 학기*	졸업학점의 1/8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10 이내)		
	계절제 수업	7학점 이내		
해외대학 취득성적 환산		해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 환산에서 제외함		

※ Semester제를 채택하는 대학 기준이며, Quarter제 학기를 채용하는 대학은 위 기준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의 2/3만 인정함

6) 관련 규정: 학칙 37조의2,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XII. 학점인정

12.1. 학점인정의 기본 원칙

1) 학점인정범위

- ①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우리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통산하여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복수학위 협정교 학생 가운데 우리대학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3/4까지 인정 가능
- ② 타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 중 우리대학에서 필요한 과목만을 인정

2) 과목인정과 학점인정

- ① 일반적으로 학점인정과 과목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학점 또는 과목 중 하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 졸업에 필요한 과목(교양기초, 대학교양, (복수·부)전공과목)에 대해서만 과목을 인정하며, 졸업에 불필요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② 학점만 인정하는 경우
 - 교환학생 또는 편입생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일반선택 영역으로 학점만 인정
- ③ 과목만 인정: 주로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또는 학사편입생의 경우 적용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또는 학사편입생이 제1전공(전적대학) 재학 중 복수전공·편입학과 의 필수과목을 수강하여, 해당 과목 이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목인정을 거쳐 과목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과목인정만 받은 경우 복수전공·학사편입 후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은 하향되지 않음
 - 예) 경영학과로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제1전공 이수 시 마케팅, 재무회계 등을 수강하여 과목을 인정받은 경우, 이 학생은 복수전공 중 해당 필수과목 이수의무는 면제받으나,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졸업이수학점 51학점 이수의무는 변동이 없음

3) 학점·과목인정 기준

- ① 타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이 우리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과 교과내용이 거의 유사할 경우에 책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체 인정함
- ② 타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대체 인정함. 단, 우리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보다 학점이 낮은 경우, 내용이 연계된 두 과목의 학점을 합하여 우리대학에서 개설된 과목과 같거나 더 높을 경우에는 대체인정할 수 있음
-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 개설과목의 학점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서 이수한 한 과목을 우리대학에서 두 과목 이상으로 대체인정할 수 없음
- ③ 성적이 “F”인 경우 학점, 과목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Pass인 경우 학점단위가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4) 취득 성적 및 학점의 표기

- ① 해외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편입 전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인정 시, 교과목과 학점을 인정하더라도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대학의 평량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cf. 국내대학 교환학생의 경우 이수과목과 성적을 모두 인정하며,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함
- ② 성적증명서 표기
 -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경우: 파견학기, 인정학점, 파견기간, 파견대학명만 기재하며, 이수과목, 성적 등은 기재하지 않음: 예) “2026-1,2학기 UCLA 교환학생 28학점 인정”
 - 국내대학 교환학생의 경우: 우리대학 수강 과목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수학 대학명을 별도 기재
 - 편입학생의 경우: 인정학과와 인정학점만 기재: 예) “3학년 편입 63학점 인정”

12.2. 학점인정 절차

1) 인정교과 선택

교환대학/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우리대학의 졸업학점이수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받을 과목 선정

2) 학점인정원 작성 및 제출

- ①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경우
 - 국제처 국제팀 또는 파견을 주관한 대학(학과) 사무실에서 성적증명서 도착여부 확인 및 인정 환산 학점 학사정보시스템 입력 확인
 - 승인권자(담당교수자)에게 수업계획서와 함께 대체과목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인정학점신청(해외교환, 유학생) 메뉴를 통해 증빙자료(수업계획서, 승인메일캡처 등)를 첨부하여 승인요청
 - 교과목 인정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음
 - 학사정보시스템-인정학점/대체교과목조회를 통해 최종 승인내역 확인(승인이 지연될 경우 지정된 승인 담당교수자에게 확인 필요)
- ② 편입학생의 경우
 - 승인권자(담당교수자)에게 수업계획서와 함께 대체과목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학사정보시스템-인정학점신청(편입) 메뉴를 통해 증빙자료(수업계획서, 승인메일캡처 등)를 첨부하여 승인요청
- 교과목인정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음
- 교양, 전공별 교과목 인정 승인권자가 승인 또는 반려
- 학사정보시스템-인정학점/대체교과목조회를 통해 최종 승인내역 확인(승인이 지연될 경우 지정된 승인 담당교수자에게 확인 필요)
- 학사지원팀에서 인정내역 학적기록에 반영

3) 학점인정원 제출 기한

- ① 파견기간 종료 직후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② 지정된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나 장학금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 최종 승인여부 확인: 학사포털서비스 성적메뉴에서 확인

5) 주의사항

- ① 인정받을 과목이 없더라도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함(편입: 일반선택으로 전학점 입력, 교환/유학생: 학사지원팀에 별도 연락)
- ②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학사포털서비스-전체성적조회 혹은 인정학점/대체교과목조회를 통해 최종 승인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함

12.3. 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학점인정 범위〉

편입구분	일반편입		학사편입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인정학점	32~35학점 인정 졸업학점의 1/4 이내	63~70학점 인정 졸업학점의 1/2 이내	학점인정 없음
과목인정	필수졸업요건 과목만 인정		과목인정 가능 단, 과목인정을 받더라도 이수학점(58학점 이상)은 변동 없음
채 플	우리대학 의무이수횟수	3학년 편입생: 2회(2P) 2학년 편입생: 3회(3P)	2회(2P)
	과목인정	전적대학에서 채플을 이수한 경우 교과실의 확인을 통해 1회(1P)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전공인정범위: 교양·전공 각 영역별 학점인정범위는 학과(전공)별로 차이가 있음

12.4. 교환학생 · 유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1) 학점인정 범위

① 수학 기간별 인정학점(수학 기간은 최대 1년)

이수학기	교환학생 · 유학생	연수생
2개 학기	졸업학점의 1/4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5 이내)	3학점 이내
1개 학기	졸업학점의 1/8이내(단, 5년제 건축학전공자는 1/10 이내)	
계절제수업	7학점 이내	

※ Semester제를 채택하는 대학 기준이며, Quarter제 학기를 채용하는 대학은 위 기준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의 2/3만 인정함

② 계절제수업 수학학점인정

- 해외대학 파견 전 계절제수업 수학에 대하여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기간 중 파견된 동일대학 또는 타 대학에서 계절제수업을 자비로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방문/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범위 이내에서만 인정
- 학점인정 예시

사 례	최대 인정학점
A대 교환학생 1학기 + A대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에 대해 유학생 수학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졸업학점의 1/8 + 7학점
A대 교환학생 1학기 + A대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에 대해 유학생 수학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졸업학점의 1/8, 계절제수업 이수학점은 교환학생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A대 교환학생 1학기 + B대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에 대해 유학생 수학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졸업학점의 1/8 + 7학점
A대 교환학생 1학기 + B대 계절제수업 이수 계절제수업에 대해 유학생 수학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졸업학점의 1/8, 계절제수업 이수학점은 인정 불가

12.5. 입학 전 선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1) 공통 사항

- ① AP에 대한 학점인정 규정은 연단위로 변경될 수 있음
- ② 고등학교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AP교과에 대한 학점과 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 ③ 고교 과정에서 이수한 AP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취득인증원”과 “공인시험성적표” 및 해당 교과 이수 내역이 기록된 “고교 성적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시험 성적만으로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음)

2) 연세대학교입학자 이외의 학생에 대한 AP학점 인정

학생의 소속 대학 · 학과	AP 강좌		점수	인정 교과목	인정학점
경제학부	Economics	Economics: Micro		ECO1001 경제학입문	3
		Economics: Macro			
응용통계학과	Statistics		4	STA1001 통계학입문	학점은 불인정
공과대학	Biology		4	BIO1011 공학생물학및실험(1)	3
	Calculus AB		4	MAT1011 공학수학(1)	3
	Calculus BC		4	MAT1012 공학수학(2)	3
	Chemistry		4	CHE1011 공학화학및실험(1)	3
	Computer Science A		4	ENG1108 공학정보처리	3
	Physics B		4	PHY1011 공학물리학및실험(1)	3
	Physics C		4	PHY1012 공학물리학및실험(2)	3
인공지능 융합대학	Biology		4	BIO1011 공학생물학및실험(1)	3
	Calculus AB		4	MAT1011 공학수학(1)	3
	Calculus BC		4	MAT1012 공학수학(2)	3
	Chemistry		4	CHE1011 공학화학및실험(1)	3
	Computer Science A		4	CSI2106 컴퓨터과학입문	3
	Physics B		4	PHY1011 공학물리학및실험(1)	3
	Physics C		4	PHY1012 공학물리학및실험(2)	3

3) 언더우드국제대학 입학자의 AP학점 인정

- ① 인정학점 상한: 최대 9학점 이내 단, 전공은 6학점 이내에 한함
- ② 언더우드국제대학생은 AP, IB학점 인정과 체험학습 수강 등 입학 전 수학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통산하여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AP학점 및 과목 인정 기준

AP Examinations			UIC Course Exemption		
Category	Course Title	Score	Course Code	Course Title	Awarding Credits
English	AP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5	CLC0001	AP: English Literature	3

AP Examinations			UIC Course Exemption			
Category	Course Title	Score	Course Code	Course Title	Awarding Credits	
History & Social Sciences	AP European History	5	UIC0004	AP: European History	3	
	AP Macroeconomics	5	ECO1104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3	
	AP Microeconomics	5	ECO1103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3	
	AP Psychology	5	UIC0009	AP: Psychology	3	
	AP United States Government & Politics	4	POL1002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3	
	AP United States History	5	UIC0005	AP: American History	3	
	AP World History: Modern	5	UIC0006	AP: World History	3	
Math & Computer Sci.	AP Calculus BC	5	MAT1001	Calculus and Vector Analysis I	3	
	AP Statistics	5	STA1001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Sciences	AP Biology	5	BIO1001	General Biology and Laboratory I	3	
	AP Chemistry	5	CHE1001	General Chemistry & Laboratory I	3	
	AP Physics 1: Algebra-Based*	4*	PHY1001	General Physics & Laboratory I	3	3 max.
	AP Physics 2: Algebra-Based*					
	AP Physics C: Electricity & Magnetism	5	PHY1001	General Physics & Laboratory I	3	
	AP Physics C: Mechanics	5	PHY1001	General Physics & Laboratory I	3	
World Languages & Cultures	AP French Language and Culture	5	UIC0002	AP: French Language	3	
	AP German Language and Culture	5	UIC0003	AP: German Language	3	
	AP Spanish Language and Culture	5	UIC0008	AP: Spanish Language	3	3 max.
	AP Spanish Literature and Culture	5	CLC0004	AP: Spanish Literature	3	

* For those who completed both courses (AP Physics 1 & 2) with minimum score of 4 for each course.

4) 연더우드국제대학 입학자의 IB Diploma 학점 인정

- ① 인정학점 상한: 최대 9학점 이내 단, 전공은 6학점 이내에 한함
- ② 언더우드국제대학생은 AP, IB학점 인정과 체험학습 수강 등 입학 전 수학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통산하여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인정원과 공인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 ④ IBDP Subject 학점 및 과목 인정 기준

IBDP Subjects			UIC Course Exemption		
Category	Course Title (Level)	Score	Course Code	Course Title	Awarding Credits
Group 1: Language A1	Language A: Literature	HL	CLC0001	AP: English Literature	3
Group 2: Second Language	Language B-Chinese	HL	UIC0010	IB: Chinese Language	3
	Language B-Japanese	HL	UIC0011	IB: Japanese Language	3
	Language B-Spanish	HL	UIC0008	AP: Spanish Language	3
	Latin or Classical Greek	HL	CLC0003	AP: Latin Literature	3
	Language B-French	HL	UIC0002	AP: French Language	3
Group 3: Individuals & Society	Economics	HL	ECO1103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3
	Global Politics	HL	POL1002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3
	History	HL	UIC0006	AP: World History	3
	Philosophy	HL	UIC0012	IB: Philosophy	3
	Psychology	HL	UIC0009	AP: Psychology	3
Group 4: Sciences	Biology	HL	BIO1001	General Biology and Laboratory I	3
	Chemistry	HL	CHE1001	General Chemistry and Laboratory I	3
	Physics	HL	PHY1001	General Physics and Laboratory I	3
Group 5: Mathematics & Computer Sciences	Mathematics	HL	MAT1001	Calculus and Vector Analysis I	3
Group 6: The Arts	Visual Arts	HL	UIC0013	IB: The Arts	3
	Film	HL			3
	Music	HL			3

5) 제적 후 신입학 학생에 대한 과목인정

- ① 대상: 우리대학에서 자원퇴학 후 학부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
 - ② 인정 범위
 - 제적 전 C+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과목
 - 과목의 이수의무만 면제하며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6) 관련 규정: 입학 전 취득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X III. 기타

13.1. 등록

- 1) 등록금 납부 의무
 - ① 등록기간
 - 신입생 이외의 학생
 - 본 등록기간: 매 학기 개시 전 7일간 지정된 기간
 - 추가등록기간: 수강변경기간 후 3일간 수납
 - 신입생: 입학 전 60일 이내에 지정된 기간
 - ② 등록고지
 - 등록고지는 연세포탈시스템 공지 및 이메일 고지를 원칙으로 함
 - ③ 등록금 납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함
 - 학기 개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학(일반휴학, 질병휴학 및 입대휴학 모두 포함)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
- 2) 등록금 분납
 - ① 분납신청
 - 정해진 기간에 연세포탈시스템에서 분납신청서를 작성, 재무·회계팀의 승인을 얻음
 - 계절제수업과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
 - ② 차수별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각 차수별로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 각 차수별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제적함
- 3) 학기초과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의 등록금 납부
 - ① 학기초과자의 기준: 수업연한(8개학기. 단, 공과대학 건축학교육과정은 10개학기, 2학년 편입생은 6개학기,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기초과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 학점별 등록금을 납부함. 단, 채플 학점은 별도의 기준에 의함
 - 1학점 ~ 3학점: 1/6 납부
 - 4학점 ~ 6학점: 1/3 납부

- 7학점 ~ 9학점: 1/2 납부
- 10학점 이상: 전액 납부
- 1학점 미만(Pass/Non-Pass 과목 수강자): 별도 내규에 따름

③ 등록방법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경과 후 추가등록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에서 등록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5) 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및 사망으로 인하여 제적하는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반환 없음

② 반환 예외: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③ 등록금 분납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의 휴학·자퇴 시 등록금 정산

- 분납을 신청하고 등록금 일부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원퇴학하는 경우, 기간별 금액 공제 후 납부금액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6) 관련 규정: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257호), 학칙 제66조~제70조의2, 학사에 관한 내규 제2조,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3.2.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방법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2) 기재사항 정정 증빙서류

- ① 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경: 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
- ② 국적변경: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기타 국적 취득 또는 포기 사실증명서(국적변경자는 정정원에 국제처 확인을 받아야 함)
- ③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관련 규정: 학사에 관한 내규 42조

행사와 활동

교내 주요 행사 /	166
학생생활 안내 /	169
국제처 /	173
취업진로, 국가고시, 현장실습 /	180
윤리인권위원회 /	184
학술문화처 도서관 /	228
정보통신서비스 안내 /	242
대학직장예비군연대 /	246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	248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	250
체육활동 /	253
신앙활동 /	257
보건기관 /	263
봉사활동 /	266
학생건강공제회 /	268
총동문회 /	272

1. 교내 주요 행사

가. 일반적 행사

1) 창립기념일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은 우리 대학교 창립기념일이다. 1957년에 43년의 역사를 가진 연희 대학교와 53년의 전통을 지닌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되어 연세대학교로 발족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 **기념식** : 창립기념식은 재학생, 교직원 및 동문과 학부모 그리고 내외 귀빈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하여 연세의 발전을 찬양하고 이 학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약하는 날이다. 특히, 이 행사에는 연세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업을 추모하는 특별한 기념행사를 주제로 삼게 되어 큰 뜻을 가지게 된다.

- **학부재상봉 행사** : 학부 졸업 25주년·50주년을 기념하여 195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Homecoming 행사이다.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본 행사를 통해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학창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며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와 재상봉 동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사로 매년 2,0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교내 최대 규모의 동문행사이다.

2) 연세사회참여활동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3C 구성요소 중 하나인 Christianity(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섬김과 봉사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또한 교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조직화, 체계화하여 국내외 섬김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아울러, 교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글로벌사회공헌원을 설립, 연세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개최 등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신입생 지도·교육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지도행사는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대학의 교육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고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인 성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실제적 자기평가, 자아 존중감 증대, 명확한 가치 확립, 리더십 개발, 건강한 행동, 의미 있는 상호관계, 성인으로서의 독립심, 사회적 책임감, 공동체 정신, 생산적인 라이프 스타일, 다양성의 이해 등을 목표로 운영한다.

신입생 지도·교육 프로그램명	내 용
입학 전 학사지도	대학 첫 학기의 수강신청과 학업계획지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의 학생자치 프로그램 및 학교자원 소개
RC 하우스 오리엔테이션	신입생을 위하여 Residential College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함. 신입생들의 하우스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담당RA로부터 학교생활과 하우스에서의 공동체 생활요령을 배움
신입생 설문조사	신입생의 대학에 대한 인식과 진로 계획에 대한 설문 조사

정기적으로 신입생들의 지도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시대 상황과 학생들의 의식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입생 지도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4) 학위수여식

매년 2월 학위수여식은 각 대학(원)의 특성에 맞추어 각각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거행되며 8월에는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수여식이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식장에는 내빈, 학부모, 동문,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인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의식에 따라 총장 주재로 식이 거행되는데, 이 식에서는 형설의 공을 쌓고 연세인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그들의 노력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교육법과 본 대학교 학칙에 의거 그 학위에 부수되고 모든 영광과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진로를 축복한다.

5) 음악대학 정기공연

음악대학에서는 관현악과가 주관하는 오케스트라(관현악), 심포닉 윈드오케스트라(관악합주), 스트링챔버오케스트라(현악합주)의 연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는 1,2학년으로 구성된 연세심포니오케스트라와 3,4학년으로 구성된 연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고전, 낭만시대 교향곡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리허설과 연주를 가지며, 이후 전학년으로 구성된 연합오케스트라가 협연자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학생의 협주곡과 후기낭만, 근대시대의 대편성 관현악곡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과 함께 정기연주회의 무대에 선다.

성악과가 주관하는 종합예술의 대표적 장르인 오페라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국내의 대표적인 오페라 전용 극장에서 개최하며 교회음악과에서 주관하는 교회음악 연주회는 매년 1회 루스채플에서 개최되며 합창과 오르간 독주 그리고 하프시코드와 함께하는바로크 시대의 정경음악을 소개한다. 또한 100명 이상의 큰 규모로 구성 된 합창단인 심포닉 콰이어가 대규모 합창 음악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매학기 정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합창 명문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는 콘서트 콰이어가 국내외 기획 공연을 하고 있으며 교목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수난절 예배와 하반기 성탄절 예배에서는 교회음악 합창단과 오르간 교수가 함께 연주하여 예배음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또한 졸업 연주회는 졸업 예정자들이 출연하여 4년간 연마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공개 연주로 졸업예정자들에게는 필수로 거쳐야 되는 연주회이다.

음악대학은 이러한 정기적인 연주회를 통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연주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대학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연·고대 친선경기

한국의 체육계에 있어서 가장 오랜 전통과 의의를 갖고 개최되는 이 친선경기는 양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 및 연고자가 함께 모여 평소에 기른 정신, 학풍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두 대학교가 친선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큰 체육행사이다.

이 경기는 가을의 체육 시즌을 택하며, 출전 종목은 축구, 농구, 야구, 럭비 및 아이스하키 5개 종목이며 참가 선수의 자격은 (1) 등록된 재학생으로 (2)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 교외 운동단체의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며 (4) 제대 복교자는 복교 후 6개월 이상 재학한자로 규정한다.

나. 정기적인 종교행사

1) 연세가족예배

학교의 기독교적 건학정신을 되새기고 연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다지기 위해, 학기 중 목요일 12시 루스채플에서 교수와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오찬을 하며 친교를 나눈다.

2) 졸업예배

형설의 공을 쌓고 연세대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로서,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이 참석하여 졸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졸업식 직전 일요일에 루스채플에서 예배를 드린다.

3) 성금요일예배/부활절예배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모든 교직원이 함께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를 드린다.

4) 창립기념예배

우리대학교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선각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창립기념일이 있는 달에는 창립기념예배를 드린다.

5) 추수감사절예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추수감사절예배를 드린다.

6) 성탄절예배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로서, 교목실과 교회음악과가 연합하여 성탄음악을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2. 학생생활 안내

가. 학생증 발급

학생증(ID카드)은 재학 중인 학생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도서관출, 교내시설 출입, 전자출결 기능을 겸하며, 금융기능을 추가하여 은행체크카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 유의사항

- 가) (편)입학 수속을 마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생증을 신청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 나) 학생증은 졸업 때까지 사용하게 되며,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시 학생증은 효력이 정지된다.
- 다) 학생증에 금융기능을 연동한 경우 학생증을 분실 시 즉시 우리카드 고객센터(전화:1500-9955)로 분실신고 후 학생증 금융기능정지를 요청하고, 연세포탈의 학생증 발급 메뉴에서도 바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라) 학생증이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때에는 연세포탈에서 학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입생 및 편입생 학생증 발급

가) 신청 및 접수

- (1) 1단계 : 학생증 신규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연세포탈서비스 → 로그인 → 학사 LINK 중 학생증 발급 선택 → 학생증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한다.
- (2) 2단계 : 2/8월 소정 기간에 우리은행 원뱅크 앱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 → 대학 ID카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한다.
- (3) 기타 : 해당 기간 이후에는 연세포탈의 '학생증 발급' 메뉴에서 신청한다.
- (4) 상세 일정은 매학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입생 학생증 발급 안내를 참고한다.

나) 학생증 교부

- (1) 금융기능 연계 학생증은 신청 시 지정한 주소로 우송
- (2) 금융기능이 연계되지 않은 학생증은 수령장소 별도 고지함

3) 재발급

- 가) 학생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연세포탈의 학생증 발급 메뉴에서 분실/훼손 신고를 한 후 재발급 신청한다. 금융기능이 연계된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우리카드 고객센터(전화:1500-9955)에도 분실 신고해야 한다.
- 나) 연세포탈서비스 → 로그인 → 학사 LINK 중 학생증 발급 선택 → 분실/훼손 관리 → 분실

- /훼손 신고 → 등록 → 학생증/신분증 관리 → 학생증 신청
- 다) 재발급 학생증 수령: 별도 안내함

나. 증명서 발급

1) 학부 · 대학원 증명서

가) 증명종류

졸업, 성적, 학적부, 재학, 휴학, 재적, 수료, 졸업예정, 학위수여(예정), 장학(비)수혜증명 등

나) 발급 방법

- (1) 인터넷 증명 발급: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의 '인터넷 증명서' 메뉴에서 즉시 발급 혹은 우편증명발급으로 신청
- (2) 교내 무인증명발급기 발급: 백양누리에 설치된 무인증명발급기 이용
- (3) 창구 발급
 -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서 발급
 - 신분증 지참,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
- (4) 정부24(<https://www.gov.kr>) 본인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 검색창에 필요한 증명서 선택 신청 → 지정된 주민센터에서 팩스 증명서 수령
- (5) 우체국 민원우편 이용

다) 증명 봉인: 유학 증빙서류 제출 등 봉인이 필요한 경우 우편발급 또는 창구발급을 통해 봉인 요청

라) 수수료

- (1) 무료: 연세포탈의 '인터넷 증명서' 메뉴에서 직접 프린터 출력 시(2017. 3. 1.부터)
 - (2) 유료: 창구발급, 무인증명발급기 이용, 팩스민원(정부24) 이용, 우체국 민원우편
- ※ 우편증명 발급 시에는 발급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이 추가 부과됨

2) 교직원 증명서

다음의 교직원 증명서를 총장(영문증명은 교무처장/총무처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종합서비스센터와 연세포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발급한다.

가) 발급대상 및 증명

구분	종류	재직 증명	경력 증명	강의 경력	퇴직 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납입영수증**
신촌, 국제, 미래 캠퍼스	교원*	○	○	○	○	○	○
	직원	○	○		○	○	○

구분	종류	재직 증명	경력 증명	강의 경력	퇴직 증명	원천 징수 영수증**	갑근세 납입 영수증**
산학 협력단	연구교수	○	○		○		
	연구원	○	○		○		
	직원	○	○		○		

* 교원: 전임, 비전임, 강사

** 산학협력단의 원천징수/갑근세납입영수증은 산학협력단에서 발급

※ 의료원 교직원의 상기 증명서 중 연세포탈서비스에서 발급이 불가하면 의료원 인사팀에 발급 문의 (문의처 ☎ 2228-1288)

※ 원주 산학협력단 교직원의 제 증명서는 원주산학협력단 인사총무팀에서 발급 (문의처 ☎ 033-760-5262)

나) 발급방법

(1) 인터넷

- 재직/경력/강의경력/퇴직증명서: 연세포탈서비스(교직원 계정 로그인)
→ 인터넷 증명서 → 인터넷즉시발급 클릭
- 원천징수영수증/갑근세납입영수증: 연세포탈서비스(교직원 계정 로그인)
→ 행정정보시스템 → ERP 행정업무 → 인사/급여 → 급여관리

(2) 창구: 신분증 필수, 위임 시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

창구 위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

(평일 09:00~17:20, TEL. 02-2123-3200~5, 공휴일 휴무)

다. 장학금 및 학자금 안내

1) 장학금 안내

2023년 신촌캠퍼스 학부(의치간 포함)의 장학금 지급액은 약 687억원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약 38%이다.

2) 장학금의 종류

• 연세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40이상인 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대학 배정 장학금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재학생 중에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성적이 우수한 자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은 기말고사 이후에 연세포탈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연세포탈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다.

- 연세 특별 장학금

매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사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보훈 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성적에 관계없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북한이탈 주민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학생에게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반액은 국가보훈처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국가고시 장학금

재직 중 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합격자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최종 합격자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봉사 장학금

총학생회 및 학생 자치 기구에서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학생 활동)에 기여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평화 장학금

대학언론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신문방송편집인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총학생회 생협 장학금

생활 협동조합에서 매 학기 출자하는 장학금으로서 생협 출자를 한 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생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우수 선수 장학금

우수한 체육선수 중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체육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연세 복지 장학금

교직원 직계 자녀로 학업성적이 2.00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근로 장학금

매 학기 학생지원팀(장학파트)에서 선발되고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한마음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마음장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1분위까지 수혜요건을 유지하면 매학기 등록금 전액(첫 학기 입학금 포함)과 교재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기금 장학금

본교 동문, 개인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기탁자의 뜻에 따라 해당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교외 장학금

본 대학교의 추천이나, 교외 장학 재단에서 지정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3)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구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온라인(www.kosaf.go.kr)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대출승인 후 등록금이 학교로 이체 된다.

3. 국제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국제처의 모체인 국제교육교류원은 1960년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진출하면서 우리문화에 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위해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발족된 기관이다. 이후 국내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화 경쟁이 가속화되어 2007년 2월 국제교육교류원을 전격 개편하여 학교 본부 기관으로서 새롭게 국제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2012년 9월에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 비학위과정 교육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영어강의 확대, 교육과정 개선 장단기 계획 수립 등 수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환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국제교육센터를 신설하였다. 2018년 3월, 외국인 학생 입학 확대를 도모하고 외국인 교원,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팀, 외국인지원팀, 국제입학팀으로 재편되었다. 2020년 9월 국제교류팀과 외국인지원팀이 국제팀으로 통합되어 국제처는 국제팀과 국제입학팀으로 구성되었으나, 2022년 3월 국제입학 업무가 입학처로 이관되고 2022년 9월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가 신설되어 국제처는 국제처 국제팀,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팀은 국제화 전략사업 기획 및 추진, 국제 컨소시엄 가입 및 운영, 학술협정 체결 및 관리, 국제 의전 및 행사, 국제프로그램 홍보, 정규학기 Outbound/ Inbound 학생 파견, Inbound 교환-방문학생 교육, 국제하계대학, 국제동계대학, 기타 특별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총괄 관리 및 장학금 업무, 글로벌라운지 운영 등은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연혁

1966년 9월 1일: International Division 첫 발족

1982년 11월 12일: 국제학부 강좌를 일반학생들에게도 개방 결정

1983년 9월 9일: 국제교육부(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로 개칭
 1985년 6월 21일: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ession) 개설
 1985년 11월 1일: 부속교육기관에 편입
 2000년 10월 26일: 국제교육교류부(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xchange)로 개칭
 2002년 11월 22일: 글로벌라운지 개소
 2002년 7월 8일: 자비해외유학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 개설
 2004년 9월 1일: 국제교육교류원(영문명칭은 동일)으로 승격
 2007년 2월 1일: 국제처(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로 승격되어 국제교류과와 국제지원과를 둠
 2007년 3월 22일: 국제화전략기획위원회 발족
 2007년 9월 19일: 글로벌라운지 리모델링 완공
 2008년 7월 9일-12일: 제4차 QS APPLE (Asia-Pacific Professional Leaders in Education) 컨퍼런스 개최
 2009년 6월 15일: 국제처 팀제 운영(국제교류팀, 국제지원팀)
 2012년 9월 1일: 국제교육센터 신설
 2013년 9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팀, 국제교육센터)
 2013년 12월 26일: 국제동계대학(Winter Abroad at Yonsei) 개설
 2014년 3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전략TF팀, 국제팀, 국제교육센터)
 2016년 3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팀, 국제교육센터)
 2017년 4월 8일: 글로벌라운지 백양누리 내로 이전
 2018년 3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교류팀, 외국인지원팀, 국제입학팀)
 2020년 9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팀, 국제입학팀)
 2022년 3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팀)
 2022년 9월 1일: 국제처 조직 개편(국제팀,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다. 주요업무

1) 국제팀

가) 국제화 전략사업 기획 및 추진

(1) 국제 컨소시엄 가입 및 운영

최근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동향이 양자간 학생교환에서 연구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네트워크 협력으로 옮겨감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EARU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와 같은 국제대학협회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일본 게이오대학, 중국 홍콩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3-캠퍼스 비교동아시아

아학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2) 전략적 파트너십

지역별 우수 대학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네트워크 다차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대학, 호주 시드니대학, 일본 게이오대학, 미국 에모리대학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나) 국제 의전 및 행사

외국 정부 및 교육관계자와 외국 대학 방문객에 대한 의전을 담당한다. 또한 외국 주요 인사의 교내 특강 등 국제행사를 지원한다.

다) 국제처 프로그램 홍보

매년 교환대학 및 주요 해외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처 영문 브로셔를 제작하여 국제 의전 및 행사시 본교 국제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홍보 책자와 함께 배부하고 있다. 또한, 국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소식 업데이트 등 해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 학술교류 및 학생 교환 협정 관리

(1) 개요: 해외기관과의 1:1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

(2) 협정 체결 현황: 78개국 730여개 기관(2025년 1월 기준)

마) 국제회의 및 해외유학 박람회 참가

APAIE (Asia 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AFSA (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visers;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EAI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등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국제 교육 담당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요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관 해외유학 박람회의 교내 관련 부서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바) 교내 해외교류 사무소 관리

교내 해외교류 사무소인 UCEAP, CIEE를 관리하고 있다.

사) Incoming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1) 개요

-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정규학기 과정에 참여하여 학점 취득
- 이 경우 등록금은 소속 학교에 납부
- 대학간 연락, 입학허가서 및 비자서류 발급, 입국 이후의 학사업무 등 담당

(2) 지원자격

- 원 소속대학 학부 1년이상 수료, 대학원 1학기 이상 수료
- 전 학년 평량평균 2.5/4.0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TOEFL IBT 79 이상 또는 한국어 강의 수강이 가능할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

아) Outgoing 교환학생 파견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1) 개요

- 우리 학교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수업료는 우리 학교에 납부하고, 수업은

외국대학 (Host University)에서 수강하여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2) 규모

- 협정 체결 기관 수: 78개국 730여개 기관(2025년 1월 기준)
- 교환학생 파견 규모: 1,000여명(2024학년도)

(3) 지원자격

- 전공에 상관없이 평량평균 2.8/4.3(백분율 84점) 이상의 학점
- 토플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으로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IBT성적 79점, 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계열의 경우 IBT성적 68점, 대학원생의 경우 IBT성적 100점 이상 취득한 자
- 비영여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해당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받아야 함

(4) 여름 겨울방학 단기 해외교환학생파견프로그램

- 해외 우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학년도 여름방학부터 운영
- 파견대학: 영국 King's College London, King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Leeds, 네덜란드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싱가포르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중국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호주 Deakin University, 일본 Rikkyo University 등

* 파견대학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차) Outgoing 방문학생 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Program)

(1) 개요

- 해외 우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외국대학에 파견되어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교와 파견대학 모두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함.
- 파견 장려를 위해 우리 대학은 등록금의 일부를 VSP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지원 자격

- 우리 대학에서 최소 2개 학기를 수료한 학부생
-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전학년 평량평균 2.8/4.3(백분율 84점) 이상
- TOEFL IBT 79(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지원자는 68) 이상, 파견대학별 어학 능력 조건 충족

(3) 파견대학

- Study Abroad Foundation (SAF) 파트너대학

* 파견대학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차) 글로벌 STERN(Study+Intern) 프로그램

(1) 개요

- 국제 비즈니스 실무 경험,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해 취업·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그램

(2) 지원자격

- 국제처 교환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
- 평량평균 3.0/4.3 이상
- TOEFL iBT 80점 이상 (현지 기업에서 인턴 업무가 가능할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 요구)
- 파견하고자 하는 학기에 휴학 필요 (학점 인정 불가)
- 4학기 이상 수료 (4학년 2학기인 학생은 초과학기 서약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파견기관

- Institute for the International Education of Students (IES) Abroad (바르셀로나, 런던, 밀라노, 더블린)

카)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1) 개요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미국 현지 어학연수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어학연수(2~3개월) 및 인턴십(3~8개월)으로 구성

(2) 지원자격

- 지원 시점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및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 성적 보유자

(3) 참고사항

- 미국 국무부가 추천한 현지중개기관(SPONSOR)이 어학연수 및 인턴십 주선

타) 국내 및 해외 장학금

미래에셋 장학금을 비롯하여 글로벌리더 장학금, 교류활성화장학금, ASEM-DUO 장학금, 이윤재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금,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금, GKS 우수교환학생 장학금, Top 20 Scholarship, 기타 해외기관 및 대학교와 관련된 장학금 등에 대한 안내, 선발, 지급, 추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파) Incoming 교환학생 교육 담당

(1) 개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정규학기 학사 운영

(2) 운영

- 1학기 또는 1년 과정으로 본교 학사일정과 동일
-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수강 가능
-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별도의 영어수업 및 한국어 위탁과정 개설·운영
- 학부 및 일반대학원, 국제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영어강좌 수강 가능
- 학적자료 관리 업무

하) Incoming 방문학생 선발 및 교육 담당

(1) 개요

- 외국대학 재학생이 연세대학교 정규학기에 참여하여 학점 취득

- 학생 소속교와의 협정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은 비교환학생(방문학생)으로 지원가능하며, 등록금은 연세대학교에 납부

(2) 입학자격

- 외국대학 학부 1년 이상,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그룹방문일 경우 전체 평량평균이 4.0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 개인방문일 경우 전체 평량평균이 4.0 만점 기준으로 3.0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3)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서
- 여권 사본, 공식 성적증명서, 학습 계획서
- 보험가입 확인서
- 어학증명서(영어 또는 한국어)
- 재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법무부 출입국 관련 서류

(4) 기타 교육과정 운영은 교환학생과 동일

거) 국제하계대학 (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

(1) 개요

- 여름방학 4주 또는 6주 동안 외국대학 재학생 및 본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비학위 프로그램
- 개설과목
 - 한국학, 동아시아학, 인문학, 경제·경영학, 사회과학, 한국어, 이·공학 7개 분야 약 100개 과목
 - 참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 제공 (Corporate Internship 및 Research Internship Program)
- 수강학점: 최소 3학점, 최대 9학점

(2) 입학자격

- GPA 4.0 만점에 2.0 이상인 외국대학 재학생 혹은 외국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서
- 성적증명서 원본 혹은 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 원본(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만 해당)

너) 국제동계대학 (Winter Abroad at Yonsei)

(1) 개요

- 겨울방학 3주 동안 외국대학 재학생 및 본교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비학위 프로그램
- 개설과목: 한국학, 경제·경영학, 사회과학, 이·공학 분야, 한국어 등 총 30여 과목
- 수강학점: 최소 3학점, 최대 9학점

(2) 입학자격

- GPA 4.0 만점에 2.0 이상인 외국대학 재학생 혹은 외국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3) 제출서류
- 온라인 지원서
 - 성적증명서 원본 혹은 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 원본(외국 대학 입학 허가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만 해당)

2)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

가)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지원

(1) 외국인 교원 지원

외국인 교원의 출입국업무(사증발급 및 체류)와 신입교원의 초기정착을 지원한다. 신입교원의 입국 시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급, 주거 확보, 항공료 지급 등을 돕는다. 이 밖에 교원 교류프로그램인 Harvard- Yenching 프로그램과 United Boa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 외국인 학생 지원

학부/일반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교환학생, 어학연수생 등)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매 학기 학점 이수 및 출결 현황과 각종 학적변동사항을 수시로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친목 및 네트워크 활성을 위해 국가별 유학생회 등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운영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총괄 담당한다.

2024년 2학기 기준 학부 50명, 대학원 90명이 재학 중이다.

다) 유학생 활동 지원 및 위기 대응

유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 국가별 유학생회, 행사 개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유학생 지도 교수제 등을 지원하고, 외국어 심리상담 시행 및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라) 글로벌라운지 운영

2002년 11월에 문을 연 글로벌라운지는 본교에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과 내국인학생 간 학술과 문화의 교류장소이다. 2017년 4월 백양누리로 이전했다. 국제처 산하 학생자치기구인 Yonsei Global, Mentors Club과 Foreign Student Union 등 외국인 유학생회의 교류활동 장소로도 활용하며, 교내 국제행사에도 대관한다. 2022년 2학기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대면 안내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서비스데스크를 글로벌라운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교육국제화역량인증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본교 총괄부서로서 학부, 대학원, 어학당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인증 심사에 대응한다. 인증은 매년 지표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하

다. 본교는 현재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서 외국인 출입국 업무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4. 취업진로, 국가고시, 현장실습(학점인정)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양한 취업·진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경력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특강, 직무교육, 입사서류 컨설팅, 모의 직무성검사 및 면접, 취업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경력개발시스템 (<http://career.yonsei.ac.kr>)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신청한다.

1) 취업특강

외부 전문 인사를 초빙하여 채용동향, 기업분석, 채용전형 단계별 대비 전략 등 취업시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진로를 고민 중이거나 취업준비를 막 시작한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2) 직무교육

최근 채용 시장이 직무 기반 채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공통되게 요구하는 핵심 직무에 대한 최신 경향과 현장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현직자와 함께 현업 과제를 수행하거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를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직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정한 직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3) 입사서류 작성 지원

상·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 대비하여 입사서류 작성법에 관한 강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이 본인에게 특화된 입사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전문 컨설턴트의 국·영문 입사서류 1:1 첨삭 및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최적의 입사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실전 모의면접

기업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자소서 기반 인성/역량면접, 프레젠테이션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임원면접 등 유형별 실전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제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재 대두되는 AI면접 체험을 통하여 AI면접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5) 취업멘토링

기업별, 직무별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을 초빙하여 멘토링을 진행한다. 회사소개, 직무소개, 취업준비에 관한 비법 전수, Q&A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금융공기업 등은 대규모 재직 동문간담회의 형태로 진행하기도 한다. 외국계 기업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현직 동문들과의 멘토링 또한 진행하여 외국계 진출을 위한 진로지도를 진행하기도 한다.

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채널

1) 커리어연세: 경력개발시스템

※ 주소: <https://career.yonsei.ac.kr> (학사포탈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진로 설정부터 사회 진출 대비에 이르기까지 대학생활 전 주기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이력 확인
- 채용정보 및 대외활동 공고 열람, 기업 채용 설명회 및 상담 일정 확인
- 추천채용 기업 확인 및 지원
- 온라인 멘토링: 관심 기업에 재직 중인 동문 멘토와 질의응답
- 경력개발: 진로 탐색, 학년별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실천 여부 기록 및 포트폴리오 작성
- 상담: 취업진로 상담, 국가고시 상담, 입사지원서 온라인 첨삭 등

2)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커리어연세" 검색 > 친구추가
- https://pf.kakao.com/_qsgdtj

※ 인스타그램

- @career.yonsei
- <https://instagram.com/career.yonsei>

위 채널들과 친구를 맺으면 주기적으로 커리어연세 취업교육 프로그램, 행사 일정, 각종 팁 등을 받아보거나 확인할 수 있다.

다. 채용정보 제공

1) 취업박람회

매년 3월 및 9월 초 연세취업박람회 행사에 여러 기업을 유치하여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 목적의 부스를 운영한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요령에 관한 컨설팅 등 부대행사도 마

련하여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2) 기업 채용 상담 및 설명회 개최

교내 학생회관 2층 커리어 라운지, 공학원 대강당 및 세미나실, 공과대학 내 로비, 백양누리 등의 장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요 기업 채용 상담과 설명회를 연중 상시 진행한다.

3) 추천채용

추천채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경력개발시스템의 추천채용 공고에서 기업과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입사 절차 내 서류전형 가산점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 취업통계조사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 및 배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별 졸업자의 취업통계 정보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학교 전체 및 단과대학별 졸업생 현황, 취업률 등 각종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진로·취업 상담

경력개발시스템(<http://career.yonsei.ac.kr>)에서 상담 > 통합상담 > 진로·취업 상담을 통해 신청한다.

1) 진로 상담

- 내용: 학생들의 진로 문제 해결을 돕고 경력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저학년 진로설정에 필요한 적성·흥미·성격·가치관 검사를 활용한 진로지도
- 대상: 1, 2학년 또는 진로 미확정의 3, 4학년

2) 취업 상담: 서류 및 면접전형

- 내용: 취업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지원 업종 및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입사지원 전략수립, 목표기업 성공 취업을 위한 종합 상담 클리닉, 직무 결정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업 컨설팅
- 대상: 3, 4학년

바. 국가고시 지원

국가고시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한 국가고시[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및 변리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재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특강 및 모의고사 실시

각 국가고시 1차, 2차, 3차 시험을 대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저명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며, 각 국가고시별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2) 국가고시 합격자 1:1 상담

국가고시 합격자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국가고시 준비 단계부터 합격 시까지 수험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무약4학사(국가고시동) 입학생 선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가고시동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수험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국가고시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

국가고시에 관련된 최신 수험 정보, 합격자 수, 각 고시반 현황 등 고시와 관련된 대·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 ① 각 국가고시별로 핸드북 제작 및 배포
- ② 국가고시 설명회를 실시
- ③ 국가고시에 관련된 정보 커리어연세에 게시

5) 각 대학 고시실 예산 및 행정지원

각 단과대학 고시실에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한다.

사. 현장실습 학기제(학점인정)

[현장실습학기제]란 학점 인정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학부생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과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정규학기 15학점(계절학기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소정의 실습비를, 학교에서는 소정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참여 학생들이 각 전공별 유관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실무역량 개발 및 진로설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수기집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 신청: 현장실습지원시스템(<http://intern.yonsei.ac.kr>)

구분	정규학기	계절학기	비고
현장실습 기간	16주	8주	기관 실습지원비 지원, 학교 장학금 지원
취득 가능 학점	15학점	6학점	일반선택(일부 전공학점 부여 가능)
등록금	전액 납부	18만 원	계절학기 1학점 당 3만 원

5.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인권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구로 윤리센터와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2019년 3월에 직제를 개편하였다.

□ 홈페이지 주소: ehrc.yonsei.ac.kr

□ 위 치: 백양관 S202호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0.08.25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조직) ① 윤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직속기구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에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윤리인권위원장) ① 위원회에 윤리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 센터들을 관리·감독한다.

③ 위원장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윤리인권보고서) 위원장은 윤리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윤리 및 인권 정책의 개발 및 교육
2. 각 센터의 기본운영방안
3. 각 센터 간의 업무 조정 및 협의
4. 각 센터의 규정, 세칙 등의 제·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센터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윤리 및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협의 및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2020.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2.01.12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인”이란 윤리센터에 본 대학교 교직원의 「윤리기본규정」 위반을 신고한 사람, 인권센터에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 성평등센터에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2. “신고인 등”이란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 “위원장”이란 윤리인권위원장을 의미한다.
4. “센터 직원”이란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신고인의 신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신고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되되, 다른 규정이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총장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 보호제도 홍보) ① 총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인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윤리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2. 인권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3. 성평등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4. 기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는 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인 등의 요청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인 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총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본 대학교 구성원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본 대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본 대학교 구성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총장은 신고 등을 한 소속 교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등의 보호) 위원장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인 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제7조 위반으로 인해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2. 신고인 등이 제8조 위반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3. 신고인 등에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4.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5. 신고인 등에게 기타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윤리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부 칙<2022. 1. 12.>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가. 윤리센터

- 홈페이지 주소: clean.yonsei.ac.kr
- 위 치: 백양관 S202호 (☎02-2123-2113)
- e-mail: cleanyonsei@yonsei.ac.kr (사진 관련)
cleanedu@yonsei.ac.kr (외부강의 신고 관련)

윤리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교육 및 직무윤리를 확립하고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1) 윤리기본규정의 교육·상담,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윤리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 및 직무윤리, 부정청탁방지를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교직원 대상으로 한 학기 2회씩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윤리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교직원의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혹은 부정청탁을 인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접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급기관 및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 할 수 있다. 자료를 취급하는 자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3) 그 밖의 윤리위반행위에 있어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 감독을 한다.

윤리센터 신고·접수·처리절차



윤리기본규정

제정일: 2010.07.09

개정일: 2020.08.25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02-2123-21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기본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관 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도덕성의 결여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결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그 밖의 학교 구성원(학생 제외) 들(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08.16., 2020.8.25.>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4조 (품위유지 등)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성폭력·폭행 기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외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그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8.08.16., 2020.8.25.>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성폭력 문제 등에 관해 따로 개별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16.>

제2장 연구 및 교육 윤리

제6조 (연구 윤리 준수) <제목개정 2020.08.25.> ① 교직원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연구 윤리 준수 및 학문적 진실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5.>

③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20.08.25.>

제6조의 2 (교육 및 지도 윤리 준수) <제목개정 2020.08.25.> ① 교직원은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

거나 지도를 받는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강의와 지도의 본분을 벗어나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18.08.16.]

제3장 실험 윤리

제7조 (생명 윤리 및 동물 실험 윤리 준수) ① 교직원은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윤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0.8.25>

제4장 직무 윤리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8조 (차별대우 금지)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알선·청탁 금지)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교직원에게 소개
2. 알선 또는 청탁

제10조 (인사 청탁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연세대학교 교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봉·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교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교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여 업무나 인력의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교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교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제12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연세대학교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항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 (이권개입 등 금지)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금품 수수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교육, 연구, 사무용을 포함한 일체의 유형적 재산과 직무발명 결과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교직원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연세대학교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은 전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25>

제3절 정보·재무의 투명한 관리

제18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정보의 누설 금지)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관계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언론 및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연구비·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투명한 회계관리) 교직원은 회계서류 기타 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인권위원장 등

〈삭제 2020.8.25.〉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삭제 2020.8.25.〉

제7장 기타

제31조 (윤리규정의 운영) ① 총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이 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개정, 제23조 제3항, 제23조의 2, 제23조의 3 신설)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포함 전면개정)은 201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제5장 제목변경,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3항, 제2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2장 표제, 제6조의 2, 제3장 표제, 제4장 표제,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 2, 제7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3조부터 제30조)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센터 규정

제정일: 2020.08.25.

개정일: 2021.08.26.

담당부서: 윤리센터(02-2123-21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교육 및 연구윤리, 직무윤리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시정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조직) 윤리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제4조 (윤리센터장) ① 윤리센터에 윤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윤리센터를 대표하며, 윤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조 (업무) 윤리센터는 연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기본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윤리기본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윤리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감독

제6조 (신고)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윤리기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윤리센터 이외의 학교 기관이 「윤리기본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윤리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7조 (신고의 접수) 윤리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윤리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 ③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의 방법) 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윤리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 ①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센터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 윤리센터장, 인권센터장, 성평등센터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항
 2. 총장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 등의 제척)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

척된다.

1.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4조 (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한다.

②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 및 처리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의 요청)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8.26.〉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위반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전항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경고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1.8.26.〉

제19조 (불이익 금지) 윤리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윤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계부서는 윤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2020.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인권센터

- 홈페이지 주소 : humanrights.yonsei.ac.kr
- 위 치: 백양관 S202호 (☎02-2123-2116~2117)
- e-mail: humanrights@yonsei.ac.kr

인권센터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구현해가는 데 기여하고자 2017년 설립되었다.

1) 인권침해 사안의 해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다,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 자료를 취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권 관련 조사와 연구

인권 실태 및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연구한다,

3) 인권 교육 및 문화조성

연세인의 인권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조성 활동을 진행한다.

4)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연세인은 누구나 상담 및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제·징계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게 된다.

인권센터 신고·접수·처리절차



인권센터 규정

제정일: 2017.08.01.

개정일: 2021.08.26.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02-2123-21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19조의3 및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본 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0.8.25., 2021.8.26.>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삭제 2020.8.25.>
3. <삭제 2020.8.25.>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삭제 2020.8.25.>
6.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8.25.>
7. <삭제 2020.8.25.>
8. <삭제 2020.8.25.>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5., 2020.8.25.>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개정 2020.8.25.>
14.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중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신설 2021.8.2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제2조 제11호의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된다.〈개정 2020.8.25.〉

제4조 (조직) 인권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9. 6. 5., 2020.8.25.〉

제5조 (업무) 인권센터는 학내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19. 6. 5.〉

제6조 (인권센터장) ①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20.8.25.〉

제7조 (인권센터)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5., 2020.8.25., 2021.8.26.〉

1.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
2.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4.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계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6.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연구와 실시
7.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성평등센터) 삭제 〈2019. 6. 5.〉

제9조(심리상담소) 삭제 〈2019. 6. 5.〉

제10조(장애학생지원실) 삭제 〈2019. 6. 5.〉

제11조(운영위원회) 삭제 〈2019. 6. 5.〉

제12조 (조정자문위원회) 〈삭제 2018.08.16.〉

제13조 (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이 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개정 2020.8.25.〉

④ 인권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8.16., 2020.8.25.〉

제14조 (신고의 접수) ①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② 〈삭제 2020.8.25.〉

제15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3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 또는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0.8.25.>
 4. <삭제 2020.8.25.>
 5.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각하에 대한 불복) <삭제 2018.08.16.>

제17조 (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1.8.26.>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신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5.>

제18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 ② <삭제 2020.8.25.>
- ③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2020.8.25.>
- ④ <삭제 2018.08.16.>
- 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 ⑥ <삭제 2020.8.25.>
- ⑦ 센터장은 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신설 2020.8.26.>
- ⑧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20.8.26.>

제19조 (조사의 방법) 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5., 2020.8.25.>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개정 2020.8.25.>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개정 2020.8.25.>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개정 2020.8.25.>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5.>

제20조 (인권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17.11.07.> <개정 2020.8.25.> ①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7., 2018. 8. 16., 2019. 6. 5., 2020.8.25.>

-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 인권센터장, 윤리센터장, 성평등센터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8.25.>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16.>
- ④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0.08.25.>

제21조 (인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제목개정 2017.11.07.> <개정 2020.8.25.> ①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07.>

- 1. 인권센터의 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5., 2020.8.25.>
- 2. <삭제 2020.8.25.>
- 3. <삭제 2020.8.25.>
- 4. 총장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20.8.25.>
- 5. 인권침해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20.8.25.>
- 6. 그 밖에 인권침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20.8.25.>
- ②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0.8.25.>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8.25.>

제22조 (인권위원 등의 제척) <개정 2017.11.07.>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1. 7., 2019. 6. 5., 2020.8.25.>

- 1.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신설 2020.8.25.>

제23조 (인권위원 등의 기피) <제목개정 2017.11.07.>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 1.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8.25.>
-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0.8.25.>
-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24조 (인권위원 등의 회피) <제목개정 2017.11.07.> 위원 등은 제2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25조 (인권위원의 교체)〈제목개정 2017.11.07.〉

〈삭제 2020.8.25.〉

제26조 (인권위원회의 회의)〈제목개정 2017.11.07.〉

〈삭제 2020.8.25.〉

제27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8.25.〉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제28조 (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8.25.〉

- ② 센터장이 전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31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8.25.〉

제29조 (조정절차)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 ② 〈삭제 2018.08.16.〉
- ③ 〈삭제 2018.08.16.〉
- ④ 〈삭제 2020.8.25.〉
- ⑤ 〈삭제 2020.8.25.〉

제30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인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0.8.25.〉

제31조 (구제조치 등) ①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8.25.〉

-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개정 2020.8.25.〉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 ④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8.25.〉
- ⑤ 위원장은 의결 및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5.〉

[본조개정 2017.11.07.]

제32조 (징계의 요청) 인권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2019.6.5., 2021.8.26.〉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제17조 또는 제31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인권센터의 조사 및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6.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3조 (재심)〈제목개정 2020.8.25.〉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8.25.〉

② 위원회는 재심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2020.8.25.〉

③ 전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0.8.25.〉

제34조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개정 2017.11.07., 2020.8.25.〉

제35조 (불이익 금지) 인권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5.〉

제36조 (정보이용) <삭제 2020.8.25.〉

제37조 (비밀유지 등) ① 인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7., 2019. 6. 5., 2020.8.25.〉

② 인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07., 2019. 6. 5., 2020.8.25.〉

제38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②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38조의2 (교육 훈련의 지원 등) ① 인권센터는 교직원인 인권센터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센터장은 교직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연1회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21.8.26.]

제39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8.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권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2017.11.0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6조, 제31조부터 제34조, 제37조)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1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5호부터 제13호,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0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호,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호, 제22조,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5호, 제37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8.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부터 제26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부터 제5항, 제32조,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4조부터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 성평등센터

- 홈페이지 주소 : equity.yonsei.ac.kr
- 위 치: 신촌캠퍼스/논지당(☎02-2123-2118, 2137)
국제캠퍼스/종합관 312호 (사전 예약 후 내방)
- e-mail : helper@yonsei.ac.kr(상담)
genderedu@yonsei.ac.kr(교육)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가) 성평등 인식 향상 교육

학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평등한 관점을 기를 수 있는 특강, 성인지 워크숍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 성평등 문화 조성 프로그램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성차별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은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포레상담가’ 양성 등 특화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다) 폭력예방교육(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2024년 현재 각급 공공단체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관련 법령과 제도에 근거하여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성폭력 예방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학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 · 성폭력 상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은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상담 및 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밖에 상호존중하는 성문화 정착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 자문 및 소규모 교육을 운영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이 성별·성적지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학습권과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충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가) 상담 및 사건 처리

(1) 상담 지원

우리 대학의 성폭력 예방 규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 구성원이 적용대상이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치유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연계한다. 상담은 전화, e-mail, 대면을 통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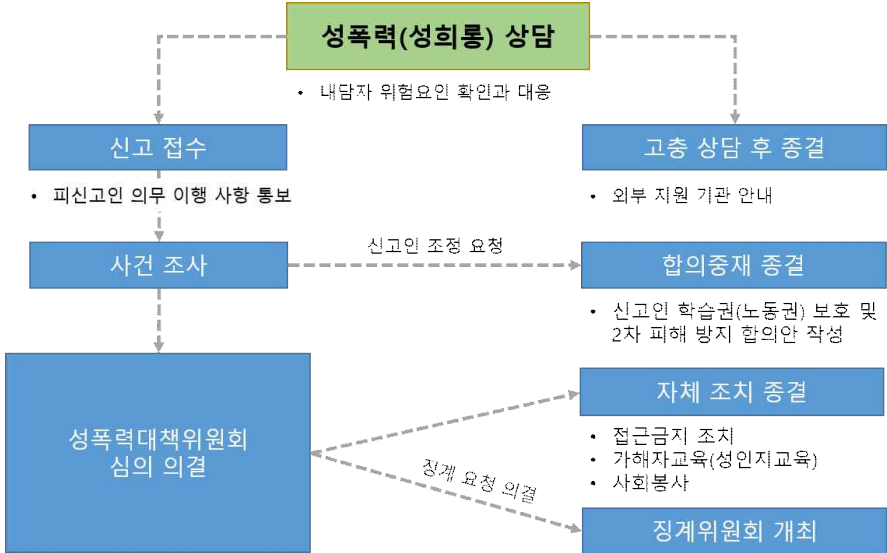
(2) 사건 처리

학내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신고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사건 신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가 방문/전화/서면(e-메일 포함)으로 접수되면 신고인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절차로 처리한다.

① 양측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중재하는 경우와 ②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로 나뉜다. 직접 신고가 아닌 제보를 통해 성평등센터가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당사자 소속 기관에 성폭력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 처리를 진행

할 수 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 성폭력여부를 판단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 자체 조치를 내리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사건처리 절차



긴급 조치 예시	신고 사건 필수 조치
• 하우스 및 기숙사 분리 요청 • 특정 학과 내 다수 학생 연관 시 학과 통보 및 공간 분리 요청 • 교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교수자 재배정 요청 • 기타 긴급 조치 필요 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 신고인 접근 금지 등 피신고인 의무 이행 사항 통보 • 필요 시 외부 전문 상담기관, 의료기관 연계, 전문가 자문 의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가장부 사건 통보 시행 • 미성년자 피해 발생 시 경찰 신고 관련 조치 이행

나) 사건 처리 후속 지원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건 재발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사건 및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수업 분리 등 합의중재 이행 여부 확인, 재상담 등 후속 지원을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00.10.10

개정일: 2023.09.03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성평등센터(02-2123-21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을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개정 2022. 3. 7.>

②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적 언동 및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2. 21., 2017. 08. 01., 2020. 8. 25., 2022. 3. 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범위는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비전임 직원, 학생 등 본 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7. 08. 01., 2018. 08. 16., 2020. 8. 25., 2022. 3. 7.>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②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평등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④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 담당자는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피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2022. 10. 7.>

가.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하는 행위

나.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명예훼손 행위

다.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행위

- ⑤ 피신고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 등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5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본 대학교 구성원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본조신설 2022. 3. 7.]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제목개정 2013.08.30., 2017.08.01., 2019.08.21.>

제6조(설치) 성평등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9. 08. 21., 2020. 8. 25., 2021. 8. 26.>

제7조(구성) ① 센터에는 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25.]

제8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8. 30., 2017. 08. 01., 2019. 08. 21.,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성폭력·성희롱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3.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성희롱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6. 그밖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및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8. 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기적인 학내 홍보
9.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내 예방교육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성희롱의 예방 및 성폭력·성희롱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미래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08. 30., 2019. 09. 26., 2022. 3. 7., 2022. 10. 7.>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윤리인권위원장,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센터장, 인권센터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
2. 임명직 위원: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4명, 직원 4명, 학부 재학생 남녀 각 1명, 대학원 재학생 남녀 각 1명, 교외 전문가 1명 <개정 2019. 08. 21., 2020. 8. 25., 2021. 8. 26., 2022. 3. 7., 2022. 10. 7.>
- ② 총장은 제1항 제2호의 임명직 위원을 위촉할 때 교원은 교수평의회의 추천, 직원은 본 대학교 노동조합의 추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각 총학생회의 추천, 성폭력·성희롱 관련 교외 전문가는 센터장의 추천과 윤리인권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2. 10. 7.>
- ③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회의의 시 당연직 위원 중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과 임명직 위원(교원, 직원,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안에만 참여한다.
 1. 교무처장, RC 교육원장, 대학원 교육지원센터장의 경우 해당 보직 분야 관련 사건
 2. 교원 위원의 경우 교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3. 직원 위원의 경우 직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4. 학생 위원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인 사건
 <개정 2018. 08. 16., 2020. 8. 25., 2022. 10. 7.>
- ④ 제2항에 따라 학생위원과 교외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신설 2022. 10. 7.>
-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0. 7.>
- ⑥ 위원회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08. 30., 2022. 3. 7.> <항번호 변경 2022. 10. 7.>
- ⑦ 위원회 내에 집행소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08. 16.> <항번호 변경 2022. 10. 7.>
- ⑧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8. 30., 2020. 8. 25.> <항번호 변경 2022. 10. 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08. 01., 2020. 8. 25.>

제1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08. 30., 2018. 08. 16.,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책수립과 학내 구성원의 성폭력·성희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 10. 7.>
2.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상담·조사·중재 <개정 2022. 10. 7.>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6. 그밖의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 08. 30., 2017. 08. 01., 2019. 08. 21.>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각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2. 21., 2013. 08. 30., 2018. 08. 16., 2020. 8. 25., 2022. 3. 7.>

③ 정기회의 및 성폭력·성희롱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④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25.>

제3장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처리

제14조(위원 등의 제척)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20. 8. 25.]

제15조(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25.]

제15조의2 삭제 <2020. 8. 25.>

제16조(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4조 및 제1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

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7조(신고 등) ① 센터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30., 2017. 08. 01., 2019. 08. 21.>

② 신고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센터에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21. 2. 15.,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이 추정되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추가 피해 예방 등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피해자의 특정한 사유로 신고 의사를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삭제>

④ 센터는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30., 2014. 09. 01.,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2. 3. 7.>

⑤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센터에서 진행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01., 2019. 08. 21.>

제18조(신고의 접수 등) ① 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한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19조(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③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④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본조신설 2020. 8. 25.]

제20조(조정절차) 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8. 25.]

제22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3. 7.>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제21조에 따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3.>
- ⑤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건의 경우, 제24조 3항에 준하는 후속 조치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본조신설 2020. 8. 25.]

제23조 (재심) ①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지체 없이 집행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집행소위원회는 재심의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심특별위원회”라 한다)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재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재심특별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⑤ 재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센터장, 인권센터장과 총장이 신규 위촉한 임시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재심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7.>
- ⑥ 제5항의 임명직 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0. 7.>
 1. 교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4명의 교원위원 <개정 2022. 10. 7.>
 2. 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본 대학교 노동조합이 추천한 4명의 직원위원 <개정 2022. 10. 7.>
 3.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총학생회가 추천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 대학원 총학생회가 추천한 대학원 여학생 1명과 대학원 남학생 1명 <개정 2022. 10. 7.>
 4. 위원장이 추천한 임시 교외위원 1명 <개정 2022. 10. 7.>

⑦ 재심특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기준은 제13조 제2항과 같다.

⑧ 재심을 청구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신설 2022. 3. 7.>

[본조신설 2020. 8. 25.]

제24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사유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 등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1.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총장 등 징계권자는 전항의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소집 등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다음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3. 가해자의 사회봉사

[본조신설 2020. 8. 25.]

제25조(비밀유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26조(경비)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2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7. 12. 21.>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절,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호, 제5호(신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신설))은 2014. 09. 01.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2항 제1호 삭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항, 제3조, 제2장 제1절 제목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5조 제4항, 제17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4항, 제8조 제6호 및 제8호,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12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제15조의 2)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제2장 제1절 제목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15조 제4항, 제15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17조)는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9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1조, 2조, 3조, 5조, 6조, 7조, 8조, 10조, 11조, 13조, 14조, 15조, 15조의 2(삭제), 16조, 18조, 19조(신설), 20조(신설), 21조(신설), 22조(신설), 23조(신설), 24조(신설), 25조(신설), 26조(신설), 27조(신설))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 (16)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 (17)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7.>

- (18) (시행일)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3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9) (경과조치)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명직 위원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의 임기로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 중 교수평의회 추천 교수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3. 9. 3.>

- (20) 이 개정 규정(제22조 제4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01.03.15

개정일: 2022.10.07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02-2123-211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20. 8. 25.>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범위에는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이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8. 08. 16., 2022. 3. 7.>

제3조 삭제 <2013. 09. 13.>

제4조(전문상담원의 자격)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0. 8. 25., 2022. 3. 7.>

1.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2. 성폭력·성희롱 상담 현장경험이 있는 자
3.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제5조(전문상담원의 수) 센터에는 수 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제6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①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학기 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0. 8. 25., 2022. 3. 7.>

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3. 09. 13., 2018. 08. 16., 2022. 3. 7.>

1. 성폭력·성희롱 정의
2.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령 및 성평등기준
3.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성폭력·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6. 기타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3. 7.]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정 제10조의 당
연직 위원 6인과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명직 위원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정교수 또는 부교수인 교원 4인, 본 대학교 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4인, 총학생회
가 추천한 여학생 1인과 남학생 1인, 대학원 총학생회가 추천한 여학생 1인과 남학생 1인,
센터장이 추천하고 윤리인권위원장이 승인한 성폭력·성희롱 관련 교외 전문가 1인으로 한
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0. 8.
25., 2022. 3. 7., 2022. 10. 7.>

② 삭제 <2018. 08. 16.>

③ 삭제 <2018. 08. 16.>

제8조 ① 삭제 <2007. 12. 21.>

② 삭제 <2007. 12. 21.>

③ 삭제 <2013. 09. 13.>

④ 삭제 <2018. 08. 16.>

제9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 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 09. 13., 2020. 8. 25.>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위임된 업무 및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
하여 성폭력대책위원장, 센터장, 인권센터장으로 구성된 집행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17. 08. 01., 2018. 08. 16., 2019. 08. 21., 2020. 8. 25., 2022. 3.
7.>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집행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20. 8. 25.>

③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개정 2014. 7. 14>

제11조(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고 등) ①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
한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9. 08. 21., 2022. 3. 7.>

②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
만, 성폭력·성희롱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폭력·성희롱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장이 추천하는 동성의 객원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개정 2010. 6. 7., 2013.
09. 13., 2019. 08. 21., 2022. 3. 7.>

③ 전문상담원은 상담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
화할 수 있다.

④ 전문상담원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⑤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9. 08. 21., 2022. 3. 7.>

⑥ 센터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13.,
2019. 08. 21.>

⑦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거나 RC의 같은 하우스에 기거하는
등 긴급하게 피해자 학습권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이
전이라도, 집행소위원회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학과 등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2017. 08. 01.>

- ⑧ 통상적인 상담·지원 요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욕설, 위협 등을 하는 내담자의 경우,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사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제목개정 2022. 3. 7.]

제12조(성폭력·성희롱사건의 심의·의결) ① 삭제 <2007. 12. 21.>

- ② 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3. 09. 13.>
- ③ 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참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9.13., 2020.8.25.>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9. 13., 2020. 8. 25.>
- ⑥ 삭제 <2020. 8. 25.>
- ⑦ 삭제 <2013. 09. 13.>
- ⑧ 삭제 <2020. 8. 25.>

[제목개정 2022. 3. 7.]

제13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5. 12. 16.>
- ③ 삭제 <2015. 12. 16.>
- ④ 위원회는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의 경위와 처벌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등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에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09. 13., 2015. 12. 16., 2020. 8. 25.>
- ⑤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09. 13., 2017. 08. 01., 2019. 08. 21.>
- ⑥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⑨ 성폭력·성희롱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22. 3. 7.>
- ⑩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 ① 규정 제22조 5항에 따른 조치 대상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불복하는 경우, 사건 심의 회의를 재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4조 삭제 <2018. 08. 16.>

제15조(기록 및 자료보존 등) ①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9. 08. 21., 2022. 3. 7.>

- ② 센터는 성폭력·성희롱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2019. 08. 21., 2022. 3. 7.>

- ③ 모든 기록은 센터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9. 08. 21.>

- ④ 사건 당사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08. 01.]

제16조(전문상담원의 교육·훈련) 센터는 규정 제8조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원의 교육·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01., 2019. 08. 21.>

부칙

-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삭제 2007. 12. 21.>

- (3)(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삭제>, 제12조 제1항<삭제>,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삭제>,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삭제>, 제4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삭제>,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1항<신설>,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7항<신설> 및 제8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2항, 제3항)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해당조항 삭제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3조 제4항)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7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6조)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항, 제7항, 제13조 제5항, 제15조, 제16조)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1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8항, 제13조 제11항, 제14조)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제1절 제목 변경, 제4조 본문, 제5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제13조 제5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는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14) (시행일) 이 개정 세칙(1조, 4조, 5조, 7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 (15)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 (16)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7.>

- (17)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심리상담센터

- 홈페이지 주소: <http://counsel.yonsei.ac.kr>
- 위 치: 신촌캠퍼스/백양관 N408호 (☎02-2123-6688)
국제캠퍼스/반피득홀(송도학사 G동) (☎032-749-2070)
- e-mail: 신촌/counsel@yonsei.ac.kr
국제/counsel@yonsei.ac.kr

1) 개인상담

상담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과정으로 진로, 대인관계, 적응 및 정서문제, 가족관계, 이성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먼저 접수 상담을 받고, 이후 개별 상담자와 연결되어 개인 상담이 진행된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상담도 가능하다.

2) 집단상담

상담자의 지도 아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대화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자기이해, 의사소통훈련, 진로 탐색, 대인관계 향상 등의 주제를 다룬다. 주제와 일정은 매 학기 학교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매 학기 집단상담 안내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3) 심리검사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통해 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심리 검사에는 성격 및 적응과 관련된 기질 및 성격검사(TCI, (주)마음사랑), 대인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문제 검사(KIIP, 학지사), 그리고 진로 및 적성과 관련된 진로탐색검사(U&I, 연우심리연구소), 진로적성검사(LCSI, 립스연구소)가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심리 검사를 신청하고, 센터를 방문하여 심리 검사를 실시한 후 해석 상담이 진행된다.

4) 사이코드라마

매년 1회 심리극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이코드라마를 실시한다. 사이코드라마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어려움을 드라마 기법을 활용하여 직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 과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학교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5) 정신건강 세미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 - 스트레스, 이성 관계, 자살예방, 건강한 삶 등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체적 일정은 학교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6) 이용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리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해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접수면접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원방문을 권유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검사의 비용은 무료이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심리상담센터 규정

제정일: 2017.08.01

개정일: 2022.10.07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02-2123-668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설치 근거) 이 기관의 명칭은 "윤리인권위원회 심리상담센터"(이하 '심리상담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과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6. 5., 2022. 10. 7.>

제2조 (목적) 심리상담센터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와 자유를 체득하는 건전한 인격도야를 목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심리검사와 상담, 생활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자문, 교육,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자아개발을 이루게 하며, 전 연세인이 만족스럽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개정 2019. 6. 5.>

제3조 (사업) ① 심리상담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6. 5.>

- 가. 상담
- 나. 교육
- 다. 연구 및 자문
- 라.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② 제1항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장 조 직

제4조 (센터장) ① 심리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5.>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6. 5.>

제5조 (시간제 상담교수) 센터장은 필요시 상담문제와 관련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시간제 상담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제6조 (상담원) ① 심리상담센터에는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시간제상담원, 레지던트상담원, 인턴상담원, 실습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5.>

② 전임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담관련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22. 10. 7.>

③ 객원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상담관련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④ 시간제상담원, 레지던트상담원, 인턴상담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⑤ 실습상담원은 상담관련전공 석사1학기 수료 이상자로 한다.

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담원에 관한 사항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따른다.

제7조 (자문회의) 심리상담센터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상담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개정 2019. 6. 5.>

제3장 권리 및 정보관리

제8조 (권리 및 정보관리 등) ①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는 사생활을 보장받고, 상담 관련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센터장은 심리상담센터 이용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심리상담센터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정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자문회의를 거쳐 심리상담센터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 ②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상담센터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2022. 10. 7.>
- ③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면접기록, 검사기록, tape, 편지 등)은 심리상담센터의 전문 기록으로서 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 입학후 8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 <개정 2019. 6. 5.>
- ④ 기타 세부사항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9. 6. 5.>

제4장 재정

제9조 (재원) 심리상담센터의 예산은 본 대학교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 6. 5.>

제10조 (회계연도) 심리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6. 5.>

제11조 (시행세칙 및 내규 등)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은 「심리상담센터 규정 시행세칙」과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9. 6. 5.>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4) 이 개정 규정(제7조, 제9조)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명칭변경)은 200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4조 제1항, 제5조(삭제), 제6조,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 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목포함 전문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심리상담소로의 변경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담당부서 변경, 전문 “심리상담소”를 “심리상담센터”로 변경, “소장”과 “상담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7.>

-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마. 장애학생지원센터

- 홈페이지 주소: ablecenter.yonsei.ac.kr
- 위 치: 신촌캠퍼스/학생회관 203호(☎ 02-2123-3632, 3633, 3634)
국제캠퍼스/종합관 312호(☎ 032-749-3633, 3634)
- e-mail: ablecenter@yonsei.ac.kr

지원대상 및 이용시설

가) 지원대상

- (1)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
재학 중 장애를 진단받은 장애학생
* 단, 특정 지원제도는 학적부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수
교육대상자 등록 절차는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 상담과 장애학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3월 이후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의 특수교육대
상자 학적 등록에 관하여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 (2) 교·강사: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교·강사

나) 이용시설

- (1) 장애학생 휴게공간: 장애학생들이 공간시간에 휴게에 이용하는 시설
 - 위 치: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B11-18호(장애인권위원회실)/위당관 118-1호
국제캠퍼스 진리관A 103-1호
- (2) 장애학생전용열람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공학)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장애
학생 전용 열람실
 - 위 치: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6층

다) 지원제도

- (1) 학업 지원
수강신청지원(우선수강신청제도 운영), 강의대필, 강의숙기·수여통역, 이동·활동보조, 교재
제작(스캔·타이핑·점역), 튜터링, 학습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연계, 편의제공요청 이메일
발송, 학점등록 지원 등
- (2) 생활 지원
시설개선 지원, 기숙사 배정 지원 및 장애학생전용실 운영, 장애학생전용휠체어리프트차
량 운영, 주차요금할인 등
- (3) 기타 지원
 - 장학금 지원: 장애학생 지원 장학금 운영(동은장학금, 연세더불어장학금), 대학배정장학
금 자격요건 완화 적용, 외부장학금 연계 등
 - 진로·취업 연계: 장애인 선배 멘토링, 채용정보 제공, 경력개발팀 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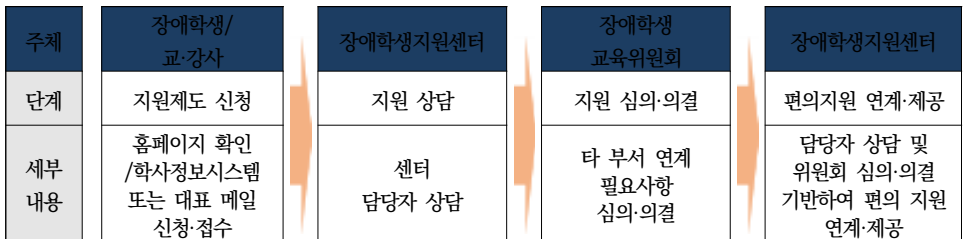
- 타 기관 연계: 도서관이용 지원, 심리상담센터 연계 등

지원제도 신청 및 처리 절차

가) 지원제도 신청

장애학생 및 교·강사는 홈페이지에서 지원제도를 확인하여 학사정보시스템 또는 대표 메일을 통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 사항을 신청·접수한다. 이후 센터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지원 사항을 확정한다. 단, 타 부서 연계 등이 필요한 안건은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나) 지원제도 연계 절차



장애인식개선

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입생, 교직원 및 신입교원, RC교육원 RA 등을 대상으로 매 학기 구성원 맞춤형 온·오프라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나)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우리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식개선 리플렛, 책자, 교육영상 등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6.04.11

개정일: 2024.08.29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02-2123-36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의2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학생의 범위) ① 장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본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소속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9. 26., 2022. 10. 7.>

- ② 제3조에 따른 장애학생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장애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평가하여 기준 외 장애학생의 등록 방식 및 편의 지원 범위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발급일 1개월 이내의 진단서(최종진단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와 소견서, 의무기록
 2. 편의 지원 필요 사유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
 3. 위원회가 심의·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한 자료
- 〈본조 개정 2024. 8. 29.〉

제2조의2 (기준 외 장애학생 등록 및 등록기간 연장) ① 위원회가 제2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평가하여 기준 외 장애학생으로 등록 및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을 학적부에 기준 외 장애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준 외 장애학생의 장애·질환과 관련한 개별적 상황 및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기준 외 장애학생이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등록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기준 외 장애학생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심의·평가하여 등록기간 연장 여부와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 ④ 기준 외 장애학생이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간 만료로 기준 외 장애학생의 등록은 종료된다.

〈본조 신설 2024. 8. 29.〉

제3조 (장애학생교육위원회)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본교 장애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을 따른다.

제4조 (장애학생센터)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 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및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 8. 26.〉

제5조 (담당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 〈개정 2017. 8. 1., 2019. 6. 5.〉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3.〉

-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

제6조 (조직)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에 센터장과 행정인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26.〉

- ② 센터는 센터장과 행정·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6.>

제7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의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장애학생교육위원회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본교 교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3. 9. 3.>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총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장애인 인권 활동 및 경력을 인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1. 8. 26.]

제8조 (교수·학습 지원)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1.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 지원 안내문 발송
2. 학업수행 및 대학생활 교육지원인력 연계 <개정 2024. 8. 29.>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확보 및 지원
4.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30.>
5. 그 밖의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편의 지원 사항 <개정 2017. 8. 1., 2022. 4. 30.>

제9조 (시설·설비 지원 등)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 시설·설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2019. 6. 5.>

1.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2.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 및 안내

제10조 (상담 등)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및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을 위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 2019. 6. 5.>

제11조 (지원신청)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제11조의2 (상담·지원 서비스 등의 제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이용과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직원 및 기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그 밖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경우(이메일·문자·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

2. 센터 업무 또는 교직원의 교육·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지원 및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8. 26, 본조 개정 2024. 8. 29.>

제12조 (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2021. 8. 2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및 경과조치)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5호를 제4호로 오기 수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담당부서 변경, “지원실”을 “센터”로 변경, “실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제4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6.>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30.>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4호 및 제5호는 2022. 6.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7.>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9. 3.>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5호, 제7조 제3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9.>

(9) (시행일) 개정규정(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8조 제2호,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0) (제2조의2 신설 규정의 적용)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시행일 당시 기등록된 기준 외 장애학생에게도 적용한다. 기등록된 기준 외 장애학생의 등록기간은 2024학년도 2학기까지로 한다.

장애학생교육위원회 규정

제정일: 2003.12.29.

개정일: 2023.09.03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02-2123-3633)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 2019. 6. 5.>
4.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11.>
5. 장애학생 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그밖의 사항 <호변호변경 2016. 4. 11., 2023. 9. 3.>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1.>

② 위원장은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

1.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시설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재활병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7. 1., 2013. 8. 2., 2014. 9. 1., 2017. 8. 1., 2018. 3. 14., 2019. 6. 5., 2019. 9. 20., 2020. 7. 27., 2023. 9. 3.>
2.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인 <개정 2017. 8. 1., 2019. 6. 5., 2023. 9. 3.>

③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8. 1., 2019. 6. 5.>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애학생교육 실무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5., 2017. 8. 1.,

2016. 4. 11., 2010. 7. 1.⟩

1. 학교측 위원: 센터장, 교무처 부처장, 학생복지처 부처장, 시설처 부처장, 장애학생지원 센터 직원 <개정 2017. 8. 1., 2016. 4. 11., 2010. 7. 1, 2009. 6. 1., 2018. 3. 14., 2019. 6. 5., 2020. 7. 27., 2023. 9. 3.⟩
2. 학생측 위원: 총학생회장, 장애학생 대표 2인 <개정 2016. 4. 11., 2014. 9. 1.⟩

제6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3.⟩

제9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 6. 5., 2017. 8. 1., 2010. 7. 1, 2009. 6. 1.⟩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0조)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은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2호)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호, 제5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 규정(제3조 제3호, 제4조 제2항, 제3항, 제5조 제2항 제1호, 제10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복지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9) (시행일) 본 개정 규정(담당부서 변경, 제3조 제3호,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5조 제2항 제1호, 제10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5호,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5조 제2항 제1호, 제8조)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학술문화처 도서관

가. 개요

1915년 연희전문학교의 창설과 더불어 역사를 시작한 도서관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며 대학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도서관은 현재 240만여 책의 장서와 17,000여 종의 연속간행물, 16만여 종의 전자저널, 127만여 종의 전자책 및 200여 종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대학의 글로벌 명문 교육과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정보, 인프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 국내 최초로 도서관 전산화 토털시스템을 가동하였고, 1999년 웹기반 학술정보시스템, 2001년 통합형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05년에는 디지털콘텐츠 연계 기능이 강화된 전자도서관시스템을 오픈하였다. 2010년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전 장서를 대상으로 RFID 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S-Campus 프로젝트'를 통해 학술정보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였고, 통합검색 인터페이스, 모바일 좌석배정, 모바일 학생증 도입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 기존 중앙도서관 건물과 연결하여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을 신축함으로써 연면적 약 53,600㎡(약 16,200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도서관이 되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은 최첨단 IT 시설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다양한 용도별 맞춤 연구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까지 선보이며 국내외 도서관에 미래 도서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 명칭을 '중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에는 교내 정보통신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처와 조직을 통합하였다. 또한, 1979년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을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리모델링하여 연세인들에게 더욱 쾌적한 열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명문 교육을 지향하며 설립된 국제캠퍼스에 언더우드 기념도서관을 2013년에 개관하여 프리미엄 학습지원 및 RC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에 국내 대학도서관 최초로 창의공간 Y-Valley를 조성하였으며, 자유로운 토론·협업 및 창의적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에 실감미디어 체험 공간 Y-Scape를 구축하여 교육 수월성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3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센터를 창의·융합 교육에 최적화된 실감미디어 기반 복합공간인 'Media Commons'로 전면 개편했다. 미래지향적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상원격강의·화상회의·전시체험용 다목적 미디어홀 Y-Flow, 강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Y-Cast, 미디어협업실 Y-Cell,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편집·교육용 XR Lab 등 최첨단 실감미디어 기반 교육 시설을 신설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국내 대학

도서관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Information Commons에 원격강의, 화상회의, 전시체험 및 행사용 다목적 미디어홀 Y-FLEX를, 2층 Media Commons에 XR 체험 부스와 XR Lab/Collabo Room을 신설하였다.

2022년에는 학술정보 및 문화예술 관련 부서 간 시너지 발휘와 학술·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정보원에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처)을 분리하고 학술문화처로 개편하였으며, 도서관, 박물관, 출판문화원, Digital Experience 센터, 디자인센터를 학술문화처 산하로 통합하였다. 도서관은 매년 학술정보교육, 연구력 강화 워크숍 등 학습·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 행사와 베스트셀러 작가 초청 북콘서트, 옥상정원영화제 등 교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최초의 근대 대학도서관으로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 오는 동안 장서, 시설, 서비스, 학술정보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도서관계를 선도해 온 도서관은 대학의 글로벌 명문 교육과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최상의 정보, 인프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 자료와 시설현황

1) 자료현황

도서관은 교수의 연구 및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국내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도서, 고서, 비도서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다. 자세한 자료유형별 소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3월 1일 기준)

구분	단행본	비도서	학위논문	고서	연속 간행물	전자저널	전자책	학술 DB
국내	1,190,810책	68,865책	224,987책	66,821책	11,187종	8,310종	82,346종	50종
국외	768,320책	59,496책	1,518책	27,280책	5,785종	157,994종	1,197,611종	161종
소계	1,959,130책	128,361책	226,505책	94,101책	16,972종	166,304종	1,279,957종	211종
총계	2,408,097책				16,972종	166,304종	1,279,957종	211종

2) 시설현황

면적 및 열람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3월 1일 기준)

구분	면적		열람석		
	㎡	평	자료열람석	일반열람석	합 계
중앙도서관	19,359.24	5,856.17	691	1,958	2,649
연세 · 삼성 학술정보관 (법학도서관 포함)	34,236.96	10,356.67	594	2,230	2,824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1,175.00	3,380.44	370	779	1,149
음악도서관	454.88	137.60	18	24	42
합 계	65,226.08	19,730.88	1,673	4,991	6,664

중앙도서관 및 연세 · 삼성 학술정보관,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의 층별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도서관

B1	숫을샘(매점), 소담샘(PC이용), 본뜰샘(복사실), 사물함, 책갈피(도서관 학생자치회)
1F	24시열람실(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스마트 예약도서 대출기, 무인도서반납기/전자결제시스템
2F	인문자료실(대출/반납데스크, 복사코너)
3F	사회·역사자료실(복사코너)
4F	과학기술자료실(학위논문, 특수자료실, 장애학생열람실, 세미나룸, 복사코너)
5F	국학자료실(고문헌서고, 용재문고실, 우남사료실, 루즈벨트도서관, 개인문고실, 교수열람실), 대학원열람실(일반열람실, 연구 캐럴), 유료사물함
6F	1열람실/2열람실(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가온마루(PC이용), 가온뜰(휴게공간), 세미나룸, 놀라운(남/여 휴게실), 유료사물함

나)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B2	주차장
B1	주차장, 보존서고
1F	Privileges Office, Y-Scape, Y-Valley, 전시실, 보존서고, 유료사물함
2F	Information Commons, IT Help Desk
3F	Media Commons (Y-Flow, Y-Cast, Y-Cell, XR Lab, 미디어 캐럴, 미디어감상실, 미디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 프리젠테이션룸), 무인도서반납기
4F	대열람실(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남/여 휴게실
5F	Research Commons(학술정보서비스데스크, 교수열람실, 세미나룸, 복사/스캔코너), 도답샘(수유실)
6F	법학도서관(대출/반납데스크, 장기원기념실, 세미나룸, 복사코너)
7F	장기원국제회의실, 바른ICT연구소, 미래융합연구원, 법학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기록관, 디자인센터, 사무실(학술문화처장실, 학술문화부처장실)
8F	옥상정원, 카페

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B1	커뮤니티 라운지(Creative Talks, Art Gallery, 커뮤니티 PC, IT Help), 유료사물함
1F	Information Commons(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 무인대출반납기), Y-FLEX
2F	Media Commons(미디어감상실, 미디어제작실, XR Lab, XR Collabo Room, XR 체험 부스, Cinema Room)
3F	협업 파크(그룹스터디룸, 학술정보교육실)
4F	창의열람실(RC 추천도서, 신간도서, 기본강의도서, 사서 추천 컬렉션, 지신인의 창, 팽세(사색소파))
5F	자료열람실, 캐럴, 그룹스터디룸
6F	자료열람실, 캐럴, 장애학생 열람실
7F	국제회의실, 세미나룸, 무인 휴게실, 테라스 라운지

다. 도서관 이용

1) 개관시간

중앙도서관		학기중		방학중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B1	소담샘	24시간 개방			
1F	24시열람실	24시간 개방			
2F	인문자료실	09:00~21:00	09:00~15:00	09:00~20:00	09:00~15:00
3F	사회·역사자료실				
4F	과학기술자료실				
5F	국학자료실	09:00~17:00	-	09:00~17:00	-
5F	대학원열람실	07:00~23:00			
6F	1열람실	24시간 개방		07:00~23:00	
6F	2열람실	07:00~23:00			
6F	가온마루	24시간 개방			

※ 3층 사회·역사자료실은 2층 또는 4층 자료실의 내부계단을 통해 출입 가능

연세 · 삼성 학술정보관		학기중		방학중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1F	Y-Valley	07:00~23:00			
1F	Y-Scape	10:00~17:00	-	10:00~17:00	-
2F	Information Commons	09:00~21:00	09:00~15:00	09:00~20:00	09:00~15:00
3F	Media Commons				
4F	대열람실	07:00~23:00			
5F	Research Commons	09:00~21:00	09:00~15:00	09:00~20:00	09:00~15:00
6F	법학도서관				
8F	옥상정원	09:00~20:00	09:00~16:00	09:00~16:00	-

※ 자료열람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실하며, 일반열람실은 연중 개방함

분관		학기중			방학중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구 분	법학도서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6층)	09:00~21:00	09:00~15:00	-	09:00~20:00	09:00~15:00
	음악도서관 (음악대학 신관)	09:00~17:30	-	-	09:00~17:30	-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국제캠퍼스)	08:30~24:00	09:00~18:00	12:00~18:00	09:00~17:00	-

2) 열람실 안내 - 중앙도서관 및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가) 인문자료실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에는 총류, 철학, 종교, 어학, 문학 분야의 단행본 도서와 함께 연세필독도서와 사서추천도서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인문자료실의 서비스데스크에서는 자료의 대출/반납, 강의 교재로 지정된 지정도서의 대출/반납, 비소장 자료에 대한 원문복사서비스 및 국내의 타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사회·역사자료실

중앙도서관 3층 사회·역사자료실에는 사회과학, 역사, 경영, 예술 분야의 단행본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기증도서 컬렉션(김대중, 김석득, 마광수, 방우영, 유완, 이규태, 이석호, 임철규, 정창영, 최종욱, 최호진)을 이용할 수 있다.

다) 과학기술자료실

중앙도서관 4층의 과학기술자료실에는 순수과학, 응용과학 분야의 단행본 도서 및 연세 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이 소장되어 있으며, 북한 관련 특수자료, 대만한학자원센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수학술도서, 교수저서, 윤동주 시문학자료 컬렉션, 취업도서 컬렉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국회전자도서관 전용 PC와 스캐너, 세미나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라) 국학자료실

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국학자료실에는 귀중고서를 포함한 약 10만여 책의 고서와 구한말~일제시대에 발행된 신서귀중본, 기독교 관계 고문헌, 마이크로폼 자료, 개인문고 등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국내 유일본 및 희귀본 등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다수 보존하고 있어 국학 연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학자료실 내에는 루즈벨트 도서실과 우남사료실, 용재문고를 비롯한 개인문고, 교수열람실이 갖추어져 있다. 루즈벨트 도서실에는 루즈벨트 재단에서 기증한 루즈벨트 시대의 미국 연구와 대통령학, 장애인 재활교육에 관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우남사료실에는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관련 문서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국학자료실 내의 모든 자료는 관외로 대출되지 않으며, 자료예약 신청 후 열람할 수 있다.

마) 가온마루, 소담샘

중앙도서관 6층과 지하 1층에는 인터넷 PC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다. 6층 가온마루에서는 전자신문, 유료사물함, 세미나룸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 1층 소담샘에서는 복사실과 스마트 TV를 이용할 수 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가) Y-Valley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에 위치한 Y-Valley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하면서 창업 및 창의적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 Y-Scape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에 위치한 Y-Scape는 국내외 다양한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검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혼합 현실 공간으로, 11미터 규모의 햅틱 스크린과 연동된 미디어 솔루션을 활용하여 공간 기반의 몰입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하이엔드급 실감미디어 HMD 헤드셋(Head Mounted Display)도 구비하고 있다.

다) Information Commons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2층과 스텝 형태의 열린 공간에 위치한 Information Commons는 컴퓨터를 집중 배치한 학술정보 공유의 광장으로, 16개의 협업부스, 438석 규모의 학술정보검색, 과제수행, 인터넷 검색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노트북 이용 및 스캔을 할 수 있는 좌석과 듀얼 모니터가 설치된 2인용 좌석, 장애학생 전용석이 구비되어 있다.

라) Media Commons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3층에 위치한 Media Commons는 창의·융합 교육에 최적화된 미디어 기반 복합공간으로, 차세대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목적 미디어 홀 Y-Flow에서는 초대형 3면 미디어월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 교육 및 전시, 원격화상회의를 지원하며 사전 대관 예약을 통해 수업 및 미디어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 실시간 송출에 최적화된 강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Y-Cast와 미디어제작실, 미디어 편집 코너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관련 작업이 가능하며, 미디어 협업실 Y-Cell은 8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고사양 편집 PC가 탑재되어 미디어 기반 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편집 공간인 XR Lab은 고사양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다양한 장비 환경에서 제작물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실감미디어 헤드셋(Head Mounted Display), 태블릿 PC 등 각종 실감미디어 장비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인 미디어 캐럴에서는 쌍방향 온라인 학습과 다양한 실감미디어 장비·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술, 문화, 예술, 다큐멘터리, 영화, 어학 등 다양한 주제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비치되어 이용할 수 있고, 자료들을 감상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열람석 50석을 갖추고 있다. 40석 규모의 미디어감상실은 영화나 영상자료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강의용으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고, A/V 설비를 갖추고 있는 2개의 프레젠테이션룸도 이용 가능하다.

마) Research Commons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층에 위치한 Research Commons에는 전 주제 분야의 학술지와 참고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 PC,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전용 PC, 경영/경제 DB 전용 PC, 세미나룸, 교수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복사를 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사서를 통해 학술정보상담 및 학술정보교육, 연구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열람실 안내 -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가) Information Commons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은 주출입구가 있는 메인 로비이다.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와 다목적 미디어 홀인 Y-FLEX가 위치해 있다.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에서는 자료(일반도서, 예약도서, 지정도서, 신촌/미래 캠퍼스 대출도서)의 대출/반납, 상호대차, 문헌복사, 연체료 처리, 도서관 이용안내 등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Y-FLEX(Yonsei - Future Learning Extended reality complex)는 초대형 3면 미디어월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 교육 및 전시, 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하다.

나) Media Commons

언더우드기념도서관 2층에 위치해 있는 Media Commons에는 다양한 주제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자료를 직접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개개제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RC생활을 하는 국제캠퍼스 학생들을 위하여 특정 컬렉션에 대하여는 1박 2일 관외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열람석과 PC석이 있으며, 3~9인의 그룹이 모여서 함께 감상할 수 있는 Cinema Room과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38석 규모의 최신 극장시설인 미디어감상실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무비/포토 스튜디오 및 오디오 부스, 편집 장비를 갖춘 미디어제작실과 XR Lab, XR Collabo Room을 이용할 수 있다. XR 체험 부스에서는 1~2인이 모여서 오클러스, 스마트 태블릿 등 다양한 장비를 대여하여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다) 창의열람실

4층의 창의열람실은 일반적인 자료열람실과는 달리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사서들이 자료를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기획전시하고, 여러 형태의 소파와 테이블 등을 통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열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열람실이다. 온 몸을 감싸는 반구형 공간에 들어가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보거나 사색할 수 있는 소파인 '팡세(pensée)',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한반도소파 등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공간이다. 소장자료로는 신

간도서, 기본강의도서, 사서추천도서, 교양영어 교재, RC 추천도서, 한국문학번역도서, 연
속간행물(신문, 매거진), 참고도서 등이 있다.

라) 자료열람실

5층 및 6층에 위치한 자료열람실에는 창의열람실에 있는 자료 외의 모든 일반도서와
단/장기 집중적인 연구/학습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위한 1인용 열람실인 캐럴이 있다.

4) 자료의 조직과 검색

가) 자료의 조직

도서관 소장 자료는 기본적으로 '듀이 십진 분류표(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판에 의거해 분류,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 및 동양 관
계 주제 분야의 자료는 듀이 십진 분류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부분 수정한 '연세대학
교 도서관 별도 전개표'에 따라 분류된다.

나) 자료의 검색

도서관 검색시스템(<https://library.yonsei.ac.kr>)에서는 브라우저나 기기의 종류에 상관
없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검색메뉴는 총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통합검색」 탭에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인쇄/전자자료를 통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
다. 검색결과는 6개의 카테고리(학술지 논문, 소장자료, 전자저널/데이터베이스, 전자책/동
영상강의, 국내학위논문, 더 찾아보기)로 나누어 보여주며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더 많은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이 제공되는 전자자료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Full Text"
를 클릭하면 원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장자료」 검색에서는 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는 인쇄자원(도서, 학술지) 및 비디오, 컴퓨터파일, 악보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 화면에서 자료의 대출가능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
째 「전자자료」 검색에서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뿐만 아니라 구독하지 않는
전자자료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으며,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헌의 경우 홈페이지 상단
「Services」 메뉴의 원문복사 신청을 통해 문헌을 입수할 수 있다. 검색창 하단에 있는 각
자료유형별 브라우징/검색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Library On 연세인을 위한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



5) 도서의 대출 및 반납

가) 대출책수와 기간

구 분		대출책수	대출기간
학 부 생		15책	15일
대학원생	석사	30책	30일
	박사	40책	30일
연구원		30책	30일
시간강사		40책	60일
직원		30책	60일
교원		100책	90일
명예회원		15책	30일
회원제	명예회원	15책	30일
	평생동문회원	7책	15일
	졸업생 연회원	7책	15일

※ 휴학생은 도서대출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책수와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

나) 대출·반납 절차

- (1)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를 도서관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대출상황을 확인한다.
- (2) 대출가능한 도서는 직접 서가에서 찾아 이용자 ID카드와 함께 대출데스크에 제시하여 대출하거나 자료실 내 무인대출기에서 할 수 있으며, 연체도서 또는 미납 연체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할 수 없다.
- (3) 모바일 도서대출 앱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앱은 스토어에서 '연세대학교 도서관 모바일 대출' 검색 후 설치 가능하다.
- (4) 대출한 도서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다) 대출연장 및 예약

- (1)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의 반납예정일 이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는 도서가 이미 예약되었거나 이용자에게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 연장기간은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장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되었을 경우에는 도서관 검색시스템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한 도서가 도착하면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1층 스마트 예약도서 대출기,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 서가에 3일간(도착일 포함) 보관된다.

라) 연체료 부과 및 변상

- (1) 대출한 도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체도서 1책 당 1일 100원(단, 지정도서는 1시간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재학생은 대출이 정지되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모든 증명서류의 발급이 중지된다.
- (2) 대출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에 신고한 후 동일도서 또는 유사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 규정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마) ID카드(학생증) 분실신고

- (1) ID카드(학생증)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과 은행에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ID카드(학생증)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6) 학술정보 서비스

가) 학술정보 상담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연세 구성원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담,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들어오는 도서관의 제반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문의를 해당 업무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연구지원서비스

도서관에서는 연세 구성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관심 주제의 최신 연구현황과 연구주제, 연구자 정보를 계량분석하는 연구동향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Scival 등의 연구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논문투고 비용을 지원하여 연구물의 발행을 활성화는 APC 제공 저널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다) 학술정보교육

도서관에서는 학술정보 활용 능력 제고와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술정보 활용교육으로는 전 주제 DB 교육 및 DB별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논문작성 지원 교육으로는 논문작성 및 투고 교육, 참고문헌 관리 및 표절예방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시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리 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LearnUs에 학술정보교육 클래스 "Y-Library On"을 개설하여 도서관 이용 및 자료 검색, 논문 작성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학술정보교육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라) 지정도서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수업계획서에 수록된 주/부교재 중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이용하여야 하는 자료를 지정도서로 지정하여 짧은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도서는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 서가에 별도로 비치되어 있으며, 각 데스크에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제캠퍼스의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언더우드기념도서관 2층 멀티미디어센터에서는 지정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 우선정리요청 서비스

도서관에 입수되어 정리 중인 자료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우선정리요청이 있을 시 가능한 한 24시간 내에 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우선정리요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자료의 도서상태가 '정리 중'일 때 '자료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리 완료 후에는 요청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일반 예약자료와 동일하게 예약 권한이 부여된다.

바) 자료구입신청 서비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구입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구입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도서가 도서관에 입수되면 신청자의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구입신청자료 도착 통보가 자동 발송된다. 자료구입신청을 통해 이용자들은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 장서 개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 문헌복사·상호대차 서비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외 다른 기관에 문헌의 복사를 의뢰하여 FAX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복사한 자료를 입수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신촌 지역의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도서관 및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가 참여하고 있는 5개 대학 학술정보교류협의회 소속 도서관, 숙명여대 도서관 등과 자료 상호 대출 협약을 맺고

각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을 서로 대출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는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정기관의 도서관도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도서관에 없는 국외 자료는 세계 최대 학술 정보망인 미국의 OCLC, 독일의 Subito 및 일본 국회도서관 등과의 문헌복사와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외국 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하여 제공하고 있다. 문헌복사 및 상호대차 신청 자료가 도착하면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 서비스 데스크,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 통합서비스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단행본 상호대차 비용 전액과 국외 상호대차 및 국내의 문헌복사에 드는 비용의 50%도 도서관에서 지원한다.

아) 장애인을 위한 One stop 서비스

서가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도서관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열람하고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전용 One stop 서비스를 신촌캠퍼스는 중앙도서관 1층 출입관리 데스크에서,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는 신촌캠퍼스에는 중앙도서관 2층 인문자료실과 4층 과학기술자료실 내 장애학생열람실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층의 Research Commons에 있으며, 국제캠퍼스는 언더우드기념도서관 6층 장애학생 열람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내 6층 장애학생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자) 타 도서관 이용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yonsei.ac.kr>)에서 '타도서관 열람의뢰서'를 출력하여 학생증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협정"에 따라 이화여대, 서강대와 홍익대는 학부생부터,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는 대학원생에 한해서 열람의뢰서 없이 우리 대학의 학생증만으로 자유롭게 해당 대학의 도서관 출입과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다.

라. 분관 안내

1) 법학도서관

2002년에 개관한 법학도서관은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6층에 위치하고 있다. 법학 관련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도서, 학위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법학 유관 분야 및 로스쿨 특성화 분야의 다양한 장서와 UN 기탁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실 내에 자료열람석과 정보검색 PC석, 스터디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법학 분야 학술정보상담, 데이터베이스 이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음악도서관

1992년에 개관한 음악도서관은 음악대학 신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악 관련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악보, CD, DVD 등 모든 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음악 전문 도서관이다. 소장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음악 감상석과 일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3) 언더우드기념도서관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2013년 4월 개관하였으며, Y-FLEX, XR Lab/Collabo Room 및 XR 체험 부스와 같은 최첨단 설비와 함께 창의열람실, 사색소파 팟세 등 이용자의 창의성 함양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과 RC 맞춤형 자료를 갖추고 신입생 대상 학술정보 활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RC 추천도서 목록집 출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정보통신서비스 안내

연세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들이 교육, 연구, 행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깨어있는 IT캠퍼스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학사/행정정보서비스

▶ 학사정보서비스

연세포털 학사정보 서비스	[URL] https://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학생 서비스 [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학위, 의료원 의·치·간호, 비학위] • 입학 • 학적 • 수업 • 성적 • 졸업(논문) • 등록 • 장학 • 교직 • 학생지원 • 국제학생교류 • 채플 • 셔틀버스 • 기숙사 - 교원 서비스 • 입학 • 학적 • 수업 • 성적 • 졸업(논문) • 셔틀버스 • 강사(인사정보, 재임용심사) - 직원 서비스 • 입학 • 학적 • 수업 • 성적 • 졸업(논문) • 등록 • 장학 • 교직 • 학생지원 • 국제학생교류 • 채플 • 계약학과 • GLC • 병무 • 셔틀버스 • 기숙사 • 전문연구요원 • 강사통합 • 정보공시

▶ 행정정보서비스

협업시스템 (그룹웨어) 서비스	- 교직원 • 공문수발신, 전자결재, 정부전자문서유통 • SMS / FAX / 메신저 / APP [URL] https://portal.yonsei.ac.kr → 행정 LINK → 협업시스템(그룹웨어)
일반행정 서비스	- 교직원 • 인사관리 • 재무회계 • 예산관리 • 구매관리 [URL] https://portal.yonsei.ac.kr → 행정 LINK → ERP 행정정보시스템

기부금 관리 서비스	- 교직원 • 약정관리 • 입금관리 • 영수증관리 [URL] https://portal.yonsei.ac.kr → 행정 LINK → 기부금 관리시스템
교원업적평가 서비스	- 교원 • 연구업적평가 • 교육업적평가 • 봉사업적평가 • 수상업적평가 [URL] https://portal.yonsei.ac.kr → 행정 LINK → 교원업적평가

나. 인터넷 서비스

연세메일 서비스	- 연세메일 서비스 • URL : https://mail.yonsei.ac.kr - 교육용 : Gmail 기반의 메일 서비스 - 업무용 : KISA 보안인증 메일 서비스, 무제한 사용용량 제공 • 사용안내 : https://ycm.yonsei.ac.kr • 문의처 : ysmail@yonsei.ac.kr (교내 ☎ 4971~2) - 스팸 및 피싱메일 신고 • yspam112@yonsei.ac.kr
인터넷북 서비스	- 다양한 문서(HWP, DOC, PDF 등)를 웹에 배포 가능한 전자책 형태로 변환하는 도구 서비스 • URL : https://ibook.yonsei.ac.kr (교내 ☎ 6414)
DNS 신청 서비스	- 교내 기관, 연구실 등의 서버에 Domain Name을 부여하는 서비스 • URL : https://portal.yonsei.ac.kr 접속 후 [IT SERVICE] → [DNS 신청] • 문의처 : network@yonsei.ac.kr (교내 ☎ 3411)
IP-Address 신청 서비스	- IP-Address 서비스 • 신청 : https://portal.yonsei.ac.kr 접속 후 [IT SERVICE] → [IP 신청] • 문의처 : network@yonsei.ac.kr (교내 ☎ 3411)
무선인터넷 서비스	- 교내 공공장소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교직원, 학생 : 학사포털 ID/패스워드 사용 • 이용안내 : https://yis.yonsei.ac.kr 접속 후 무선인터넷 참조 • 문의처 :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2층 IT HelpDesk (교내 ☎ 4971~2)

다. IT HelpDesk 서비스 (IT 민원 접수 / 처리)

IT 민원 처리 내용	- PC H/W 일반 민원 -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 및 사용안내 - 행정정보, 학사정보, 인터넷, 정보보안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기타 IT 관련 민원 처리 -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주요 제품 MS Windows 및 MS Office (연구/행정/업무용 한정 계약) 한글 제품군 통계패키지 (SPSS / SAS) PC 바이러스 백신 (V3)
서비스 이용 방법	- 방문상담 :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2층 IT HelpDesk - E-mail 문의 : helpdesk@yonsei.ac.kr - 전화상담 : 교내 ☎ 4971~2

라. 정보보안 서비스

통합 보안관제	-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해킹 및 위/변조 사고 신고 -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개인PC 인터넷 차단 여부 확인 - 문의처 : security@yonsei.ac.kr (교내 ☎ 6419)
보안정책 신청	- 연구 및 업무처리 중 보안장비 정책 변경 요청 • 신청방법 : https://yis.yonsei.ac.kr 접속 후, [IT SERVICE] → [보안정책 신청] - 문의처 : security@yonsei.ac.kr (교내 ☎ 6476)
개인정보 침해신고	- 학내 연구 및 업무 활동 중 개인정보 침해 시 신고 - 개인정보침해사고 처리 과정 • 학내 조치 가능한 경우 신고 접수 → 학내 조치 → 조치 결과 통보 • 학내 조치 불가능한 경우 신고 접수 → 상위 정부 기관에 신고 → 조치 결과 통보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privacy@yonsei.ac.kr (교내 ☎ 8500)

마. 전화 서비스

전화안내 서비스	-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 교외 : 1599-1885, 2123-2114 • 교내 : 114
전화서비스	- 교내 전화 서비스 (IP전화, 디지털전화, CID전화) 및 KT일반전화 - 신청 방법 : ERP행정업무 접속 후 [시설/비품] → [시설/비품수리] → [요청추가] → [수리유형-전화 및 네트워크] → [요청내용 입력] → 결재문서작성 - 문의처 : 통신운영실 (교내 ☎ 3712)
부가서비스	- 각종 통신 서비스 • 음성사서함 / 팩스서버 서비스 • FAC (Forced Authorization Code) 이용 시의, 국제통화 서비스 - 이용 방법 • 신청 : https://yis.yonsei.ac.kr 접속 후 [IT SERVICE] → [FAC] →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인비로 백양관N616호 통신운영실 제출 • FAC 사용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 https://yis.yonsei.ac.kr 접속 후 [IT SERVICE] → [FAC] → 사용내역 및 영수증 출력 • 문의처 : 통신운영실 (교내 ☎ 3712)

바. 연세 전산망(YS-NET)

연세 전산망(YS-NET)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 내에 설치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말이다.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는 1989년 6개 건물을 FDDI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서비스를 시작, 1994년 10개 건물로 확장 개통하였으며, 1999년에 622Mbps ATM Switch를 백본으로 구성하였다. 2004년 10G 백본장비를 확장 구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0G 백본장비로 구성되어 37개의 서브백본 영역과 34개의 분산 영역으로 네트워크 재구성 및 약 71개 건물에 총 750여대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였다. 유선 인터넷 대역폭은 1993년 56kbps로 시작하여 현재 총 12G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발전되었다.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는 2003년 KT와 무선인터넷(KT Nspot) 임대서비스로 300대 AP를

설치로 시작하였으며, 2006년 502대 AP로 확대 구축하였으며, 2011년 650대 AP로 확대 구축하였다. 2016년부터 LGU+와 약 2,800대 AP로 확대 구축하여 교내 전체 강의실 및 공용 공간, 주요 옥외지역에서도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 3만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 대역폭은 2003년 56kbps로 시작하여 현재 총 10G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발전되었다.

[연세 전산망(YS-NET) 신촌캠퍼스 현황]

- 백본영역 : 총 10개 건물에 40 Giga 장비 설치, 총 27개 건물에 10 Giga 장비 설치
- 분산영역 : 총 34개 건물에 1 Giga 장비 설치
- 단말영역 : 교내 약 71개 건물에 총 750여개의 Giga 장비 설치
- 교내구성원 : 100M~1Gbps 포트 제공(약 25,000 Port)
- 인터넷 대역폭 : 유선인터넷(12Gbps) / 무선인터넷(10Gbps)
- 연구망 :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KOREN) : 1Gbps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 10Gbps
- 무선네트워크 : 교내 건물 및 백양로 약 2,800대 무선AP설치로 서비스

8. 대학직장예비군연대

가. 창설배경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지방병무청 부대 편성인가 제1191호에 의하여 1981년 6월 18일 창설되었다.

나. 설치목적

- 1) 학문 전념의 기회를 증진
- 2)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
- 3) 유사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동원태세 확립

다. 편성대상

- 1)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2)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 ※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편입학 학생만 편성 대상에 해당
- ※ 표준 재학기간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재학생(복수전공·부전공 포함), 재수강, 졸업(연기) 유예자, 유급자, 논문과제 등록자,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원격 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등은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3)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라. 신분상의 혜택 : 관련 법령에 의거한 방침일부 대상 (학생, 교수)

- 1) (재해)동원, 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보류
- 2) 교육훈련을 기본훈련 8시간으로 단축 시행
 - ※ 비전임교수 및 일반직원은 방침일부 미적용 대상

마. 교육훈련

- 1)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지역 수임군부대와 협조하여 실시
- 2)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 소집
- 3) 예비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의거한 법규보류, 방침전면 대상자의 경우 훈련 면제

바. 훈련과목

안보교육, 사격, 목진지전투, 시가지전투 등 전술훈련

사. 신상 변동에 따른 신고

- 1) 예비역 학생의 복학, 휴학 등 학적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대학직 장예비군연대에서 자동으로 전입 및 전출 조치
- 2) 재학 중 메일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예비군 홈페이지 및 학 사포탈의 개인정보 수정

9.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가. 창설 배경

군 장교 확보와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문무겸전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양부(교육부, 국방부)가 합의하여 창설

(법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대통령령 제 28423호, 2017. 11. 14.))

나. 연혁

- 1) 1961. 6. 1부 : 제107 학도 군사훈련단 창설(국 일명(육) 제27호)
- 2) 1963. 2. 20부 : 학군장교 1기 임관(300명)
- 3) 1965. 1. 1부 : 홍익대학교 분단 창설
- 4) 1968. 1. 25부 : 명지대학교 분단 창설
- 5) 1971. 6. 26부 : 제107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명칭 변경(대통령령 제5682호)
- 6) 1990. 9. 1부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군단 창설(국 일명 24262-37호)

다. 임무

- 1) 총장산하 기관으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교내 교육 / 입영 훈련) 시행
- 2)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예비후보생 관리 업무
-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관리 업무
- 4) 대학교에 소속된 육군 위탁장교 관리 업무

라. 학군사관(ROTC) 후보생 모집 및 선발

- 1) 지원 시기 : 매년 전반기 3월~4월, 후반기 9월~10월
- 2)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 ※ 제대군인(군필자) 응시 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 연장됨
 - 연세대 1, 2학년 남·여학생
 - ※ 1학년은 사전 예비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
 - 수학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 기간 5

년에 졸업할 수 있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입단 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지원 시점 직전 모든 학기까지의 평점이 C 학점 이상인 자. 다음 해 3월에 3학년으로 정상진학이 가능해야 함(5년제 학과 등의 경우 4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어야 함)

※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 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팝업' 혹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 훈련

- 1) 교육 훈련은 기초군사훈련(4주), 교내교육(4개 학기), 입영훈련(육군 3·4학년 하계 각 4주)로 구분하여 실시
- 2) 기초군사훈련은 학군사관 후보생 생활의 초기 적응력을 배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학년으로 진학하는 1월 중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에 4주간 입영하여 실시
- 3) 교내 교육은 3~4학년 학기별 40시간씩 학군단에서 장병기본훈련, 안보관, 리더십, 체력단련, 인성함양 및 군대예절 위주 교육
- 4) 입영 훈련은 3·4학년 하계 4주간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영하여 전투지휘자 및 야전지휘자 과정을 진행
- 5) 교내 군사학 교육 매 학기 2학점(총 8학점), 입영훈련 계절학기 이수학점으로 각 1학점(총 3학점) 학점 인정

*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미포함

바. 다양한 혜택

1) 후보생 혜택

- 가)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입단 시 1,200만원 일시지급, 매년 인상 중) 및 2년 간 매월 교재비(연 80만원) / 개인 역량강화 활동비(연 180만원), 입영훈련 훈련비(매 훈련 약 120~130만원) 지급
- 나) 학군단 시설(스터디카페, 자습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24시간 자유롭게 이용
- 다) 연세대 ROTC 동문회 및 발전기금 장학금, ROTC 총동문회 장학금, 교내장학금(봉사) 등 지원
- 라) 조직 관리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마) 국내 외 군사문화 탐방 및 해외연수 실시
- 바)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 발급
 - 육군 복지시설(PX, 리조트 등) 이용 가능
 - 육군에서 공지는하는 문화공연 및 협약된 업체 할인 혜택 가능
- 사)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하면서 교환학생, 인턴 등 병행 가능

- 아) 기숙사 우선 입사권 부여
- 2) 입관 후 복무 시 혜택
 - 가)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 가능
 - 나) 장기 지원 시 국내 · 외 민간대학원 국비취학 가능
 - 다) 군 숙소,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라) 입관 시 연봉 약 3,500만원(상여금 등 포함, 경계근무 근무 시 약 5,0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8,0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 입관 시 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에 인정, 1년 후 중위 진급
 - 마) 군 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및 개인숙소 제공으로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 3) 전역 후 혜택
 - 가)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및 취업 여건 보장
 - 나) 각계 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다)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 (약 20만 명 규모)
 - 라)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 시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일부 사기업도 적용)
 - 마) 다양한 기업에서 선호하는 장교 복무 이력

사. ROTC 지원 상담 센터

- 위치: 신촌캠퍼스 육군학군단 (107동, 남문 쪽 대운동장 옆 건물)
- 전화: 02-2123-3677 (평일 09:00~17:00)

10. 공군 학생군사교육단(AFROTC)

가. 창설 배경

대학 요청으로 양부(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가 합의하여 제반 시설 및 교재 등을 준비함.
공군 관계관이 교육에 필요한 모든 여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설치 승인 및 인가(법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대통령령 제 28423호, 2017. 11. 14.))

나. 이력

- 1) 2022. 11. 1부 : 연세대학교 공군 학군단 창설(국방부 승인 / 2021. 12월)
- 2) 2023.3. 1.부 : 첫 기수(52기) 군사학과목 수업시작

- 3) 2023.7. 1.부 : 52기 조종후보생 비행교육시작(전남 무안비행장 / 근거 : 협약서)
- 4) 2025.3. 1.부 연세대학교 공군 ROTC 후보생 첫기수(ROTC 52기) 공군소위 임관(5명)

다. 임무

- 1) 총장 산하기관으로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교내 교육 / 입영 훈련) 시행
- 2)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예비후보생 관리 업무
-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및 관리 업무

라. 모집 및 선발

- 1) 지원 시기 : 매년 3월~4월
- 2) 지원 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 제대군인(군필자) 응시 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 연장됨
 - 연세대 1, 2학년 남·여학생
 - ※ 1학년은 사전 예비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선발
 - 수학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 기간 5년에 졸업할 수 있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입단 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70/100 이상이고 지원 시점 직전 모든 학기까지의 평점이 C 학점 이상인 자. 다음 해 3월에 3학년으로 정상 진학이 가능해야 함(5년제 학과 등의 경우 4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어야 함)
 - ※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군모집 홈페이지(<http://go.airforce.mil.kr:8081>) 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팝업’ 혹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은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 훈련

- 1) 교육 훈련은 기초군사훈련(2주), 교내교육(4개 학기), 입영훈련(3학년 하계 5주, 4학년 동계 3주)으로 구분하여 실시
- 2) 기초군사훈련은 학군사관 후보생 생활 적응력을 조기에 배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학년으로 진학하는 2월 중 2주간 교육사령부(진주)에 입영하여 실시
- 3) 교내 교육은 3~4학년중 학기별 76시간씩 학군단에서 장병기본훈련, 체력단련, 인성함양 및 군대예절 위주 교육

바. 다양한 혜택

1) 후보생 혜택

- 가)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및 2년 간 매월 학군생활지원금(기타 부교재비, 훈련비 별도 지급) 지원
- 나) 봉사 장학금, ROTC 총동문회 장학금 등 지원
- 다) 조직 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라) 국내·외 군사문화 탐방 및 해외연수 실시
- 마)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증 발급
 - 공군 휴양시설 및 공군에서 공지하는 문화공연/협약업체 할인 이용 가능

2) 임관 후 복무 시 혜택

- 가) 전공학과/취득자격증 등을 반영한 특기/병과 근무 가능
- 나) 장기복무 지원 시 국내·외 민간대학원 국비취학 가능
- 다) 군 숙소,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라) 임관 시 연봉 약 3,000만원 수준
 - ※ 임관 시 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에 인정, 1년 후 중위 진급 → 연봉 인상
- 마) 군 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로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3) 전역 후 혜택

- 가)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및 취업 여건 보장
- 나) 각계 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다) 연세대 ROTC 및 공군 ROTC 총동문회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4) 조종분야 혜택

- 가) 가산복무지원금 : 대학 등록금의 전액(선발 이후 지급)
- 나) 조종실습비 : 1,400만원(자가용 면장 취득시)
- 다) 의무복무 만료 후 전역 희망 시 항공사 취업추천 가능

사. ROTC 지원 상담센터

- 위치: 신촌캠퍼스 공군 학군단 (공학원 내)
- 전화: 02-827-8300~8302 (평일 08:30~17:30)

11. 체육활동

우리 대학교 체육의 전통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업적의 기반위에 세워져 있다. 특히 사학의 교육기관인 본 대학교의 체육에 대한 사명과 공로는 일제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못 크다. 과거 일제의 탄압 밑에서 이 학원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고무하는 항일 운동의 방편으로 삼아왔었고, 해방 후에는 학교 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한편 민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국의 체육인을 배출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가. 체육위원회의 설치

사립대학으로서의 체육에 대한 본 대학교의 사명과 지(知), 덕(德), 체(體)의 교육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지(知)를 담당하는 교무처, 덕(德)을 담당하는 학생처와 더불어 체(體)를 담당하는 체육부를 1962년 8월 17일자로 독립된 직제로 신설하여 본 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의 뒷받침은 물론 주로 5개부 운동선수의 엘리트 체육 육성을 발전시켜 나아가 대학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독립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범위와 수행업무 등 부속기관으로서 위상이 결맞지 않아 2004년 11월 체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운동부의 관리

5개부 운동부는 체육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한국체육계의 지도자를 배출한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수선수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재 5개부(연고전종목)는 다음과 같다.

- 1) 축구부 2) 농구부 3) 야구부 4) 아이스하키부 5) 럭비부

단, 5개부와 기타부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자기의 운동소질과 취미를 기르기 위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처 동아리에서 모든 활동을 장려 관리하고 있으며 종목은 다음과 같다.

- 1) 유도부 2) 태권도부 3) 펜싱부 4) 역도부 5) 테니스부
6) 조정부 7) 검도부 8) 빙상부 9) 승마부 10) 스켈·스쿠버부
11) 미식축구부 12) 스키부 13) 수영부 14) 산악부 15) 골프부

다. 체육위원회 활동에 있어서의 주의

- 1) 출전범위 : 우리 대학교 운동부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출전범위는 대학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대회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한국 대표선수 선발전에도 출전한다.
- 2) 선수의 자격 : 우리학교의 운동선수는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 3) 운동연습 : 각 운동부의 운동연습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부터 실시한다.

라. 체육행사

우리 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체질향상과 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가지고 있다.

1) 연·고대 친선경기

한국의 대학 체육계에서 있어서 가장 오랜 전통과 깊은 의의를 가지고 개최되는 연·고대 친선 경기는 두 대학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 및 연고자가 함께 모여 평소에 기른 정신, 기술, 학풍을 일반에게 공개 전시하면서 두 대학 친선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사로서 근래에 와서는 두 대학교 뿐 만 아니라 전국민 주시 하에 거의 서울시민의 행사와도 같이 거행되는 가장 큰 행사이다.

이 경기종목은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및 럭비의 5개 종목이며 참가선수의 자격은 (1) 등록된 재학생으로 (2) 본 대학의 운동단체의 선수로 이중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이라야 한다.

2) 국제친선경기

우리 대학교 체육위원회에서는 체육을 통하여 외국 학생과의 교류와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의 게이오(慶應) 대학과 축구, 빙구, 농구 교환경기를 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스포츠 교류 및 교환경기를 실시하고 있다.

3) 교내 체육대회

교내 체육대회는 총장배를 놓고 연세의 온 가족이 모여 각과별, 또는 각 단과대학별 대항으로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연세의 기백을 과시하고 체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마. 수영장

수영장은 교양수업 및 전공수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잔여시간을 이용하여 학내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업과 건강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최고의 수질을 제공하고 있다. 수영장은 체육교육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풀장규격이 25×9m 4레인으로 되어 있다.

1) 자유 수영시간

- 자유수영 시간은 교양수업 및 전공수업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입장료

구 분	일회 요금	비고
학 생	3,600원	
교직원	4,800원	

3) 접수방법 및 이용불가

- 교직원신분증 및 학생증으로 선충전하여 결제하거나 신용카드(BC) 및 현금 결제 가능
- 퇴직교직원 및 졸업생은 이용불가

바. 연세체육회

연세체육회는 우리 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체육단체를 말하며, 우리 대학교에 체육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한국 체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연세체육회는 모교의 체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인 면의 협조와 아울러 제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 연세휘트니스센터

연세휘트니스센터는 스포츠과학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약 300여 평으로 유산소, 근력운동장비(머신/프리웨이트)를 세계 최고 휘트니스 회사인 Technogym, Life Fitness사의 기구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녀 샤워실 및 탈의실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에게 개인 락커, 일일 락커 및 수건을 제공합니다. 연세대학교 휘트니스는 회원들의 운동 목표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신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갖춰 안전하고 체계적인 최상의 운동환경을 제공합니다.

1) 교 육

매시간 전문 트레이너들이 근무하여 연세인들의 체지방 및 체중감량, 근력과 근지구력 증가효과를 목적으로 지도하며, 초보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상담과 체계적인 지도로 만족도 높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희망자에 한해 2회까지 교육가능하고,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예약 부탁드립니다.

2) 접 수 및 등 록

접수방법	매월 마지막 주 방문접수 (스포츠과학관 2층 휘트니스 센터) - 학생증, 교직원 신분증 지참 필수 -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졸업생 이용불가 ** 현금 결제 및 무통장 입금 불가

3)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학기 중	07:00 ~ 22:00	08:00 ~ 17:00
방학	08:00 ~ 20:00	08:00 ~ 17:00

* 일요일, 공휴일: 휴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02-212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1) 설립목적 및 배경

생활체육의 보다 넓은 사회적인 발전과 폭넓은 정착을 위하여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체육청소년부(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따라 국가 공인 3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체육관련학과 및 체육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필수 자격인 3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실기 및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담당업무

- * 체육지도자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부여
-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자질 향상 도모
- * 기본적 소양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
- * 생활체육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지도자 인적자원 확보
- *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3)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체육관 B107호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TEL : 02)2123-6582

12. 신앙활동

본 대학교는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신앙생활과 그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위한 행사에 대해 학교 당국은 적극적인 후원과 정책을 세우고 있다.

교 목 실

교목실은 연세대학교 건학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교위원 및 전공별 신앙지도교수들과 더불어 각종 학원선교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기관이다. 채플, 기독교 관련 교육, 채플런시 관련 연구, 신앙 상담, 기독교생 동아리 지도, 성경공부, 대학교회 및 국제캠퍼스 대학부, 삼애교회 운영 등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가. 교목실 주요 업무

1) 신촌/국제캠퍼스

가) 학부 채플

- (1)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개교 직후부터 계속하여 채플을 운영해 왔다. 채플의 목적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채플을 통하여 장차 사회에 나가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 번영에 이바지할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연마하게 된다.
- (2) 채플은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강의 방식과 그 외에 영상, 연주, 연극, 무용, 뮤지컬, 대답, 탐방, 소그룹 모임 등 다채로운 형태로 진행된다. 강사는 채플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목회자, 연세 정신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명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다.
- (3) 신촌캠퍼스에서 채플은 일반채플, 영어채플, 예배채플, 메타채플, 의치간 학생을 위한 채플로 진행되며, 국제캠퍼스에서는 일반채플, 영어채플, 소그룹채플로 진행된다. 2025학년도 1학기 신촌캠퍼스에서 채플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국제캠퍼스에서 모든 채플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 (4) 학부 공통기초 교과목 채플의 평가 방식
 - 2015학년부터 0.5학점화하여 재학 중 2학점 이수(4Pass) 의무화
 - “P”(Pass) 또는 “NP”(Non-Pass)로 평가
 - 학기당 한 강좌만 수강신청 가능

- 재학 중 총 4회 Pass까지만 수강가능(편입생의 경우 총 2P)

나) 대학원 채플

(1) 일반대학원 채플(1학점씩 2회 수강 가능)

2012학년도 2학기부터 1학점 과목으로 개설하였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봄과 가을학기에 각기 다른 주제로 개설된다.

(2) 특수/전문대학원 채플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보건대학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은 요청에 따라 매 학기 1회 채플 실시

2) 미래캠퍼스

가) 학부채플: 매주 수요일 2교시~4교시까지 정의관 대강당에서 교내·외 강사를 초빙하여 말씀을 전하며, 한 학기 1~2회는 문화채플로 진행한다.

나) 보건과학부 채플 : 보건과학부(야간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9시 백운관 121호에서 실시 (학기당 4회)

다)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채플 : 과학기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이천, 청주하이닉스)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2회 실시 (중간기말시험 기간 중 오전/오후 각1회)

라) 원주 의과대학·간호대학 채플 : 의예과,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1:30~12:20에 루가홀에서 진행된다. 교내·외 강사를 초빙하여 말씀을 전하며, 한 학기에 2~3회 문화채플로 진행한다.

나. 선교 프로그램

1) 신촌/국제캠퍼스

가) 언더우드기념사업회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2000년에 조직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설립자이자 한국 근대화 초기에 선교, 봉사 및 교육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언더우드 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언더우드선교상, 기념강좌, 언더우드 영 리더 프로그램, 언더우드 자매교회 및 지역교회 목회자 초청 독서모임, 언더우드 자매교회 목회자와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나) 학원선교

점심나눔 프로젝트(식권지원사업), 기숙사 선교, 학생상담, 기독교아리 지도, 기독교아리 학원선교사역자 모임지원, 신입생 신앙 오리엔테이션, 학생 선교대회, 기도실 운영 등

다) 교직원 목회

교직원수양회, 연세가족예배, 교수성서연구, 직원성서연구, 연세복음선교회, 신앙지도교수

2) 미래캠퍼스 I

- 가) 학생상담 : 학교생활, 신앙문제, 종교 및 가치관 등 면담, 전화, 인터넷과 전자우편으로도 상담하고 있다. 특히 교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나) 기도실 운영 : 기도실은 생활관에 3실, 대학교회 3층에 1실 그리고 대학본부 3층에 1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 수요찬양예배 :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수요찬양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목실 후원, 새노래로찬양단 주관)
- 라) 기독교새내기맞이 오리엔테이션 :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입생을 맞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교목실 후원, 연세기독교학생연합회 주관)
- 마) 신앙강화주간 : 1년에 1회, 교계의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배울 수 있는 기간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특별신앙 집회를 갖는다.
- 바) 기독교문화주간 : 미래캠퍼스 교내 일원에서 교직원 및 각종 기독교 단체, 각 학과 기도모임 등이 모여 문화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목실 후원, 연세기독교학생연합회 주관)
- 사) 교회음악경연대회 : 1년에 1회, 선교단체, 학과 기도모임 이외에도 교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교목실 후원, 연세기독교학생연합회 주관)
- 아) 연세나눔의 손 : 교직원의 기부금을 받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자) 'Leadership 훈련' 수련회 : 매년 2회(방학 중)에 걸쳐, 각 기독교단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Leadership'을 이해, 개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 차) '기독교생 연합회'(연기연) 후원 : 교내의 다양한 기독교 동아리 연합체인 '연세기독교생연합회'가 학원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격려, 협력한다. 연합예배, 연합기도회를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다.
- 카) 기독교생 동아리 및 단체 지원 : 중앙동아리 새노래로 찬양단을 비롯한 선교단체 등 각 기독교생들의 신앙 지도 및 활동지원 및 선교단체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타) 생활관 교목파견 : 각종 상담 및 예배모임(입사예배, 퇴사예배), 각종 유익한 행사를 진행함(학사별 나눔방 운영, 생활관 문화탐방, 외국인 학생 간담회 등)
- 파) 선교위원회 운영 : 교내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하) 교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단체의 선교활동을 금합니다.
(허용 선교단체 : CCC, DFC, IVF, JDM, JOY, CME, 네비게이트 이상 7개)

3) 미래캠퍼스 II (원주 의과대학 · 간호대학)

- 가) 신앙강화주간 부흥회
연 1회 신앙강화주간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다.
- 나) 해외의료선교

- (1) 해외의료선교 : 연 1회 해외의료선교를 통해 신앙훈련 및 의료선교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 머레이모임 :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원주 의과대학·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교사, 선교학자들을 초청하여 선교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다) 외국인 유학생 목회
- 한국의 명절과 기독교 절기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과의 간담회, 여가활동 등을 기획하여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상담하는 등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 라) 정기적으로 기독교아리 임원 및 간사 간담회를 갖고, 매년 기독교인 새내기 나눔터를 진행하고 있다.

다. 기독교 교과목

1) 학부

가) 공통기초 교과목

- (1) 기독교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통기초(필수) 과목으로 「기독교와 현대사회」, 「기독교와 세계문화」, 「성서와 기독교」 중 한 과목(3학점)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 (2) ‘기독교의 이해’ 과목은 채플과 더불어 연세설립정신을 함양하는 두 기둥으로서, 선교정책 과목이라 할 수 있다.
 - (3) 미래캠퍼스는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기독교 역사와 문화」, 「기독교와 과학」 4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 (4) 미래캠퍼스 II(원주 의과대학·간호대학)는 「기독교의 이해」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 나) 대학교양 교과목: 「한국기독교와 연세정신」, 「기독교윤리와 사회적 책임」, 「여성주의와 기독교」, 「포스트휴먼시대의 기독교윤리적 이슈」,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Yonsei Spirit and Korea」, 국가와 교회

2) 대학원(공통)

- 가) 「기독교와 현대사회」
- 나) 「기독교와 문화」
- 다) 「연세정신과 한국기독교」
- 라)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라. 종교위원회

종교위원회는 우리대학교의 창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에 관한

일들을 협의, 자문하는 기구로서, 각 대학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들로 구성되며, 교목실은 연중 업무사항을 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마. 대학교회

1) 신촌캠퍼스 대학교회

1931년 연희전문학교 시절에 초교파적 성격의 교회로 시작된 대학교회는 루스채플에 위치해 있다. 연세대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들, 재학생과 동문들,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교회력에 맞춘 전통적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오후 2시 신촌대학부 열린찬양예배, 오전 11시 국제캠퍼스 크리스틴 채플에서 국제캠퍼스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교회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전통 위에서 학원선교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매년 6월에는 생활협동조합과 동문회, 동문기업이 참여하는 학원선교 기금을 위한 아나바다 자선바자회를 해왔고,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점심 나눔 프로젝트에는 매학기 약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매학기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학원선교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기독교학생 연합회(연기연), 연기연 찬양팀, 통일한마당, 선교사 자녀모임(YMK) 등에 정기적으로 월운영비와 수련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선교 차원에서는 미혼모 자립시설인 애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회 주일 예배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제공되어 (유튜브 검색어: 연세대학교회)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 02-2123-7360~1)

2) 국제캠퍼스 대학교회

2013년도 10월에 완공된 크리스틴채플(C.S. Kang Chapel)에서 국제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17년 3월에 신촌캠퍼스 대학교회에 통합되어서 ‘대학교회 대학부(국제)’로서 국제캠퍼스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있고, 기도모임, 친교모임,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크리스틴채플 (☎ 032-749-2801)

3) 미래캠퍼스 대학교회 | (장소 : 대학교회 대예배실)

미래캠퍼스 대학교회는 1981년 4월 17일 금요대학생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 2001년부터 정의관 대강당에서 예배드렸으나, 2009년 2월 대학교회가 준공되면서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대학교회는 ‘주님을 위해 모이고 세상을 향해 흠얼지는 교회’를 표어로 대학교회를 통하여, 캠퍼스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기여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가) 주일예배 : 매주일 11:00-12:10

나) 교회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 매주일 11:00-12:00

다) 주일열린예배 : 매주일 오후 2시에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뜨거운 찬양과 감동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 대학교회 목장운동 모임 : 학기 중 매주일 15:00-16:00까지 대학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

과 학생들의 신앙성장과 나눔을 위해 목장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마) 대학교회 동아리 및 단체 지원 : 대학교회의 예배를 섬기고 있는 한울림 찬양대, 에브라임 찬양단 외 각 기독교학생들의 신앙 지도 및 활동을 지원한다.

바) 선교지원

- 선교사 지원

국내: STOREY MARGARET 선교사,

해외: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중앙아시아), 김기원(연변과기대), 박간사

- 학과기도모임지원, 학생단체 활동지원

4) 미래캠퍼스 대학교회 II (장소 : 루가홀)

가) 주일예배 : 주일 11:00 루가홀

나) 교회학교

(1) 청소년부 : 주일 10:00

(2) 유초등부 : 주일 10:20

(3) 유아유치부 : 주일 10:40

다) 청년부 모임 : 주일 12:20 원재홀

라) 금요 성경공부 기도회 : 금요일 9:00 대학교회 사무실

리) 대학교회 찬양팀·성가대

마) 선교지원

국내 : 연세대 GIT, 마가렛 사회복지회 (2곳)

해외 : B국, V국, P국 등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후원과 기도 (7곳)

바) 기도실 운영 : Judy학사 2층, 의학관 지하 원재홀 (2곳)

5) 삼애교회

독립운동과 농촌운동에 헌신했던 고 배민수 목사님의 삼애정신(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일산 삼애캠퍼스에 세워진 "숨과 쉼이 있는 숲속의 교회"인 삼애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삼애교회는 2006년에 창립되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로 160-30 (☎ 031-975-1885)

바. 교목실의 위치

- 1) 신촌캠퍼스의 교목실장실(105호)과 교목실(103호)은 루스채플에 위치하고 있다.
- 2) 국제캠퍼스의 교목실은 크리스틴채플(105호)에 위치하고 있다.
- 3) 의료원 캠퍼스의 원목실장실은 종합관 6층에, 원목실은 본관 6층에 위치하고 있다.
- 4) 미래캠퍼스의 교목실은 대학본부(328호)에 위치하고 있다.
- 5) 원주 의과대학·간호대학의 교목실은 의학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13. 보건기관

우리대학교에서는 서울캠퍼스 건강센터, 국제캠퍼스 건강센터와 미래캠퍼스 건강관리센터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의 진료 및 건강관리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건강센터(신촌캠퍼스)

1) 위치 및 시설

가) 위치 : 학생회관 2층 (☎ 02)2123-3345 ~ 9, 6649)

나) 시간 : 09:00~17:20(월~금) (점심시간 12:00~13:00)

※의사진료접수 마감 : 09:00~11:50, 13:00~16:50(단, 금요일은 오전진료)

다) 시설 : 소장실, 팀장실, 사무 및 접수실, 진찰실, 처치/주사실, 약국, 진단검사실, 안정실, 심전도 및 체지방측정실, 회의실

라) 홈페이지 : <http://yuhsc.yonsei.ac.kr>

2) 주요 업무

1차 예방진료로 내과적인 진찰 및 투약, 예방접종, 외상치료, 건강상담, 재학생건강검사(보건비 납부자), 진단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체지방검사, 교환학생 및 유학생 면역증명서 발급, 질병휴학 확인서 발급, 진료의뢰서 발급(세브란스병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 진찰실

(1) 가정의학 전문의로 내과적인 질환 및 상담과 진찰을 하며,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시 세브란스병원으로 진료 의뢰한다.(진료의뢰서 발급)

(2) 진찰 후 약, 진단검사, 예방접종 및 약물 주사를 처방한다.

(3) 면역증명서 발급

외국대학으로의 교환학생 또는 유학 시 필요한 면역증명서 발급은 진찰 및 상담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4) 질병휴학 확인서 발급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이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에서 전문의의 진단명, 치료계획, 1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

(진단서에 입원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다는 내용 기재 시 보호자 방문가능)

나) 약 국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및 구급약(내복약, 외용약)을 제공한다.

다) 처치/주사실

외상처치와 예방접종 및 처방 약물 주사를 한다.

A형간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 Tdap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폐렴, 자궁경부암, 수막구균, 수두, MMR(홍역, 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라) 진단검사

진찰 후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진단을 요하는 경우, 연계된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CBC검사(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Diff검사, 당화혈색소(HbA1c)
- (2)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혈당, 지질, 통풍, 칼슘, 인, CPK, Fe, TIBC, CRP정량, Mg, 비타민D, RF정량)
- (3) 전해질검사(Na, K, Cl)
- (4) 간염검사(A형, B형, C형, HBeAg/B형간염 항원 양성시 : 전염성검사)
- (5) 갑상선기능, 홍역, 이하선염, 풍진, 수두
- (6) 에이즈, 매독검사
- (7) 암지표(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검사
- (8) 혈액형검사(ABO, RhD(+,-))
- (9) 소변검사, 요배양검사
- (10) 심전도(EKG) 및 체지방(Inbody)검사
- (11) QUANTIFERON-TB Gold (결핵균 특이항원 IFN- γ , IGRA)검사

마) 건강검사

보건비납부자에 한해 매년 학기 중 1회 실시하며 무료로 제공한다.

※검진기간은 사전공지

신체계측, 혈압, 시력, 혈액검사(B형간염, 간기능, 혈당, 총콜레스테롤, CBC, 혈청크레아티닌) 등이 있다.

나. 국제캠퍼스 건강센터 분소

1) 위치 및 시설

가) 위치 : 국제캠퍼스 종합관 1층 (Tel : 032-749-2118~9)

나) 시간 : 09:00-17:20(월-금) (점심시간 12:00-13:00)

다) 시설 : 접수/처치실, 안정실

2) 주요 업무

내과적인 질환상담과 투약, 외상처치 등을 제공하며, RC교육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 응급 관리 체계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간호사 2인이 근무하고 있다.

다. 건강관리센터(미래캠퍼스)

본 센터에서는 학교 의사의 건강 및 기타의료 상담과 일반의약품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공제 업무는 “학생건강공제회”(전화 033-760-5430)에서 담당합니다.

휴학관련 상담은 교무처 “학적과”(전화 033-760-2156)에서 담당합니다.

1) 위치 및 시설

가) 위 치 : 학생회관 212호 (전화 033-760-2641)

나) 시 간 09:00 - 17:20 (월 - 금), (점심시간 12:00~13:00)

다) 시 설 : 접수실, 처치실, 안정실, 의료상담실

2) 주요업무

다양한 질환 상담과 투약, 외상처치 등을 제공하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합니다.

가) 기초의료서비스: 상처치료(드레싱), 일반의약품 유상 제공, 자가진단키트 유상 제공

나) 학교 의사의 건강 및 기타 의료 상담

다) 시내 병-의원 안내

라) 질병휴학진단서 판정

※ 제외업무 : 일반 병-의원업무, 예방접종

3) 서비스 이용료

가) 학생, 교직원 모두 기본이용료 2,000원이 부과되며, 약품비 및 드레싱 비용이 추가 됩니다.

나) 건강공제회비 납부한 경우 약품 및 드레싱 비용의 90%를 할인 받습니다.

4) 응급환자의 경우

가) 지체 없이 시내 원주의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하기 바랍니다.

나) 단,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응급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 관리료 및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센터 이용안내 참고)

5) 질병휴학을 위한 절차

휴학에 관한 일반문의는 아래 사이트 내용을 읽은 후 학적과(033-760-21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sei.ac.kr/wj/support/college_admin2.jsp

- 가) 질병휴학 구비서류: 2차 진료기관 이상(전문과목표기), 구체적 진단명, 치료계획, 5주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입원)가 기재된 “휴학용 진단서”
- 나) 기재사항이 부족한 진단서나 한의원-한방병원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다)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본 센터 학교의사와 상담 후 휴학여부 판정

6) 캠퍼스 주변 의원, 약국정보

- 가) 흥업사거리(4km 거리)에 의원 2개(평일: 오후 18시 30분, 토요일: 오후 13시30분까지 운영), 약국 2개
- 나) 원주 이마트 내 약국 1개,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과목별 개인의원 10여개

14. 봉사활동

우리대학교 사회봉사는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학점인정 사회봉사과목, 지역사회 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고취하고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널리 전하고 있다.

고등교육혁신원 산하 사회참여센터에서는 사랑의 실천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연세공동체의 참여 극대화’, ‘자원봉사를 통한 연세공동체의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 ‘사회 섬김 활동을 위한 재정 및 교육적 기반 안정화’로 사회봉사활동을 체계화·구체화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가. 주요업무

1)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평가

우리대학교 봉사 프로그램의 특징은 독창성, 폭 넓은 사회적 영향력과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플러스 멘토링과 교육소외지역의 교육캠프(연세대학교 희망원정대)가 있다.

2) 사회봉사과목 개설 및 지원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부 자율선택으로 개설되어 전교생이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사전 기본교육, 8~15주 기간의 봉사활동, 기말평가교육을 거쳐 총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이행하면 학점을 부여받는다.

분반	교과목명
01	사회봉사(자유선택)
02	사회봉사(희망원정대-선봉사후학점인정)
03	사회봉사(함께나누는세상)
04	사회봉사(뷰티풀마인드서포터즈)
05	사회봉사(치유와회복-재활승마)

3) 자원봉사 인증 관리

인증서 발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정기준에 맞춰 사회봉사 활동 내역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구 분	봉사활동 시간	등급	발급 명의	비 고
자원봉사 인 증 서	100	백양	사회참여센터장	포탈시스템에서 출력
	300	청송		
	500	자유		
	1,000	진리		
인증메달	1,000시간		총 장	자원봉사 1,000시간 인증메달

4) 학생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지원

사회참여센터에서는 ‘Change Agent(학생봉사동아리 연합회)’ 및 교내 학생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NO	동아리명	활동분야	온라인 커뮤니티
1	VC	봉사기획	@yonseivc
2	YDMC	전공탐색 봉사	@ydmc_yonsei
3	LIA	문화예술봉사	@yonsei_lia
4	YNBLUE	교육봉사	cafe.naver.com/ynblue
5	희망원정대 기획단	교육봉사	@yonsei_hope
6	세움	건축봉사	@yonsei_seium
7	봉봉	플리마켓 봉사	@yonseibonbon
8	리듬오브호프	미디어봉사	@rhythm_of_hope
9	연그린	환경봉사	@yongreen_yonsei
10	의청	의료봉사	@eui.chung_yonsei
11	아우린DB	놀이봉사	@yonsei.nursing.aurin

NO	동아리명	활동분야	온라인 커뮤니티
12	180DC	비영리단체 컨설팅	@180dcyonsei
13	연세동행	교육봉사	@yonsei_donghaeng

5) 외부자원 연계

사회참여센터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기관과 MOU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 기금을 유치해오고 있으며 베트남, 몽골, 네팔 등의 개발도상국 지역사회개발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국제적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6) 연세학생사회봉사상

우리대학교는 교육이념인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세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펼친 학부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시상상은 매 학기 졸업시기에 맞춰 진행하며 연세학생사회봉사상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15. 학생건강공제회

가. 개 요

연세학생건강공제회는 학생들이 적은 비용 부담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특히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연세건강공제회는 199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학생직영의 연세학생건강공제회로 바뀌었다.

학생직영체제로 출범한 뒤에는 공제가능 의료기관을 전국의 모든 병원, 의원, 약국(2018년 9월 1일부터 약국공제 폐지)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적으로 공제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휴학 및 교환학기 기간 동안에도 추가가입을 통하여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세학생건강공제회 지정병원을 확보하여 운영해왔고(2019년 9월 1일부터 지정병원 제도 폐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학생의 병원 의료비만 공제 가능), 교내 건강센터(미래: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학생건강공제회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정관을 통한 사업 내용과 기구의 개괄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조직 및 기구

연세학생건강공제회는 법인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비영리의료보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1) 이사회 및 이사

- 가) 이사회 - 학생건강공제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방침을 협의, 결정하는 운영기관으로 8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나) 이 사 - 학생건강공제회원인 학생대표 8인: 신촌학부생 대표 3인, 신촌대학원생 대표 2인, 미래학부생 대표 2인, 미래대학원생 대표 1인으로 한다.
- 학생건강공제회 이사장: 학부대표와 대학원 대표중 이사회가 호선하는 1인
 - 학생건강공제회 부이사장: 신촌, 미래 대표 중 이사회가 호선하는 2인

2)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

학생건강공제회의 사업을 담당하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신촌 및 미래에 각각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또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상임이사 1인, 전문이사 4인 총 8인으로 구성된 주요이사진은 사무실 업무에 참여한다.

다. 회원자격

해당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중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한 연세대학교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 본인만 해당된다.

라. 재 정

- 가) 학생건강공제회의 재정은 건강공제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건강공제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 나) 건강공제회비 납부
- 2013-1학기부터 선택납부로 변경되면서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 시 건강공제회비를 선택해야만 가입 가능하며 선택하지 못한 재학생은 추가가입을 통해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대상자
선택납부	등록금 납부 기간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건강공제회비 선택 후 등록금 고지서 발행하여 등록)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추가가입	1학기: 3월 한 달 2학기: 9월 한 달 (추가 가입한 회비는 환불불가) ※ 추가가입 할 경우 가입일	•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 할 때 건강공제회비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 (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대상자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	재학생 •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 (Only Outgoing Exchange Student) ※ 2023학년도부터 휴학생은 추가가입이 불가함. (학생건강공제회 정관 개정-2022.11.17.)
※ 대학 및 대학원의 모든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하실 때 선택납부 하셨던 건강공제회비는 등록금 전액반환기간에 휴학 시 전액 반환되지만 그 기간 이후 휴학 시 미 반환 됨. ※ 추가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기별 공지사항 참조		

마. 공제급여기준

외래	공제급여율
의원	급여본인부담금의 50%
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20%
입원	공제급여율
모든 의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30%

- 가) 공제는 국민건강보험 처리되는 급여본인부담 부분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 나) 영수증 제출 시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표시된 형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다) 공제급여는 급여본인부담금의 공제급여율만큼 계산되며, 실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 라)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외래, 입원 공제급여율에 준하여 공제된다.
- 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일 경우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초과하면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공제된다.
- 바)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는 외래, 입원 통합 100만원으로 한다.
- 사) 장제급여는 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학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통장사본)
- 아) 영수증은 직전학기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해당학기 진료 분은 최대 다음 학기 이내에만 접수 가능)

자) 예약진료비는 공제급여에서 제외한다.

차) 공제급여지급제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대상 항목과 학생건강공제회에서 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제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비급여 대상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과 같고, 교통사고·폭력·자해 등 지불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때,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비, 기타 이사회에서 사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 약제비 관련, 원내 처방을 통한 병원 내 약제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약국의 비용은 제한한다.(이는 종합병원 및 병원의 진료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증빙한다.)

바.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

건강(관리)센터 이용할 때 발생한 진료, 조제, 검사, 치료 등 센터를 이용 할 때 우선 90% 할인을 적용하고 나머지 10%를 학생이 센터에 지불한다. 추후 할인된 금액은 월별로 센터에서 학생건강공제회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비급여 약품 및 검사료는 학생건강공제회원이어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사. 공제 신청 시 준비사항 및 접수 방법

- 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급여(보험), 비급여(비보험) 구분 형식, 진료일, 진료과 기재(팩스, 복사본 불가)
- 나) 연세대학교 학생증(혹은 재학, 휴학증명서)
- 다) 우리은행 계좌번호(학생 본인 명의)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규 접수자인 경우 작성)

구분	캠퍼스	장 소	연락처
방문접수	신촌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신촌☎ 02-2123-3350
	미래	미래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무인접수합	국제	종합관 1층	
	미래	학생회관 212-1호	미래☎ 033-760-5430
		원주의과대학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	
우편접수	신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학생회관 206호 학생건강공제회 우편번호) 03722	
	미래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212-1 학생건강공제회 우편번호) 26493	

아. 외국인 유학생(학생건강공제회원인 경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학생일 경우만 진료비 공제 및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 1577-1000

자. 학생건강공제회 장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 <http://healthma.yonsei.ac.kr>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신촌사무실 : 학생회관 206호 / 02-2123-3350, 3352

미래사무실 : 학생회관 212-1호 / 033-760-5430

16. 총동문회

가. 모교 지원 사업

1) 모교 창립 백주년 기념사업 후원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는 1985년 모교 창립 1백주년을 맞이하여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1백억 원 모금하여 백주년기념관과 알렌관 건립, <연세백년사> 출간 등 1백주년 기념사업을 후원했다.

가) 백주년기념관 건립

백주년기념관은 모교 창립 백주년을 기념하고 영원한 연세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문, 교직원, 사회유지, 학부모, 재학생 등 많은 분들의 뜻과 정성으로 세워졌다. 1988년 2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우아하고 현대적인 건물로서 박물관과 콘서트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알렌관 건립

국내 최초 의료기관인 광혜원을 설립한 알렌 박사를 기념하는 이 건물은 기존의 영빈관 건물을 철거한 후 1987년 4월 개관했다.

2) 백낙준 박사 동상 건립

충동문회는 모교 초대 총장인 용재 백낙준 박사의 학덕과 은공을 기리고, 그 유업을 받들기 위해 연세인의 정성을 모아 용재 동상을 건립했다. 동상 건립의 총 공사비는 1억2천여만 원이며, 1987년 5월 봉헌했다.

3) 종합관 재건 지원

1996년 한총련 사태로 인해 모교 종합관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을 때 충동문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개인이나 각 지회를 통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기업체 등 사회 각처에서 참여하여 총 50여억 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4) 노천극장 확장

모든 연세인의 꿈과 낭만, 추억이 어려 있는 노천극장이 재학생 수에 비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해 충동문회에서는 1996년 노천극장 확장사업을 추진했다. 1999년 5월8일 봉헌된 노천극장은 총 공사비 70억 원 중 20억 원을 특별 기금과 함께 1구좌당 20만원씩 동문들로부터 모았으며, 나머지는 동문회관 운영수익금과 특별기부금으로 충당했다. 기금을 내주신 동문들에게 대해서는 이름과 학과, 입학년도를 좌석(화강암)에 새겨 영원히 모교에 남게 했다.

5) 총장공관 영빈관 건립

충동문회는 모교 총장 공관이 협소해 여러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2010년 6월 총장공관 영빈관을 건립했다. 6월 17일 봉헌된 총장공관 영빈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160여 평 규모이며, 모교 총장 초청 행사 연회장과 라운지로 쓰이고 있다. 총장공관 영빈관 건립기금은 동문회관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6) 백양로 동문광장 조성

충동문회는 연세인의 낭만이 품고 있는 백양로를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하며 백양로 지하 주출입구에 ‘동문광장’을 마련했다.

비상하는 독수리 상을 바라보며 조성된 ‘동문광장’은 45평 규모의 가든과 8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드 등으로 구성됐으며, 2015년 10월 백양로 재창조 봉헌식이 ‘동문광장’에서 열렸다.

7) 백양누리 ‘동문라운지’ 조성

충동문회는 백양로 지하 공간인 ‘백양누리’의 중심에 동문들을 위한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인 ‘동문라운지’를 조성했다. ‘동문라운지’는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모교의 의견에 따라 유경선 충동문화장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8) 장학재단 설립

연세동문장학회에서는 모교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명문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모교에서 최소한 3학기를 수료한 학생 중 평량평균이 3.0 이상이며 모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자로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국가고시 1차 합격자 중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평량평균이 2.0 이상이며 창업

관련 등 교내의 활동이 우수한 학생 등을 선발하고 있다. 또, 모교 대학원에서 학술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총동문회에서는 보다 많은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9) 총학생회, 응원단 및 연고전 지원(5개 운동부)

총학생회와 응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젊음과 패기로 연세가죽임을 배우는 연고전에서의 필승을 위해 총동문회는 매년 총학생회와 5개 운동부, 응원단, 소나기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고전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양일간 열띤 응원을 펼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고전 폐막식 후 학생회관에서 연고전 기념 만찬을 개최하고 있다.

10) 후배 멘토링 활동

총동문회는 재학생들과 젊은 후배들을 위해 멘토링 활동을 해오고 있다. 금융, 언론, 공공, 법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후배들이 준비해야 할 것과 첫발을 내딛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조언해주고 있다.

나. 동문 서비스 사업

1) 동문회관 건립(동문사랑방 및 소회의실 운영)

연세동문들의 사랑방인 연세동문회관은 1993년 5월 모교 창립 108주년 기념일에 준공됐다. 동문회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석조 건물로 동문들의 성금 42억2천5백만 원을 비롯해 총 72억2천5백만 원으로 지어졌다. 동문들의 각종 소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동문사랑방과 소회의실이 동문들에게 항상 열려있다.

2) 동문회보 제작 및 발송

1932년 창간된 동문회보는 모교와 총동문회의 소식을 전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교류 매체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해마다 지면 혁신을 통해 국내 대학 동문회보를 선도해온 「연세동문회보」는 매월 1일 발행되고 있다. 주소가 확인된 동문들에게 직장 또는 자택으로 개별 우송하고 전자발송도 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모바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3) 연세사랑 Y카드(동문 전용 신용카드) 출시 및 제휴 기업 확대

총동문회는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와 제휴를 맺고 동문 전용 신용카드(통칭 연세사랑 Y카드)를 출시하였다. 연세사랑 Y카드의 수익금은 해외 석학 초빙과 장학금 지급 등 모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여러 동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연세사랑 Y카드 사용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문들은 '연세사랑 Y카드'를 사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더불어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동문 포털 사이트 구축

1998년 대학 동문회 중 최초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총동문회는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동문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참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해왔다. 2018년 11월에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 가능한 ‘사용자 중심 반응형 웹’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5) 동문 의료 및 경조 서비스 시행

총동문회에서는 국내 최고 의료 기관인 모교 의료원과 협력을 통해 2006년 1월1일부터 동문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문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들은 모교 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료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평생회비를 납부하거나 Y카드를 소지한 동문들에게 하나로의료재단과 제휴를 맺고 건강검진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경조 화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6)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및 복사 서비스 시행

총동문회는 모교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평생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에게 도서 대출 및 소장 자료 복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문들은 1회 최대 7권의 도서를 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7) 총동문회 온라인 채널(연세톡톡) 구축

총동문회는 굳건한 동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모교와 총동문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세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물론 카카오톡 채널을 구축했으며,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 등을 전달하며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8) 연세인물 오픈

총동문회는 2022년 7월 국내 동문회 최초로 쇼핑몰인 연세인물을 오픈했다. 연세인물은 연세 동문, 교직원, 재학생들이 최저가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Y카드를 통한 할인, 동문 기업 제휴, 동문기업 홍보, 동문들의 공연소식 및 독수리마켓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문과 동문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9) 동문기업과 동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동문 복지 향상 추구

총동문회는 다양한 동문기업과 제휴하여 동문들이 총동문회를 통해 동문기업의 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며, 이를 통해 동문기업들에게는 매출이 증진되어 서로 WIN-WIN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ODA, 빙그레, 말본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유명 브랜드들과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와인나라와 2차레의 와인페스타(오프라인 와인 할인행사)를 개최하여 2천여 명의 동문들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 총동문회 행사

1) 새해인사의 밤

총동문회는 매년 1월 둘째주 화요일 모든 연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설계하고, 동문들의 단합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결집력을 공고히 하는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에 연세를 빛낸 동문들에게 각종 상을 수여한다.

2) 동문의 날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은 온 연세인들이 가족과 함께 추억의 캠퍼스를 찾아 함께 어우러지는 「연세 동문의 날」이다. 총동문회에서는 매년 동문의 날과 모교 창립을 기념하여 음악회와 연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연세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마술피리」를 공연했다. 또한, 2010년에는 연세창립 125주년을 기념하여 무악오페라에서 「라보엠」을, 극예술연구회에서 「피가로의 결혼」을 공연했다. 2015년에도 연세창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무악오페라에서 「피가로의 결혼」을 공연했다.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대거 출연했다.

3) 자문위원 초청의 밤

총동문회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연세를 빛냈던 고문, 및 자문위원 동문들을 초청하는 「자문위원 초청의 밤」을 기획하여 1년에 2회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및 공연, 만찬을 함께하고 더불어 연세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연세사랑 골프대회

총동문회는 동문간의 우의와 친선을 통한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가을에 「연세사랑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와 기타 동창회, 총동문회 부회장단, 분과위원장, 상임이사 및 이사, 모교 교직원 등이 참가하여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운동도 함께 열고 있다.

5) 고위공직 동문 초청 만찬

총동문회는 모교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 동문들의 취임을 축하하고 연세 발전을 위해 다짐하는 자리를 개최하고 있다.

6) 홍보대사 위촉

총동문회는 모교와 함께 연세를 대표하는 동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백종원, 오은영, 서장훈, 강혜정, 오상진, 유소연, 손연재, 허웅, 허훈 동문이 제1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2024년 4월에는 김미경, 백종원, 오은영, 서장훈, 강혜정, 전현무, 오상진, 유소연 동문이 제2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7) 연세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

총동문회는 2024년 4월 「제1회 연세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를 진행했다. 1천2백여 명이 넘는 동문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를 둘러보며, 공연과 사진콘테스트 등의 이벤트를 즐겼다. 걷기 대회에 참여한 동문들은 연세의 역사를 되새김은 물론 가족, 연인과 함께 찾은 모교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8)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with alumni

총동문회는 2024년 5월 동문들을 위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with alumni」를 진행했다. 노천극장에 1만2천여 명이 넘는 동문과 가족이 모여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을 즐겼으며, 모교 응원단과 함께 재학시절 못지않은 응원을 펼쳤다.

9) 연세 국회 동문의 밤

모교 출신 국회의원, 국회 재직 동문 및 국회 출입 기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다.

학생활동 및 장학복지

-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 279
-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 281
- 학생회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규 / 282
- 장학금지급규정 / 284
-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 289
-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 296
-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 297
-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 299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9.08.21

제정일: 1985.03.21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학생회라 함은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 학생회를 말한다. <개정 2019.08.21.>

②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학생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4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학생회) 학생회의 장의 선출 및 그 운영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 (단체 자격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11장 및 총학생 회칙 제2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
2. 소속단체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30명 이상의 임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3. 단체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4. 설립 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을 것

제5조 (단체 등록) ①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신규 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발기인(회원) 명단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예산안 1부

② 단체로서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재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회원명단 1부
5. 단체의 총회 회의록 1부

6.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7. 최근 1년간 결산서 1부
8.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9. 예산안 1부

제6조 (단체의 승인) 제5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는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상위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복지처장이 승인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제7조 (단체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다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단체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단체 재정) ① 단체의 운영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복지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재정은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 (단체의 승인 취소) 단체가 본교의 건학이념 또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학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학생복지처장은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교외 활동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학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집회의 개최 및 간행물)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주관하여 간행하는 인쇄물은 학칙 제58조에 따라 개최 또는 간행되어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의 개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류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학생지도 관련 중요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연세의 향연 개최 구비서류) <삭제 2017.02.16.>

제15조 (봉사활동) <삭제 2017.02.16.>

제16조 (단체의 자격상실) <제10조로 이동 및 개정 2017.02.16.>

제17조 (본 규정의 개폐) <제13조로 이동 및 개정 2017.02.16.>

부 칙

(1) 이 규정이 정하는 설립요건에 미흡한 현존 단체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 <제13조로 통합 2017.02.16.>

- (3)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5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규정(제2조 제1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일: 2017.02.16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 및 지도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외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학 내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①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소속 학생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현장실습, 수업 및 연구와 관련된 외부 활동은 담당부서별 관련 규정류에 따른다.
- ③ 교내의 집단활동은 본교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활동”이란 동아리, 학생회, 학과, 대학, 본부 행정부서의 주관으로 지도교수 또는 행사승인자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이 동행하여, 대학캠퍼스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들을 소집하여 행하는 활동(OT, MT, 수련회, 체육대회, 다양한 행사 등)을 말한다.
2. “인권침해행위”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행사 승인, 결과 보고) ① 동아리는 지도교수, 학과 및 대학 소속의 학생단체는 학과장 또는 학장, 기타 행사는 행정부서의 기관장으로부터 교외활동에 대한 행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교외활동 시작 1주일 전까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계획과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교외활동 신청서”에 따라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이하 ‘학생지원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학생지원팀은 안전사고예방계획을 심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행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학생지원팀에 본교가 가입 중인 보험 보상적용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확인하고, 보상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한도액이 참여인원 대비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 예방)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인권침해행위예방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학생지원팀에서는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안전사고예방과 인권침해 행위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사고처리)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 체계에 따라 선 처리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소속 기관장과 학생지원팀에 사고 사실을 통보 한다.

- ② 학생지원팀은 제1항의 사고 사실을 학교본부에 보고하고 그 경중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 ③ 인권침해행위의 처리는 행사주관부서와 인권침해 관련 부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류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개폐) 이 세칙의 개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학생회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18.01.17

제정일: 1977.09.12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생회관내 복지시설 중 학생복지처장의 관할하에 있는 특정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생회관내 다음의 복지시설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1. 음악감상실
2. 푸른샘
3. 무악극장
4. 합창연습실
5. 학생회의실
6. 합주연습실

제3조 (운영의 기본방향) ① 이 시설이 학생들이 개인적인 취미활동 또는 단체적인 과외활동의 중심지가 되게 한다.

- ② 이 시설의 혜택이 전교생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
- ③ 이 시설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의 대화의 장소로서 연세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터

전이 되게 한다.

- ④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제4조 (운영주체) 제3조의 기본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무 및 방침은 학생 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제5조 (관리 운영의 위임) 학생복지처장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향을 조화있게 규합하기 위하여 적당한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하 "담당 단체"라 한다)에게 일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시간)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이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에는 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용도변경) 각종 복지시설의 기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비품관리 및 인수인계) ① 각종 복지시설의 기재 또는 비품을 고의로 파손할 때에는 변상조치 한다.

- ② 관리, 운영의 인수인계는 반드시 학생복지처장의 승인하에 행해져야 한다.

제9조 (음악감상실의 관리) ①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가 음악감상실의 관리, 운영을 맡으며, 음악감상실 내의 모든 비품과 기재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 ② 진행 프로그램은 매주 초 감상실 내에 게시한다.

- ③ 담당 단체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주 1회 지도교수와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음악감상실의 이용) ① 담당 단체는 감상실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퇴장을 명한다.

- ② 감상실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을 일체 불허한다.

- ③ 감상실 내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담당 단체의 지시와 진행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푸른샘의 관리) ① 푸른샘의 관리·운영은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에서 진행한다.

- ② 푸른샘 담당 단체는 푸른샘 실내 정리와 비품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담당 단체는 월초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운영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담당 단체는 월말에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푸른샘의 이용) ① 푸른샘을 이용하려는 학생단체는 푸른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으로부터 장소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푸른샘 장소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담당 단체는 푸른샘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들에게 퇴장을 명한다.

제13조 (무악극장의 관리) ① 무악극장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하고, 학생복지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단체가 운영을 맡는다.

-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무악극장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담당 단체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무악극장의 이용) ① 무악극장을 이용하려는 학생단체는 무악극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으로부터 장소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무악극장 장소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합창·합주연습실의 관리) ① 합창·합주연습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한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합창·합주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합창·합주연습실의 이용) ① 합창·합주연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연세대학교 공간대관시스템(이하 '공간대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장소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8.01.17.>

② 피아노의 외부 대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 (학생회의실의 관리) ① 학생회의실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한다.

②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단체에 한하여 학생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학생회의실의 이용) ① 학생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공간대관시스템 (이하 '공간대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장소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8.01.17.>

② 피아노의 외부 대여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부 칙

(1) <삭제 2012.04.10>

(2) <삭제 2012.04.10>

(3)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 이 개정 내규(제4조, 제7조,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신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3항)는 199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개정)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 항)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규정

제정일: 1977.08.31

개정일: 2021.08.26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장학팀(02-2123-212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대학교 각 대학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매지, 일산)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제3조 (사무관장) 본 대학교의 장학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한다.
2. 예산배정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03.14.>
3.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장이 관장한다.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학생복지처장이 관장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장학금 지급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장학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위원회는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장학팀장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에서 선임한 부학장 1인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8.03.14., 2019. 6. 5., 2020.7.27.>
2.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3. 간사는 장학팀장이 된다. <개정 2019. 6. 5.>

② 위원회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장학위원회는 장학금과 관련한 기본정책, 예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 2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업무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3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제6조 (지급대상) ①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단,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5. 삭제
6.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7. 우수한 체육선수
8.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 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9. 기타 학생복지처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2021. 8. 26.>

- ③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로 인해 이수학점 및 성적이 변경되는 경우 장학사정시는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이전의 학점 및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제7조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자격의 제한) ① 휴학생,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장학금 성격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1>

- ② 별도의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하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
4. 삭제
5. 장학금 신청서류상 허위사실의 기재
6. 학칙 위반

제9조 (장학금 배정 통보) 학생복지처장은 매학년도마다 장학금 배정 종목과 액수 및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02.28>

제10조 (추천절차) ① 각 대학장은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장학금 지급시안의 배정 종목과 액수를 결정하고 각 학과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대학을 제외한 각 기관은 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각 기관장은 선정된 지급대상자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 (추천기준) 각 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
2. 경제적 사정
3. 장학금 수의 학년간 균형

제11조의 2 (장학생 교체추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교체 추천서를 접수받아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을 교체한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위반
2. 타 장학금 수혜

3. 휴학
4. 본인의 포기

제12조 (지급결정) ① 학생복지처장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이수학점 및 학업 성적, 중복추천 여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포기한 장학금의 이후 학기로의 이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위반
2. 타장학금 수혜
3. 휴학
4. 본인의 포기

[본항 신설 2013.3.11]

제14조 (지급기준액) ①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1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이 동일한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경우, 장학금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생활비, 교재비,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상금, 기숙사비 및 각종 경비지원 등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2013.3.11>

제15조 (지급방법) 학생복지처장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2. 등록 후 :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

제16조 0 <삭제 2013.3.11>

제17조 (기금관리) 기탁된 장학기금은 지체 없이 본 대학교 명의의 장학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8조 0 <삭제>

제19조 0 <삭제>

제20조 0 <삭제>

제21조 (지급결과의 보고) 학생복지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0 <삭제>

제4장 보칙

제23조 (규정개폐)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폐된다.

제24조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2) 종전에 시행하던 규정(1966년 2월 21일)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3) 이 규정은 197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8호, 제7조, 제10조, 제11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호)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0조, 제22조)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호)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 삭제)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3호 가목, 제10조)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4호, 제7조 제2호, 제13조, 제14조)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호)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1호, 제13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4호, 제7조 제2호, 제8조 제2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호,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호,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6조 제3호, 제7조 제1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신설), 제14조 제2항(신설), 제16조(삭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24)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이 개정 규정(제2조 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9. 28.>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제1항에 따른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8. 26.>

(28)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항 삭제)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제정일: 1977.09.08

개정일: 2023.06.28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장학팀(02-2123-212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생복지처장이 장학금 지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일정표 작성 등) 매학기 말에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사무 일정표를 작성 및 공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장학금 배정안 통보) 매 학년도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학금 배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2.31>

1. 장학생 선정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장학금 배정표
4. 기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급결과 보고)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결과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제2장 교내 장학금

제5조 (대학배정장학금) ① 대학배정장학금은 전년도 대학별 평균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대학에 배정한다. <개정 2011.12.31>

②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자 중 각 대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진리장학금 또는 자유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07.06>

③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자에게 진리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등록금 전액, 반액 또는 1/3액 등으

로 한다. <개정 2011.12.31>

- ④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자에게 자유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대학배정장학금을 지급하며, 해당학생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2.07.06]
- ⑥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자유장학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3.06.05.>

- 제5조의 2 (연세장학금)** ①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40이상인 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성적 산출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성적 산출 방식을 따른다. 단, 8학기(5년제인 경우 10학기) 해당하는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받지 아니하며, 장애학생과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의 성적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06.05, 본조 신설 2012.07.06., 2023.6.28.>
- ②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 시기 미준수로 인해 국가장학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06.05. 개정 2019. 6. 5., 2023. 6. 28.>
 - ③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C학점 경고제 적용대상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6.18., 신설 2014.7.7.>
 - ④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7.7, 신설 2013.06.05.>

- 제6조 (연세특별장학금(입학성적우수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표된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기간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 ② 2014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매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50 이상인 자(외국인전형을 통한 입학생은 10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본항 신설 2011.02.25>
 - ③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본항 신설2011.02.25>
 - ④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한국어능력 4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본항 신설 2011.02.25>
 - ⑤ <삭제 2013.12.31, 신설 2013.06.05.>

- 제7조 (연세복지장학금)** ①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7.06>
- ② 정년·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로서 퇴직 당시에 재직 중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③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평량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 ④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6.06.18.>

제8조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졸업시(계절학기 포함)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 포함)에게 등록금 반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반액 및 교재비를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반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6.05.>
- ④ 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지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1학기는 4월 말일, 2학기는 9월 말일까지 국가보훈처 및 통일부에 보고한다.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계절학기수강시 3학점 수강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11.12.31>

제9조 (근로장학금) 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40이상인 재적생(수료생제외)으로서 학생 복지처장이 선발하여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한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9. 6. 5., 2020.1.3.>

- ② 근로장학생은 배정된 부서에서 학기중에 120시간의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 배정된 당해학기 근로장학생 정원내에서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
- ③ 근로장학생을 배정받은 부서는 근로학생이 60시간 근무 완료시 장학담당 부서에 근무평가를 제출하고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다. 단, 필요한 경우 120시간 근무 완료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근로가 중단되는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 장학금 지급을 요청한다. <개정 2020.1.3.>
- ④ 근무평가는 A, B, C, F의 4단계로 하며, 근무평가에서 1회 이상 F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근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⑤ <삭제 2016.06.18.>
- ⑥ <삭제 2016.06.18.>

제9조의 2 (근로장학금(각 부서예산))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교내 행정기관에서 일정시간 근로한 재적생(수료생 제외)에게 각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6. 5.>

[본조 신설 2014.7.7.]

제10조 (우수선수장학금) ① 우수한 체육선수 중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체육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봉사장학금) ①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재적생 중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6.18., 2013.06.05, 2011.12.31.>

-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1.12.31, 본항 신설 2011.02.25>
- ③ 이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봉사장학금 지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6.06.18.>

제12조 (국가고시장학금) ① 재적 중 국가고시(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사법시험,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중 국가고시지원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고시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합격증 사본을 국가고시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1.12.31.>

제13조 (평화장학금) ① 대학언론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신문방송편집인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 이상인 자에게 신문방송편집인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2014.7.7.>

제14조 (신학장학금) <삭제 2016.06.22.>

제15조 (연세한마음장학금)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입학 당시 연세한마음전형에 합격하고 매 학기 가계경제상황이 1구간 이하로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를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성적 산출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성적 산출 방식을 따른다. <개정 2016.06.18., 2013.06.05., 2023. 6. 28>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3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06.05.>

③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성적평가 기준은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④ 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판정 결과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 시기 미준수로 인해 국가장학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6.06.18., 개정 2019. 6. 5.>

제16조 (연세독서리장학금) ① 정시모집최초합격 성적우수자로서 매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50이상인 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2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06.05.>

③ 2011학년도부터는 연세독서리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관련 장학재원은 수시 및 정시선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세특별장학금으로 통합한다. <보합 신설 2011.02.25>

④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누계 평량평균(계절학기 포함)이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06.05.>

제17조 (VSP장학금) ① VSP(Visiting Student Program, 방문학생프로그램)를 통해 파견되는 학생 중 국제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등록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개정 2019. 2. 15>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GIP장학금) ① GIP(Global Internship Program, 글로벌인턴십프로그램)를 통해 TWC(The Washington Center)로 파견되는 학생 중 국제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등록금

의 100분의 80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TWC 매칭펀드의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본조 신설 2019. 2. 15.]

제18조 (신문고장학금) ① 장학신문고제도를 이용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학업성적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제19조 (자유창의장학금) <본조삭제 2016.1.17.>

제20조 (연세비전장학금) ① 학교비전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장학금은 이수학점, 학업성적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5, 2011.12.31.>

제20조의 2 (외국인 전형 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외국인 전형 선발요강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표된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기간에 관한 방침에 따라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이수학점이 1~2학년은 10학점 이상, 3~4학년은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량 평균 2.50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01.14., 2013.12.31>

②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적3회(2학기 지원대상자는 1회, 3학기 지원대상자는 2회)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종료한다. <개정 2013.12.31, 2013.06.05.>

③ 외국인전형으로 입학(또는 합격)한 자 중 한국어능력 4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는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나 이수학점 및 학업성적이 미달된 경우는 누적횟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5.01.14., 2013.06.05.>

④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인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누계 평량평균(계절학기 포함)이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06.05.>

[본조 신설 2011.02.25]

제20조의 3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기간 및 지급증지에 관한 사항은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내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1.02.25]

제20조의 4 (국고지원대응장학금) 국고지원장학금을 대응하는 교비지원장학금은 해당 국고지원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2.07.06]

제20조의 5 (기타장학금(각 부서)) 교내 각 부서 예산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각 부서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재적생에게 교재비, 상금, 경비지원, 기숙사비, 어학지원비, 봉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4.7.7]

제21조 (기금장학금) ①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기탁자가 지급대상 기관을 지정한 기금은 해당 기관에 배정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는다.

2. 각 기관 공동기금은 직전학기 기관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에 배정하고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본항 신설 2011.12.31.〉

제3장 교외 장학금

제22조 (국고지원장학금) ① 제8조(보훈장학금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제2항 및 제3항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기부금장학금) ① 교외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교외인사나 단체가 대상기관 및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인사나 단체가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별 교외장학생의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복지처장이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② 교외 장학단체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부 칙

- (1) (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 내규는 198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내규(제2조 2호)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내규(제9조 7호)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 내규(제2조 5호, 제5조 1호, 3호, 4호, 제8조, 제9조 7호 8호, 제12조, 제14조, 제16조 삭제)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 내규(제2조 1호, 8호, 9호, 제9조의 2 신설)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내규(제2조 8호, 9호, 제8조 2호, 제9조 2호)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 내규(제2조 7호, 8호, 9호, 10호, 11호, 제8조 3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 내규(제2조 2호, 4호)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 내규(제2조 1호)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7호)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호)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호 및 제7호)는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개정 내규(제2조 제3호, 제4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200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8호, 제9호, 제4조 제10호, 제8조, 제1호, 제2호, 제4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호, 제6호, 제12호, 제13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3조)는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1조)는 200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전문 개정)는 200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2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신설, 제16조 제3항 신설, 제20조의 2 신설, 제20조의 3 신설)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조 제5항 신설,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 제5항(신설), 제5조의2 신설, 제7조 제1항, 제20조의4 신설)는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6항 신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제7조 제3항 신설,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설,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는 201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5항, 제16조 제4항, 제20조의2 제4항은 2014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파견자부터 적용한다.
- (27)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개정전의 내규에 의한다.
- (2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 2 제3항(신설), 제9조의 2(신설), 제13조 제2항(신설), 제20조의 5(신설))는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0조의 2 제1항, 제3항)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9조 삭제)는 2016년 1월 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 (3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3항, 제7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5항 내지 제6항 삭제, 제11조 제1항, 제3항 신설, 제14조 삭제, 제15조 제1항, 제4항 신설)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3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신설)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33) 이 개정 규정(제5조의2 제2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및 제15조 제4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4) 이 개정 내규(제9조 제1항, 제3항)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이 개정내규(제5조의2, 제15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00.12.29

개정일: 2016.08.18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옥외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물이란 교육·연구 또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의 게시물을 말한다.

제3조 (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18.>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등
2.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주관의 행사로서 단과대학(원) 규모 이상의 행사
3.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
4. 본교의 주요 공지사항 등 <개정 2016.8.18.>

② 기타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행사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각호의 행사
2. 본교 학생단체(재원 동문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3. 본교의 허가를 받은 외부 단체의 게시물 <개정 2016.8.18.>
4. 기타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받은 게시물

제4조 (검인) ① 모든 홍보물은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홍보물에는 반드시 게시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검인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이 담당한다. 단, 종교관련 홍보물은 교목실 선교지원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8., 2010.7.9>

제5조 (게시물의 제한) ① 현수막은 1매에 한하여 교내에 설치된 공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② 기타 게시물은 45cm*65cm 이내의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10매까지, 외부 단체의 경우 5매까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게시판에 2매 이상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게시기간 및 철거) ①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전체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게시기간이 종료된 게시물은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총무처는 해당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때 철거된 홍보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8.>

제7조 (보호 및 책임) ① 학생복지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

손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총무처는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③ 이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단체는 1년간 홍보물 게시를 할 수 없다.

제8조 (예외) ① 학교 창립 행사 및 연고전 관련 행사의 홍보물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8.>

② 기타 학생복지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 홍보물 게시에 관한 시행 세칙]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조항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정일: 1977.11.01

개정일: 2021.05.26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은 별도 구성한다. <개정 2014.01.28>

② 미래캠퍼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은 본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위임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28.>

③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장이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목실장,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각 대학 부학장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5. 26.>

[전면개정 2008. 4. 14.]

제3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부학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4. 14.>

1.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회 및 학생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시행세칙) 학생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복지처장이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벌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필요에 따라 학생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전면개정 2008. 4. 14.]

제8조 (회의록) 학생복지처장은 모든 회의의 종료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차기 회의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전면개정 2008. 4. 14.]

제9조 (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전면개정 2008. 4. 14.]

부 칙

- (1) <제9조로 이동 2017.02.16.>
- (2) <제9조로 이동 2017.02.16.>
- (3) (시행) 이 내규는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항)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내규(제2조 제1항)는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제조제2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1)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1977.10.18

개정일: 2023.06.20

담당부서: 학생복지처 - 학생지원팀(02-2123-5119)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이 없는 한 이 세칙에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상황 및 미등록 등의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 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제7조 제1항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지도행위(훈계, 교육이수나 봉사명령, 기숙사 퇴사 등)는 각 단과대학이나 기관의 내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조 (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 상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4.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경우

[본조개정 2017.05.23.]

제4조 (포상의 요청)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대학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5.23.>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부)장 의견서 1부

제5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 계할 수 있다.

1. 본교의 입교정신을 위배한 경우
2.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
3. 타 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
5.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을 한 경우
6.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7.05.23.]

제6조 (징계의 요청) 제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대학장이나 윤리인권위원장 또 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5.23., 2023.06.20. >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 진술서 1부 <개정 2017.05.23.>
3.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의견서 1부

제7조 (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여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계에 회부된 학생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제1항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 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봉사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개정 2017.05.23.>

③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학생복지처장이 정한다.

제8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학생이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의된 징계처분으로 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지도를 성인지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8.09.>

② 학생이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처벌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에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같은 학적상태를 유지할 시, 학생복지처장은 해당 학생에게 학업의 지속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학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음을 표하거나,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 응답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1. 5. 26.>

[본조개정 2017.05.23.]

제9조 (심의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학생복지처장은 제4조에 의하여 포상 발의된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1. 5. 26.>

1. 학생복지처장은 제6조에 의하여 징계 발의된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학생복지처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해당학생에게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진술을 대체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도교수나 학과(부)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23.06.20.>
3.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도, 제적 징계의 경우 총장 결재를 득하여 시

행해야 한다.

4.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복지처장은 징계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학교 또는 학생복지처 자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 또는 위원회가 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8.09.>

[본조개정 2017.05.23.]

제10조 (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 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장을 경유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5.23.>

제11조 (통보) ①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이 포상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지도교수, 학과(부)장, 학장, 교무처장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한다. 단,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의된 징계처분으로 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발의기관, 교무처장 및 본인에게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08.09., 2017.05.23.>

- ② 특별지도, 성인지교육, 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학기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9.>

제12조 (시행세칙의 개폐 등) ①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결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7.05.23.]

부 칙

- (1) <제12조로 이동>
- (2) <제12조로 이동>
-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7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조, 제9조)은 199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199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은 200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2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부칙(1), 부칙(2))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생지도위원회 상설분과위원회의 학생지도위원회로의 통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0) (시행일) ① 이 개정 세칙(제9조제2항제5호 신설)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세칙(제8조제1항 단서 신설, 제11조제1항 후단 단서 및 제2항 신설)은 201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26.>

(11) 이 시행세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0.>

(12) 이 시행세칙(제6조 및 제9조 제2항 2호 개정)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연세대학교 학칙 / 304

학사에 관한 내규 / 351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366

1) 복수전공 시행세칙 / 366

2) 학사편입 시행세칙 / 367

3) 재입학 시행세칙 / 368

4) 부전공 시행세칙 / 370

5) 소속변경 시행세칙 / 371

6)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 374

7) 재수강 시행세칙 / 377

8)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 378

9)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 383

10) 국내대학 교환학생에 대한 시행세칙 / 384

11) 연계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 387

12) 성적평가 시행세칙 / 388

13) 입학 전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세칙 / 390

14)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 391

15)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398

16) 외국대학등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 내규 / 402

17)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 405

18)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 406

19)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 411

20)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412

21) 미래캠퍼스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414

22) 우등생 표창에 관한 내규 / 416

23) 계절제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417

24) 미래캠퍼스 소속변경에 관한 내규 / 419

25) 영어인증제 시행세칙 / 420

26)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423

27) 학부 교육과정 운영 지침 / 427

28) 원격수업 운영 지침 / 432

29)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 / 435

2024학년도 재적생 현황 / 437

연세대학교 학칙

제정일: 1956.04.03

개정일: 2024.10.24

담당부서: 교무처 - 교무팀(02-2123-2082)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학생정원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RC융합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0. 7., 2022.05.03., 2021. 4. 30., 2021.01.28., 2019.04.22.,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제3조 (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컴퓨팅계열, 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자율융합계열, AI반도체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AI보건정보관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글로벌케어아트학부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2023. 10. 25., 2021. 4. 30., 2019.09.26., 2019.04.22.,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별표개정 2024.06.05., 2024. 3. 15., 2023. 10. 25., 2023. 2. 2., 2022. 10. 7., 2022.05.03., 2022. 1. 23., 2021. 10. 13., 2021. 4. 30., 2021.01.28., 2020.11.06, 2019.10.23.. 2019.04.22., 2019.02.26., 2017.05.23., 2016.11.11., 2016.05.04., 2016.03.04., 2015.11.3., 2015.5.7., 2014.7.22, 2013.12.23, 2013.11.12, 2013.07.11, 2012.07.03, 2012.05.08, 2011.12.09,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8.17, 2010.4.6, 2009.11.12, 2009.4.2, 2009.1.16, 2008.7.15, 2008.4.14>

-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11.12.>

※ 상기 제2조 및 제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조 (교육조직)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학부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원주의과대학,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학대학원, 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보건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법무대학원, 생활환경대학원, 경제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8.28., 2018.02.21., 2014.11.07., 2011.05.17, 2011.04.13, 2010.4.6, 2009.1.16. >

제3조 (학생의 정원 및 수여학위) ① 학생의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 상경계열, 경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생명시스템계열, 신학계열, 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치·간계열, 언더우드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ISE계열), 약학계열, 글로벌인재학부의 모집단위를 두고, 미래캠퍼스는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응용과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보건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학계열, 글로벌엘리트학부, 의학·간호계열의 모집단위를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나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2015.05.07., 2014.7.22, 2013.11.12, 2013.07.11, 2011.05.17, 2011.04.13, 2010.9.14, 2010.4.6, 2008.7.15>

- ②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I 과 같이하고, 각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 II와 같이 한다. 다만, 연계전공의 수여학위는 따로 정한다. <별표개정 2019.02.26., 2017.05.23.,

2016.11.11., 2014.7.22, 2011.12.09, 2009.11.12,	별표개정 2013.12.23, 2011.05.17, 2009.4.2,	2016.05.04., 2013.11.12, 2011.04.13, 2009.1.16,	2016.03.04., 2013.07.11, 2010.9.14, 2008.7.15,	2015.11.3., 2012.07.03, 2010.8.17, 2008.4.14)

③ 타 대학교와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 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2.>

<신설 2013.11.12.>

제3조의2〈본조 삭제 2020.11.06.〉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의예과, 치의예과: 2년(4학기)
 2. 약학과: 6년(12학기)
 3. 야간간호학과(RN-BSN),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생: 2년(4학기)
 4. 건축학(5년제): 5년(10학기)
 5. 편입학생: 학과(전공)별 수업연한 - 편입학년 + 1년
 6.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3학기
- ② 제51조 제2호부터 제10호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재학기간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75 이상인 학생
 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 통합)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 학생
 3.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전공과 지능형반도체전공 학생으로 재학 중 누적 성적이 평량평균 3.3 이상인 학생<개정 2024.06.05., 2022.05.0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1. 의예과, 치의예과, 의학과, 치의학과 및 건축공학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 전공자
 2. 일반편입학생 및 학사편입학생
 3.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전문개정 2021. 10. 13.]

제5조 (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5년(15학기), 약학대학 약학과는 2+4년제 편입생의 경우 6년(12학기), 통합6년제의 경우 9년(18학기), 의예과·치의예과의 재학연한은 3년(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02. 2020.05.05>

- ②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 혹은 자원 퇴학 전 재적하였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본 대학교

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03.02.〉

- ④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 ⑤ 학부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의 재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11., 2022. 1. 23.〉
- ⑥ 삭제 〈2022. 1. 23.〉
- ⑦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재학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1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0. 13.〉

제4장 학년과 학기

제6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 11. 06.〉

- 제7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 ② 방학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수업과 휴업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20.11.06〉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 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수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37조의 학점당 시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6.〉
-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은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일수를 대학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4.〉

제8조의2 (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의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의 3분의 2를 소속대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6. 7.〉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5. 국정공휴일
-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06, 2009.1.16, 2008.8.1〉
- ③ 임시휴업 및 임시휴업 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으며, 제37조제1항의 수업시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휴업일로 인한 휴강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4.〉

제6장 입 학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편입학, 재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입학은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09〉

제11조 (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전항 이외의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자.〈개정 2008.8.1〉
3. 기타 법령 또한 교육부장관이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개정 2008.8.1〉

제12조 (지원 절차)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 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②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13.〉

제14조 (입학허가) ①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해당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전형에 대하여 제청권을 입시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필요시 학장은 제청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11.13.〉

1.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각 전형
2. 정원내 일반편입학

3.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전형
4. 외국인전형

제14조의2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①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대리시험 등 일체의 시험부정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개정 2021. 10. 13.>

1. 합격자 발표 전 발견 시 : 불합격
2. 합격자 발표 후 학기 시작일 전 : 합격취소
3. 입학일 이후 : 입학취소

② 삭제<2021. 10. 13.>

③ 제1항 제2호의 합격취소 및 제1항 제3호의 입학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3.>

제15조 (입학허가자 구비 서류 등)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③ 보증인이 사망 또는 그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입학) ① 1,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8.4.14>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24. 10. 24>

⑤ <삭제 2024. 10. 24>

⑥ <삭제 2024. 10. 24>

제18조 <본조 삭제 2017.11.13>

제19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04.22.>

제20조 (입학정원 외 입학) 입학정원 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제20조 2 (정원 외 전담학과) 미래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원 외 전담학과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21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

다.〈개정 2010.3.11〉

-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2조 (모집 세칙) 그 밖의 학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필요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및 캠퍼스 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24. 10. 24〉

-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28, 2019.04.22., 2015.05.07., 2010.12.10〉

-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23조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23조 (소속변경)

제23조 (소속변경) ①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허용한다. 다만,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및 캠퍼스 간, 주·야간 소속변경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개정 2015.05.07.〉

- ② 일반학부(계열·학과) 학생의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이나 예·체능계열 입학자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07., 2010.12.10〉

- ③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0 〈삭제〉

제25조 (소속변경 절차)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4〉

제26조 (소속변경시험) 소속변경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력 및 면접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 (소속변경의 허가)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 (소속변경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학생은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9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과정은 7학기, 약학대학 약학과 2+4년제 편입생은 3년(6학기), 통합6년제는 4년(8학기)을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15.03.02., 2020.05.05>

② 본교 재적자 중 국가고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입법고시) 합격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전학의 연한을 초과하여 휴학해야할 경우 연수원 교육 기간만큼 휴학연한의 연장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③ 제1항의 연한이 만료된 학생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2.09>

④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5.04., 본항 신설 2012.12.5>

⑤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⑥ 재난·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해당 학기에 긴급 휴학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제1항의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06>

제31조 (임대휴학) 병역(지원 임대 포함)으로 말미암아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 (복학의 시기) 휴학생의 복학은 개강전 3주에서 개강 후 1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다.

제33조 (복학의 절차)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자원 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퇴학신청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2., 2021. 10. 13.>

제3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학력 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삭제 <2020. 11. 06.>
3.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1.28.>
4. 삭제 <2020. 11. 06.>
5.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본인 사망시
7. 재학연한 내에 각 대학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개정 2021. 10. 13.>

8. 총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9.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21. 10. 13.>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중 위탁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중도 해지한 자 <신설 2021. 10. 13.>
11.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첫학기 학생 또는 휴학연한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없는 자 <신설 2024. 10. 24>

제9장 교과와 이수

제36조 (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11., 2019. 01. 28., 2021. 10. 13.>

- ② <삭제 2024. 10. 24>
- ③ <삭제 2024. 10. 24>
- ④ <삭제 2024. 10. 24>

제37조 (학점) ① 교과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 단위로 한다. 1학점의 이수 단위를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체육, 기타 대학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이 된다.

- ②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 교과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1.28., 2010.3.11>
- ③ 개별연구(Individual Study)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별연구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2 (학점인정범위) ①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졸업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 ② 제1항의 인정학점에 대학 입학 전 취득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 ③ 학과 등은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을 총 9학점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요건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제38조 (과정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 및 전공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원주의과대학 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의예과,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4.14., 2010.3.11., 2010.4.6., 2010.12.10., 2013.11.12., 2020.2.21., 2021. 10. 13.>

※ 상기 제38조 내용 중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2018학번)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151학점을 적용함

제39조 (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을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한다.

제40조 (전공이수) ①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3.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부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전공
 4. 학생이 설계하여 대학의 승인을 얻은 전공<신설 2024. 10. 24.>
- ②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삭제 <2020. 11. 06.>
- ④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이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18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글로벌엘리트학부 학생이 글로벌엘리트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8.06.01., 신설 2015.03.02.>
- ⑤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은 계열과 캠퍼스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캠퍼스간 다중전공 및 연계전공의 절차는 따로 정한다.
- ⑥ 전공의 이수에 필요한 절차 및 전공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4., 2020.11.06, 2018.06.01, 2015.03.01.>

제40조의2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①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의3 (Honor 프로그램)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Honor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Honor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제40조의4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신설 2018.06.01.> ① 미래캠퍼스 학생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한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미래캠퍼스 전공심화트랙-융합트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6.>

③ 전공심화트랙의 전공심화 요건은 학과별로 지정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제40조의5 (마이크로전공) <신설 2020.11.06.> ① 새로운 학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전공을 둘 수 있다.

② 마이크로전공의 개설 및 이수요건은 따로 정한다.

제41조 (수업) ①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무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1.06>

② 현장실습, 사회봉사, 체육실기 등 수업 특성상 또는 시설의 제약으로 필요한 경우 학교 밖에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6>

③ 온라인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④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협동수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4.>

제42조 (수강과 이수) ① 재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학부(과)장, 해당전공 책임교수 또는 담당 학사지도사(Academic Advisor)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개정 2020.11.06>

- ② 이수 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택 과목일 때에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③ 과목이수 및 과목철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 1학년은 20학점까지,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전공,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전공, 지능형반도체 전공,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RC융합대학(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제외)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06.05., 2022.05.03., 2019.04.22., 2010.12.10>
-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1.06, 2020.05.05>
- 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RC융합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4.22., 2008.4.14>
-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확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⑦ 삭제 <2021. 4. 30.>
- ⑧ 비상한 상황으로 인해 총장이 별도로 지정한 학기에 최대 3학점 내에서 초과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대상 및 범위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 상기 제43조 중 원주캠퍼스 학계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4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24학점까지,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20학점까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및 원주의과대학은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 ② 직전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와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의 1학년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10>
-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3, 4학년(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재적생은 4, 5학년)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개설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며 총 12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⑤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의예과와 치의예과,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의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4.14>
- ⑥ 본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예비신입생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입학 후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확범위 및 취득 가능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⑦ 본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소정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자는 입학 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대상자 및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08.4.14>

제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06>

1. <삭제>
2. <삭제> <개정 2012.12.5>

제45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O, A-, B+, C+, CO, C-, D+, DO,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평가어
A+	4.3	수
AO	4.0	
A-	3.7	
B+	3.3	우
BO	3.0	
B-	2.7	
C+	2.3	양
CO	2.0	
C-	1.7	
D+	1.3	가
DO	1.0	
D-	0.7	

F	0	낙

-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다만, 학점이 있는 과목이라도 학과장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P” 또는 “NP”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6>
- ③ 제1항의 등급제로 평가되는 과목에 대하여 학생이 수강신청 시 ‘S/U’(충족/미충족) 방식 평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S/U평가 과목은 평점 환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S/U평가의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06>

제46조 (학문윤리 준수 의무) <개정 2020.11.06.> ① 학생은 학습활동 시 학문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진급) <개정 2020.11.06.>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학점 이상으로 한다.

(수료학년/전공·학과수업연한) × 학과졸업이수학점

제48조 (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성적불량 제적 후 재입학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의무연수기간(정규 1~4급) 중에 있는 자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도 성적불량제적 적용 학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4.14>
- ③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성적불량제적 적용 요건은 따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2.12.5.>
-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원주의과대학에는 “유급”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유급”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각 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15.>

제49조 (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50조 삭제 <2021. 10. 13.>

제51조 (졸업의 요건) 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수업연한을 충족한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수료생 <개정 2021. 10. 13.>
2. 각 대학 및 전공별로 정한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3. 필수이수지정 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 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 <개정 2010.3.11>
4. 각 학생별로 지정된 영어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0.3.11>
5. <삭제 2010.3.11>
6. 채플에서 4개학기 이상 “P”(급)를 받은 자.
7. 지정된 기간 내에 졸업신청을 완료한 자 <개정 2021. 10. 13.>
8.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은 졸업인증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각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3.>

9. 글로벌기초교육학부 및 글로벌인재학부로 입학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지정한 한국어 능력을 취득한 자 <개정 2021. 10. 13.>
10.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3.>

제52조 (조기졸업) 학칙 제4조 제2항 해당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2024. 10. 24.>

제53조 (졸업의 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삭제>

제54조 (졸업취소) <개정 2020.11.06.>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의2 (학사학위수료) ①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료신청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을 원하는 학사학위수료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사학위수료자의 재학연한은 재학과 학사학위수료 기간을 포함하며, 재학연한이 만료되는 경우 졸업생으로 변경한다.

<조신설 2019.01.28.>

제10장 특별학생 등

제55조 (정의, 입학 자격 및 절차) ① 외국 대학 소속 학생 및 외국 대학 입학 예정자(이하“특별학생”이라 한다)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처에 입학 원서, 성적 증명서 및 추천서 등 소정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② 특별학생의 입학 전형은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56조 (수업연한과 교과) ① 특별 학생의 수학 연한은 1년 이내이며 그 교육은 해당 대학의 학부 혹은 학과가 담당한다.

② 특별학생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 (학칙의 적용) 특별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57조의2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3.>

제11장 학생활동

제58조 (학생활동) 학생은 본 대학교의 입교 정신에 따라 덕성을 기르고 교칙을 준수하며 전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제59조 <삭제>

제60조 (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

학생회를 둔다.

-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휴학생은 총학생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총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삭제>

제61조0 <삭제>

제62조 (학생 지도) 학생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3조 (학업 및 업무 방해 행위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64조 (포상)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1. 성행이 불량한 자
- 2. 학업을 방해한 자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삭제>

③ <삭제>

제13장 등록금

제66조 (등록금 납부 의무)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등록금의 책정) ①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 및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삭제>

제67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3.11.]

제68조0 <삭제>

제69조 (등록금의 대체 및 반환)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70조0 <삭제>

제70조의 2 (시행세칙) 등록금의 납부와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71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1>

제72조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각 대학장이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3조 (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74조 (지급 세부사항) ①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연세우수학생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직제 및 교원의 임면·재임용

제75조 (직제) ①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12.23., 2019.10.23.>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학술문화처 도서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3., 2023.10.25.>

제75조의2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교원의 임면 및 재임용 관한 사항은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6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둔다.

제77조 (구성) ① 본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미래캠퍼스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연구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시설처장, 학술문화처장, 정보통신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처장, 원주의료원장 등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1.01.28, 2020.07.30., 2019.09.26., 2013.8.2, 2012.12.5, 2010.12.10, 2009.1.16., 2008.4.14., 2018.3.14., 2020.7.27., 2022. 10. 7.>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등을 교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2.5>

제78조 (의장) 본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총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 (기능) 본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대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장 교수회

제80조 (교수회) 학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및 대학(원)에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81조 (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2.05.08〉

제82조 (교수회 소집) 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각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3조 (교수회 소집과 개회)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4조 (교수회 기능)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각 부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84조의2 (교수평의회) 전체 교수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수평의회를 둘 수 있다. 교수평의회 회칙 및 관련 내규는 정관 및 학칙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장 대학원과 석사, 박사 학위

제85조 (대학원) 각 대학원 학칙과 석사, 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 <삭제>

제86조0 <삭제>

제86조의20 <삭제>

제87조0 <삭제>

제88조0 <삭제>

제88조의20 <삭제>

제19장의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88조의3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02.03〉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9장의 3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제88조의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계약학과나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2019.10.23.〉

② 계약학과와 전공, 입학정원 및 입학유형은 [별표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9.10.23.〉

③ 계약학과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9.10.23.〉

※ 상기 제88조의4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4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등의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학과, 학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8조의5 (계약학과 명칭) 삭제〈 2019.10.23.〉

※ 상기 제88조의5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5 (계약학과 명칭) ① 제88조4에 따라 과학기술대학에 반도체시스템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3.12.23, 2010.12.10〉
② 〈삭제 2010.12.10〉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삭제〈 2019.10.23.〉

※ 상기 제88조의6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육과정은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삭제< 2019.10.23.>

※ 상기 제88조의7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7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2.23>
② 대학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그 밖에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0.12]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삭제< 2019.10.23.>

※ 상기 제88조의8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8 (정원 및 전공)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입학정원 및 전공은 별표I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삭제< 2019.10.23.>

※ 상기 제88조의9는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9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2.23>
② 산업체 부담금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③ 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④ <삭제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삭제<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0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0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3>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10]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삭제< 2019.10.23.>

※ 상기 제88조의11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제88조의 11 (설치운영기간 및 학생의 보호) ① 반도체시스템공학부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변경에 관한 특별 통고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개정 2013.12.23>
 ② 계약학과와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개정 2013.12.23>
 ③ 입학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 체결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23>
 [본조 신설 2010.12.10]

제19장의 4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 수업 및 학점인정제도 운영 <신설 2023. 2. 2.>

제88조의12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 수여) ① 미래캠퍼스는 학점 인정 및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과정 수강생이 미래캠퍼스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 소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과정 운영, 학위종류, 학위수여절차, 학위수여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88조의13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 미래캠퍼스 시간제 등록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미래캠퍼스의 시간제 등록생을 위한 강좌, 수업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등 제반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별도로 정한다.
2.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연 24학점 이내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의 지원 자격은 이 학칙 제11조에 따르며, 시간제 등록생의 매 학기 등록 인원은 미래캠퍼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4. 시간제 등록생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운영,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납입금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캠퍼스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

제20장 각종 부설 연구 기관

제89조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 대학교 부설 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지속성국가과제 연구소를 둔다.

나노의학연구단 <신설 2019.04.22.>

- ②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설연구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을 둔다. 국학연구원, 동서문제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공학교육혁신센터,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 법학연구원, 무인기용터빈기술특화연구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연구개발단, 심뇌혈관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 이승만연구원, 은하진화연구원,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연구원, 자연과학연구원, 생명시스템연구원, 스핀-그린수소 연구센터, 통일연구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차세대융복합에너지 물질특화연구원, 미래융합연구원, 바이오메디칼헬스융합연구원, 중국연구원, 초정밀 광기계기술 연구센터, 변형 제어 고성능 전자 소자 연구단, 세포사멸 연구단, 미각연구원,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복지국가연구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프론티어연구원,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융복합 연구센터, 미래정부연구원, 만성난치질환 시스템의학 연구센터, 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센터, 고압광물물리화학연구단, 다차원소재연구단, 인공공감각소재디스커버리연구단, 소설오믹스연구원, 연세-키스트 융합연구원,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단, 지능형의약바이오연구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연구원, 에너지대전환전력망연구단, 극한물성소재-초고부가부품KIURI연구단, 마이크로바이옴연구원, 에어로젤소재연구원, 초임계 소재 산업기술거점센터, 뉴런시티 4.0 연구단, 밴드구조제어연구단, 세포소기관 분자사회 관제망연구단, 양자정보기술연구원, 이차전지 연구센터,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연구센터, 인간지향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센터, 의생명과학기술융합연구원, 프로젝트-Y 연구원, 한국 기업경영 융합연구원, 아프리카연구원, 다상소재 혁신 생산공정 연구센터, 무인기용 메타구조 IR 스텔스 연구센터, 첨단바이오산업융합연구단<개정 2008. 4. 14., 2008. 7. 15., 2009. 1. 16., 2009. 5. 19., 2009. 9. 8., 2009. 11. 12., 2010. 4. 6., 2010. 8. 17., 2010. 12. 10., 2011. 05. 17., 2011. 12. 09., 2014. 11. 7., 2016. 03. 08., 2016. 05. 04., 2017. 05. 23., 2018. 02. 21., 2019. 02. 26., 2019. 04. 22., 2020. 2. 21., 2020. 06. 27., 2020. 11. 06., 2022. 1. 23., 2022. 10. 7., 2023. 10. 25., 2024.05.22., 2024. 10. 24.>

- ③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대학간 연구소를 둔다. 교육연구소, 공공문제연구소, 근대한국학연

구소, 인지과학연구소, 매체와예술연구소, 지식정보화연구소, 개인식별연구소, 나노과학기술 연구소, 젠더연구소, 방송통신정책연구소, 바른ICT연구소, 바이이티 마이크로 펌 연구소, 우주생명과학연구소, 방사선융합연구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소, 바이오영상데이터 연구소, 감염병연구소 <개정 2008. 4. 14., 2009. 5. 19., 2010. 4. 6., 2010. 8. 17., 2014. 11. 7., 2016. 03. 04., 2016. 05. 04., 2019. 02. 26., 2019. 04. 22., 2020. 2. 21., 2022. 1. 23., 2022. 10. 7., 2023. 10. 25., 2024.05.22>

④ 대학교 부설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22.>

제90조 (대학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학술 연구를 위하여 각 대학에 다음과 같은 부설 연구소를 둔다. 문과대학에 심리과학이노베이션연구소,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상경대학에 경제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경영대학에 경영연구소, 공과대학에 산업기술연구소, 철강연구소,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공학연구원, 인공지능융합대학에 인공지능연구원, 신과대학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사회과학대학에 사회과학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CLIO사회발전연구소, 정치외교연구소, 음악대학에 음악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심바이오틱 라이프연구소, 교육과학대학에 융합체육과학 선도연구소, 학부대학에 교양교육연구소, 언더우드국제대학에 베리타스연구소, 의과대학에 환경공해연구소,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열대의학연구소, 산업보건연구소, 유전과학연구소, 소화기병연구소, 내분비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뇌연구소, 시기능개발연구소, 희귀난치성신경근육병재활연구소, 비뇨의학과연구소, 면역질환연구소, 재활의학연구소, 알레르기연구소, 방사선의학과연구소, 인체조직복원연구소, 세균내성연구소, 의학행동과학연구소, 피부생물학연구소, 에이즈연구소, 마취통증의학연구소, 척추신경연구소, 기도점액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 각막이식증연구소, 의학사연구소, 연세의료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메디컬융합연구소, 혈관대사연구소, 뇌전증연구소,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 신장질환연구소,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 유방암정밀의학연구소,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중입자암치료연구소, 혈액암연구소, 대사-치매 연구소, 난청 정밀의료 연구소, 정밀신약 연구소, 임상후보물질개발연구소, 치과대학에 구강과학연구소,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두개안면기형연구소, 치주조직재생연구소, 구강종양연구소, 간호대학에 김모임 간호학연구소, 약학대학에 종합약학연구소, 와이에스엘아이 연구소, 보건대학원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국제학대학원에 현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연구소, 정보대학원에 IT정책전략연구소, 글로벌창의융합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글로벌한국학연구소 과학기술융합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원주의과대학에 직업및환경의학연구소, 유전체코호트연구소, 미토콘드리아의학연구소, 재생의학연구소, 청각재활연구소, 자동차의학과연구소, 고압의과학연구소, 국민건강빅데이터임상연구소, 국제보건의료개발연구소, 대사및염증연구소, 소생의학연구소, 통합 신장 연구소 <개정 2008. 4. 14., 2008. 7. 15., 2009. 1. 16., 2009. 5. 19., 2009. 9. 8., 2009. 11. 12., 2010. 8. 17., 2011. 05. 17., 2011. 12. 09., 2014. 11. 7., 2015. 11. 3., 2016. 03. 04., 2017. 05. 23., 2018. 02. 21., 2019. 02. 26., 2019. 04. 22., 2020. 2. 21. 2020. 06. 27., 2022. 1. 23., 2022. 10. 7., 2023. 10. 25., 2024.05.22., 2024. 10. 24.>

② 각 대학 부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상기 제90조 제1항 내용 중 원주캠퍼스 학제개편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다음의 조항 문구를 적용함

인문예술대학에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과학기술대학에 기초과학연구소, 보건과학대학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2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개강좌 및 연구소 개설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0조의3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① 본 대학교에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의거 학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상대학프로그램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장 학칙개정절차

제90조의4 (학칙개정절차) 본 대학교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2.02.03., 2008.08.01>

제22장의2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제90조의 5(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동의)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구성원 동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4.]

제23장 부 칙

제91조 (시행일) 이 학칙은 서기 195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당시 제3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3학년 재학자 165학점 이상

제4학년 재학자 170학점 이상

제92조 (위임 규정)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93조 ①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구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는 본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와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본 개정 학칙 시행시 현재로 세브란스 간호학교 제 2,3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그 희망에 따라 본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해당 학년에 편입한다.

② 본 개정 학칙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59년 5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3년 4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개정 학칙은 196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학칙은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개정 학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개정 학칙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변경 및 폐과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 ⑪ 본 개정 학칙은 196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⑫ 본 개정 학칙은 인가일(1969년 1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 ⑬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본 개정 학칙은 197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⑮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⑯ 본 개정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⑰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⑱ 본 개정 학칙은 197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⑲ 본 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와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61조의 규정은 197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1972학년도 이전의 입학생 및 의학계 학생에 대해서는 본 학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 ⑳ 이 학칙은 197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1)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3년 7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 (22) 이 개정 학칙은 197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3)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5)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6) 이 개정 학칙(제64조:졸업논문, 제101조:암센터 삭제)은 197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7) 이 개정 학칙은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8)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7년 10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 (29)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8년 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 (30) 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1979년 7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 (3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및 제62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6조, 제68조, 제71조)은 198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 제64조, 제106조)은 198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제16조, 제54조, 제62조를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5) 이 개정 학칙(제62조)은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6)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1983.12.30) 부칙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21조 제③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9) 이 개정 학칙(제29조 제2항)은 198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개정 학칙(제21조 ①②③항)은 198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2조, 95조)은 198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4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8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2항, 제51조 제5호)은 1986년 제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4) 이 개정 학칙(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95조 제1항)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50조 제1항, 제95조 제1항)은 198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 학칙(제82조, 제92조)은 인가일(1987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47) 이 개정 학칙(제75조)은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③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친 자는 학칙 제3조,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9) 이 개정 학칙(제3조, 제5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②항, 제23조 ①항, 제30조, 제40조,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①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93조)은 1988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의학과, 치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3조, 제17조 ①항, 제19조 ②항, 제21조 ①항, 제23조 ①항, 제52조, 제53조 ①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89조, 제90조 ①항)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0조)은 198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 ①)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51조 ③항)은 1990년 5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③항의 변경 규정은 19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조 제 ①항)은 199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은 199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8조 ①항, 제90조 ①항)은 199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제3조, 제3조의 별표 I, 제50조의 별표 II)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도서관학과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1991학년도부터 도서관학과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학과 명칭 변경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의 요업공학과 학생은 세라믹공학과 학생으로, 의용공학과 학생은 의용전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5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90조)은 199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13조)은 199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1)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 1,2,3,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2) (입학 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6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조, 제3조의 별표 I, 제77조, 제90조 1항)은 199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50조 제1항 별표II의 변경된 수여학위명(환경과학과, 의용전자공학과)은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6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1조 ③항 삭제 후 ④항은 ③항으로 조정, 제35조 4호 변경, 제87조 용인.광주병원 삼입)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2조 특허법무대학원 신설, 제3조 별표 I 산업시스템공학과.원주 간호학과 신설 및 식품생물공학과.생물자원공학과로 명칭 변경, 제11조, 제13조 1항, 제18조, 제20조, 제77조 섭외부총장 삼입, 제88조 사회교육원 신설)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4학년도부터 식품공학과 학생은 식품생물공학과 학생으로, 낙농학과 학생은 생물자원공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43조 ④항 신설, 현 ④항은 ⑤항으로 조정, 제55조 ①항, 제56조 ①항 변경, 제77조 연세전산원장 삼입, 제89조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신호처리연구센터 신설, 제90조 건축과학기술연구소,신장질환연구소,시기능개발연구소,근육병체활연구소,기초의학연구소 신설, 제21장 공개강좌 제90조의 2 ①,②항 신설, 제21장 부칙을 제 22장으로 조정)은 199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6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제37조 중 교련 삭제, 제77조 섭외부총장을 대외부총장으로 변경)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995년 3월 1일부터 전산과학과 학생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 사회사업학과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의생활학과 학생은 의류환경학과 학생으로, 주생활학과 학생은 주거환경학과 학생으로, 원주 생물학과 학생은 생명과학과 학생으로, 산업보건학과 학생은 산업환경학과 학생으로 각각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6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및 기계·설계·산업공학부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신과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전파공학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및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중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6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1. 1996년 3월 1일부터 이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

한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2. 1996년 3월 1일부터 보건과학대학 환경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보건과학대학 환경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7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7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4조②항, 제23조, 제38조, 제40조, 제43조②항, 제48조, 제51조 2·3·4호는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72)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1항은 '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1997년 3월 1일부터 문과대학 인문학부는 인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세라믹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과와 사회체육과는 체육계열로, 원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문리대학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 경법대학 경법학부,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로 변경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1997년 3월1일부터 공과대학 식품생물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수여학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원주 보건과학대학 산업환경학과와 수여학위명을 1996학년도 제2학기부터 보건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한다.

(7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인가일(1997.7.30)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이과대학 지질학과 및 지질학전공 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및 지구시스템과학전공 과정에 각각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7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90조의 3 신설)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7조의2, 제43조, 제48조는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43조 제4항은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7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3조 제4항, 제77조)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7) (시행일) 이 개정 학칙(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의2)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⑤항, 제23조 ①항,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①항, 제43조 ①항, 제47조, 제51조 2호,3호)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제40조, 제77조, 제86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7조의2, 제43조는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86조, 제89조)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의 공학대학원 명칭변경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신설인가된 연합신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90조의2)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5조, 제89조, 제90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4조, 제8조의2,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1조, 제71조, 제74조, 제89조, 제90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51조 제7호 신설)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86)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4조, 제5조, 제20조, 제30조, 제32조, 제40조의2, 제43조, 제48조, 제52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별표 I)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재학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공학 전공내의 건축학(설계)과정에 재학 중인 자의 재학연한은 이 학칙에 의하여 15학기로 본다.

(8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의2, 제86조, 제88조의3, 제89조, 제90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2005학년도 입학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1)(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 제51조, 제86조, 제88조의2, 제89조, 제90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언더우드국제학부는 2006학년도 신입생을 최초로 선발한다.

(90)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10조, 제75조의2, 별표I과 별표II의 컴퓨터·정보 공학부 소속 전공 순서 변경 건)는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모집단위 변경)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의 모집단위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9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0조에서 입학정원의 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도록 함, 제86조에서 보건진료소를 건강센터로 직제명을 변경하고 생활관 및 방사선안전관리센터를 추가, 제86조의 2를 신설하여 대학대학원 소속 부속기관(경영대학원 부속 상담경영원, 생활과학대학 부속 알렌관, 영상대학원 부속 영상제작센터, 연합신학대학원 부속 기독교상담센터)을 명시, 제87조에서 인천세브란스병원을 삭제하고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을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으로 직제명을 조정, 제88조의2에서 생활관을 삭제,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직장예비군연대를 추가, 제89조에 병원경영연구소를 의료복지연구소로 직제명 변경, 제90조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자연구소, 관절경·관절연구소를 추가, 가정간호·호스피스연구소를 간호정책연구소에 흡수 통합)은 2005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93)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II,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 제51조, 제86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4)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별표I, 별표II의 정원감축 및 모집단위 변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5) (시행일)이 개정학칙(제23조 제1항, 제47조)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9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90조의2 제2항 개정, 제40조의2 제2항, 제59조, 제19장 삭제, 제44조의2항, 제19장의3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0조 제4항, 제61항 삭제, 제65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98)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I,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90조 제1항)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99)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 II)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100)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 각종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101)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6항, 제38조, 제43조 제5항과 제7항, 제48조 제1항과 제2항, 제51조 제7호, 제77조)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0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9조 제2항, 제11조, 제90조의 4)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77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5)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51조 제8호)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06)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07) 이 개정학칙(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0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109) 이 개정학칙(제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1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1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0) 이 개정학칙은(제2조,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38조,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의한 약학대학의 설립일은 2011년 2월 1일로 하되 학생모집, 교수채용 등 대학 설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는 약학대학설립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제38조에 의한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수료학점 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학년부터 적용한다.
- (111) 이 개정학칙은(제89조 제1항과 제2항, 제90조 제1항)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12)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 별표2)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13) 이 개정학칙(제4조 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52조, 제77조, 제88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88조의6 내지 제88조의11, 제89조 제1항)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14)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115) 이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116)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의 별표1과 별표2, 제10조, 제30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17) 이 개정학칙(제88조의3 제1항, 제90조의4)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118)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1 테크노아트학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9) 이 개정학칙 제3조 제2항 별표1 입학정원(의예과 및 치의예과 증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전임강사 명칭 폐지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0)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거환경학과와 실내건축학과로의 학과명 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 현재 주거환경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실내건축학과 학생으로 본다.

(121) 제2조 중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한다.(교육과학기술부 공문 대학원제도과-1927, 2012. 5. 8.)

(12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 제4항 신설, 제44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48조 제3항 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7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4조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I 과 별표II는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4)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조 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항 신설 및 제4조 제2항, 제38조, 별표 I 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5) 이 개정학칙(제19장의 3 전면개정, 별표I의1을 별표I의2로 번호변경 후 개정, 별표II의2 신설)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6) 이 개정학칙(제30조 제5항 및 제67조의2 신설)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7)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전공명칭 변경건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

(1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4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129)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4조 개정, 제40조 제4항 신설, 기존 제4항 및 제5항 항번호 변경, 제6항 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30)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3조의2 신설)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I · 별표II,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제2항) 중 서울캠퍼스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원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모집단위 독립 및 글로벌엘리트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원주캠퍼스 보건과학과(야간)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디지털아트전공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졸업생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가. 학사에 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나. 소속변경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다.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호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라.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마. 원주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과학과(야간)"을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1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정보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정보공학부에서 산업공학과 및 컴퓨터·산업공학부로의 명칭변경건과 스포츠레저학과 및 체육학사에서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및 스포츠산업학사로의 명칭변경건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5조 제6항 변경, 제10장 장명 변경 및 제57조의2 신설,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13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6년 3월 4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I 변경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 중 글로벌인재학부 전공명 및 학위명 변경·신설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문화·통상 전공은 2015, 2016학년도 입학생만 적용한다.

(135)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I 중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사회과학부 및 융합과학학부 학위명 신설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30조 제4항 및 제89조 제1항, 제2항 개정사항은 2016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어언문학과 육전공 및 학위명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한국어언문학과육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1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의공학부 의료시스템전공 및 Bio융합전공을 의공학부 의료시스템공학전공 및 바이오융합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2017년 3월 1일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하고, 모집단위 및 학부로서의 응용과학부를 폐지하고 모집단위 및 학과명을 폐지정학과로 변경하는 것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토목·환경공학전공에서 건설환경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90조 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

(13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4조 제2항 신설, 제14조의 2 신설, 제18조 삭제)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0)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부칙 제121호에 따라 법과대학이 폐지되는 2018학년도 이후에도 종전의 법과대학에 재적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 등 학사관리는 2018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다.

(14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에서 법과대학 삭제, 별표II 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에서 성악과 입학정원 1명 감축 및 관현악과 입학정원 1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한국문화전공을 문화미디어전공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학년도 신입생까지 한국문화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전공 선택을 하지 않은 재학생도 문화미디어전공을 제1전공으로 할 수 있다.

4. 서울캠퍼스 의예과 입학정원 110명 중 33명은 정원내 학사편입으로 선발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2)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77조 제1항 미래전략실장 반영 및 기획실장 명칭변경)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43) 1. (시행일) 이 학칙개정(제4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2016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신설학칙(제40조의4)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개정 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4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3조 제2항 별표 I 및 별표 II에서 글로벌인재대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학칙 개정일 기준 글로벌인재대학 재적생은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소속 전공으로 졸업함).
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4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중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학부 졸업신청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제51조 제9호 개정, 제54조의2 신설)은 2019년 2월 졸업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2019학년도 신입생은 신설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2015 ~ 2018학년도 입학생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4. 기타 자구수정(제35조 제3호 및 제51조 제7호 개정)은 2019.01.28.(총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
- (146)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0조 제1항 변경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별표I, 별표II 변경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4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19조 제2항 삭제, 제89조 및 제90조 개정은 2019년 0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I 응용통계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9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 원주캠퍼스 학사구조 전면 개편(제2조, 제3조 1항, 제3조 2항의 별표I, 별표I의2, 별표II, 별표II의2, 제23조 제1항~제2항, 제43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88조의5 제1항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4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51조제8호, 제77조제1항, 별표I의2)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4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5조 제2항 신설)은 2019.10.23.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88조의4 개정, 제88조의5 내지 제88조의 11 삭제, 별표I, 별표I의2, 별표II, 별표II의2 개정은 2021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5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 (제38조 약학대학 졸업학점 3학점 상향)은 2020학년도 신입생 (2018학번)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조의2 제4항 신설, 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2.21.부터 적용한다.
- (1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항, 제51조 제1호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152) 1.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신설된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바이오생활공학전공·응용정보공학전공은 2015학번 ~ 2018학번 재학생으로서 제1전공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글로벌인재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전공 선택을 허용할 수 있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0.06.27.부터 적용한다.
- (1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7조 제1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6.>

(154) 1. (시행일) 재해·재난의 상황에서 휴학연한 관련한 제30조 제6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비상한 상황에서의 초과강의 수강에 관한 제43조 제8항의 신설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특별학생의 정의에 관한 제55조 제1항의 개정은 2020학년도 하계 계절제 수업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의2 삭제,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2호, 제4호 삭제, 제37조의2 개정, 제40조 표제 및 제1항, 제3항, 제6항, 제40조의4 제3항 개정, 제40조의5 신설,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항, 제44조제2항 개정, 제45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제46조, 제47조, 제54조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 및 별표II의 미래캠퍼스 학사단위 개편은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연구기구 신설 및 폐소에 관한 제89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의 개정은 2020.1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1. 28.>

(155) 1. (적용례)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제2항 중 별표I, II, 제23조 제1항)은 2021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경대학원으로 명칭변경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30.>

(156) 1. (시행일) 인공지능융합대학 신설(제2조), 컴퓨팅계열 신설 등(제3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정원조정 등(제3조 제2항 별표I, II 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개정 학칙(제30조 제2항 개정, 제35조 제7호 신설, 제43조 제7항 삭제)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3.>

(15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I, II의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4조, 제14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50조, 제51조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 학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4. (시행일) 제5조 제6항 신설 및 제51조 제9호 신설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신설 특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2년 3월 1일부터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재적 학생으로 소속 대학을 변경한다.

부 칙 <2022. 1. 23.>

- (158) 1. 이 개정 학칙 제3조 제2항 별표 I, II의 개정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학칙(제5조 제5항 및 제6항,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2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5. 3.>

- (15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보건환경대학원의 명칭 변경)은 2022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2조, 제3조 별표1, 별표2 원주간호대학 신설)은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현재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소속 학생은 원주간호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3조 별표1, 별표2,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 변경 및 소속변경)은 2023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하며,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소속 학생은 인공지능융합대학으로 소속대학을 변경한다.
 4.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재적생에 대한 특례) 글로벌융합공학부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융합공학부로 입학한 종전 재적생의 학부와 전공 명칭, 학위명은 졸업 시까지 유지한다.
 5. (2022학년도 이전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 재적생의 재입학 시 소속 및 전공에 대한 특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로 한다.

부 칙 <2022. 10. 11.>

- (16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는 2022년 9월 1일자로 시행하며, 제3조 별표 I, II의 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77조 제2항)은 해당 직제명칭 변경일(2022.3.1.)로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3항, 제90조 제1항)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2. 2.>

- (16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의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와 생활과학대학 통합디자인학과로의 학과명칭 변경과 별표 I-2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입학정원 확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9장의 4)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6. 07.>

- (16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8조의2, 제67조 제2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5.>

- (16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과 별표 I, II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75조 제2항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날(2022.12.22.)로부터 소급적용한다.
3.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3.15.>

- (164)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7조의2 제3항 및 제48조 제4항 신설)은 2024.03.01.부터 시행한다. 단, 제48조 제4항 신설 이전에 시행한 “유급” 조치도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I, II, 제20조의2, 글로벌케이아트학부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22.>

- (16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89조 제2항, 제89조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05.>

- (166)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별표 I, II, 제4조 제2항, 제43조제1항 및 2항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4.>

- (167) 1. 이 개정 학칙(제8조 제4항 신설, 제9조 제4항 개정, 제17조 제4항 내지 제6항 삭제, 제23조 제1항 개정, 제35조 제11호 신설,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제40조 제6항 개정, 제41조 제4항 신설, 제52조 개정, 제89조 제2항 개정, 제90조 제1항 개정)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학칙(제40조 제1항 제4호 신설)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학칙은(제22장의2, 제22장의2 제90조의 5)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대학	모집단위 /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문과대학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45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2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73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30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33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30	
		사학과	사학과	45	
		철학과	철학과	35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30	
	심리학과	심리학과	37		
소계				390	
상경대학	상경계열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124	70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41	
	소계				235 ¹⁾
경영대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경영학과	274	
	소계				274
이과대학	이학계열	수학과	수학과	37	
		물리학과	물리학과	33	
		화학과	화학과	45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32	
		천문우주학과	천문우주학과	28	
		대기과학과	대기과학과	28	
	소계				203
공과대학	공학계열	화공생명공학부	화공생명공학전공	85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87	
		건축공학과	건축학(5년제)	38	
			건축공학(4년제)	37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35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75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21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02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38	
	소계				718

대학	모집단위 /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생명시스템대학	생명시스템계열	생명과학부	시스템생물학과	19	20
			생화학과	17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54	
	소계			110 ²⁾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팅계열	첨단컴퓨팅학부	컴퓨터과학과	149 ³⁾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시스템학과		
		첨단융합공학부	IT융합공학전공	55 ⁴⁾	
	지능형반도체전공				
	소계			204	
신과대학	신학계열	신학과	신학과	47	
	소계			47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81	
		행정학과	행정학과	79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27	
		사회학과	사회학과	39	
		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14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홍보영상학과	44	
		소계			284
	음악대학	예·체능계열	교회음악과	교회음악과	17
성악과			성악과	24	
피아노과			피아노과	20	
관현악과			관현악과	40	
작곡과			작곡과	19	
소계			120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계열	의류환경학과	의류환경학과	27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26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26	
		아동 가족학과	아동 가족학과	27	
		통합디자인학과	통합디자인학과	26	
	소계			132	
교육과학대학	교육과학계열	교육학부	교육학전공	54	
	예·체능계열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46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43	
	소계			143	
의과대학	의·치·간 계열	의예과※	의예과	110	
			의학과	[110]	
	소계			110[110]	
치과대학	의·치·간 계열	치의예과※	치의예과	60	
			치의학과	[60]	
	소계			60[60]	

대학	모집단위 /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명	입학정원
간호대학	의·치·간 계열	간호학과	간호학과	73
			간호학과(야간특별과정)	{80}
	소계			73{80}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계열	언더우드학부	비교문학과문화전공	164
			경제학전공	
			국제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생명과학공학전공	
	융합인문사회 계열 (HASS계열)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아시아학전공	168
			문화디자인경영전공	
			정보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창의기술경영전공	
			사회정의리더십전공	
			계량위험관리전공	
			과학기술정책전공	
			지속개발협력전공	
	융합과학공학 계열(ISE계열)	융합과학공학부	나노과학공학전공	80
			에너지환경융합전공	
바이오융합전공				
소계			412	
약학대학	약학계열	약학과	약학과	30
	소계			30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국제통상전공	10
			문화미디어전공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바이오생활공학전공	
			응용정보공학전공	
		글로벌기초교육학부		-
소계			10	
서울캠퍼스 합계				3,555 {80}{170}

- 1) 상경계열 신입학생은 2학년 이후 경제학전공과 응용통계학과로 전공 100% 자율선택 또는 각 학과 정원(경제학전공(177명), 응용통계학과(58명))의 150% 이상 범위내 전공선택
- 2) 생명과학부 신입학생은 2학년 이후 시스템생물학과와 생화학부로 전공 100% 자율선택 또는 각 학과 정원[시스템생물학과(29명), 생화학부(27명)]의 150% 이상 범위내 전공선택
- 3) 2025학년도 첨단분야로 신설한 정원(인공지능시스템학과 25명)이 포함. 이에 첨단분야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비첨단분야로 정원이동 등 불가. 인공지능학과 정원 58명 중 24명은 일반반 입학정원을 활용하고, 2024학년도 첨단분야 정원으로 증원된 인공지능학과 입학정원 24명은 비첨단분야로 정원조정 불가
- 4) 2025학년도 첨단분야로 신설한 정원(지능형반도체전공 35명)포함. 이에 비첨단분야로 정원이동 등 불가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부 · 학과 · 전공		입학정원
글로벌 창의융합대학	인문사회	자율융합계열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학심화전공	A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심화전공	
				역사문화학전공 글로벌한국학심화전공	
				철학전공 철학심화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심화전공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심화전공	
				글로벌행정학전공 글로벌행정학심화전공	
				국제관계학전공 국제관계학심화전공	
	인문사회	동아시아국제 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Division of East Asian Studies(DEA))	East Asian Politics and Economy	46 (이.공학 계열은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자연과학 · 공학				
자연과학	디자인예술학 부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산업디자인학심화전공	55	
			시각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심화전공		
			디지털아트학전공 디지털아트학심화전공		
소계					101
과학기술 융합대학	공학	자율융합계열	환경에너지공학부	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심화전공	B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친환경에너지공학심화전공	
	자연과학		물리및공학물리학전공 물리및공학물리학심화전공		
			화학및의화학전공 화학및의화학심화전공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기술학전공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부 · 학과 · 전공		입학정원
				(심화)생명과학전공 (심화)바이오산업학전공	
			패키징및물류학전공 패키징및물류학심화전공		
	공학	AI반도체학부	AI반도체학부	AI반도체학전공 AI반도체학심화전공	50
	소계				50
소프트웨어 디지털헬스케어융 합대학	공학	소프트웨어학 부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소프트웨어심화전공	120
	자연과학	데이터사이언스 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학심화전공	40
	공학	디지털헬스케어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디지털헬스케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심화전공	50
	공학	자율융합계열	의공학부	의공학전공 바이오공학전공	C
	인문사회		보건행정학부	보건행정학전공 보건행정학심화전공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44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34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33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33
		치위생학과	치위생학과		29
		AI보건정보관리학과	AI보건정보관리학과		30
	자연과학		보건과학부 (특별학사학위과정)	분자진단과학전공 재활보건학전공 과학수사학전공 의료경영정보관리전공 헬스케어빅데이터전공	{80}
소계				413{80}	
글로벌 엘리트학부	인문사회	글로벌엘리트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문화산업관리전공 글로벌산업경영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구강보건학전공 의료영상및방사선과학전공 재활치료학전공 K-Arts전공	5
	소계				5
글로벌케이아트학	예체능계열	글로벌이아트	글로벌케이아트학부	영화학전공	-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부 · 학과 · 전공		입학정원
부		학부		실용음악학전공 연극학전공 실용무용학전공	
	소계				-
원주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의예과		100
	의학		의학과		[100]
	소계				100[100]
원주간호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과		50
			간호학과(야간특별과정)		{80}
	소계				50 {80}
자율융합계열(A+B+C) 계					697
미래캠퍼스 합계					1,416
					{160}
					[100]

- * AI반도체학부 정원 50명 중 15명은 일반편입학정원을 활용함
- * 2024학년도 첨단분야 정원으로 증원된 AI반도체학부 입학정원 35명, AI보건의정보관리학과 30명, 데이터사이언스학부 10명은 비첨단분야로 정원조정 불가함
- * 글로벌케이아트학부 신설

별표 | 의2.

계약학과 정원

대학	학과	전공	입학 정원	설치근거	입학 유형
공과대학	시스템반도체공학과		{100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신입학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30명}		신입학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융합공학전공	{261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편입학
		응용전기전자융합공학전공			
		반도체인프라 및 환경융합공학전공			

학과별 수여 학위 종별표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		학위명
문과대학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사
		노어노문학과		문학사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문학사
		철학과		문학사
		문헌정보학과		문학사
		심리학과		문학사
상경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응용통계학과		통계학사
경영대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경영학사
이과대학	이학계열	수학과		이학사
		물리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지구시스템과학과		이학사
		천문우주학과		이학사
		대기과학과		이학사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화공생명공학전공		공학사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공학사
	건축·도시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5년제)	건축학사
			건축공학(4년제)	공학사
		도시공학전공		공학사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공학사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공학사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공학사
	컴퓨터·산업공학부	산업공학전공		공학사
	글로벌융합공학부	IT융합공학전공		공학사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		학위명
생명시스템대학	생명시스템계열	시스템생물학과		이학사
		생화학과		이학사
		생명공학과		공학사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팅계열	첨단컴퓨팅학부	컴퓨터과학전공	공학사
			인공지능학과	공학사
			인공지능시스템학과	공학사
		첨단융합공학부	IT융합공학전공	공학사
			지능형만도체전공	공학사
신과대학	신학계열	신학과		신학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사회학과		문학사
		문화인류학과		문학사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홍보영상학과		언론학사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음악학사
		성악과		음악학사
		피아노과		음악학사
		관현악과		음악학사
		작곡과		음악학사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계열	의류환경학과		이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실내건축학과		이학사
		아동 가족학과		이학사
		통합디자인학과		이학사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	교육학전공		문학사
		체육교육학과		체육학사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사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의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	학위명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비교문화학과문화전공	문학사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국제학전공	정치학사
		정치외교학전공	정치학사
		생명과학공학전공	이학사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아시아학전공	문학사
		문화디자인경영전공	이학사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	이학사
		창의기술경영전공	이학사
		사회정의리더십전공	정치학사
		계량위험관리전공	경제학사
		과학기술정책전공	행정학사
		지속개발협력전공	국제학사
		나노과학공학전공	공학사
	융합과학공학부	에너지환경융합전공	공학사
		바이오융합전공	공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국제통상전공	국제통상학사
		문화미디어전공	문학사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문학사
		바이오생활공학전공	공학사
		응용정보공학전공	공학사
글로벌창의융합 대학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심화전공	문학사
		영어영문학전공	문학사
		영어영문학심화전공	문학사
		역사문화학전공	문학사
		글로벌한국학심화전공	문학사
		철학전공	문학사
		철학심화전공	문학사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경영학심화전공	경영학사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	학위명
글로벌창의융합 대학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경제학사
		경제학심화전공	경제학사
		글로벌행정학전공	행정학사
		글로벌행정학심화전공	행정학사
		국제관계학전공	정치학사
		국제관계학심화전공	정치학사
	동아시아국제학부 (Division of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Politics and Economy	Bachelor of Arts in International Studies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이학사
		산업디자인학심화전공	이학사
		시각디자인학전공	디자인학사
		시각디자인심화전공	디자인학사
		디지털아트학전공	예술이학사
		디지털아트학심화전공	예술이학사
과학기술융합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	환경공학전공	공학사
		환경공학심화전공	공학사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공학사
		친환경에너지공학심화전공	공학사
	물리및공학물리학전공		이학사
	물리및공학물리학심화전공		이학사
	화학및의화학전공		이학사
	화학및의화학심화전공		이학사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기술학전공	이학사
		(심화)생명과학전공	이학사
		(심화)바이오산업학전공	이학사
	패키징및물류학전공		이학사
	패키징및물류학심화전공		이학사
	AI반도체학부	AI반도체학전공	공학사
		AI반도체학심화전공	공학사

대학	학부 · 계열	학과 · 전공	학위명
소프트웨어디지털 헬스케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소프트웨어심화전공	공학사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전공	이학사
		데이터사이언스학심화전공	이학사
	디지털헬스케어학부	디지털헬스케어전공	공학사
		디지털헬스케어심화전공	공학사
	의공학부	의공학전공	공학사
		바이오공학전공	공학사
소프트웨어디지털 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보건행정학전공	보건학사
		보건행정학심화전공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사
		방사선학과	방사선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사
		AI보건정보관리학과	보건학사
		분자진단과학전공	보건학사
		재활보건학전공	보건학사
글로벌엘리트학부	보건과학부 (특별학사학위과정)	과학수사학전공	이학사
		의료경영정보관리전공	의료경영정보학사
		헬스케어빅데이터전공	이학사
		문화산업관리전공	문화산업관리학사
		글로벌산업경영전공	글로벌산업경영학사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미디어디자인학사
		구강보건학전공	구강보건학사
		의료영상및방사선과학전공	이학사
글로벌케이아트학 부		재활치료학전공	보건학사
		K-Arts전공	예술학사
		영화학 전공	예술학사
		실용음악학 전공	예술학사
		연극학전공	예술학사
		실용무용학전공	예술학사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간호학사
원주간호대학		간호학과(야간특별과정)	간호학사
		연계전공	연계학사

별표 II 의2.

계약학과 수여학위

대학	전공	학위명
공과대학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공학사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공학사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융합공학전공	공학사
	응용전기전자융합공학전공	공학사
	반도체인프라및환경융합공학전공	공학사

학사에 관한 내규

제정일: 1990.08.08

개정일: 2024.07.28

담당부서: 교무처 - 학사지원팀(02-2123-208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범위) ① 서울캠퍼스와 미래캠퍼스에 모두 적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간호대학은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 내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내규에서 ‘교무처장’, ‘교무처’ 및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미래캠퍼스에 대해서는 각각 ‘원주교무처장’, ‘원주교무처’ 및 ‘원주교무처 교무부’로 본다.

[본조신설 2024. 7. 28.]

제2장 학기등록

제2조 (학기등록) 본 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매학기 초에 설정한 기간 안에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16.10.05.>

제3장 수강신청

제3조 (신청요령) ① 학생은 해당전공 소속 학과장(학부대학 학생은 담당 Academic Advisor)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수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교양과 전공과목별로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③ 수강신청 내용은 본인 책임하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④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⑤ 1회 또는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학사상담을 받은 후 소정양식인 학사경고자 상담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8.5.14>

제3조의2 (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9.6.14.]

제3조의3 (미수강자) ①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 종료시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기 개시 14일 이내 일반휴학자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대상자 중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생과 휴학연한이 만료된 학생은 제적한다.

[본조신설 2021.11.01.]

제3조의4 (수업계획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업계획서를 등재하여 수강신청 전 학생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과목별 수업목표
2. 성적 평가의 방법
3. 수업방법
4. 주별 수업계획

[본조신설 2021.11.01.]

제4조 (신청학점) ① 재학 중인 학생은 대학 및 모집계열에 따라 매학기 18 또는 19학점까지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을 이수하는 3, 4학년 학생과 IT융합공학전공 및 지능형반도체전공, 약학대학생은 매학기 24학점(대학원과목 포함)을 수강할 수 있고, 미래캠퍼스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과목들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16., 2023. 2. 4., 2024. 7. 28.>

1. 채플
 2. 사회봉사과목
 3. RA리더십 및 RC자기주도활동
 4. 삭제 <2023. 2. 4.>
 5.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지정하는 2학점 이내의 군사학 과목 <개정 2011.1.20., 2014.12.29., 2017.4.26., 2019 6.14., 2023.2.4.>
 6. UT세미나 <신설 2019.11.18.>
 7. 진로지도세미나 및 진로계획세미나 <신설 2023.2.4.>
- ② 의, 치의예과 학생은 각 학과 내규에 따른다.
- ③ 삭제 <2021.4.8.>
- ④ 입대휴학 중인 학생은 지정된 원격강좌 가운데 학기당 6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기당 수강학점은 계절학기 수강학점을 포함한다. <항 신설 2022.6.21>

제4조2 (온라인강좌 수강) ①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과목(군강좌 포함)은 재적 기간 중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9학점, 총 32학점 이내(단, 군강좌는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8.27., 2021.11.01.>

- ② 온라인강좌로 운영되는 군강좌 과목은 P/NP방식으로 평가하며 기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없다. <신설 2019.11.18.>
- ③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제 1항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8.27.>

제5조 (기초교양과목 우선) 1학년 학생은 교양기초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9.6.14.>

제6조 (제2외국어) <삭제>

제7조 (능력별 학점취득 및 초과신청) ① 직직전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 초과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연계과정 이수자, IT융합 공학전공 및 지능형반도체전공, 약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 및 의예·치의예과 학생은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0.1.21., 2011.1.20., 2023.2.4., 2024.7.28.>

②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이 미달일 경우 학점초과신청원 제출자에 한하여 최대수강신청학점에 1학점 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0.1.21., 2019.6.14., 2023.2.4.>

④ 학점 초과신청 특례는 학생에게 유리한 한 가지 조건만 적용한다. <신설 2024.7.28.>

제8조 (우등생 제한) ① 우등대상은 15학점 이상을 신청한 학생에 한한다. 다만, 인문예술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1학년 학생은 1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8.27.>

② 제1항의 수강신청 학점을 산정할 때 'S/U' 방식 평가 교과목의 학점은 제외한다. <신설 2020.8.27.>

제4장 이수과목

제9조 (교양과목) ① 교양과목은 교양기초, 대학교양, RC교육 및 자율선택으로 구분하고 지정된 학년 학기에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1.21., 2019.06.14., 2021.11.01.>

②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양영역에서 교양기초 8학점 및 대학교양 8개 영역에서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집단위 및 학생 소속별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요건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9.6.14., 2021.11.1.>

②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양영역에서 교양기초 8학점 및 대학교양 8개 영역에서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집단위 및 학생 소속별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요건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4.12.29., 2019.6.14., 2019.11.18., 2020.8.27., 2021.11.1.>

③ <삭제 2010.1.21>

④ 1학년 중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 교과목에 대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과목에 대한 수강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특별시험의 운영 및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총장이 매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1., 2019.11.18., 2020.8.27.>

⑤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등의 교양 영역 및 이수요건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제10조 (교양기초) 교양기초 교과목은 채플, 글쓰기, 기독교의 이해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채플 4학기 2학점(3학년 편입생은 2학기 1학점), 글쓰기 3학점, 및 기독교의 이해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4.12.29., 2019.6.14., 2019.11.18., 2020.8.27.>

제11조 (대학교양) ① 대학교양 교과목은 문학과예술, 인간과역사, 언어와표현, 가치와윤리, 국가와사회, 지역과세계, 논리와수리, 자연과우주, 생명과환경, 정보와기술, 체육과건강의 11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체육과건강 영역을 제외한 10개 영역 중 정보와기술 영역을 포함한 8영역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7.4.26., 2019.6.14., 2021.11.1.>

② 학과별로 필요한 경우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학교양영역에서 특정한 영역 또는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9.6.14.>

③ 학과별로 필요한 경우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각 대학이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대학교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공-교양 교차인정은 학생당 2개 영역(2과목, 6학점)에 한하며, 글로벌인재대학 또는 체육특기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교무처장 및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5.8.6., 2017.8.24., 2019.6.14., 2020.8.27., 2021.11.1., 2023.5.20.>

④ 위 ①항의 대학교양 영역과목 이외에 기숙형교육(Residential Education)에서 필수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0., 개정 2019.6.14.>

제12조 삭제 <2010.1.21>

제13조 삭제 <2010.1.21>

제14조 삭제 <2010.1.21>

제15조 (전공 교과목) 전공 이수학점은 단일전공 시 48학점 이상, 심화전공 시 60학점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2중·다중전공자의 전공학점은 각 36학점으로 하되, 외부기관 교육인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21.11.1.>

제15조의2 (전공 학점 인정) 타 대학 이수 학점 중 단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각 최소전공이수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01.]

제16조 (기타) ① 교양 및 전공과목 외에 교직과목 및 평생교육사과정을 둔다. <개정 2010.1.21>

② 계절제 수업과 2중전공 및 연계전공을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대학 소재지 캠퍼스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기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협동수업 등 학교밖 수업을 운영할 경우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6.14., 2019.11.18., 2024.7.28.>

③ <삭제 2020.8.27.>

④ 제11조 제4항의 기숙형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정된 기숙사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0.>

제16조의2 (학점대체)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교양과목의 학점대체에 관한 사항은 서울캠퍼스와 미래캠퍼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1.21., 2019.9.26., 2020.8.27.>

제5장 수강변경, 수업 및 철회

제17조 (확인 및 변경) ①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전공 학과장(학부대학 학생은 담당 Academic Advisor)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지도를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본인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수업편성) ① 교과과정 상 필요에 의하여 집중이수수업, 학교 밖 수업 등을 편성할 경우 교무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7.>

② 교무처장은 제1항의 내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제17조의3 (안전주의)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의무자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지정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수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② 체육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충분한 준비운동, 보호장비 착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7.>

제18조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해당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철회할 수는 없다. <개정 2019.6.14.>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 2010.1.21.>

④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 제2항에 의한 학점초과신청이나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2008학년도 이전에 철회한 과목은 재수강하여도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개정 2008.11.13.>

제6장 시험 · 성적평가

제19조 (시험) ① 모든 교과목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기말시험기간의 수업은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2020.8.27.>

② 시험방법은 필기, 구술, 실기, 과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③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반영방법은 강좌별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8.27.>

④ 교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신설 2019.11.18., 개정 2020.8.27.>

제20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의 방식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P/NP평가로 구분하며 학과·대학의 내규 및 세칙에 따라 정한다. 다만, 상대평가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9.6.14.>

21명 이상 수강강좌 :

A+ ㄱ

A0 ㄴ 35% 이내

A- ㄷ

B+ ㄱ

B0 ㄴ 35% 이내

B- ㄷ

20명 이하 수강강좌 :

A+ ㄱ

A0 ㄴ 40% 이내

A- ㄷ

B+ ㄱ

B0 ㄴ 50% 이내

B- ㄷ

- ②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다만, 체육특기자 입학생 중 운동부원(8학기까지) 및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과대학·치과대학·원주의과대학·성적불량 제적후 재입학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9.>

제20조의2 (교원 자녀 시험 및 성적평가 관리) ① 사전에 승인받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의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 ③ 교무처장은 제3조의2 및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6.14.]

제21조 (시험불응) ① 한 학기 두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중 그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 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21.11.01.>

- ② 시험불응신고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개정 2010.1.21. 2016.10.5., 2019.6.14.>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증빙서류

- ③ 시험불응원은 해당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개시 일주일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성적제출)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6일 이내에 학사포탈시스템에 성적을 입력·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5., 2020.8.27.>

② 삭제 <2016.10.5.>

- ③ 성적산출시 출석점수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성적 평가표 결석수란의 결석수가 강의실시시간의 1/3 이상일 때는 학칙 제44조 “출석의무”에 의거 성적이 ‘F’로 처리된다. <개정 2015.2.26.>

④ 삭제 <2016.10.5.>

제22조의3 (출석인정) ①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2020.8.27., 2021.11.1.>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장례일까지 1일
4. 본인 결혼 5일
5.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 ② 조기취업 및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한 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6.15., 개정 2020.8.27.>

③ 삭제 <2020.8.27.>

- ④ 감염병 또는 기타 신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어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 ⑤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8.27.>

- ⑥ 총장이 사전 승인한 교육목적과 부합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제22조의4 (휴강 및 보강)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담당교수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6.]

제23조 (성적확인) 제출된 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결과로 담당교수는 교수 보관용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1>

제24조 (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기말고사 종료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 ② 총장은 전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24조의2 (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의 신청은 제3조 제4항에 따른다.

- ②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8.27.>
- ③ 위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평점계산(평량평균)에서 제외한다.
- ④ 삭제 <2010.1.21>
- ⑤ 재수강의 범위와 재수강 시 성적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1>

제25조 (휴학자 및 자원퇴학자의 성적처리) ① (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까지 입대 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학기 2/3선 다음 날부터 입대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11.1.>

- ② (자원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자원퇴학한 학생의 경우에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원퇴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년 3월 1일 이후 자원퇴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징계받은자 및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27.>

-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와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27.>

제27조 (대학원 및 기타 교과목 성적처리) ① 대학원 개설 교과목의 성적은 평점환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학부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성적은 평점환산에 포함된다. <개정 2021.11.1.>

- ② 삭제 <2010.1.21.>

제28조 (계절제 수업 성적처리) ①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 환산총점 및 평량평균에 포함한다.

- ② 휴학자도 계절제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휴학자의 성적처리는 재학생의 성적처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휴학자가 계절제수업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개정 2017.6.15., 2019.6.14.>

제29조 (평량평균의 계산) ① 학칙 제45조에 의한 성적 평량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그러나 수강과목을 철회한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함) <개정 2010.1.21.>

- ② 석차는 산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석차를 산출할 때 평점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개정 2021.11.1.>
1. 평점합계가 높은 이
 2. 성적취득 교과목수가 많은 이

제30조 (학적부 정리) ①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최)우등생, 우수생, (최)우등졸업생 및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졸업의 요건

제31조 (등록학기 및 총 취득학점)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126학점 이상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1., 2011.1.20., 2014.2.12., 2021.4.8., 2021.11.1.>

1. 건축학(5년제)교육과정 : 5년(10학기)이상을 등록하고 160학점 이상 취득
2. 약학대학(2+4년제) : 156학점 이상
3. 약학대학(6년제) : 225학점
4. 일반편입학생 및 학사편입생(위탁교육생을 포함함)의 수학연한 및 취득학점은 따로 정함

제32조 (교과목 이수 의무) ①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을 대체 인정하는 경우 학과 내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4.12.29., 2019.6.14., 2019.11.18.>

- ② 단일전공자의 경우 최소 48학점 이상, 2중(재학 중 캠퍼스 내 복수전공)/다중전공자의 경우 36학점의 전공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기관인증 등 필요한 경우 학과(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학과별로 심화전공 이수요건을 별도로 지정하여 희망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 ③ 모든 학생은 자신의 종별 및 영역의 구별없이 3000 및 4000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의예·치의예과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0.2.28.>
- ④ 삭제 <2021.4.8.>
- ⑤ 복수전공을 승인 받은 자는 1전공과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을 승인받은 자가 단일전공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8.>
- ⑥ 졸업신청자 중 부전공 및 심화전공을 신청하였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부전공 및 심화전공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 미래캠퍼스의 심화전공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28.>

제33조 (채플) 채플에서 4개학기(학사편입, 군위탁생은 2학기) 이상 “P”(급)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 (미래캠퍼스 졸업인증)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 학생은 “미래캠퍼스졸업인증제 시행세칙”에 의한 졸업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0.8.27.>

제34조 (부전공) 부전공을 원하는 경우 부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언더우드국제대학의 부전공 요건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23.2.4.>

제34조의2 (마이크로전공) ① 마이크로전공의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 및 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을 포함함)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성적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등록금 반환

제35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접수기간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6.>

1. 질병휴학: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지정)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서와 건강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개정 2014.12.29., 2015.8.6., 2019.6.14.>
2. 임신·출산·육아: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가사: 별도 서류 없음 <개정 2010.1.21., 2012.11.29.>
4. 창업 : 휴학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공동창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창업지원단장,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장이 날인한 창업실적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 <개정 2021.11.1., 2023.12.21.>
5. 창업준비: 창업지원단장,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장이 날인한 창업계획서 및 창업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4.3.25.>

② 등록을 마친 후 학기 도중에 가사 등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출산,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말시험 시작 일주일 이전까지 휴학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987학년도 제2학기부터 개정 시행) <개정 2010.1.21., 2012.11.29., 2015.8.6., 2017.4.26.>

③ 신입생, 편입생, 학사편입생, 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 재입학생 등은 질병 또는 임신, 출산,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원주의과대학 간호학사 학위특별과정(야간)은 제외하며, 총장이 재난위기 상황으로 지정하는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2015.5.7., 2015.8.6., 2016.10.5., 2020.8.27.>

④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VSP) 기간 중에는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기초(당해학기 휴학신청 시작일로부터 학기수업일수 2/3선까지)에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에는 학칙 제30조(휴학기간)의 규정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3.25.>

⑦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의 허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36조 (입대휴학) ①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일이 학기 2/3선 이후인 경우에는 입영 일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2.4.>

③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1년이 초과되면 복학 불가함)

④ 입대휴학은 휴학 접수일과 변동일(입영일) 중 앞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휴학 처리한다. 다만 학기 2/3선 이후 입대휴학자는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 처리한다. <개정 2010.1.21>

제37조 (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입대휴학 후 복학신청 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 1/3선 이전 전역예정인 입대휴학자 중 잔여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7.>

1.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및 잔여휴가 확인서
2. 출석 서약서

제38조 (자원퇴학) ① 질병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퇴학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 요청된 학생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학생은 자원퇴학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11.1.]

제39조 (등록금 반환) ① 삭제

- ② 휴학자, 미수강 제적자 및 자원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관계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 2024. 7. 28.>

제9장 조기졸업(1984. 3. 1 신설)

제40조 (정의) 학칙 제4조2항의 “수업연한을 두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함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한 경우 소정의 수업연한인 8학기에 달하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제41조 (대상과 자격)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5학기 이수 이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 ② 조기졸업 대상자는 입학 후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 제51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이상(IT융합공학전공 및 지능형반도체전공 학생은 3.30이상)인 자라야 한다. 단, 대학원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대학원 교과목 및 P(급)/NP(낙), S(충족)/U(미흡) 평가 과목은 평량평균 환산 시 제외한다. <개정 2010.1.21., 2011.1.20., 2023.2.4., 2024.7. 28.>

- ③ 의학·치의학·건축학(5년제)교육과정 소속 학생 및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1.20., 2014.2.12.>

제10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42조 (학적부 정정) ①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정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한다.

1.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본증명서 <개정 2010.1.21>
2. 삭제 <2010.1.21>
3. 국적변경: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기타 국적 취득 또는 포기 사실증명서 <신설>

부 칙

- (1) 본 개정내규(전문 재정보 및 조문화)는 199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제39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에 한하여는 1992학년도 입학한 학생(편입생, 복수전공생 등 포함)부터 적용, 시행한다.
- (2) 본 개정내규(제3조 제①항, 제③항, 제17조 제②항)는 199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내규(제22조 제②항)는 199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내규(제3조 ④항, 제24조 2 전항)는 199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내규(제4조1항, 제7조1·3항, 제9조, 제15조, 제16조2항, 제20조2항, 제28조2항, 제31조1항, 제32조, 제40조, 제41조1·2항)는 199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②항은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 (6) 본 개정내규(제20조 제①항)는 '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 (7) 본 개정내규(제19조)는 '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8) 본 개정내규(제21조 ①항, 28조 ②항)는 '9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 ①항, 제20조 ②항, 제35조 ③항, 제41조 ②항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0)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①항, 제5조, 제6조 삭제, 제7조②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②항, 제18조①②항, 제24조의 2 ②④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①②항, 제38조)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1) 본 개정내규(제4조, 제7조, 제8조, 제16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조 ①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12) 본 개정내규(제33조 1)는 원주캠퍼스 2002학년도 신입생 및 200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13) 본 개정내규(제7조, 제9조, 제12조, 제27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개정내규(제4조①항, 제9조②항, 제15조, 제31조, 제32조)는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5) 본 개정내규(제25조의2)는 2002년 3월 1일 이후 자원 퇴학자부터 적용한다.
- (16) 이 개정내규(제3조 1항, 5항, 제4조 1항, 제7조 ①항, 제20조 2항, 제31조, 제35조 1항, 2항, 제37조, 제41조 2항)는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17) 이 개정내규 제28조 1항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8) 이 개정내규(제35조③항)는 2005-1학기부터 시행한다.
- (19) 이 개정내규(제3조⑤항, 제20조①항)는 2005-2학기부터 시행한다.
- (20) 이 개정내규(제4조①항, 제7조①②항, 제15조, 제16조②, 제18조①⑤항, 제20조①②, 제22조 2①항, 제31조, 제32조①②③항, 제34조, 제41조②③항, 제42조①항)는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 (21) 이 개정내규(제28조②항, 제41조②항)는 2007-1학기부터 시행한다.
- (22) 이 개정내규(제39조①항 삭제, ②항)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23) 이 개정내규(제35조⑤항 신설)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24) 이 개정내규(제4조③항, 16조③항, 제36조①항 및 ④항)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25) 이 개정내규(제18조 제3항 및 제5항)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26)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중 제3조 제5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4조의 2 제5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36조 제4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41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6조의 1, 제24조의 2 제4항, 제27조 제2항, 제3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시부터 적용한다.
- (2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2조 제3항 신설)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항, 제11조 제4항 신설, 제16조 제4항 신설, 제31조, 제41조 제2항 및 제3항)는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2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삭제, 제4호 신설)는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3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0조 제2항, 제22조의 2 제1항,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31)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31조, 제41조 제3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32)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3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3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4조 제3항, 제4조 제3항 제1호)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4)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5호 신설,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호)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3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2조의 1 제3항, 제22조의 3 신설)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3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5조 제3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3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1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3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의 1, 제35조, 제43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9)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11조, 제35조, 제37조)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4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2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제28조)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4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1조 제3항)는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4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항)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43) (시행일) ① 본 개정내규(제3조의 2 신설, 제4조 제1항, 제4조의 2 신설, 제20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② 개정내규(제5조,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1항, 제32조 제1항)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③ 개정내규(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8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개정일(2019.06.14.)부터 시행한다.
- (4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6조의1, 제33조의1)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5) (시행일) ① 본 개정내규(제4조 제1항 제6호 신설, 제4조의 2 제2항 신설, 제16조 제2항, 제

19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신설, 제32조 제1항)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내규(제9조 제2항 및 제4항, 제10조, 제31조)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③ 제4조의 2 제1항 신설은 그 시행을 유보하여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6) (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제4조제3항제5호 개정, 제4조의2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제8조, 제9조제2항, 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제10조, 제11조제3항 개정, 제16조의1 조번호 변경, 제5장 제목변경,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제19조 개정, 제22조의1 조번호 변경, 제22조의2 조번호 변경 및 개정, 제22조의3 조번호 변경, 제24조의2제2항, 제26조 제목 및 제2항 개정, 제33조의1 조번호 변경, 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개정)는 2020.08.28.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내규(제16조제3항 삭제)는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4. 8.>

(47) ① 이 개정 내규(제4조 제3항 삭제)는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내규(제31조 개정)는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내규(제32조 제4항 삭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

(48) ① 이 개정 내규(제3조의 3 및 제3조의 4 신설, 제4조의 2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개정, 제15조의 2 신설, 제21조 제1항, 제22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2항 개정, 제34조의 2 신설, 제35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38조 제1항 개정, 같은 조 제2항 신설 및 제39조 제2항 신설, 제39조 제2항 개정)는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내규(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9.>

(49) 이 개정 내규(제33조의3 신설)은 202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6.21.>

(50) 이 개정규정(제4조 제4항 신설)은 2022.6.2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4.>

(51) ①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 제5호,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41조 제2항)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단, 인공지능융합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소속 학생은 IT융합공학과 소속 학생과 동일하게 본다.

② 이 개정 내규(제4조제1항제7호, 제34조)는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이 내규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05. 20.>

(52) 이 개정내규(제11조제3항)은 2023.05.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1.>

(53) 이 개정 내규(제35조제1항제4호)는 개정일(2023.12.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6.>

(54) 이 개정 내규(제4조 제1항)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이 내규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도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4. 7. 28.>

(55) 이 개정 내규(제1조의2 신설, 제4조 제1항 본문 개정, 제7조 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16조제2항 개정, 제3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39조 제2항 개정, 제41조 제2항 개정)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1) 복수전공 시행세칙

제정일: 1989.03.01

개정일: 2023.02.04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복수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08.27.>

1.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2. 건축학(5년제), 음악대학 각 학과 <개정 2023. 2. 4.>
3.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내 각 학부 및 전공. 단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복수전공은 가능함
4.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5. 학칙 제88조의4에 의한 계약학과

②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종류 및 이수자격) ① 복수전공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캠퍼스내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으로 구분한다.

- ②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학칙 제51조에 의거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전공별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 ③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0.01.21>
- ④ 캠퍼스간 복수전공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개정 2019.09.26.>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서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4.>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제5조 (이수학점)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부(전공)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밖에 학부(전공) 또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시킬 수 있다.

제6조 (재학연한)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이수자는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8.27>

② 삭제 <2020.08.27>

③ 삭제 <2020.08.27>

④ 휴학연한은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8.27>

제7조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학칙 제50조에 따라 학사학위 증서를 복수전공 이수 제1전공 학사학위 증서와 같이 수여한다.

②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이수 중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제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제1전공의 학위만 부여한다. <신설 2020.08.27.>

③ 제2항의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이수 중단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신설 2020.08.27.>

제7조의2 (장학금 수혜 제한) 졸업예정자복수전공자는 장학금 지급규정 제8조제1항의 수업연한초과자 자격제한의 적용을 받는다.<신설 2020.8.27.>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198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제5조, 제6조)은 198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은 199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2조 ③항, 제3조 ③·④항, 제6조 ②·③항, 제7조)은 199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2조2항, 제3조1·2항, 제4조1항, 제5조1·2항, 제6조2항)은 1996학년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4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세칙(제2조 ②,③항, 제6조 ①,④항)은 1999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시행세칙(7조)은 2003년 3월 복수전공 이수자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①항, 제5조 ①항, 제6조 ①,④항)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세칙(제3조 ②,③항)은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제3조 제2항)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2)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3) 이 개정세칙(제3조 제3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① 이 개정시행세칙(제2조제1항, 제3조 항번호 변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0. 9. 1. 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제1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2019학번 적용자)부터 적용한다.

(15)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 학사편입 시행세칙

제정일: 1990.08.08

개정일: 2024.07.28

제1조 (신청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제2조 (학사편입 학과 또는 학부의 범위) 제1전공에 관계없이 어느 학과 또는 학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심사방법) 지원자에게는 필답고사, 서류평가 또는 면접 중 한 가지 또는 복수의 평가 방법을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

제4조 (이수학점) ① 학사편입학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필수로 5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1., 2020.08.27.>

②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과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④ 학사편입생은 캠퍼스내복수전공, 캠퍼스간복수전공, 졸업예정자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01.21>

⑤ 삭제 <2010.01.21>

제5조 (등록) 최소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6학기를 초과 등록할 수 없다.

제6조 (채플) 학사편입학자(타교출신자)는 최소 이수학기 4학기 중 2학기 이상 채플에 출석하여 급제(P)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4.>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198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6조)은 198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4조1·2항)은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4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시행세칙(제4조 ③항)은 2000년 3월 1일 이후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6) 이 시행세칙(제4조 ③·④항)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4조 제3항, 제4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8)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목 및 항번호 변경)은 2020.09.01.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 재입학 시행세칙

제정일: 1991.10.18

개정일: 2024.07.28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1조에 의한 재입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4.08.>

1. 학칙 제35조(제적)제1호 중 학력 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학칙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중 재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제3조 (허가 및 절차) ①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와 청원서, 서약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학적증명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21.4.8.>
- ③ <삭제 2010.01.21>
- ④ 재입학 허가는 서류심사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8.>
- ⑤ 재입학심의위원회는 학과 및 대학의 평가를 참조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05., 2010.01.21., 2008.10.28., 2024. 7. 28.>

제4조 (등록) ① 삭제 <2023. 2. 4.>

- ② 학기초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전에 이수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16학기 (편입생은 최대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08.10.28>

제5조 (학사경고 적용) 해당학기 성적(재입학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유효하며, 학력부실(성적불량)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개정 2010.01.21.>

제6조 (이수 요건) ① 재입학한 학생은 최초 입학 당시 지정된 졸업요건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적 후 재입학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입학 당시 지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소속 학과 학과장이 별도 이수요건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교양과정 이수요건의 변경은 학부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08.27.]

부 칙

- (1) 이 세칙(내규에서 세칙으로 재정비, 조문화 및 부분개정)은 199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1호, ②항 삭제)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제2조 및 제3조 ⑤항)은 1998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 (4) 이 개정세칙(제2조)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4호 신설)은 199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제2조 ①항 1호)은 2000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7) 이 개정시행세칙(제5조)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시행세칙(제2조①항 4호 신설)은 2000학년도 1학기 자원퇴학자부터 적용한다.
- (9) 이 개정세칙(제2조 3, 4항 및 3조④,⑤)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세칙(제2조 1항 및 3조 5항)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세칙(제3조 2항, 5항 및 4조 2항 신설)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세칙(제3조③항 삭제, 제3조⑤항, 제5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5항)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세칙(제3조 개정 및 제6조 신설)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8.>

(15) ① 이 개정 세칙(제2조 제1항 2호)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세칙(제3조 제2항)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3.>

(16)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제1항 삭제)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28.>

(17)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항 및 제5항)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부전공 시행세칙

제정일: 1977.03.01

개정일: 2024.07.28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전공제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 ①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을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부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로의 부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0.05., 2020.08.27., 2021.04.08.>

1.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개정 2016.10.05., 2020.08.27.>

2. 음악대학 및 체육계열 각 학과. 단 음악대학 학생의 소속 대학 내 부전공, 체육계열 학생의 체육계열 내 부전공은 가능함 <개정 2016.10.05., 2020.08.27.>

3.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내 각 학부 및 전공. 단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의 부전공은 가능함 <개정 2016.10.05., 2020.08.27.>

4.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개정 2016.10.05., 2020.08.27.>

5. 학칙 제88조의4에 의한 계약학과 <개정 2016.10.05., 2020.08.27.>

② 학과(전공)는 동일 학과(전공) 내에서 이수 요건을 달리하는 복수의 부전공 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생은 동일 학과(전공)에서 복수의 부전공 트랙을 선택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21.04.08.>

③ 학생은 2개 전공 이내로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4. 7. 28.>

제3조 (신청자격)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원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체능계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자격을 부여키 위해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각 학과 또는 전공은 부전공과목을 12학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으며, 예·체능학과 또는 전공의 경우 실기과목 이수 의무를 과할 수도 있다.
-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한다.
- ⑤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의 부전공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 및 학부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6.10.05., 2020.08.27.>

제5조 (실험실습비) <삭제 2016.10.05.>

제6조 (자격취득) ①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밟은 이로서 부전공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이는 졸업 신청시 부전공을 신청한다.

- ② 부전공의 이수사정은 부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197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7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칙 제40조를 적용한다.
- (2) 이 시행세칙은 개정된 날('79. 6. 21)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4조1·2·4항, 제6조1·2항)은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세칙(제4조②, ⑤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 제5항, 제5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제2조 및 제4조제5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 (7)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항 신설)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07.28.>

- (8)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항 신설)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소속변경 시행세칙

제정일: 1996.03.01

개정일: 2024.07.28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3조 ③항에 따라 소속변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변경 자격) 학칙 제23조에 의거 본 대학교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입학자부터는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다. 단, 재입학한 학생은 소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6.21., 2023.11.01.>

제3조 (소속변경 허용범위) ① 본 대학교의 학부(전공)·계열·학과는 소속변경 할 수 있는 학부(전공)·계열·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는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학부(전공)·계열·학과 학생의 예·체능계열, 의과 치과·간호대학, 약학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 학과,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내에서의 소속변경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20., 2012.02.14., 2014.12.29., 2015.05.07., 2021.11.01., 2023.02.04.>

② 삭제

③ 의·치과대학(의예·치의예 포함)과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전공), 임상병리학과(전공), 재활학과(전공),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는 다른 대학(학과, 전공)으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한다. <개정 2021.11.01.>

④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소속변경을 허용한다. 단, 3학기 이상 이수한 글로벌기초교육학부 학생은 글로벌인재학부 내 각 전공으로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⑤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1,2차 전공배정 후 입학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1, 2학년 제적생의 20% 내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연 1회 실시한다. 단 [별표] 각 학과로(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8., 2012. 06.19. 2022.6.21.>

⑥ 캠퍼스내 소속변경은 당초입학생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10%이내(단, 교육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원의 입학생은 정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 21., 2021. 11. 1., 2024. 7. 28.>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타대학에서 글로벌인재대학으로의 소속변경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선발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0.08.27., 2021.11.01.>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기초교육학부 학생이 글로벌인재학부 내 각 전공으로 소속변경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공과목 이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 2020.08.27., 2022.1.19.>

② 전입하는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③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전공책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소속변경 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시행세칙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2) 이 시행세칙은 199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②항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4) 이 시행세칙(제3조 ①·③항)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5) 이 개정세칙(제2조 및 3조 ①, ②, ④ 신설)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제3조 ⑤항 신설)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⑥항 신설, 제4조①항)은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세칙(제3조 ⑤항)은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6항, 제4조 제1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되, 제4조 제1항의 교과목 이수요건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0)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세칙(제3조 제5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제3조 제7항(신설))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4)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3조 제1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① 이 개정세칙(제3조 제7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21. 3. 1. 이후 소속변경 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1.1.>

- (16) 이 개정 세칙(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9.>

- (17) 이 개정 세칙(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1항)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6.21.>

- (18) (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제2조 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규정(제3조 제5항 개정 및 별표 신설)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4.>

- (19)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 (20)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는 2024.03.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8.>

(21)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5항 별표, 생화학 및 생명공학 추가)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7.28.>

신촌캠퍼스 개설 학과(전공)		미래캠퍼스 개설 학과(전공)	
대학	학과(전공)	대학	학과(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사학, 철학	글로벌 창의융합대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역사문화학, 철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관계학, 글로벌행정학
상경대학	경제학, 응용통계학		
경영대학	경영학		
이과대학	물리학, 화학	과학기술 융합대학	물리및공학물리학, 화학및의화학, 생명과학기술학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 인공지능학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생활과학대학	통합디자인		

6)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1996.03.01

개정일: 2023.02.04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2중/다중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21>

제2조 (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 또는 학부는 2중/다중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1.20., 2023.02.04.>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대학 및 학과(전공)으로 2중/다중 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의학·치의학·간호학·약학·건축학(5년제)·음악대학 모든학과·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 학과·글로벌인재대학 모든 학과.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소속 학생의 소속 대학내에서의 복수전공은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20., 2012.02.14., 2014.12.29., 2019.06.14.>
2.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양성기관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 과정). 단,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7., 2021.11.1.>
3. 계약학과 <신설 2021.11.1.>

③ 삭제 <2021.11.1.>

제3조 (입학년도별 허용 범위) ① 1996학년도 입학생은 동일 대학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 계열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③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캠퍼스 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동일계열의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④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이중 및 다중전공의 신청은 입학한 계열 내에서 전공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⑤ 미래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에서 2중 및 다중전공할 수 있는 학과 및 전공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19.09.26. 2021.11.1.>

⑥ 신촌-국제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신촌의 캠퍼스내 복수전공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11.01.20>

제4조 (전공 결정) ①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서울캠퍼스 학생은 2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3학년 1학기부터, 미래캠퍼스 학생은 1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2학년 1학기부터 해당 학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개정 2019.09.26.>

②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 후에 입학계열 내에서 전공을 신청한 후 전공별 진입승인에 따라 전공이 결정된다.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학기 이수 후 모집단위별 전공으로 진입하되, 전공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공배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공 신청 및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1.4.8., 2021.11.1.>

③ 삭제 <2010.01.21>

④ 대학 또는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⑤ 미래캠퍼스 2002년도 이후 신입생의 전공 신청은 학부에 따라 1학년 말 또는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한다.(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참조) <개정 2019.09.26.>

제4조의2 (캠퍼스 내 복수전공) ① 2중전공은 제1전공을 배정받은 자 또는 학과별 입학자 가운데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캠퍼스내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지원인원의 50%와 지원학과 정원의 30% 가운데 적은 수 이상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2전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전공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1.01.20>

④ 2전공 신청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서류 및 면접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 실시 방법 및 반영비율은 학과별로 정할 수 있다. 예.체능계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공승인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1.21]

제4조의3 (다중전공) 제3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절차를 두지 않으며, 이수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전공을 승인한다.

[본조 신설 2010.01.21]

제4조의4 (이중 및 다중전공 이수요건) ① 2중 및 다중전공자(연계전공자 포함)는 전공별로 최소

36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1.20>

- ②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학교양과목 중 2과목(6학점) 이내에서 필수이수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6.14.>

[본조 신설 2010.01.21.]

제4조의5 (마이크로전공) ①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대 2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② 마이크로전공 개설 학과로의 복수(3전공 포함)·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전공 인증내역이 자동 취소된다.

[본조신설 2021.11.1.]

제5조 (학위 수여) 2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2중/다중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받는다. 다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중 및 다중 전공으로 표기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캠퍼스별 전공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전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시행세칙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세칙(제3조 ③,④항, 제4조, 제5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제2조)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1항)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제2조 ②항)은 2005학년도(2003학번)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제3조 ②항)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7)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3조 제5항 신설, 제4조 제3항,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세칙의 시행에 따라 “2중 및 다중전공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 (8) 이 개정세칙 중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6항 신설, 제4조의 2 제3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4조의 4 제1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9)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1호)은 20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2항 제1호)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2조 제2항 제2호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2항 제1호, 제4조의4 제2항)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8.>

- (14) 이 개정 세칙(제4조 제2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

- (15) 이 개정 세칙(제2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2조 제3호 신설, 제2조 제3항 삭제, 제3조 제5항, 제4조 제2항 개정, 제4조의 5 신설)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4.>

- (16)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재수강 시행세칙

제정일: 1993.11.08

개정일: 2024.07.28

제1조 (목적) 이 시행 세칙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4조의 2에 따른 재수강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21>

제2조 (재수강 과목의 조건)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교과내용, 학정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7.>
2. 삭제 <2020.08.27.>
3.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학정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개설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지정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8.27.>
4. 삭제 <2020.08.27.>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완전 폐강된 과목에 대하여 개설학과 학과장이 대학장을 경유하여 유사 교과목으로의 재수강 지정을 요청할 때 교무처장은 이를 심의하여 재수강 지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8.27.>

제3조 (학점 및 성적인정)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3.05.21.>

1. 음악대학 전공실기(1:1 지도), 채플, 주니어세미나, UT세미나, 및 기타 P/NP평가 교과목 중 기관에서 별도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교과목: 학생 선택에 따라 재수강처리 가능
2. 사회참여, 사회봉사, 현장실습 교과 등: 재수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별도로 등록함

- ② 평량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6회 이내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인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신설 2012.11.29., 개정 2020.08.27., 2024. 7. 28.>

제4조 (대상과목 및 취득성적) 재수강자에게는 A+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2005년에서 2012년 입학생은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0.01.21., 2012.11.29.〉

제5조 (제철학기) 제철학기도 재수강이 가능하며, 제철학기에 수강한 과목도 일반학기에 재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성적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 학기 수강과목은 제철학기에 재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0.01.21〉

제6조 (경고사항) 해당학기에 받은 성적(재수강처리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유효하다.

부 칙

- (1) 이 시행세칙은 재수강제도가 제정된 1993년 11월 8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졸업생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 (2) 이 개정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3항, 4항)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제4조)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6) 이 개정세칙(제4조 단서조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④항, 제4조 및 제5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학년도 입학자는 총4회, 2006학년도 입학자는 총3회, 2007학년도 입학자는 총2회 이내에서 취득 성적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수강해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을 제한하지 않으며,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이 개정세칙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8) 이 개정세칙(제3조③항 신설, 제4조)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본문과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변경 및 제2항 신설, 제3조 제3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0.〉

- (10)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제1항)은 2023.05.2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28.〉

- (11)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항 개정)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8)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 제1조 (목적)** ① 이 내규는 「학칙 제40조(전공이수)」와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캠퍼스별 전공 운영)에 의거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전공 및 다중(연계)전공제(이하 재학생 복수 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연계전공은 재학생복수전공의 사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 ② 연계전공은 융합전공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융합전공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7.16.〉
- ② 연계전공은 융합전공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융합전공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7.16.〉

제2조 (제1전공의 승인 및 변경) ① 모든 학생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내에서 제1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4.>

- ② 제1항의 경우 학부(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전공을 신청하여 해당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참조)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미래캠퍼스 1전공 배정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1.05.04., 2008.11.27.>
- ③ 전공승인 시 학업계획서, 적성검사결과서, 특정과목성적, 면접과 전공에서 정한 자료와 자격요건 등을 제출받아 승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전공별 승인인원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 ⑤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전공이 승인되어야 하며, 입학 후 6학기 이수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모집단위 내에서 1전공의 변경을 허용한다. 이는 소속변경과는 별개로 한다. <신설 2021.05.04.>

제3조 (재학생복수전공 시행 범위) ① 미래캠퍼스의 모든 학부(과), 전공은 재학생복수전공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언더우드국제대학만 허용한다.

-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 보건과학부(특별 학사학위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제외한다. 단,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모집이 가능하면, 관련부서(원주교무처 등)와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재학생복수전공을 허용할 수 있으며, 심사 및 기타사항은 해당 학부(과)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2019.09.26., 2015.05.07., 2008.11.27.>
- ③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2개 전공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2개의 전공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졸업요건은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한다. 단,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학부(과) 및 전공,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및 보건과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편입생은 2개 전공 의무화 제도에서 예외로 한다. <신설 2021.07.16.>

제4조 (재학생복수전공 승인) ① 제1전공(학부)을 결정한 학생 중 2학년부터 재학생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단,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는 1전공 배정 후 2학년 1학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 후 최대 6학기 이수 전까지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2전공을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 ② 재학생복수전공의 승인은 지원한 학과(전공)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가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및 기타사항은 해당 학부(과)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은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단,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가 캠퍼스내 재학생복수전공을 지원한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 ③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 등)의 캠퍼스내 재학생복수전공 선발인원은 기본적으로 승인 인원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기준정원의 1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단, 충실한 교육이 가능한 전공(수업 기자재, 실험실습공간, 교수자 등 교육 인프라 확보)의 경우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120%초과 승인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5.04.>

제5조 (캠퍼스내 재학생복수전공 이수 범위) ① 모든 학생은 미래캠퍼스 내에서는 일부 제외학과 외에는 계열에 관계없이 재학생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 2021.05.04., 2021.03.05.>

- ②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는 졸업을 위하여 재학생복수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타 기본전공, 1전공의 심화전공, 연계(융합)전공을 재학생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21.07.16.〉

제6조 (캠퍼스간 재학생복수전공 이수 범위) 미래캠퍼스와 서울캠퍼스간에 캠퍼스간 재학생복수전공을 할 경우, 미래(서울)캠퍼스 학생은 미래(서울)캠퍼스에 없는 학과 또는 전공을 서울(미래)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별표2 참조〉〈개정 2021.03.05.〉

제7조 (재학생복수전공 취소) 재학생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취소원을 원주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5.04., 2021.03.05.〉

제7조의 2 (재학생복수전공 변경) 2021학년도 이후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는 졸업을 위하여 입학 후 최대 6학기 이수 전까지 2개의 전공을 배정 받아야 하며, 3개 이상의 전공을 승인 받고 이수 중에 2전공을 취소할 경우 이후 승인된 전공이 2전공으로 된다. 단,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전공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다.〈신설 2021.07.16.〉

제8조 (교과목 이수) ① 제1전공의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 등)은 미래캠퍼스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05.04., 2021.03.05., 2019.09.26.〉

- ② 재학생복수전공 승인자는 재학생복수전공에서 정한 최소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학생복수전공에서 전공 및 전공이외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이 있을 경우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5.04.〉

- ③ 재학생복수전공 이수 시 두 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전공에서만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다른 전공에서는 중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2021학번 이후 입학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두 전공에서 중복하여 전공학점 인정이 가능하나, 졸업학점에서는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03.05.〉

- ④ 재학생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전공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 및 본인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총 졸업 학점에만 포함된다.〈개정 2021.03.05.〉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 학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허가받은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학부기초, 학부필수, 학부선택,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등)을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03.05.〉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에서 재학생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으로 달리 정한 학부기초, 학부필수, 계열기초, 공통기초, 교양기초, 필수교양, 대학교양, 전공탐색 과목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03.05.〉

제9조 (보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내규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 이 개정세칙(제2조 ②항, 별표1, 제6조 별표2)은 2008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제6조 별표 2)은 2011학년도 1학기 선발시부터 적용한다.
- (4) 이 개정내규(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①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6)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는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내규(제1조 ①항 변경 및 ②항 신설, 제3조 ②항 변경 및 ③항 신설, 제4조 ①, ②항 변경, 제5조 ②항 신설, 제7조의 2 신설)는 202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부별 전공선택 학기표

대학	학부	제1전공	2중 및 다중(연계)전공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디자인예술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 경영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자연과학부 · 응용과학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생명과학기술학부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 · 의공학부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보건행정학과 · 임상병리학과 · 물리치료학과 · 작업치료학과 · 방사선학과	선택안함	2학년 2학기 이후
동아시아국제학부	EAST ASIA International College (EIC)	졸업학기	2학년 2학기 이후 (UIC만 가능)

(별표 2)

미래←서울캠퍼스간 2중(다중)전공이 가능한 학과 및 전공

미래캠퍼스			신촌캠퍼스		
대학	대학	학과(전공)	대학	대학	학과(전공)
인문예술대학	문과대학	중어중문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심리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노어노문학전공	인문예술대학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전공 천문우주학전공 대기과학전공
정경대학			정경대학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	생명시스템 대학	시스템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생명공학전공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글로벌창업융 합대학(동아 시아국제학부 제외)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 전공 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신과대학	신학과			
글로벌창업융 합대학(동아시 아국제학부 제외)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언론홍보영상학			
과학기술융합 대학					
	생활과학 대학	아동·가족전공 의류환경전공 식품영양전공 실내건축전공 통합디자인전공	소프트웨어디 지털헬스케어 융합대학	인공지능 융합대학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디 지털헬스케어 융합대학			동아시아 국제학부	언터우드 국제대학	비교문화과문화전공 경제학전공 국제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생명과학공학전공 아시아학전공 문화디자인경영전공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 창의기술경영전공
	교육과학 대학	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계전공이 가능한 전공

서울캠퍼스	한국 및 동아시아학(한국학), 한국 및 동아시아학(일본학), 한국 및 동아시아학 (동아시아학), 유럽지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벤처학, 리더십, 비교문화, 문화비평학, 공공리더십
미래캠퍼스	국제통상학, 융합디자인학, 의료기기인허가, 의료산업, 금융, 공공기관인재, 공공헬스케어IT, 핀테크, 보건의료SW, 바이오인포매틱스, 스마트패키징물류

융합전공이 가능한 전공

서울캠퍼스	지능형반도체융합(소자공정), 지능형반도체융합(회로시스템)

9)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제정일: 1998.09.01

개정일: 2023.02.04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편입학생의 학사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학생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세칙은 3학년 일반편입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학점인정 및 절차) ① 3학년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대학·학과별 졸업학점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1.20>

- 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편입생은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인정 내역을 작성하여 성적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23. 2. 4.>
- ③ 교양과목은 학부대학의,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4.>
- ④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 대학교의 전공이나 교양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 내에서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 ⑤ 학점인정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학점을 대체 인정할 수 있다.
- ⑥ 삭제 <2021.04.08.>

제4조 (학사운영) ①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단, 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2.12.>

- ② 부전공 또는 2중(다중)전공, 연계전공, 졸업예정자복수전공은 할 수 있다. 단,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의 부전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14.>

제5조 (채플) 3학년 일반편입학생은 2학기 이상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수학기) 일반편입학생 중 5학기 편입학생은 6학기를 초과등록 할 수 없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②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2항)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2항)은 개정일(2019.06.14.)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0) 국내대학 교환학생에 대한 시행세칙

제정일: 1999.01.01

개정일: 2023.02.0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하며 미래캠퍼스를 포함한다)와 국내 타 대학교 간에 맺은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5., 2019.09.26.>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교 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으로 수학하는 학생(이하 “교환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8.27.>

1. 소속대학: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 중인 대학교
2. 수학대학: 학생이 학점교환 수학을 지원하는 대학교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교 수학

제4조 (자격) 국내대학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8.15.>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현재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자. 다만, 계절학기에 교환대학에서의 학점이수는 휴학자도 가능함.
2.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다만, 수학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적용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절차) ① 교환학생 신청은 매 학기단위로 하며, 지원자는 “국내대학 교환학생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규학기 신청은 개강 1개월 이전, 계절제수업 신청은 수업개시 1개월반 이전 소정의 기간

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23.2.4.>

제7조 (정원) 정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하고, 계절제수업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제10조 1항)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9조 (교과목 이수) ① 교환학생은 수학대학과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대학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다.

② 삭제 <2008.08.15.>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④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제10조 (취득학점 범위)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1/4까지이다.

② 학기당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정규학기에는 모집계열에 따라 18학점 또는 19학점, 계절제수업은 7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적용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강신청 및 변경) 수학대학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은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수학취소) 수학대학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변경기간 이전에 “국내대학 교환학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본교에서 수강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1>

제13조 (성적평가 및 인정)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수학대학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②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4.09.01.>

제14조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제15조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수학대학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학대학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17조 (기타) ①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 등에 따른다.

② 입대휴학자의 온라인강좌 수학과 관련한 사항은 교환대학과의 협정 및 온라인 강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개정 2017.06.15.]

제3장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

제18조 (자격)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교 학생은 소속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학신청) 소속대학은 교환학생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정규학기 또는 계절제수업의 수강신청기간 10일전까지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학허가) 본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교환학생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제21조 (정원) 정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소속대학의 대학단위별 모집정원의 3% 이내로 하고, 계절제수업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수학기한)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23조 (교과목 이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24조 (취득학점 범위) 교환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정규학기에는 20학점까지, 계절제수업은 6학점까지이다.

제25조 (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6조 (수학취소) 본교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에 “교환학생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성적처리) 성적은 본교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 통보하며, 이후 성적증명서 등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4.>

제28조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단, 입대후학자의 온라인강좌 수학에 따른 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강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06.15.>

제29조 (시설물의 이용) 교환학생은 본교의 도서관, 실험실습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제30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학생교류 정원 조정

제31조 (정원 조정) 본교와 수학대학은 수학한 학생의 총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상호 협의하에 학생교류 정원의 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변경세칙(제10조, 제13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2항)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은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1, 제10조②)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9조)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4조 제1항)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6조, 제12조)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3조 제2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7조, 제28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및 제6조)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제1항 및 제27조 개정, 제6조 삭제)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1) 연계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1996.03.01

개정일: 2024.01.16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 40조에 따라 연계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및 전공인정)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전공은 제 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의2 (연계전공 일괄평가) 연계전공은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9.8.>

제3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연계전공에서 인정하는 과목 중에서 전공기초를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교과목을 연계전공과 전공, 교양과목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1., 2022.10.2.>

③ 연계전공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 후 한시적으로 교양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제4조 (전공이수승인) ① 연계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직전학기까지 “연계전공 이수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연계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0., 2022.10.2.>

② 연계전공의 수강지도 및 이수사정은 각 전공책임교수가 하되 주전공이수 지도 및 사정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2.10.2.>

③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전공이수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공별 필요에 따라 승인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9.8.>

제5조 (학위수여) 각 연계전공분야에서 인정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받는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제7조 (캠퍼스별 전공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연계전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부 칙

- (1) 이 세칙은 1996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2)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제 3조의 학부대학 개설과목은 교양과목으로 본다.
- (3) 이 변경세칙(제4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세칙(제1조)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의2 신설, 제3조의 제2항 내지 제3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① 이 개정세칙(제4조 제3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세칙(제2조의2)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7조 신설)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2) 성적평가 시행세칙

제정일: 2000.09.01

개정일: 2023.05.20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5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0조에 의한 성적평가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학칙 제45조제2항의 P/NP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1.20., 2010.1.21., 2020.08.27., 2023. 2. 4.>

1. 삭제 <2011.01.20>
 2. 삭제 <2011.01.20>
 3. 삭제 <2011.01.20>
 4. 예·채능 실기 교과목 <개정 2020.08.27.>
 5.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6. 졸업논문, 졸업연주, 졸업실기 또는 그 이외 졸업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
 7. 삭제 <2011.01.20>
 8. 공동연구 및 공동결과물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실험·실습 교과목
 9. 한국어어학 교과목 <신설 2015.02.26.>
 10. 세미나 교과목 <신설 2020.08.27.>
 11. 시민의식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채플, 사회봉사 등의 교과목 <신설 2020.08.27.>
- ② 동일한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분반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여러 분반을 통합하여 성적평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과는 강의시간표에 평가원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0., 2020.08.27.>

제3조 (심화전공과목등에 대한 평가) 수강인원 9명 이내 소형강좌, 제2조 제1항의 과목을 제외한 4000단위 과목 및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군사학 과목의 성적평가 원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학과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3. 2. 4.>

1. 수강인원이 40명 이내 강좌 : 담당교수 재량 평가
2. 수강인원이 41~60명인 강좌 : A성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
3. 61명 이상 수강강좌 : 상대평가

<개정 2011.01.20>

[본조 신설 2010.01.21.]

제4조 (S/U평가) ① 전공에 진입한 2학년 이상의 학생은 평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는 교과목 중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 S/U(충족, 미흡, Satisfactory, Unsatisfactory) 평가 방식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0.08.27.>

1. 자신이 소속한 학부 및 학과(복수전공의 경우를 포함함)가 아닌 다른 학부 또는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 <신설 2020.08.27.>
2. 학기당 6학점, 총 18학점 이내 <신설 2020.08.27.>

②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의 성적은 평점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08.27.>

③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C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만 S로 등재하며 취득학점을 인정하며, C- 이하 성적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8.27.>

제5조 (100점 만점 환산) 4.30만점 점수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단, 백점만점 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점	백분위 환산식
4.00이상	$72 + ((\text{각 평점} - 0.7) \times 28 / 3.6)$
3.70~4.00미만	$69 + ((\text{각 평점} - 0.7) \times 31 / 3.6)$
3.30~3.70미만	$66 + ((\text{각 평점} - 0.7) \times 34 / 3.6)$
3.00~3.30미만	$65 + ((\text{각 평점} - 0.7) \times 35 / 3.6)$
2.70~3.00미만	$64 + ((\text{각 평점} - 0.7) \times 36 / 3.6)$
2.70미만	$63 + ((\text{각 평점} - 0.7) \times 37 / 3.6)$

<조 신설 2023.05.20.>

부 칙

- (1)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세칙(제2조① 단서조항)은 2005-2학기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3조 신설)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3조)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9호 신설)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 제2조 제3항 개정, 제4조 신설)

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제1항 본문 및 제3조 본문)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신설)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3) 입학 전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02.03.01

개정일: 2023.02.04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3조 ⑥항의 입학 전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자격) ① 본 대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입학예정자 또는 고교 재학 중 대학과목선 이수과정 이수자는 총 6학점 이내(언더우드국제대학 학생은 9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에서 허용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01.20>

② 입학예정자 또는 대학과목선 이수과정 이수자가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입학 전 취득 학점에 대한 성적처리) ① 입학 전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선이수과목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다만, 외부공인시험 및 본 대학교의 진단평가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성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0., 2016. 10. 5., 2023. 2. 4.>

② 입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전공신청 승인 시 기준이 되는 과목인 경우, 입학 전 이수과목의 성적은 전공승인 시에도 반영한다. 단, 입학 전에 취득 성적은 학칙 제43조 ②항에 따른 학점초과신청 및 학칙 제48조의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이수학기 불인정) 입학 전에 수학한 학기는 학칙 제4조제1항의 수업연한 및 학칙 제5조제1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신입학생 과목 이수면제 특례) 입학 후 제적된 자가 학부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제적 전 C+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교양기초 및 대학교양과목에 대하여 과목 이수학점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이때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06.14.>

[본조 신설 2011.01.20.]

부 칙

(1)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3조③항 및 제4조)은 개정일(2004. 2. 2)로부터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①②항, 제3조①항)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제3조, 제5조 신설)은 2011학년도부터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5조)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4)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제8호에 따라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자격)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외국어인증(필수)과 정보인증 혹은 산업실무역량인증(택 1)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며, 각 분야별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7.11, 2014.4.1>

제3조 (인증절차) ① 제2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전공확정 이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졸업인증 신청서를 외국어 인증은 국제교류원에, 정보인증은 사회교육개발원에, 산업실무역량 인증은 창업교육센터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국제교류원, 사회교육개발원, 창업교육센터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매 학기말에 심사결과를 원주 교무처로 통보한다. <개정 2014.4.1>

제4조 (수료증 등의 수여) ① 학칙 제51조 1호 내지 6호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8호의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수료증을 수여받은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교류원과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전체 또는 일부 면제한다.

①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개정 2015.05.07>

② 졸업인증제 위원회에서 졸업인증제의 적용을 면제한 자

제6조 (위원회) ① 졸업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원주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인문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장,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국제교류원장, 사회교육개발원장(이상 당연직 위원)과 원주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교수로 구성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2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3년 신입생과 2004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 시행세칙(정보졸업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6조 2항)은 2002학년도 신입생과 2004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5) 이 개정 시행세칙(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정보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07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실무역량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개정)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제5조 제1항 보건과학과의 보건과학부로의 승격)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1.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1.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세칙 별표1(1.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요건

교양영어 4개 학기를 이수하고(단, 편입생은 면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졸업인증을 부여한다.

단, 2019학번 이후 입학생은 교양영어1, 교양영어2를 이수하고(단, 편입생 면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이수한 자에게 외국어 졸업인증을 부여한다.

- ① 2018학번 이전 입학생 : 교양영어 4개과목(교양영어1, 교양영어2, 교양영어3, 교양영어4)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2019학번 이후 입학생 : 교양영어 2개 과목(교양영어1, 교양영어2) 평량평균을 A- 이상 취득한 자

- ② 대학 입학 후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에서 제1전공별 외국어 졸업인증 요건으로 정한 다음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전공별 외국어 졸업인증 공인어학점수 표〉

2020학년도 이전 신입생

대 학	학부 및 학과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JPT	JLPT	OPIc	HSK	OPIc	TORFL	OPIc	TOPIK
동아시아국제학부		500	N3	IM1	4급 195점↑	IM1	기본	IL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대학	학부 및 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한국어
		TOEFL PBT (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New TEPS)	JPT JLPT OPic	HSK OPic	DELE OPic	ZDaF	DELFI	TOPIK
인문예술대학	모든 학부(과) (영어영문학 제외)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500 N3 IM1	4급 195점 ↑ IM1	A2 IL	A2	A2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영어영문학과	550 (79)	760	level6 140점	IM2	680 (374)						
과학기술대학	모든 학부(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경정대학	경제학과 글로벌행정학과 법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550 (79)	760	level6 140점	IM2	680 (374)						
보건과학대학	모든 학부(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글로벌엘리트학부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모든 편입생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대학	학부 및 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한국어
		TOEFL PBT (IBT)	TOEIC	TOEIC Speaking	OPic	TEPS (New TEPS)	JPT JLPT OPic	HSK OPic	DELE OPic	ZDaF	DELFI	TOPIK
글로벌창의 융합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영어영문학, 국제관계학, 경영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제외)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500 N3 IM1	4급 195점 ↑ IM1	A2 IL	A2	A2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영어영문학, 국제관계학, 경영학부	550 (79)	760	level6 140점	IM2	680 (374)						
과학기술 융합대학	모든 학부 및 학과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소프트웨어디 지탈헬스케어 융합대학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모든 편입생		500 (61)	650	level 5 120점	IL	600 (327)						

대 학	학부 및 학과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JPT	JLPT	OPic	HSK	OPic	TORFL	OPic	TOPIK
글로벌창의 융합대학	동아시아국제학부	500	N3	IM1	4급 195점 ↑	IM1	기본	IL	4급 (외국인 중 선택자만 해당)

③ 외국어 교양선택과목(표1) 중 2과목을 이수하고, 성적 B- 이상을 취득한 자(07학번 이후~)

* 외국어 졸업인증을 위한 외국어 교양과목표

과목명	학정번호	과목명	학정번호	과목명	학정번호
고등영문법	UNO1019	TOEFL	YHS1002	TOEIC	YHS1001
일본어(1)	YHH1005	일본어(2)	YHH1006	교양초급영어회화	YHS1003
중국어(1)	YHH1007	중국어(2)	YHH1008	교양중급영어회화	YHS1004
러시아어(1)	YHH1011	러시아어(2)	YHH1012	교양초급영작문	YHS1005
독일어(1)	YHH1013	독일어(2)	YHH1014	교양중급영작문	YHS1006
불어(1)	YHH1015	불어(2)	YHH1016	초급토플 리스닝&스피킹	YHS1029
영어어휘연습(1)	YHS1010	영어어휘연습(2)	YHS1036	중급토플 리스닝&스피킹	YHS1030
스페인어(1)	YHH1023	스페인어(2)	YHH1029	인터뷰&프레젠테이션스킬	YHS1033
시사영어(1)	YHS1007	시사영어(2)	YHS1008	기초 TOEIC PEAKING	YHS1049
기초영문법	YHS1009	중급영문법	YHS1011	초급 TOEIC PEAKING	YHS1050
비즈니스작문	YHS1034	글로벌실용영어	YHH1017		

* 자격요건 ②, ③과 관련하여 모국어 어학점수 제출 및 모국어 교양교과목 이수를 통해 졸업인증을 할 수 없음.

* 상기 과목은 매 학기 학사운영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 TOEIC SPEAKING과 초급 TOEIC SPEAKING은 2021학년도부터 폐설했.

2. 정보졸업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소속된 전공/학과(부)에 부여된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 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하는 해당 대체인정강좌를 이수한 자에게 정보졸업인증을 부여한다.

(1) 자격증

- ① 소속된 전공/학과(학부)에 부여된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등급별 정보인증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등급	시행기관
정보처리기사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보통신기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OCP-DBA		Oracle
OCP-Developer		Oracle
SCJP, SCJD, SCNA		SUN
CCNA, CCIE, CCNP		Cisco
MCP 중 2개		Microsoft
MCSE		Microsoft
MCDBA		Microsoft
MCSDB		Microsoft
MCAD		Microsoft
MCAP 중 2개		Microsoft

자격증	등급	시행기관
OCA, OCP, OCM 전 자격증 TOPCIT 200점		Oracle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산업기사 e-TEST Professionals 1급 PCT 850이상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MCP 중 1개 ACA Adobe Dreamweaver CS3 ACA Adobe Photoshop CS3 Extended CAD 실무능력평가 2급 MOS Master (버전 상관 없음)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주)피씨티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Microsoft Adobe Adobe 한국생산성본부 Microsoft 대한상공회의소
e-TEST Professionals 2급 PCT 650점 이상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 MOS 2007 이상 동일한 버전 2개 (단, Word Expert, Excel Expert, Access, Powerpoint, Outlook 중 택 2)	3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주)피씨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icrosoft

③ 등급별 전공/학과(부)는 다음과 같다. 다
(2021학번~)

등급	대학	전공/학과(부)
1	소프트웨어디지털 헬스케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2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경영학부
	과학기술융합대학	모든 학부(과) 및 전공
	소프트웨어디지털 헬스케어융합대학	모든 학부(과) 및 전공 (소프트웨어학부, 보건과학부 제외)
3	글로벌창의융합대학	모든 학부*과) 및 전공(경영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제외)

(~2020학번)

등급	대학	전공/학과(부)
1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2	과학기술대학	자연과학부 응용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정경대학	경영학부
	보건과학대학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Biomedical Science, Bio-health Engineering 트랙
3	인문예술대학	인문과학부, 국어국문학과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트랙

- ④ 디자인예술학부 소속 학생은 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디자인예술학부 편입생 포함)

자격증	시행기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ACE	Adobe
CAD 실무능력평가 2급	한국생산성본부
ACA Adobe Dreamweaver CS3	Adobe
ACA Adobe Photoshop CS3 Extended	Adobe
웹디자인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산업인력공단
3D프린터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출판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각디자인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 대체인정

- ① 자격증 취득에 의한 정보졸업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교육개발원에서 개설하는 대체 인정강좌를 수료하면 정보졸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대체인정강좌는 소속된 전공/학과(부)에 해당되는 등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대체인정강좌를 수료하여야 한다.
- ③ 등급별 대체인정강좌는 다음과 같다.

등급	대체인정강좌
1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1등급 강좌 (Visual C++, Visual C#, Visual Basic, C++, C#, Java, 정보처리기사, Oracle, Windows Server 중 1개 강좌 등)
2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2등급 강좌 (웹프로그래밍홈페이지제작, 프레젠테이션 실무활용기술, Excel VBA, 엑셀 실무활용기술, SPSS, Photoshop, Illustrator, FLASH 중 1개 강좌 등)
3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3등급 강좌 (Excel, Powerpoint, Access, Word 중 1개 강좌 등)
디자인 예술학부	- 사회교육개발원장이 지정한 디자인학부 대체인정강좌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Indesign, After Effects, AutoCAD, 3D MAX, Rhino 3D, FLASH, MayaComplete, Web Design 중 1개 강좌 등)

- ④ 대체인정강좌 수료를 위해서는 출석일수 7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평가시험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3. 실무역량 졸업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산업실무역량 인증 교과목 이수 및 프로그램 참여로 200포인트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산업실무역량 인증을 부여한다.

- ① 교과목 이수로 120포인트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 성적이 B-이상인 경우에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 ② 인증 교과목은 미래캠퍼스 졸업인증위원회 승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별도 관리한다.
- ③ 인증 프로그램,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 산업실무역량 인증 프로그램 및 자격증

구분	항목		기준	포인트
진로취업 및 창업 특강	학생 경력관리시스템에 개설되는 진로취업 및 창업관련 특강과 프로그램 참여		1회	1
취업 및 창업캠프	1박2일		1회	10
	2박3일		1회	20
취·창업 활동	인턴/현장실습(4주 기준)		1회	30
	취·창업동아리		1학기	10
	창업(사업자등록)		대표자	80
	정부·지자체·기업 등 교외 창업재정지원 사업 선정		1,000만원 미만	40
			1,000만원 이상	70
수상실적	교외	A등급 대회(중앙 정부부처 및 100대 기업주관 대회 또는 총상금 2000만원 이상)	1위	150
			2위	100
			3위	70
			입상(장려)	50
		B등급 대회(광역지자체 및 1000대 기업주관	1위	100

구분	항목		기준	포인트		
		대회 또는 총상금 1천만원 이상)	2위	70		
			3위	50		
			입상	30		
		C등급 대회(기초 지자체 및 중견기업 주관대회 또는 총상금 1000만원 미만)	1위	70		
			2위	50		
			3위	30		
			입상	20		
			교내	캠퍼스 전체	1위	50
					2위	30
	3위	20				
	입상	10				
	대학/학부/학과	1위		20		
		2위	10			
		3위	5			
		입상	3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출원		1건	10	
	특허 등록		1건	50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록		1건	30		
연구프로젝트 참여	국가 연구과제 교수와 공동 수행(연구원 등록 후 참여율 100% 기준) ※증빙서류는 연구처 발행		6개월	50		
자격증	1등급	-전공관련 기사 1급 등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상위 등급 취득자	1건	100		
	2등급	-전공관련 산업기사 1급,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간등급과 등록민간자격의 최상위 등급 취득자	1건	70		
	3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하위 등급과 등록민간자격의 중간 등급 취득자	1건	50		

15)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1999.03.18

개정일: 2024.08.29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입금의 책정) 납입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 학년도 납입금 등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책정한다.

제3조 (등록기간) ① 등록금은 수강신청, 휴·복학일정과 연동하여 학기 개시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한다. 이에 본 등록기간은 매 학기 개시 전 8일 이내, 추가등록기간은 수강변경기간 후 5일 이내 수납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전 60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른 등록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4. 8. 29.]

제4조 (등록고지) 등록정보는 교내홈페이지(<http://portal.yonsei.ac.kr>)와 학생 이메일로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하는 경우 우편고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제5조 (분납제) ①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분납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무·회계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계절학과와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6.01.>

② 분납을 승인 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각 차수별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 3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개정 2009.06.01.>

③ <삭제>

제6조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① “학기초과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9.07.31.>

1. 학부 : 8학기. 단, 공과대학 건축학교육과정은 10학기,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학기기로 한다.
2. 일반대학원 : 4학기.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기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5학기. 단, 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에 따른다.
4. 전문대학원 : 4학기. 단, 해당 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에 따른다.

② 학부 과정의 학기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 ~ 3학점 : 1/6 납부
2. 4학점 ~ 6학점 : 1/3 납부
3. 7학점 ~ 9학점 : 1/2 납부
4. 10학점 이상 : 전액 납부
5. 0학점(Pass/Non Pass 과목 수강자) : 별도 내규에 따름

③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학기초과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 ~ 3학점 : 1/3 납부
2. 4학점 ~ 6학점 : 2/3 납부
3. 7학점 이상 : 전액 납부
4.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 12/100 납부 <개정 2014.03.20>
5. 일반대학원 연구과정생 : 1/2 납부
6.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생 : 전액 납부

④ 학기초과자 및 연구등록자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과목 확정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2009.07.31., 2013.03.11.>

- ⑤ 학기초과자가 수강철회한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3.03.11>

제6조의2 (공동학위 과정 등록금) 해외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는 공동학위 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총액을 지급수입으로 감면액은 학비감면 장학금 등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10.30.>

제7조 삭제 <제6조에 통합>

제8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 4. 24., 2023. 1. 12.>

- ② 등록금 납부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04.24., 2023.01.12.>

1.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 전액 반환
2.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3.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4.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5. 학기 개시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③ <삭제>

④ <삭제>

- ⑤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 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4>

- ⑥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⑦ 본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 ⑧ 학칙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미복학 제적자와 본인 사망 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의 2호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한다. <개정 2014.04.24.>

- ⑨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다는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3.11>

제9조 (등록업무의 분장) ① 학사지원팀은 학적변동자료, 학생지원팀과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은 장학금 수혜대상자 명단을 일괄 취합·확인하여 등록기간 7일전까지 재무·회계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2023.01.12.>

- ② 등록금 책정은 예산팀에서, 등록금조회, 수납, 고지에 관한 업무는 재무·회계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9.06.01.>

- ③ 재무·회계팀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부 및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등록금 수납액을 점검한 후 집계표를 작성하여 기획실 예산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2009.06.01., 2018.03.14., 2020.07.27>

제10조 (등록제도 운영위원회) 등록 수납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 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7.31, 2009.6.1.>

1. 운영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총무처장(간사),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정보통신처장, 학부대학장, 대학원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14., 2020.07.27., 2023. 1. 12., 2024. 8. 29.>
2.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등록기간, 고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나. 등록업무의 변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칭한다.

제11조 (입학금) ① 입학금은 대학원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학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입학금을 감면한다.

1. 삭제 <2023.1.12.>
 2. 삭제 <2023.1.12.>
 3. 연구과정으로 입학한 자나 석사과정 졸업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상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03.11>
 4. 대학원 졸업생 혹은 재적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타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5. 연구과정 수료자나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생이 타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6.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자원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대학원 과정에 재입학한 경우(타전공포함)에는 입학금 1/2을 감면한다. <신설 2013.03.11>
- ③ 각 과정은 본교와 미래캠퍼스(매지), 의료원과 미래캠퍼스(일산)를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9.09.26.>

제12조 (특수교육대상자 학점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칙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과목 확정 후 재무·회계팀에서 별도의 등록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2009.06.01., 2009.07.31.>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2조 신설)는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3항)은 2006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은 2007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학칙 개정 후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6항)은 2008년 8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의 2 신설,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는 2008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제12조 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4항, 동조 제5항(신설), 제8조 제1항, 동조 제7항 및 제8항(신설),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동항 제6호(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경과규정) 다만, 제11조 제2항 제6호는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1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3항 제4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항)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1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 제3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호)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2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직제 및 보직명 변경에 관한 사항(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호)은 그 날부터 적용하고, 고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9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부칙 제3조에 따른 변경 사항(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은 2023학년도 신입생의 등록시부터 적용한다.
- (21)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3조, 제10조 제1호)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2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6) 외국대학등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일: 1985.05.01

개정일: 2023.05.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7조의2에 의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에서 승인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 받고자하는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8.27.>

1. “교환학생”은 교환협정에 의해 파견되는 학생
2. “유학생”은 교환학생 자격이 아닌 방법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하여 파견되는 학생
3. “연수생”은 교무처장이 승인한 외국대학등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제2장 본교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제4조 (교류대학 및 연수프로그램) ① 교류대학은 본교와 교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할 경우 교환대학에서 수학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 또는 우리대학 기관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5조 (지원자격) 외국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교환학생은 1년 이상 재학한 자) 단, 졸업예정자(최종 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는 제외함. <개정 2010.01.21>
2. 학업성적이 2.80/4.00(4.30) 이상인자.(교환학생 및 1학기 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개정 2023.05.20.>
3. 지원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응시한 토플(TOEFL)에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교환학생 및 1학기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 자연, 예·체능계: PBT 520, CBT 190, iBT 68점 이상
 - 그 외 계열: PBT 550, CBT 213, iBT 79점 이상
 <개정 2011.01.20>
4.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의예과 및 치의예과 4학기 학생은 진급심사 종료 전까지 학점인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후 1학기 일반휴학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함. <개정 2010.01.21>

제6조 (지원절차 및 시기) ① 교환학생 지원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허락을 받아 국제처에 제출하며, 신청절차 및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21.>

②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1.>

1. 지원신청서
2. 입학허가서(연수허가서)
3. 수학계획서
4. 지도교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정규학기의 경우 개시 3개월 전까지, 계절 학기의 경우 개시 2개월 전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1)

제8조 (선발절차) ① 교환학생 선발은 국제처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0.1. 21>

② 유학생과 연수생은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서 결정한다.

제8조 (수학기간) 수학기간은 최대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환학생인 경우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9조 (취득학점 및 학기의 인정) ①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우리대학 이수학점으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개정 2020.08.27.>

1. 정규학기: (학과별 최소졸업학점 ÷ 수업연한학기수)×이수학기수 이내 <개정 2020.08.27.>

2. 삭제 <2020.08.27.>

3. 계절학기: 7학점 이내 <개정 2020.08.27.>

4. 연수생: 3학점 이내 <개정 2020.08.27.>

②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휴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교 등록 후 재학기간 중 파견된 유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 환산에서 제외한다.

④ 삭제 <개정 2010.1.21>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① 교환학생 및 유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학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 및 교과목의 인정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승인권자의 승인에 따른다. <개정 2010. 1. 21., 2020. 8. 27., 2023. 2. 4.>

1. 전공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장

2. 학부대학교과목: 학부대학이 지정하는 담당교수 <개정 2023. 2. 4.>

3. 언더우드국제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CC 교과: 담당교수 및 CC책임교수

4. 일반선택 교과목: 담당교수

② 연수생은 학점취득인정원과 연수프로그램 주관 기관장이 발급하는 연수사실 증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23. 2. 4.>

③ 교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취득인정원을 심사하여 학점인정을 승인한다.

제11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제3조)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내규명 변경 및 전면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시행내규(제4조 1항, 2항, 제5조 4호, 제6조 1항, 2항 제7조 2항, 제10조 1항, 2항)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내규(제9조 1항, 2항)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내규(제9조 2항 및 4항 신설)는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 내규(제5조 1항)는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 내규(제9조 1항 1호 및 2호)는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내규(제5조1항, 6호 신설, 제6조②③항, 제7조①항, 제9조4항, 제10조①②항)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 내규(제5조 제3호)는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세칙(규정명 변경,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변경)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 내규(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제2호)는 2023.05.21.부터 적용한다.

17)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8.05.14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의 2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범위)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학부/학과에서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진입자격)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이 3.3/4.3(3.0/4.0)이상이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입학 시 연세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되어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별도로 진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4.>

제4조 (지도교수) ① 본 과정에 진입이 확정되면 학과장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생에 준하는 학사 및 연구 지도를 시행한다.

제5조 (수강신청)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수학년한 이내에는 학기당 최대 24학점(대학원 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과목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총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수료학점에 가산된다. <개정 2011.01.20>

제6조 (자격 상실)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한 후 졸업시까지 매학기 평량평균이 3.3/4.3(3.0/4.0)미만이 되면 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대학원입학)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연계과정 학생은 전 학기 통산 성적의 평량평균이 3.3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 칙

- (1) 이 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의 (명칭변경, 제1조)은 2006-1학기부터 적용한다.
- (4) 이 개정세칙(제7조)은 2007-1학기부터 적용한다.
- (5) 이 개정세칙(제5조)은 2011학년도 1학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한다.
- (6) 이 개정세칙(제7조)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단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8)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일: 2004.09.01

개정일: 2024.08.21

- 제1조 (목적)** ① 이 세칙은 학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 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 형태의 교육과정은 본 세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2. 1. 19.]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현장실습이라 함은 국내의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 소정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08. 27., 2022. 1. 19.>

1. '표준현장실습'이란 다음 각 목의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가. 현장실습기관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 내용에 관한 사항

다. 현장실습 지원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자율현장실습'이란 표준현장실습과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 ② 삭제 <2012. 11. 29.>

- ③ '주관기관'이란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08. 27., 2022. 1. 19.>

- ④ '현장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 1. 19.>

- 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 교육 과정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신설 2022. 1. 19.>

제2조의2 (교육과정 편성) ① 현장실습은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이 실시된 해당 학기에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학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8. 21.>

1. 표준현장실습: 1일 8시간 이상 8시 이하 전일제로 주5일 연속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 기간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8. 21.>

가. 15주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에 1일 8시간 기준 7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5학점 이내 인정

나. 8주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에 1일 8시간 기준 40일 이상 참여한 경우 6학점 이내 인정

다. 4주 이상의 현장실습 과정에 1일 8시간 기준 20일 이상 참여한 경우 3학점 이내 인정

2. 자율현장실습

가. 표준현장실습 운영기준과 달리 운영할 경우 주관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로 운영방안을 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전 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현장실습은 2개월 이하, 주15시간 미만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표준 현장실습의 경우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25 이내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의 경우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9.]

제2조의3 (출석관리)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4조의2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 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제4조의2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8. 21.]

제3조 (현장실습 주관기관의 의무) ① 현장실습 주관기관은 실습계획서를 작성하고, 파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20. 08. 27.>

- ② 주관기관은 현장실습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실습생을 공개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27.>

-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9.>

1.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 ④ 현장실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지도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 또는 현장실습의 중단과 학생의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7., 2022. 1. 19>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3조의2 (운영계획서 및 협약) ① 주관기관과 실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운영시간 및 기간
 3.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직무내용, 실습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포함한 직무교육(지도) 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 ②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2. 1. 19.]

제3조의3 (실습기관 선정) ① 주관기관은 학과 교육과정위원회(교수회의로 갈음할 수 있음)에서 실습기관과 전공과의 연계성을 심의·인정받아야 한다. <신설 2020.08.27.>

- ②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지원단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에서 전공학과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9., 2023.02.06.>

제4조 (기간) 삭제 <2012. 11. 29.>

제4조의2 (실습시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1.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한다.
- ②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항의 범위에서 결정되되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한다.
- ③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3호의 경우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유급 여부 또는 실습중단 등의 조치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1.>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본조신설 2022. 1. 19.]

제5조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2학기 이상을 이수 완료한 재학생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9>

② 삭제 <2012. 11. 29>

③ 삭제 <2012. 11. 29>

④ 휴학생도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 교과를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현장실습교과를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29>

제5조의2 (학생의 의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 08. 27>

1. 실습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27>
2.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27>
3. 현장실습 도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27>
4. 실습 종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실습결과보고서, 근무기록, 업무수행일지 등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27>

제6조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①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실습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출석부와 평가표를, 학생으로부터 실습일지 또는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20. 08. 27>

② 삭제 <2022. 1. 19>

③ 현장실습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학기당 15학점, 졸업시까지 총 21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2020. 08. 27., 2022. 1. 19>

④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P로 하고,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나, 평량평균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의2 (별칙)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소속대학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27>

1.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습기관이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신설 2020. 08. 27>
2.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취소한 경우 <신설 2020. 08. 27>
3.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신설 2020. 08. 27>
4.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 08. 27>

제6조의3 (현장실습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부여학점을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
 2. 학생의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제3조 제4항 각 호와 같이 실습기관 귀책 사유로 실습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신설 2023.02.06.>
- ② 실제출석일 기준에 따른 부분 인정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제4조의2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
- <개정 2024. 8. 21.>
1. 1일 8시간 기준 20일 미만 참여 시 학점인정 없음
 2. 1일 8시간 기준 20일 이상 40일 미만 참여한 경우 3학점 이내 인정(단,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 미 실시 시수를 제외한 학생의 실제 출석일이 20일 이상이어야 함)
 3. 1일 8시간 기준 40일 이상 60일 미만 참여한 경우 6학점 이내 인정
 4. 1일 8시간 기준 60일 이상 70일 미만 참여한 경우 9학점 이내 인정
- ③ 현장실습의 중단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교과목의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고 학생이 합의한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삭제 2023.02.06.>
- ⑤ 학생이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휴학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2. 1. 19.]

제7조(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 (1) 이 시행세칙은 산학협동현장실습이 시행된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인턴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 (2) 이 개정세칙(제5조④항)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세칙(제6조③항)은 2007-1학기부터 적용한다.
- (4) 이 개정세칙(제6조 제2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제1조 개정, 제2조 제2항 삭제, 제3조 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제4조 삭제, 제5조 제1항 개정, 제2항 및 제3항 삭제, 제4항 및 제5항 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6) 이 개정세칙(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3조 내지 제3조의3,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신설)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 (7) ① 이 개정세칙(제1조 제1항 개정, 제1조 제2항 신설, 제2조 제1항 및 3항 개정, 제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조의 2 신설,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제3조의2 제1항 개정, 제3조 제2항 신설, 제3조의 3 제2항 개정, 제4조의 2 신설, 제6조 제2항 삭제, 제6조 제3항 개정, 제6조의3 제1,2,3,5항 신설)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세칙(제6조의3 제4항 신설)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세칙(제3조의3 제2항, 제6조의3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세칙(제2조의2 제2항 개정, 제2조의3 신설, 제4조의2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 신

설, 제6조의3 제2항 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사회봉사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정일: 2004.03.01

개정일: 2023.05.20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내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대학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라 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비정지성 단체에서 최소 8주~15주, 30시간(계절학기는 5~8주, 30시간)이상 동안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자의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한다.

② 봉사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여부는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제3조 (주관부서의 의무) 학점인정 사회봉사활동 주관부서에서는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이 지도자로서의 봉사정신 함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수강신청) ① 정규학기는 수강신청 허용학점(최대학점)외로 학기별 1학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절학기는 사회봉사학점을 수강신청 최대학점(7학점)에 포함한다.

② 수강신청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봉사활동 담당부서(또는 지도교수)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점인정 사회봉사는 학기 중 수강철회가 불가하다.

제5조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① 대학이 인정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완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에 1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재학 중에 4회(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제수업에서는 휴학자도 학점인정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수업에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는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2.11.29.>

③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P 또는 NP로 하며,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여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은 이를 재이수하여 이전 취득 성적을 소거할 수 없다. <개정 2012.11.29., 2023.05.21.>

⑤ 단일 활동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타 교과목(인턴십·현장실습 등)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1.29.>

제6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사회봉사 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한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이 시행세칙(제2조 제2항, 제4조 제1, 2, 3항, 제5조 제 2, 5항)은 2006-1학기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5조 제2, 4, 5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4항)은 2023.05.21.부터 시행한다.

20)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19.11.18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학칙 제88조의4에 따라 산업체와의 협력에 따라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내규는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에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학원과정 및 의료원, 미래캠퍼스에 설치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약학과는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는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①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 입학자격을 갖추고 산업체에 10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이 가운데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제6조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해당 산업체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학년도별 입학생의 학위과정 완료시까지 전체 소요비용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산업체는 제1항의 운영경비 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는 산업체와의 협약으로 정하되,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수학년한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전항의 운영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산업체는 학생의 졸업 시까지 제6조 제1항의 산업체 운영비를 동일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협약 시 산업체가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전공 이수 등) 계약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 및 과정 등은 선택할 수 없다.

1. 학칙 제23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속변경
2. 제40조에 따른 부전공,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3. 제40조의 2에 따른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4. 제40조의 3에 의한 Honor 프로그램
5. 제40조의 4에 의한 전공심화 및 융합트랙

제10조 (졸업이수학점) 졸업요건은 학칙 제51조와 같이 한다.

제11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휴학, 입대휴학, 출산 및 자녀 육아를 위한 휴학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심의를 위하여 입대확인서 또는 학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 ②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자는 제4조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 ③ 계약학과 폐지 시 당해 학과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13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재입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서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제14조 (계약학과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도래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학생 소속은 계약학과로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사관리 등) 학교는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1) 미래캠퍼스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학칙 제88조의 4에 따라 산업체와의 협력에 따라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에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별 내규로 정한다.

제5조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 입학자격을 갖추고 산업체에 10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가운데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② 학생선발의 방법은 계약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6조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해당 산업체가 부담하고, 그 범위는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업체는 제1항의 운영경비 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업료 등 납부)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약학과 폐지 등의 경우에는 14조에 따른다.

제8조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산업체와의 협약으로 정하되,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수학년한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의 전항의 운영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산업체는 학생의 졸업 시까지 제6조 제1항의 산업체 운영비를 동일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 ①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협약 시 산업체가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졸업 요건) ① 졸업이수학점은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2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재플은 두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출산, 육아, 부서이동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심의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은 재학기간 중 2회로 제한한다.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정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자는 제4조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졸업에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에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③ 계약학과에의 폐지 시 당해 학과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13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재입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서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제14조 (계약학과에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도래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학생 소속은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사관리 등) ① 이동수업의 경우 대학의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결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 (기타) ① 내규는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의 변경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이동수업은 본교수업과 적절하게 편성·운영하도록 하며, 미래캠퍼스 부총장 승인을 얻어 진행하도록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 제정 전에 운영내규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운영내규를 따른다.
- (3) 이 개정 규정(제17조 제2항)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2) 우등생 표창에 관한 내규

제정일: 1977.03.01

개정일: 2023.11.0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64조의 포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우등생은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창한다. 단, 의과대학의 최우등졸업 및 우등졸업생 선발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01.>

1. 최우등생 :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75/4.00, 4.00/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학년별 상위 1%이내인 자 <개정 2020.08.27.>
2. 우등생 :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50/4.00, 3.75/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학년별상위 3% 이내인 자 <개정 2020.08.27.>
3. 우수생 :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50/4.00, 3.75/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학년별상위 10% 이내인 자 <개정 2020.08.27.>
4. 최우등 졸업생 :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75/4.00, 4.00/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상위 1% 이내인 자 <개정 2020.08.27.>
5. 우등 졸업생 :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3.50/4.00, 3.75/4.30 이상으로서 대학별 상위 3%이내인 자 <개정 2020.08.27.>

제3조 (동점자 처리 및 예외사항) 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0 만점자와 4.3만점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선발한다.

② 당초입학생이 아닌 일반편입생, 학사편입생, 군위탁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및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수강철회자, 징계자, 소속변경자, 학기초과자, 학사학위수료자는 위 제2조의 제 4호 및 제5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약학대학 2+4년제 편입생은 제외되지 않는다. <개정 2015.8.6., 2019.06.14., 2020.08.27.>

③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S/U평가 과목을 제외함, 99학번 포함 그 이전 입학자는 18학점)미만인 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P/NP 및 S/U평가과목)에서 NP나 U의 성적을 받은 자, 수강철회자, 학기초과자, 징계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2.29., 2011.01.20., 2020.08.27.>

제4조 (대학별 선발 기준 예외사항) 학부대학(글로벌기초교육학부 포함)은 대학별·계열별·학년별

로, 원주의과대학은 대학별·학년별로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11.18., 2022.1.19.>

제5조 (시상시기)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은 성적산출학기의 다음 학기에, 최우등 졸업생·우등 졸업생은 학위수여일에 시상한다. 단,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중 졸업대상자의 시상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 (학적부 기재 등) 표창은 별지 서식의 상장을 수여하며, 학적부에 수상 사실을 기재한다.

제7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내규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4호)는 1984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3) 이 내규(전면개정)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 내규(제2조 3항)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 내규(제2조 3항)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 내규(제3조 제3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내규(제3조 제3항, 제5조)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은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 (8)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 (9)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세칙(제2조 각 항을 호로 변경,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 (12)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개정 내규(제2조 후단 단서 추가)는 2024.03.01.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최우등졸업 및 우등졸업자에 대한 포상은 이 규정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본다.

23) 계절제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9.11.18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7조②항 및 제43조③항에 따라 계절제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계절제수업(이하 계절학기) 이라 함은 방학에 운영되는 정규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3조 (수강자격) ① 서울(미래)캠퍼스 소속 학생 <개정 2017.04.26., 2019.09.26.>

② 국내교원협정대학 소속 학생

③ 삭제 <2016.10.05.>

제4조 (신청학점) ① 서울(미래)캠퍼스 학생은 최대 7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삭제 <2016.10.05.>

③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플, RA리더십, RC자기주도활동 과목은 최대 수강신청 학점의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2.29.>

제5조 (수강과목) ① 계절학기에는 서울캠퍼스, 미래캠퍼스, 국내교환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6.>

② 계절학기는 동일 캠퍼스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며, 캠퍼스 간 교차수강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강좌에 대한 교차수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1.21>

③ 계절제 수업에 개설하는 사회봉사 과목은 졸업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신설 2014.12.29.>

제6조 (학점인정) ① 계절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졸업학점 및 평량평균에 반영된다. 단, 2003학번 이전 학생이 이수한 계절학기과목은 취득학점만 인정되며 평량평균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②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당해 연도 졸업사정에 반영된다. 단, 휴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한 과목 이상을 등록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9.06.14.>

제7조 (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되며, 국제하계·동계대학 개설과목 수강료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2.12.>

제8조 (미등록 수강취소) 계절학기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수강취소 처리한다.

제9조 (수강철회) 계절학기는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 (등록취소) ①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수강변경, 등록 등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수강변경,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록 후에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2 이전까지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6.14., 2019.11.18.>

1. 삭제<2019.06.14.>

2. 삭제<2019.06.14.>

3. 삭제<2019.06.14.>

②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1., 2019.06.14>

③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개강전일까지 취소 : 등록금 전액

2. 개강후 수업일수 1/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2/3 <개정 2019.11.18.>

3. 개강후 수업일수 1/2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1/2 <개정 2019.11.18.>

제11조 (재수강) 정규학과와 계절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교차 재수강이 가능하다. 재수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수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조 (국내교환대학 수강) 계절학기에도 국내교환대학에서 학점이수가 가능하다. 국내교환대학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대학 교환학생에 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 (성적평가) 계절학기의 시험 및 성적평가는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 (1) 이 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
- (2) 이 시행세칙(제10조①②③항)은 200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세칙 (제7조)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3항(신설), 제5조 제3항(신설))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① 이 개정내규(제6조 제2항)는 개정일(2019.06.14.)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내규(제10조 제1항, 제2항)는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호)는 2019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

24) 미래캠퍼스 소속변경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소속변경 시행세칙」 제7조 (캠퍼스별 소속변경 운영)에 의거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소속변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변경 자격) 미래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국제학부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한다.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의 경우 1전공이 결정된 이후부터 소속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21.05.04.>

제3조 (소속변경 허용범위) ① 미래캠퍼스의 학부(전공)·계열·학과는 소속변경 할 수 있는 학부(전공)·계열·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는 2학년까지의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단,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과(특별학사학위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부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5.04.>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서울캠퍼스의 규정에 따른다. 단, 졸업신청 시 전공을 확정하는 2020학년도 이전 미래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는 통합학부이므로 학부소속이라든가 전공배정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1.05.04.>

③ 미래캠퍼스내 소속변경 승인인원은 따로 정한다.

④ 동아시아국제학부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를 원주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에서 소속변경 자격을 심의한다. 이때 소속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전공학점 이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전입하는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③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전공책임23.교수)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소속변경 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①, ②항)은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25) 영어인증제 시행세칙

제정일: 2010.01.17

개정일: 2023.09.01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 제4호에 의한 영어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0.00>

제2조 (인증의 구분) 대학은 학생의 영어능력을 최고영예인증, 영예인증, 고급인증, 연세영어인증으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개정 2011.01.20>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2010~2017학년도 신입생 및 2012~2019학년도 편입생은 제2조에 정한 영어능력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한다. 단, 교무처장이 정한 학생들에게는 안전망 프로그램 충족한 경우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1.20., 2019.06.14.>

② 2009학년도 신입생 중 영어인증을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심사를 통하여 영어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06.01>

④ 영어인증요건 취득이 교과목 이수 의무를 대체하지 못한다.

제4조 (진단평가 실시 및 이수과목 배정) ① 신입생 및 편입생은 학기 개시일 전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학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평가에 응시하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된 영어과목을 1학년(편입생은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 및 2학기에 나누어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진단평가 응시 또는 지정된 영어과목 수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단평가 실시일 전까지 학부대학 영어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영

어공인시험에서 소정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 공식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인증 기준) ① 영어인증의 요건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개정 2019.06.14., 2014.02.12, 2013.02.04, 2012.11.29, 2011.01.20., 2010.06.01., 2023.09.01.>

②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영어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의 학기 1/2선 전까지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학부대학사무실에 제출하여 영어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②항의 외부공인시험 성적이 영어 교과목의 성적부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취득한 영어교과목의 성적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삭제> (2023.02.04)

제6조 (인증 기록) ① 영어인증의 기록은 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기록한다.

② 영어인증은 상위인증 내역만 기록한다.

제7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원주캠퍼스 학생은 별도로 정한다.

(2) 이 개정 시행세칙 (제3조 ③항 삭제, [별표1] 1))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별표 1)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5조 별표 1)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5조 별표 1)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5조 별표 1)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별표1])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세칙(제1조 및 제5조 제1항 [별표1] 고급인증 및 안전망프로그램 인증요건 추가)은 2023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항의 별표1)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 구분	인증 요건
최고 영예인증 High Honors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이상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목(교양 전공) 가운데 최소 5과목(15학점) 모두 B- 이상 취득 -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Honors 최소 3과목 A+ 취득

인증 구분	인증 요건
영예인증 Honors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이상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목(교양 전공) 가운데 최소 5과목(15학점) 모두 B- 이상 취득 -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Honors 최소 2과목 A0 이상 취득
고급인증 Advanced	아래 9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고급대학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B- 이상 취득 - 대학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A0 이상 취득 - 고급대학영어 I, B- 이상 & 대학영어 II, A0 이상 취득 - 고급대학영어 II, B- 이상 & 대학영어 I, A0 이상 취득 - 표준인증 취득 후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최소 1과목 추가 이수(B- 이상 취득) - 안전망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dvanced 최소 1과목 추가 이수(B- 이상 취득) - TOEFL iBT 통합점수 105 이상 (Writing, Speaking 각각 25 이상) - IELTS 전체 band score 8 이상 (Writing, Speaking 각각 7.5 이상) - 고급대학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수강 면제를 받거나 학점 인정을 받음
연세영어인증 Yonsei English Certification	아래 9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고급대학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D- 이상 취득 - 대학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C- 이상 취득 - 고급대학영어 I, D- 이상 & 대학영어 II, C- 이상 취득 - 고급대학영어 II, D- 이상 & 대학영어 I, C- 이상 취득 - 대학영어 I, II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D+ 이하를 취득하였거나, 안전망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termediate 최소 1과목 추가 이수(C+ 이상 취득) - 편입생 및 캠퍼스간 소속변경생으로서 대학영어 I, II 또는 대학영어 I, 고급대학영어 II 또는 대학영어 II, 고급대학영어 I로 학점 인정을 받음 - 대학기본영어 I(II) C+ 이상 & 대학영어 II(I) A0 이상 취득 - 대학기본영어 I(II) C+ 이상 & 고급대학영어 II(I) B- 이상 취득 - 캠퍼스 내 소속변경생으로서 자신의 영어진단평가(대학기본영어 이상)와 동일하거나 상위수준의 과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전적 단과대학의 교과목으로 인정받거나 추후 수강하여 C- 이상 취득한 경우

인증 구분	인증 요건
안전망 프로그램* Safety Net Program	아래 8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대학기본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C+ 이상 취득 - 졸업하는 학기까지 Safety Net 시험 통과(복수 응시 가능). 단, 시험대상자는 다음 ④ 또는 ⑥로 한정함 ④ 대학기본영어 I, II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C0~D- ⑥ 대학영어 I, II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D+~D- - 편입생 및 캠퍼스간 소속변경생으로서 자신의 영어진단평가결과(대학기본영어 이상)와 동등하거나 상위수준의 과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전적대학의 교과목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본교에서 수강하여 안전망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 대학기본영어 I (II) C+ 이상 & 대학영어 II (I) C- 이상 취득 - 대학기본영어 I (II) C+ 이상 & 고급대학영어 II (I) D- 이상 취득 - 대학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수강 면제를 받거나 학점 인정을 받음 - 대학기본영어 I, II 두 과목 모두 수강 면제를 받거나 학점 인정을 받음 - 2010~2017학년도 신입생 및 일반편입생(신촌캠퍼스 소속)으로 영어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중 대학기본영어 수강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외부공인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

* 안전망 프로그램은 영어인증 수준으로 표기되지 않음

26)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14.02.12

개정일: 2022.01.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조 제3항에 의한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교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교류대학에서의 수학

제3조 (교류대학) 교류대학은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수학기간 및 학적) ①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학하는 학생(이하 “복수학위학생”이라 한다)의 수학학기는 교류대학에서 2학기 이상으로 한다.

- ②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 ③ 수학기간 동안 소속대학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④ 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하며, 졸업연기 및 수료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1.19.>
- ⑤ 조기졸업, 복수전공,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복수학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9.>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재학한 당초 입학생 <개정 2022.1.19.>
2. 학업성적이 3.0/4.3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
3. 지원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응시한 토플 성적에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단, 영어 이외 언어권 대학에서 수학 시 해당 어학능력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개정 2022.1.19.>
가. 자연, 예체능계: CBT 190, iBT 68점 이상
나. 그 외 계열: CBT 213, iBT 79점 이상
4.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6조 (지원절차 및 시기) 복수학위 지원자는 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토플 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
5. 지도교수 추천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 (선발절차) 복수학위학생 선발은 소속대학이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파견시기 및 선발인원) ① 파견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 ② 선발인원은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9조 (등록) 복수학위학생은 매학기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학사관리) ① 복수학위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 ② 복수학위학생의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속대학에서 관리한다.

제11조 (과정 이수) ①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복수학위학생은 본교와 협정교에서 동시에 수학할 수 없다. <신설 2022.1.19.>

제12조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①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소속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으로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복수학위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 이수과목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

을 소속학과의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학과의 학기당 수강제한 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개정 2022.1.19.>
- ④ 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되, 평량평균 환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복수학위생은 학기별 (최)우등 및 우수생 선발과 졸업(최)우등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10.>

제13조 (복수학위의 중도포기) ① 복수학위학생으로 선발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복수학위 이수포기원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를 적용한다.

- ② 복수학위과정 이수 중 제적된 학생은 과정 이수를 취소한 것으로 보며, 재입학하여도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22.1.19.>
- ③ 총장은 본교 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위반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프로그램 중단과 복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14조 (졸업요건) ① 복수학위학생은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복수학위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졸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위수여) ① 복수학위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학위를 취득한다.

-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증명이나 교류대학에서 수여한 학위에 대한 증명은 본교에서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9.>

제16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제 규정 및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3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제17조 (지원자격)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학생(이하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교류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 (수학기간 및 학점취득)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2학기 이상으로 하되, 우리대학교의 해당 학과 수학연한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위 기간 내에 학위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 중 교류대학 및 본교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대 1학기 이내에서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 ② 수강신청 및 변경,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등록)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양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 (취득학점 처리)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②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본교 학칙 상의 졸업 학점의 4분의 1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9.11.18.>

③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학점처리 및 졸업사정은 본교 소속대학에서 관장한다.

제21조 (학사지도 및 관리) ①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교류대학교와 본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도 본교 학생에 준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학위수여) 복수학위과정 외국학생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본교 학위를 취득한다.

제23조 (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4장 과정의 설치 <장 신설 2022.1.19.>

제24조 (협정체결) ①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과(부)장은 개설 예정 학년도 전 해의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협정서(안)
2. 복수학위 개설 계획서 1부
3. 학과(부) 교수회의록 사본 1부
4. 교학간담회 회의록 등 해당 학과(부) 학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 제2호의 복수학위 개설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입 배경
2. 학생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 선발기준. 단 연간 선발 인원은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단 학과(부)별 최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교류인원의 차이를 조정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3. 양교의 수학기한, 이수학점, 학점인정 방법, 기타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 운영 방법
4. 양교의 졸업·수료 요건, 학위명칭(한글,영문)·서명방법, 학위수여기준 및 졸업심사절차
5. 등록금 납부 방법
6. 재정지원 여부(장학금 등 제비용)
7. 프로그램 운영 기간
8.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복수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각 학과(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19.>

제25조(프로그램 설치 심의) ① 양교 간 협정 체결 여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정은 개설 예정 학기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정 체결 후 학제 차이, 양교의 과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0조 제2항)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0조 제2항)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9)

-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3항, 제13조제1항, 제3장 제목 및제18조 개정과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2항, 제4장 제24조 및 제25조 신설)은 2022.1.20.일부터 시행한다.

27) 학부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학부과정에 적용하며, 의료원(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88조의 4에 의한 계약학과는 학과별로 별도의 교과과정 운영 지침을 둘 수 있다.

제2장 교육과정의 편성

제3조 (교육과정 운영 기구) ①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각 학부(과), 전공(이하 통칭하여 학과라 함)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되, 교육과정위원회는 각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학별 특성에 따라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로 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대학에 각 소관별 위원회를 둔다.

- ④ 단과대학 및 학과, 학부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개편 주기 및 절차) ① 교육과정의 변경은 학년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신설이나 폐강, 변경은 학기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대학, 학과 및 학부대학이 학문의 변화, 사회 또는 학생 요구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이하 통칭하여 학과장이라 함)가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안을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의결한 개정안을 [별지 1]의 서식을 참조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
2. 대학장은 소속 학과장이 제출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과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3. 학과의 교육과정이 학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교무처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양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양과정은 대학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학부대학에서 편성한다. 다만, 교양이수요건의 변경, 교양 영역의 전반적인 개편 등의 주요한 사항은 학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교양 교과목의 개설은 학부대학에서 담당한다.
- ③ 교양 교과목은 매학기 동일과목을 반복하여 개설할 수 있다. 단, 수요가 적거나 매학기 담당 교원 초빙이 어려운 교과목은 격학기, 격년 또는 기타의 주기로 개설할 수 있다.

제6조 (전공과정 편성 및 운영) ① 학과는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인재상을 반영하고, 학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 ② 각 학과는 최소졸업이수학점, 최소전공이수학점 등에 대한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학과별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육성과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③ 학과는 최소전공학점의 3배 학점 수 이외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학정원 120명 이상의 학과에서는 50%를 가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세미나 또는 현장실습과목은 전공 교과목 편성 학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니어세미나, UT세미나
현장실습, 인턴십

- ④ 3년(6학기) 이상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필수교과목의 지정) ① 학과는 과목 또는 과목군을 지정하여, 일정 학점수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필수이수과목 및 학점은 단일전공자와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당초입학생과 편입학생 등에 대하여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직 등) ① 교직 및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학대학에서 담당한다.

- ② 교직 및 평생교육사 교과목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학기 또는 격학기로 개설할 수 있다.

제9조 (교과목 학정번호) ① 학부과정의 학정번호는 개설 학과를 표시하는 영문 3자리에 4자리 일련번호를 더하여 구성한다.

- ② 교과목 학정번호 중 일련번호는 각 전공별로 심화정도에 따라 1000, 2000, 3000, 4000단위로 구분한다.

제3장 교과목 개설, 분반, 폐강

제10조 (교과목 개설 제한) ① 교무처는 학과별 학기별 개설학점의 총량을 정하여 각 학과에 통보한다.

②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매년 개설하여야 하며, 1,2학기에 균형있게 안분하여 개설한다.

③ 전공과목은 동일과목을 1학과 2학기에 중복하여 개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포함하여 개설과목 중 일부를 대학기 개설할 수 있으나, 제1항의 개설학점 내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1. 학년도별 입학정원이 60명을 초과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목
2. 교양-전공간 교차인정 교과목
3. 교원 수급, 실험·실습실 등의 제약으로 2개 학기로 분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교과목
4. 제11조의 분반 기준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는 교과목

제11조 (교과목 분반) ① 강좌별 수강인원 및 분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05.20.>

1. 지식 전수 및 이론 학습을 위하여 강의중심 또는 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론 교과목: 전공과목은 강좌당 60명, 교양과목은 강좌당 70명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 정원의 150%를 초과할 경우 분반 운영. 단, 강의실 또는 기타 사정으로 분반이 어려운 경우 수업운영 지원을 위한 조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교 지원기준은 따로 정함
 2. 체험활동을 통해 지식탐구와 문제해결과정을 습득하는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및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습득을 목표로 전체 수업을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강좌당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정원의 150%를 초과할 경우 분반 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험, 실습, 실기가 혼합된 교과목의 경우 실험, 실습, 실기만 분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 ② 제1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공별 외부인증 요건 충족,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성, 공간, 장비 등의 제약으로 분반 기준 내에서 과목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5.20.>
- ③ 동일 교원이 담당하는 동일교과목에 대한 Online Classroom 교과목은 분반하지 아니하며, 군복무중학생 등의 수강을 위해 편이상 별도 분반으로 편성하여도 1개의 강좌로 본다. <개정 2023. 5. 20.>

제12조 (개설강좌의 폐강) ①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공 강좌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학정원 30명 미만 학과 개설강좌: 수강인원 4명 이하 강좌
 2. 입학정원 30명~41명 학과: 수강인원 7명 이하 강좌
 3. 입학정원 41명 이상 학과: 수강인원 9명 이하 강좌
 4. 주니어세미나: 수강인원 6명 이하 강좌
 5. 영어 또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수강인원 4명 이하 강좌
- ② 교양과목 및 계절학기 개설강좌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강좌: 수강인원 19명 이하 강좌
2. 정규학기에 개설된 제2외국어 강좌: 수강인원 6명 이하 강좌
3. 정규학기에 개설된 글쓰기 및 대학영어(ESP를 포함한다): 수강인원 14명 이하 강좌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영어 또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수강인원 4명 이하 강좌
- ③ 전 학년 1차 수강신청 완료 후 1차 폐강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고, 수강변경기간 첫째 날에 최종 폐강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되, 실험·실습·실기 분반을 운영하는 강좌 및 합반 수업을 실시하는 강좌는 수강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기에 개설된 다음 각 호의 강좌는 폐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1회 이하 개설되는 분반되지 않은 필수이수 과목
 2. 연1회 이하 개설되는 분반되지 않은 교직 및 평생교육사과정 교과목
 3. UT세미나, 음악대학 전공실기, 개별연구지도, 산학협동현장실습 교과목
-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강좌 중 학문보호를 위하여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요청과 대학장의 동의를 거쳐 교무처에 폐강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은 유보 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의 교과 이수

제13조 (교과 이수 기본 요건) ① 학생은 입학연도별로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생 및 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은 편입학 및 복수전공 시 부여된 학번의 이수요건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재학 중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교과이수요건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수이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학점을 낮추는 등과 같이 학생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변경은 재학생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다.
- ③ 제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학한 학생 등과 같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입학연도별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학과장은 당해 학생에게 별도 전공이수요건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학부(과)의 장은 재입학 첫 번째 학기 종료일 이전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그 요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양에 대한 대체 이수요건은 학부대학장이 정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제14조 (필수이수과목의 대체 등) ①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수이수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1. 필수이수 교과목이 1년 이상 개설되지 않은 경우
2. 이 외 학부(과)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필수이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대체이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대체과목은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운영

제15조 (수업시간 및 장소) ① 수업은 지정된 시간에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제한으로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수업
2. 응용력 및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수업
3. 타 대학 석학교원 또는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기당 15주 미만의 단기간에 운영하는 집중수업

③ 교무처장은 제2항의 수업에 대하여 운영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학생처(학생지원팀)에 수업장소, 수업기간, 수업참가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 상해보험적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 교과목) 산학협동현장실습과목은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점의 부여) ① 학점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속한 학기(정규학과와 계절학기를 모두 포함한다)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학 등을 사유로 이후에 학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학기 성적제출 마감일 이후까지 수업활동이 이어지는 실험·실습강의, 집중강의 또는 현장실습 등의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연속되는 학기에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연속된 학기에 휴학할 경우는 그 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

제6장 교육과정 개선

제18조 (강의 만족도 조사) ① 교무처는 매학기 2회 이상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원 소속 대학장, 학부(과)장 및 교원 본인에게 통보하며, 학사제도운영위원회가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③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 대상과 방법은 학년도 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정한다.

제19조 (교과목개선보고서) 학과장은 매 학기말 교원별 담당 과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교과목개선보고서(CQI)를 제출받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0.>

(2) (시행일) 이 개정 지침(제11조제1,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은 2023년 5월 21일부터 적용한다.

28)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위과정에서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한 원격수업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학위과정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격수업”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에서 교수-학습활동 전체 또는 일부가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 한다.
2. “원격수업교과목”(E-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70% 이상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은 “Online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3. “혼합원격수업교과목”(Blended Learning 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이상 70% 미만이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이 때,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비실시간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은 “Flipped Classroom” 교과목이라 한다.
4. “대면수업교과목”이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한 학기 수업의 30% 미만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즉, 대면수업을 위하여 개발한 교안 등을 단 순 업로드하거나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30.>

제4조 (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 부처장, 교수학습혁신센터장, 기획실 부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원 3인 그리고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인을 임명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은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제5조 (수업 개설) ①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무처는 원격수업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원격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 ③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원격수업교과목의 개설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거나 원격수업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6조 (동영상콘텐츠 제작) ① 학위과정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콘텐츠는 교수학습혁신센터의 가이드에 따라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다.

- ②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각 동영상콘텐츠 재생시간의 20%(25분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6. 30.〉

제7조 (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담당교원은 강의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업 개발 지원) ①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우수한 원격수업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수학습혁신 센터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제1항의 지원과 별도로 원격수업교과목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9조 (수업 구성) ①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0조 (수업 운영) ①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수업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원은 매주 수요일 정오까지 수업자료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의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며,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동영상콘텐츠 제공 주차 기준 30% 이상(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의 주차분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담당교원은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1조 (수업 질관리)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정보공유설문을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정보공유설문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원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 또는 그에 필요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2항의 수업 개선 또는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30.〉

제12조 (수업 출석) 비실시간 원격수업교과목 또는 혼합원격수업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교원이 지정한 시간까지 주차별 동영상 시청 완료하여야 하며, 시청 시한이 지정되지 않은 동영상은 매주 일요일 23:59까지 시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조 제목 변경 2022. 6. 30.>

제13조 (준법 의무)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수업 중 교원이나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본교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22. 6. 30.>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본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② 본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본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5조 (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①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2. 6. 30.>

-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10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22. 6. 30.>

제17조 (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류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0. 8. 27.>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운영 지침”과 “Flipped Classroom 강좌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2022. 6. 30.>

- (3) 이 개정 지침(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 제목, 제6조, 제8조 제목, 제9조 제목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3항, 제12조 제목 및 본문,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개정, 제16조 삭제)은 2022.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4.>

- (4) 이 개정 지침(제5조제3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3항의 개정 지침에 따른 내용은 2023년 1월 9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의결부터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29)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6조, 제63조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학문윤리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습과정에서 학문윤리를 어긴 학생을 징계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부정 행위) 학생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문윤리 위배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제3조 (처리절차) 학생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문윤리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학생이 소속한 학과장에게 신고하고, 학과장은 대학장에게 보고한다.
2. 대학장은 통보받은 학문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가.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는 대학장이 임명하며, 5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학생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사건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는 학생을 출석시켜 소명하게 할 수 있다.
3. 대학장은 부정행위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발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요청한다.
4. 대학장은 부정행위 제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제4조 (징계의 종류)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문윤리 위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표1]의 기준을 참조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제적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복수의 학생이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또는 2건 이상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 ③ 미수에 그친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5조 (제재조치)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 수혜 및 교외 장학금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관계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및 「학생 학벌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평가는 0점으로 하고, 근신의 처분을 부과한다.
 - 가. 시험 중에 옆을 돌아보는 경우
 - 나. 시험 중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 경우
 - 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부정 행위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과목은 0점으로 하고, 유기정학의 처분을 부과한다.
 - 가. 시험 중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응시자와 소통한 경우
 - 나.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고 쓰거나, 또는 보여달라고 강요한 경우
 - 다. 시험 중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 라. 강의실 벽이나 책상 등에 답안을 미리 작성해 둔 경우나, 그러한 자리에 앉은 경우
 - 마. 승인 없이 시험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 바. 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스마트폰, 통신기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서 휴대하고 있는 경우
 - 사. 온라인시험 중 2대 이상의 단말기에서 한 아이디로 중복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 아. 온라인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험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특수 키(Alt, Ctl, Function 키 등)를 사용하는 경우
 - 자. 실시간 온라인시험 중 감독관의 승인 없이 감독화면을 이탈하는 경우
 - 차. 신분증 제시 요구 등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 항거한 경우
 - 카. 과제 등 제출물에서 표절하거나 자료를 변조 또는 위조한 경우
 - 타. 동일한 과제물을 복수의 다른 시험이나 과제에 중복제출한 경우
 - 파. 대리출석한 경우 및 대리출석을 의뢰한 경우
 - 하.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과목은 0점으로 하고, 무기정학의 처분을 부과한다.
 - 가.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경우
 - 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 다. 시험답안지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한 경우
 - 라. 과제물을 구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

2024학년도 재적생 현황

〈기준일: 2024. 4. 1.〉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학부대 학	상경계열	286	0	0	0	0	0	286	6	0	0	0	0	6	12	0	0	0	0	0	0	12	0	304
	경영계열	364	0	0	0	0	0	364	4	0	0	0	0	4	10	0	0	0	0	0	0	10	0	378
	사회과학계열	334	0	0	0	0	0	334	12	0	0	0	0	12	6	0	0	0	0	0	0	6	0	352
	인문계열	465	0	0	0	0	0	465	17	0	0	0	0	17	19	0	0	0	0	0	0	19	0	501
	이학계열	242	0	0	0	0	0	242	10	0	0	0	0	10	22	0	0	0	0	0	0	22	0	274
	생활과학계열	159	0	0	0	0	0	159	3	0	0	0	0	3	4	0	0	0	0	0	0	4	0	166
	공학계열	949	0	2	0	0	0	951	38	2	1	0	0	41	65	3	0	0	0	0	0	68	0	1,060
	컴퓨팅계열	156	0	0	0	0	0	156	4	0	0	0	0	4	5	0	0	0	0	0	0	5	0	165
	간호학전공	83	0	0	0	0	0	83	1	0	0	0	0	1	2	0	0	0	0	0	0	2	0	86
	신학계열	55	0	0	0	0	0	55	3	0	0	0	0	3	1	0	0	0	0	0	0	1	0	59
	생명시스템계열	142	0	0	0	0	0	142	11	0	0	0	0	11	5	0	0	0	0	0	0	5	0	158
	교육과학계열	63	0	0	0	0	0	63	2	0	0	0	0	2	3	0	0	0	0	0	0	3	0	68
	약학계열	40	0	0	0	0	0	40	3	0	0	0	0	3	3	0	0	0	0	0	0	3	0	46
소계	3,338	0	2	0	0	0	3,340	114	2	1	0	0	117	157	3	0	0	0	0	0	160	0	3,617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문과대 학	국어국문학	0	68	70	78	0	0	216	0	5	17	30	0	52	0	9	4	2	0	0	15	18	301
	중어중문학	0	57	54	68	0	0	179	0	6	21	26	0	53	0	20	1	2	0	0	23	13	268
	영어영문학	0	89	98	136	0	0	323	0	1	36	50	0	87	0	12	7	3	0	0	22	28	460
	사학	0	52	61	63	0	0	176	0	11	15	30	0	56	0	14	9	7	0	0	30	17	279
	철학	0	44	54	51	0	0	149	0	4	12	24	0	40	0	9	2	2	0	0	13	4	206
	문헌정보학	0	40	41	54	0	0	135	0	0	20	23	0	43	0	12	4	1	0	0	17	10	205
	심리학	0	65	107	96	0	0	268	0	9	22	17	0	48	0	11	6	1	0	0	18	10	344
	독어독문학	0	36	27	49	0	0	112	0	4	14	28	0	46	0	4	5	7	0	0	16	13	187
	불어불문학	0	29	47	54	0	0	130	0	4	17	22	0	43	0	6	1	0	0	0	7	10	190
	노어노문학	0	30	45	38	0	0	113	0	3	17	19	0	39	0	4	3	2	0	0	9	13	174
	소계	0	510	604	687	0	0	1,801	0	47	191	269	0	507	0	101	42	27	0	0	170	136	2,614
상경대 학	경제학과	0	182	295	245	0	0	722	0	33	87	139	0	259	0	77	62	9	0	0	148	66	1,195
	응용통계학과	0	82	89	97	0	0	268	0	8	23	34	0	65	0	33	14	4	0	0	51	11	395
	소계	0	264	384	342	0	0	990	0	41	110	173	0	324	0	110	76	13	0	0	199	77	1,590
경영대 학	경영학과	0	381	518	390	0	0	1,289	0	43	210	221	0	474	0	115	68	12	0	0	195	112	2,070
	소계	0	381	518	390	0	0	1,289	0	43	210	221	0	474	0	115	68	12	0	0	195	112	2,070
이과대 학	수학	0	45	46	67	0	0	158	0	3	12	16	0	31	0	20	14	10	0	0	44	2	235
	물리학	0	48	44	53	0	0	145	0	4	9	9	0	22	0	20	12	5	0	0	37	4	208
	화학	0	47	61	65	0	0	173	0	5	13	6	0	24	0	20	13	9	0	0	42	2	241
	천문·우주학	0	32	23	47	0	0	102	0	3	6	4	0	13	0	18	10	3	0	0	31	6	152
	대기과학	0	34	40	29	0	0	103	0	4	7	10	0	21	0	5	6	1	0	0	12	9	145
	지구시스템과학	0	26	29	42	0	0	97	0	4	5	8	0	17	0	11	15	3	0	0	29	5	148
	소계	0	232	243	303	0	0	778	0	23	52	53	0	128	0	94	70	31	0	0	195	28	1,129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공과대 학	화공생명공학	0	104	116	128	0	0	348	0	13	26	26	0	65	0	30	39	10	0	0	79	6	498
	건축공학과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토목·환경공학	0	0	0	39	0	0	39	0	0	0	16	0	16	0	0	0	0	0	0	0	10	65
	건설환경공학	0	88	68	63	0	0	219	0	11	13	10	0	34	0	36	14	2	0	0	52	1	306
	건축공학	0	32	48	71	0	0	151	0	6	12	27	0	45	0	16	5	2	0	0	23	5	224
	도시공학	0	30	47	41	0	0	118	0	7	16	19	0	42	0	14	12	4	0	0	30	7	197
	건축학(5년제)	0	39	37	31	54	0	161	0	2	9	9	10	30	0	7	12	2	2	0	23	2	216
	신소재공학	0	112	149	150	0	0	411	0	13	27	31	0	71	0	68	22	8	0	0	98	16	596
	시스템반도체공학과	0	42	14	0	0	0	56	0	5	8	0	0	13	0	7	12	0	0	0	19	0	88
	정보산업공학	0	0	0	7	0	0	7	0	0	0	7	0	7	0	0	0	0	0	0	0	3	17
	산업공학과	0	45	66	27	0	0	138	0	3	13	20	0	36	0	15	16	6	0	0	37	4	215
	전기전자공학	0	241	269	291	0	0	801	0	37	47	51	0	135	0	134	58	11	0	0	203	22	1,161
생명시 스템대 학	기계공학	0	145	169	199	0	0	513	0	33	16	34	0	83	0	93	47	14	0	0	154	16	766
	소계	0	878	983	1,048	54	0	2,963	0	130	187	250	10	577	0	420	237	59	2	0	718	92	4,350
	생화학	0	28	45	35	0	0	108	0	3	6	8	0	17	0	11	6	2	0	0	19	0	144
	시스템생물학	0	43	41	42	0	0	126	0	3	19	16	0	38	0	7	6	0	0	0	13	2	179
	생명공학	0	68	76	86	0	0	230	0	10	20	10	0	40	0	24	13	4	0	0	41	6	317
인공지능 융합 대학	소계	0	139	162	163	0	0	464	0	16	45	34	0	95	0	42	25	6	0	0	73	8	640
	컴퓨터공학과	0	111	126	129	0	0	366	0	9	24	24	0	57	0	35	27	12	0	0	74	12	509
	인공지능학과	0	25	0	0	0	0	25	0	1	0	0	0	1	0	0	0	0	0	0	0	0	26
	IT융합공학	0	19	11	4	0	0	34	0	2	0	2	0	4	0	3	0	2	0	0	5	0	43
	소계	0	155	137	133	0	0	425	0	12	24	26	0	62	0	38	27	14	0	0	79	12	578
신과대 학	신학과	0	38	55	61	0	0	154	0	6	14	19	0	39	0	10	11	7	0	0	28	12	233
	소계	0	38	55	61	0	0	154	0	6	14	19	0	39	0	10	11	7	0	0	28	12	233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사회과 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	112	140	132	0	0	384	0	5	35	95	0	135	0	25	16	4	0	0	45	28	592	
	행정학과	0	98	107	120	0	0	325	0	10	39	103	0	152	0	20	15	7	0	0	42	28	547	
	사회복지학과	0	34	37	45	0	0	116	0	2	13	20	0	35	0	9	1	0	0	0	10	13	174	
	언론홍보영상학	0	99	129	90	0	0	318	0	8	29	40	0	77	0	7	18	2	0	0	27	25	447	
	사회학과	0	50	70	63	0	0	183	0	8	23	25	0	56	0	19	8	1	0	0	28	18	285	
	문화인류학과	0	21	20	25	0	0	66	0	3	9	8	0	20	0	3	2	2	0	0	7	5	98	
	소계	0	414	503	475	0	0	1,392	0	36	148	291	0	475	0	83	60	16	0	0	159	117	2,143	
음악대 학	교회음악과	18	17	22	18	0	0	75	1	1	4	6	0	12	0	2	1	0	0	0	3	4	94	
	성악과	24	21	30	35	0	0	110	1	4	4	5	0	14	1	7	1	0	0	0	9	0	133	
	피아노과	22	19	17	33	0	0	91	1	1	3	6	0	11	0	1	1	1	0	0	3	0	105	
	관현악과	43	37	48	44	0	0	172	4	4	10	4	0	22	2	1	7	2	0	0	12	0	206	
	작곡과	21	28	20	19	0	0	88	2	0	10	6	0	18	0	0	3	1	0	0	4	0	110	
	소계	128	122	137	149	0	0	536	9	10	31	27	0	77	3	11	13	4	0	0	31	4	648	
	생활과 학대학	의류환경	0	32	52	48	0	0	132	0	5	14	19	0	38	0	5	2	2	0	0	9	11	190
식품영양		0	28	41	40	0	0	109	0	6	6	9	0	21	0	2	7	2	0	0	11	7	148	
실내건축학		0	35	36	38	0	0	109	0	4	13	16	0	33	0	2	4	0	0	0	6	7	155	
아동·가족		0	35	45	45	0	0	125	0	3	9	24	0	36	0	4	1	0	0	0	5	7	173	
생활디자인		0	32	51	48	0	0	131	0	5	11	10	0	26	0	0	2	1	0	0	3	8	168	
소계		0	162	225	219	0	0	606	0	23	53	78	0	154	0	13	16	5	0	0	34	40	834	
교육과 학대학		교육학과	0	58	64	73	0	0	195	0	4	13	26	0	43	0	11	7	0	0	0	18	12	268
	체육교육학과	50	54	45	64	0	0	213	0	8	11	17	0	36	2	19	5	6	0	0	32	4	285	
	스포츠레저학과	0	0	0	15	0	0	15	0	0	1	8	0	9	0	0	0	1	0	0	1	3	28	
	스포츠응용산업학과	49	58	52	41	0	0	200	1	4	13	24	0	42	4	16	6	7	0	0	33	1	276	
	소계	99	170	161	193	0	0	623	1	16	38	75	0	130	6	46	18	14	0	0	84	20	857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261	8	3	1	0	0	273	25	11	1	0	0	37	3	6	0	0	0	0	9	0	319	
	비교문학과문화	0	16	25	27	0	0	68	0	1	5	2	0	8	0	2	0	1	0	0	3	0	79	
	경제학	0	168	144	128	0	0	440	0	14	50	82	0	146	0	33	19	3	0	0	55	23	664	
	국제학	0	58	55	66	0	0	179	0	2	12	27	0	41	0	5	2	2	0	0	9	10	239	
	정치외교학	0	20	20	31	0	0	71	0	3	5	15	0	23	0	3	1	1	0	0	5	3	102	
	생명과학공학	0	39	34	24	0	0	97	0	5	8	4	0	17	0	4	3	2	0	0	9	0	123	
	융합인문사회과학부	222	10	15	1	0	0	248	18	3	1	1	0	23	6	4	1	0	0	0	11	0	282	
	아시아학	0	21	23	22	0	0	66	0	2	5	14	0	21	0	3	0	0	0	0	3	11	101	
	문화디자인경영	0	39	41	49	0	0	129	0	0	8	6	0	14	0	1	3	0	0	0	4	9	156	
	정보·인터랙션 디자인	0	15	22	18	0	0	55	0	1	6	2	0	9	0	1	1	1	0	0	3	4	71	
	창의기술경영	0	20	34	48	0	0	102	0	0	6	18	0	24	0	7	3	1	0	0	11	8	145	
	사회정의리더십	0	17	4	11	0	0	32	0	0	5	6	0	11	0	0	0	1	0	0	1	1	45	
	계량위험관리	0	116	102	55	0	0	273	0	5	31	26	0	62	0	22	12	0	0	0	34	7	376	
	과학기술정책	0	0	4	17	0	0	21	0	0	1	0	0	1	0	0	1	1	0	0	2	0	24	
	지속개발협력	0	9	14	19	0	0	42	0	1	3	9	0	13	0	2	0	0	0	0	2	5	62	
	융합과학공학부	95	6	17	2	0	0	120	8	3	1	0	0	12	2	3	2	0	0	0	7	0	139	
	나노과학공학	0	59	54	48	0	0	161	0	3	4	6	0	13	0	8	14	6	0	0	28	4	206	
	에너지환경융합	0	7	4	11	0	0	22	0	0	2	2	0	4	0	0	1	0	0	0	1	1	28	
바이오융합	0	24	37	43	0	0	104	0	3	3	6	0	12	0	3	2	2	0	0	7	4	127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0	0	6	0	0	0	6	0	0	0	0	0	0	0	0	3	0	0	0	3	0	9		
융합인문사회계열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578	652	659	621	0	0	2,510	51	57	157	226	0	491	11	107	68	21	0	0	207	90	3,298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글로벌 인재대 학	글로벌인재학부	170	4	3	0	0	0	177	10	6	2	1	0	19	1	2	2	0	0	0	5	0	201
	한국문화·통상전공	0	0	0	3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2	5
	국제통상전공	0	54	89	75	0	0	218	0	8	19	30	0	57	0	15	7	1	0	0	23	18	316
	한국문화전공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문화·미디어전공	0	8	39	69	0	0	116	0	3	7	16	0	26	0	1	2	0	0	0	3	7	152
	문화미디어전공	0	67	42	0	0	0	109	0	4	6	0	0	10	0	5	0	0	0	0	5	0	124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0	4	17	14	0	0	35	0	1	4	1	0	6	0	0	0	0	0	0	0	0	41
	바이오생활공학전공	0	16	16	8	0	0	40	0	0	3	3	0	6	0	6	1	0	0	0	7	1	54
	응용정보공학전공	0	13	9	2	0	0	24	0	0	3	3	0	6	0	12	3	0	0	0	15	0	45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인문계열	21	0	0	0	0	0	21	4	0	0	0	0	4	0	0	0	0	0	0	0	0	25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이학계열	2	0	0	0	0	0	2	1	0	0	0	0	1	0	0	0	0	0	0	0	0	3
	글로벌기초교육학부 공학계열	10	0	0	0	0	0	10	2	0	0	0	0	2	0	0	0	0	0	0	0	0	1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컴퓨팅계열	23	0	0	0	0	0	2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생활과학계열	19	0	0	0	0	0	19	1	0	0	0	0	1	0	0	0	0	0	0	0	0	20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상경계열	13	0	0	0	0	0	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글로벌기초교육학부 경영계열	40	0	0	0	0	0	40	2	0	0	0	0	2	0	0	0	0	0	0	0	0	4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사회과학계열	32	0	0	0	0	0	32	2	0	0	0	0	2	1	0	0	0	0	0	1	0	35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생명시스템계열	9	0	0	0	0	0	9	1	0	0	0	0	1	0	0	0	0	0	0	0	0	10	
글로벌기초교육학부 교육과학계열	2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신학계열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342	166	215	171	0	0	894	23	22	44	54	0	143	2	41	15	1	0	0	59	28	1,124
약학대 학	약학과	0	25	31	28	41	45	170	0	0	0	1	2	3	0	1	2	1	3	0	7	0	180
	소계	0	25	31	28	41	45	170	0	0	0	1	2	3	0	1	2	1	3	0	7	0	180
신촌·국제캠퍼스 합계		4,485	4,308	5,019	4,983	95	45	18,935	198	484	1,305	1,797	12	3,796	179	1,235	748	231	5	0	2,398	776	25,905
의과대 학	의예과	120	118	0	0	0	0	238	0	5	0	0	0	5	1	0	0	0	0	0	1	0	244
	의학과	129	130	126	120	0	0	505	1	4	0	2	0	7	2	1	2	1	0	0	6	0	518
	소계	249	248	126	120	0	0	743	1	9	0	2	0	12	3	1	2	1	0	0	7	0	762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치과대 학	치의예과	65	63	0	0	0	0	128	1	12	0	0	0	13	2	1	0	0	0	0	0	3	0	144
	치의학과	58	59	63	67	0	0	247	3	0	1	0	0	4	0	0	0	0	0	0	0	0	0	251
	소계	123	122	63	67	0	0	375	4	12	1	0	0	17	2	1	0	0	0	0	0	3	0	395
간호대 학	간호학과	0	69	103	114	0	0	286	0	6	10	33	0	49	0	4	4	7	0	0	15	1	351	
	소계	0	69	103	114	0	0	286	0	6	10	33	0	49	0	4	4	7	0	0	15	1	351	
서울캠퍼스 합계		4,857	4,747	5,311	5,284	95	45	20,339	203	511	1,316	1,832	12	3,874	184	1,241	754	239	5	0	2,423	777	27,413	
RC융합 대학	자율융합계열(사회)	0	5	0	0	0	0	5	5	1	0	0	0	6	5	1	0	0	0	0	6	0	17	
	자율융합계열(공학)	1	1	0	0	0	0	2	5	1	0	0	0	6	0	1	0	0	0	0	1	0	9	
	자율융합계열(자연과학)	0	1	0	0	0	0	1	4	1	0	0	0	5	0	1	0	0	0	0	1	0	7	
	자율융합계열	764	18	0	0	0	0	782	51	11	0	0	0	62	41	9	0	0	0	0	50	0	894	
	동아시아국제학부	45	0	0	0	0	0	45	4	0	0	0	0	4	3	0	0	0	0	0	3	0	52	
	글로벌엘리트학부	170	0	0	0	0	0	170	8	0	0	0	0	8	0	0	0	0	0	0	0	0	178	
	디자인예술학부	65	0	0	0	0	0	65	7	0	0	0	0	7	3	0	0	0	0	0	3	0	75	
	AI반도체학부	51	0	0	0	0	0	5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52	
	소프트웨어학부	130	0	0	0	0	0	130	11	0	0	0	0	11	11	0	0	0	0	0	11	0	152	
	데이터사이언스학부	41	0	0	0	0	0	41	3	0	0	0	0	3	2	0	0	0	0	0	2	0	46	
	디지털헬스케어학부	56	0	0	0	0	0	56	6	0	0	0	0	6	4	0	0	0	0	0	4	0	66	
	임상병리학과	50	0	0	0	0	0	5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51	
	물리치료학과	43	0	0	0	0	0	43	1	0	0	0	0	1	2	0	0	0	0	0	2	0	46	
	작업치료학과	38	0	0	0	0	0	3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8	
	방사선학과	34	0	0	0	0	0	34	2	0	0	0	0	2	3	0	0	0	0	0	3	0	39	
	치위생학과	31	0	0	0	0	0	31	1	0	0	0	0	1	0	0	0	0	0	0	0	0	32	
	AI보건정보관리학과	32	0	0	0	0	0	3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2	
소계	1,551	25	0	0	0	0	1,576	109	14	0	0	0	123	75	12	0	0	0	0	0	87	0	1,786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인문예 술대학	인문과학부	1	0	2	0	0	0	3	1	0	1	0	0	2	0	1	1	0	0	0	2	0	7
	국어국문학	0	3	13	36	0	0	52	0	1	2	14	0	17	1	1	1	0	0	0	3	3	75
	영어영문학	0	2	12	36	0	0	50	0	2	7	16	0	25	0	1	7	3	0	0	11	4	90
	철학	0	3	3	14	0	0	20	0	1	2	7	0	10	0	0	2	1	0	0	3	1	34
	역사문화학	0	0	13	22	0	0	35	0	1	1	10	0	12	0	2	3	2	0	0	7	1	55
	디자인예술학부	0	6	34	59	0	0	99	0	5	6	29	0	40	2	5	5	3	0	0	15	0	154
	산업디자인학	0	0	0	4	0	0	4	0	0	0	2	0	2	0	0	1	0	0	0	1	2	9
	시각디자인학	0	0	0	5	0	0	5	0	0	0	5	0	5	0	0	0	0	0	0	0	4	14
	디지털아트학	0	0	0	1	0	0	1	0	0	0	2	0	2	0	0	0	0	0	0	0	1	4
	소계	1	14	77	177	0	0	269	1	10	19	85	0	115	3	10	20	9	0	0	42	16	442
정경대 학	경영학부	0	2	8	0	0	0	10	0	0	1	1	0	2	3	0	0	0	0	0	3	0	15
	경영학	0	13	73	194	0	0	280	0	6	19	90	0	115	0	8	9	14	0	0	31	11	437
	사회과학부	0	4	1	3	0	0	8	0	2	0	0	0	2	1	1	0	0	0	0	2	0	12
	경제학	0	3	38	67	0	0	108	0	3	7	34	0	44	0	1	4	7	0	0	12	4	168
	글로벌행정학	0	1	16	47	0	0	64	0	2	2	17	0	21	0	1	0	5	0	0	6	5	96
	국제관계학	0	0	10	35	0	0	45	0	0	1	13	0	14	0	1	3	3	0	0	7	0	66
	소계	0	23	146	346	0	0	515	0	13	30	155	0	198	4	12	16	29	0	0	61	20	794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과학기술 술대학	자연과학부	1	1	3	2	0	0	7	0	1	0	0	0	1	1	0	0	0	0	0	1	0	9
	수학	0	0	4	3	0	0	7	0	0	3	4	0	7	0	0	1	0	0	0	1	1	16
	물리학	0	0	6	20	0	0	26	0	0	3	6	0	9	0	1	1	4	0	0	6	0	41
	정보통계학	0	0	10	43	0	0	53	0	0	7	14	0	21	0	3	2	2	0	0	7	1	82
	화학및의화학	0	1	24	42	0	0	67	0	0	2	6	0	8	0	3	4	1	0	0	8	4	87
	생명과학기술학부	0	1	18	5	0	0	24	2	4	2	1	0	9	0	2	4	0	0	0	6	0	39
	생명과학	0	0	1	35	0	0	36	0	0	0	7	0	7	0	0	2	1	0	0	3	1	47
	응용생명과학	0	0	5	32	0	0	37	0	0	2	5	0	7	0	0	1	1	0	0	2	1	47
	응용과학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1
	패키징학	0	0	10	20	0	0	30	0	0	3	6	0	9	0	0	5	1	0	0	6	1	46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0	1	35	77	0	0	113	0	5	4	11	0	20	1	2	6	2	0	0	11	0	144
	컴퓨터공학	0	0	0	10	0	0	10	0	0	1	3	0	4	0	0	0	2	0	0	2	3	19
정보통신공학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1	0	2	
소계	1	4	116	290	0	0	411	2	10	27	63	0	102	3	11	26	15	0	0	55	12	580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보건과 학대학	보건행정학과	0	1	15	34	0	0	50	0	0	1	11	0	12	0	0	0	0	0	0	0	0	0	62
	환경공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3
	임상병리학과	0	1	10	28	0	0	39	0	0	0	1	0	1	0	0	1	1	0	0	2	0	42	
	물리치료학과	0	2	20	35	0	0	57	1	0	2	7	0	10	0	0	1	1	0	0	2	0	70	
	작업치료학과	0	0	2	23	0	0	25	1	0	1	3	0	5	0	0	3	0	0	0	3	0	33	
	방사선학과	0	0	14	19	0	0	33	0	0	1	3	0	4	0	0	0	2	0	0	2	2	41	
	보건과학부 분자진단과학전공	0	0	0	4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보건과학부 재활보건학전공	0	0	1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0	0	2	
	보건과학부 의료경영정보관리전공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의료시스템공학	0	0	1	2	0	0	3	0	0	0	1	0	1	0	0	0	0	0	0	0	4	8	
	바이오융합공학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환경공학부	0	8	21	59	0	0	88	0	4	5	17	0	26	1	2	8	1	0	0	12	0	126	
동아시아 국제 학부	의공학부	0	1	39	66	0	0	106	0	1	6	8	0	15	0	3	1	5	0	0	9	0	130	
	소계	0	13	123	272	0	0	408	2	5	16	52	0	75	1	5	14	10	0	0	30	10	524	
	동아시아국제학부	0	3	11	32	0	0	46	0	4	5	14	0	23	2	1	1	2	0	0	6	0	74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	2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소계	0	3	11	32	0	0	46	0	4	5	14	0	23	2	1	1	3	0	0	7	2	77	
글로벌 엘리트 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0	88	37	35	0	0	160	1	8	4	4	0	17	0	3	0	0	0	0	3	0	180	
	소계	0	88	37	35	0	0	160	1	8	4	4	0	17	0	3	0	0	0	0	3	0	180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글로벌 창의융 합대학	국어국문학전공	0	18	16	11	0	0	45	0	2	3	3	0	8	0	4	1	0	0	0	5	0	58	
	영어영문학전공	0	33	19	11	0	0	63	0	2	4	1	0	7	0	4	2	0	0	0	6	0	76	
	역사문화학전공	0	12	16	9	0	0	37	0	2	3	2	0	7	0	1	7	0	0	0	8	0	52	
	철학전공	0	9	11	5	0	0	25	0	2	1	1	0	4	0	1	0	0	0	0	1	0	30	
	경영학전공	0	160	134	50	0	0	344	0	23	39	19	0	81	0	70	17	1	0	0	88	0	513	
	경제학전공	0	21	21	19	0	0	61	0	5	7	1	0	13	0	10	6	0	0	0	16	0	90	
	글로벌행정학전공	0	55	38	23	0	0	116	0	9	11	9	0	29	0	18	10	1	0	0	29	0	174	
	국제관계학전공	0	38	28	10	0	0	76	0	3	6	3	0	12	0	12	6	0	0	0	18	0	106	
	동아시아국제학부	0	4	3	14	0	0	21	0	2	3	5	0	10	0	1	3	0	0	0	4	0	35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0	2	0	0	0	0	2	0	1	0	0	0	1	0	0	0	0	0	0	0	0	3	
	EAST ASIAN POLITICS AND ECONOMY	0	35	16	0	0	0	51	0	7	8	0	0	15	0	7	2	0	0	0	9	0	75	
	글로벌엘리트학부	0	1	24	25	0	0	50	0	5	2	0	0	7	0	0	0	0	0	0	0	0	57	
	산업디자인학전공	0	11	13	9	0	0	33	0	3	0	2	0	5	0	3	6	0	0	0	9	0	47	
	시각디자인학전공	0	36	33	9	0	0	78	0	4	17	7	0	28	0	8	3	1	0	0	12	0	118	
디지털아트학전공	0	11	4	3	0	0	18	0	0	2	1	0	3	0	0	2	0	0	0	2	0	23		
소계	0	446	376	198	0	0	1,020	0	70	106	54	0	230	0	139	65	3	0	0	207	0	1,457		
과학기 술평합 대학	환경공학전공	0	13	18	6	0	0	37	0	2	5	0	0	7	0	7	4	0	0	0	11	0	55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0	14	6	3	0	0	23	0	2	3	1	0	6	0	2	5	0	0	0	7	0	36	
	물리및공학물리학전공	0	21	15	1	0	0	37	0	6	4	1	0	11	0	3	2	0	0	0	5	0	53	
	화학및의화학전공	0	33	27	20	0	0	80	0	2	7	1	0	10	0	12	5	1	0	0	18	0	108	
	생명과학기술헌학전공	0	74	38	23	0	0	135	0	6	17	4	0	27	0	18	10	0	0	0	28	0	190	
	패키징및물류학전공	0	15	10	3	0	0	28	0	1	2	1	0	4	0	3	4	0	0	0	7	0	39	
	소계	0	170	114	56	0	0	340	0	19	38	8	0	65	0	45	30	1	0	0	76	0	481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소프트 웨어 디지털 헬스케 어 융합대 학	소프트웨어학부	0	0	0	3	0	0	3	0	0	0	0	0	0	0	0	2	0	0	0	2	0	5
	소프트웨어전공	0	128	58	35	0	0	222	0	17	20	6	0	43	0	60	26	0	0	0	86	0	351
	데이터사이언스학전공	0	33	10	9	0	0	52	0	3	6	2	0	11	0	6	11	1	0	0	18	0	81
	디지털헬스케어전공	0	43	19	15	0	0	77	0	7	10	3	0	20	0	19	15	0	0	0	34	0	131
	의공학부	0	0	0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의공학전공	0	69	42	23	0	0	134	0	2	7	4	0	13	0	24	15	2	0	0	41	0	188
	바이오공학전공	0	22	13	6	0	0	41	0	1	1	1	0	3	0	6	3	0	0	0	9	0	53
	보건행정학부	0	0	0	2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보건행정학전공	0	35	38	37	0	0	110	0	2	4	5	0	11	0	3	4	1	0	0	8	0	129
	보건의료정보관리학전공	0	13	15	9	0	0	37	0	2	0	1	0	3	0	3	1	0	0	0	4	0	44
	임상병리학과	0	54	54	42	0	0	150	0	4	6	1	0	11	0	3	6	0	0	0	9	0	170
	물리치료학과	0	42	34	21	0	0	97	0	7	8	5	0	20	0	7	11	0	0	0	18	0	135
	작업치료학과	0	33	39	26	0	0	98	0	5	6	4	0	15	0	3	5	1	0	0	9	0	122
	방사선학과	0	37	24	21	0	0	82	0	3	5	0	0	8	0	9	8	0	0	0	17	0	107
	치위생학과	0	26	29	25	0	0	80	0	5	2	1	0	8	0	0	0	1	0	0	1	0	89
	보건과학부 분자진단과학전공	0	0	8	6	0	0	14	0	0	3	1	0	4	0	0	0	0	0	0	0	0	18
	보건과학부 재활보건학전공	0	0	18	12	0	0	30	0	0	3	1	0	4	0	0	0	0	0	0	0	0	34
	보건과학부 헬스케어빅데이터전공	0	0	7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소계	0	535	408	294	0	0	1,238	0	58	81	35	0	174	0	143	107	6	0	0	256	0	1,668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반도체시스템융합공학전공	0	0	18	11	0	0	2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
	응용전기전자융합공학전공	0	0	28	21	0	0	4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9
	반도체인프라및환경융합공학전공	0	0	20	11	0	0	3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소계	0	0	66	43	0	0	1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9
매지캠퍼스 합계		1,553	1,321	1,475	1,743	0	0	6,092	115	211	326	470	0	1,122	88	382	279	75	0	0	824	60	8,098
원주의 과대학	의예과	101	10	0	0	0	0	111	5	84	0	0	0	89	2	1	0	0	0	0	3	0	203
	의학과	11	6	4	6	0	0	27	112	82	103	110	0	407	1	2	0	1	0	0	4	0	438
	소계	112	16	4	6	0	0	138	117	166	103	110	0	496	3	3	0	1	0	0	7	0	641

대학명	학과명	재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학사학위 수료	총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원주간	간호학과	54	54	50	54	0	0	212	3	5	13	13	0	34	1	4	9	1	0	0	15	0	261
호대학	소계	54	54	50	54	0	0	212	3	5	13	13	0	34	1	4	9	1	0	0	15	0	261
미래캠퍼스 합계		1,719	1,391	1,529	1,803	0	0	6,442	235	382	442	593	0	1,652	92	389	288	77	0	0	846	60	9,000
총 합계		6,576	6,138	6,840	7,087	95	45	26781	438	893	1,758	2,425	12	5,526	276	1,630	1,042	316	5	0	3,269	837	36,413